

연구총서 19-AA-06

표지면지

표지와 동일하게 흑백으로 들어갑니다.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 저 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연수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 연구지원

유효은 (한국형사저액연구원 조사연구원)

머리말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이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노인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료로서 수집을 할 때에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노인 수용자들의 삶의 경험을 듣고 귀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자료의 양과 질에 비해 결과물로 제출하는 이 보고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비록 이 보고서에 충분히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연구의 과정에서 모아진 고령 수용자들의 경험들은 범죄를 연구하는 데에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신 고령 수용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낯선 연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자신의 삶의 경험과 범죄 경험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듣고 녹취록으로 정리해준 유효은 조사연구원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교도소를 함께 다니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으며, 이분들의 삶을 자료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교정본부 관계자와 고재익 교정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 교도소의 일선 직원분들은 귀찮은 방문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내어 주셨으며, 더구나 식사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노고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박형민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박형민

서 론	9
-----------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1
제2절 고령범죄자의 현황	12
제3절 조사 방법	16
1. 연구대상자 모집	16
2. 심층면접	17
3. 공식기록조사	18
제4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김연수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21
--------------------------	----

제1절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	23
1. 생애과정 연구의 태동	23
2. 인간의 발달에 관한 관점: 존재발생론 vs 사회발생론	26
3. 개인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	29
제2절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41
1. 생애과정 연구 자료와 분석방법에 관한 주요 이슈	41
2. 생애과정 연구자료 수집방법	45
3. 생애과정 연구 자료 분석 방법	52

제3절 범죄자의 생애과정 연구	56
1. 범죄자의 범죄경력 패러다임	56
2. 범죄자의 발달과 생애과정 이론	68
3.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75

제3장 박형민

경력 범죄자의 생애 경험 83

제1절 생애 경험의 의의	85
제2절 사례별 생애 경험	87
1. 〈사례 1〉	87
2. 〈사례 2〉	104
3. 〈사례 3〉	111
4. 〈사례 4〉	126
5. 〈사례 5〉	138
6. 〈사례 6〉	147
7. 〈사례 7〉	156
8. 〈사례 8〉	168
9. 〈사례 9〉	179
10. 〈사례 10〉	190

제4장 박형민

범죄 경력을 구성하는 범죄 요인 197

제1절 경험된 범죄 요인	199
제2절 시작 요인	200
1. 가난	200
2.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	202
3. 배우자에 대한 원망	203

4. 우연한 행운(성공적 범죄경험)	205
제3절 중단 요인	205
1. 결혼(출산)	206
2.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	207
제4절 재시작 요인	210
1. 경제적 곤란	210
2. 범죄적 성공경험	211
3. 범죄 동료들의 유혹	212
4. 이혼	213
제5절 지속 요인	214
1. 범죄경력	214
2. 범죄적 성공 경험	218

제5장 박형민

결 론	221
-----------	-----

참고문헌	227
------------	-----

Abstract	239
----------------	-----

부록	243
----------	-----



표 차례

[표 1] 노인범죄자 수 및 비율(2010-2017)	12
[표 2] 연령별 수형자 현황	13
[표 3] 61세 이상 형법범의 죄명별 추이(2010-2017)	14
[표 4] 고령범죄자 형법범죄 재범 종류(2014-2017)	15
[표 5] 고령범죄자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2017)	16
[표 6] 고령 경력 범죄자 주요 면접 내용	18
[표 7] 면접대상자 개요	86
[표 8] 범죄 요인	199



그림 차례

[그림 1] 생애과정 패러다임의 구성요소	29
[그림 2] 개인의 범죠통력	63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영역일 것이다. 사실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경험에 대한 회고적 자료를 수집하여,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범죄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경험으로 통해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범죄의 시작요인, 지속요인, 중단요인, 재시작요인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경력 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고, 범죄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에 대한 문헌연구와 교도소에 수용중인 범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 졌다.

문헌연구를 통해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범죄자의 범죄경력 등 각각의 이슈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범죄경력 연구 및 생애과정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면접대상자는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 신청자를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 수용자 중 총 전과 10범 또는 동종전과 7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용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한 경우 면접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목적의 면접에 동의한 총 10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연구참여자 1인당 3회의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시간은 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

1960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사회학에서의 생애과정 연구는 1980년대 범죄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범죄곡선의 거시적, 미시적 원인 탐구 연구는 일련의 범죄자의 범죄경력연구 패러다임으로 이어졌다. 특히, Glueck & Glueck(1950)의 연구자료를 재분석하고, 당시의 연구대상자를 추적 조사하여 이들의 생애과정을 연구한 Sampson & Laub의 연구들(Sampson & Laub, 1995a; Laub & Sampson, 2003)은 생애과정 연구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더불어, 197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다양한 패널자료들과 이를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론들의 등장은 범죄학에서의 생애과정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범죄경력 연구에서 있어서 인간의 발달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론의 발달은 상이한 형태로 나아갔다. 즉, 존재 발생론적 관점은 인간의 발달과정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개인의 유전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반면, 사회 발생론적 관점은 인간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관점은 이후 치열한 이론적 논쟁을 거쳐 범죄경력 연구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Elder(1994, 1998)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대한 4가지 영향요인을 개념화하였는데, 역사적 시·공간의 맥락(문화적 차원), 주변인물과의 관계(사회적 통합 차원), 인간주체(개인의 발달 차원), 사건과 전이의 타이밍(적응의 차원)이 그것이다. 먼저, ‘역사적 시·공간의 맥락’은 개인의 생애과정이 어떤 시공간적 맥락에 위치하고, 생애 과정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세대와 같은 출생 코호트는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동시대에 경험함으로써 다른 출생 코호트와는 다른 사회화과정을 겪고, 이는 연령별 범죄참여율에 시대효과 내지 코호트효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변인물과의 관계’ 역시 범죄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요인이 되는데, 부모, 자녀 등 가족이나 동료와의 관계는 사회학습의 메커니즘으로 범죄의 유발 내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인간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주적 행위자라는 인간관에서 출발한 ‘인간주체’의 개념은 생애과

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범죄의 시작, 지속, 종단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끝으로, '삶의 시점'은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언제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순서로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생애과정연구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생애과정 내 사건들의 연속선상에서 구분되는 지위의 변화를 의미하는 전이(transition)와 여러 전이를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삶의 패턴을 의미하는 궤적(trajecory)이 중요한 개념요소로 고려된다.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생애과정 연구 분석에는 크게 설문 및 인터뷰 자료, 생애기록자료, 참여관찰 자료가 활용된다. 또 이 자료들의 분석방법은 ① 인물기반의 기술적 연구에 집중하는 질적연구방법, ② 변수기반의 설명적 연구에 집중하는 양적연구방법, ③ 양자의 단점을 상호 보완하는 질적·양적 혼합연구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애과정 연구는 회고적 횡단연구설계와 미래지향적 종단연구설계로도 나눌 수 있다. 회고적 횡단연구설계는 긴 시간의 생애를 비교적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억의 부정확성과 왜곡의 문제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종단연구설계는 횡단연구에 비해 기억의 왜곡문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건의 선후관계가 명확하여 인과관계 검증에 유리하지만, 비용측면의 단점과 함께 성숙과 우발적 사건 등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양자의 장단점을 적절히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다양한 패널자료들의 축적과 함께 양적분석 방법은 다양하게 발달했다. 대표적으로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고정효과모형 및 임의효과모형이 사용되었고, 범죄학의 발달 및 생애과정이론 등을 검증하는 데는 잠재성장모형과 집단중심추세모형 등이 사용되었다. 한편, 양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적분석 방법으로는 생애사 내러티브 분석이 있다.

〈범죄자의 생애과정 연구〉

범죄학 분야에서 경력범죄 연구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4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연령-범죄곡선 논쟁을 말할 수 있다. 이 논쟁은 연령-범죄 관계에 대해 거시수준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미시(개인)수준으로 설명되는 것이 더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이다. 대표적으로 Hirschi & Gottfredson(1983)은 개인의 범죄성향은 쉽게 변할 수 없는 것으로 범죄와 연령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Farrington(1986)은 거시수준과 개인수준의 범죄-연령관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Farrington과 같은 입장에서 범죄자의 범죄경력에 대해 관심을 두는 일련의 학자들은 언제 왜 개인이 범죄를 시작하고, 지속하고, 심각해지고, 전문화되는지, 그리고 언제 왜 범죄를 중단하고, 총 기간은 얼마이며, 공범은 누구인지 등을 연구하며 하나의 연구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은 범죄자의 범죄참여, 범행기간, 범죄종류의 심각성, 공범유형 등 4가지 차원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의 등장은 범죄경력과 관련한 여러 전문용어들(진입연령, 개인범죄율, 참여율, 확산도, 누적참여율, 발생율, 전문화, 일반화, 심각화 등)을 만들어 냈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 범죄자의 생애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면서 범죄행위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범죄학의 발달이론들과 생애과정이론들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Moffitt(1993)의 발달이론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개인의 자질과 유년기의 환경으로 신경사회적 결손을 경험하고 이것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친사회적 행위의 학습기회와 사회적 성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약하여 범죄의 지속으로 연결되는 집단이라고 본다. 한편, 청소년 한정형 범죄자는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하여 신체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의 차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범죄 또는 비행을 선택한 집단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반사회적 성향은 성인이 되어 성숙의 차이가 극복될 때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Sampson & Laub(1995a)의 생애과정이론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연령단계별 발현에서의 차이를 주목하였다. 즉, Gottfredson & Hirschi(1990)가 주장한 사회통제의 역할은 동의하지만, 그것이 생애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 연령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생애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비공식적 통제기제(결혼, 취업, 군입대 등)의 등장여부에 따라 범죄 및 비행의 중단이

나 지속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한편, Laub & Sampson(2003)은 범죄의 시작, 지속 및 중단에 기존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더불어 개인의 일상활동과 인간주체를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추가하였다. 즉, 결혼 및 직장생활은 개인의 일상활동 패턴에 변화를 가져와 범죄를 중단시키거나 범죄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오며, 생애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의 목적의식이 범죄 중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Moffitt(1993)의 발달이론과 Sampson & Laub(1995a)의 생애과정이론은 성인기 이후 범죄경력의 지속과 변화에 관심을 갖는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에 속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지속형으로 집단을 구분한 Moffitt(1993)와 달리 Sampson & Laub(1995a)은 범죄경력에 따른 집단의 구분보다는 비공식적 사회통제라는 매커니즘으로 인한 범죄행위의 시작과 변화에 주목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과 같은 범죄경력 연구의 이론적 전제와 발달과정, 그리고 방법론적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의 범죄경력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령범죄자의 범죄지속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Gottfredson & Hirschi(1990)는 유년기에 형성된 개인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성인기 이후의 범죄 지속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는 반면, Sampson & Laub(1995a)은 성인기의 사회적 유대의 차이에 주목한다. 또, Moffitt(1993)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경우 유년기에 형성된 신경심리학적 결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각 이론의 설명방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둘째,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범죄 이후 오랜 범죄경력 휴지기나 성인기 이후 늦은 나이에 시작된 범죄경력의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 Laub & Sampson(2003)은 성인기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일상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범죄궤적의 변화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년기 및 청소년기의 비행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기 이후 나타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공식 범죄기록의 공백인지 실질적 범죄행위의 공백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6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끝으로, 특정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횡단적 범죄현상 연구가 의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령범죄자에 대한 범죄(지속)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해외의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경험한 고령범죄자의 생애과정에서 특정 코호트가 갖고 있는 특성은 범죄경력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범죄율이 높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공식범죄통계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 역시 가능할 것이다.

경력 범죄자의 범죄 경험

면접조사를 통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생애주기별 생활경험을 살펴보고, 각 사례들이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경험한 주요한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들의 생애 경험 속에서 나나탄 범죄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범죄의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이라는 틀을 통해 개별적인 사례들을 고찰하여, 각 국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들간에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
〈사례 1〉	• 고아라는 상황 • 범죄동료들과 공동 생활	• 결혼과 출산	• 범죄동료들의 유혹 • 사업실패 • 범죄적 성공경험	• 범죄동료들과의 관계
〈사례 2〉	• 우연한 행운			• 취직이 어려움 • 범죄적 성공경험
〈사례 3〉	• 경제 곤란	• 결혼과 출산 • 사업 운영	• 이혼 • 사업 실패 • 유산 상속 실패 • 건강 악화	• 누적된 전과 • 취직이 어려움
〈사례 4〉	• 친구의 권유 • 부모의 방치	• 결혼과 출산 • 사업 운영	• 경제 곤란	• 범죄 동료들과 공동생활 • 가정 불화
〈사례 5〉	• 가난	• 노동 참여	• 지인과의 교제 • 유흥비 마련	• 교도소에서 범죄 학습 • 사회 부적응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
〈사례 6〉	• 친구 부탁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건강 악화 • 실업			• 지역사회 부적응 • 음주
〈사례 7〉	• 가난	• 노점 운영 • 결혼 • 충분한 수입	• 이혼	• 장기간 구금 • 취직이 어려움
〈사례 8〉	• 지인 부탁 • 범죄 동료의 권유	• 결혼 • 노동 참여	• 기소중지 사건 재개 • 노동 참여 • 범죄적 성공경험	• 범죄적 자아상 • 누적된 전과 • 범죄에 익숙해짐 • 범죄적 성공경험
〈사례 9〉	• 친구의 부탁			• 가난
〈사례 10〉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범죄의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곤란이었다. 본 연구에 동의한 피면접자들의 대부분이 절도범죄자이고, 일부 사기범죄자와 교통범죄자가 동의한 사례들이기에 어쩌면 사례들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사례들 중에는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거나, 성장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범죄를 시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틀림 없다. 다음으로는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로 범죄를 시작한 범죄자가 다수 있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식 없이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행위가 초기 범죄 경력을 형성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다른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범죄적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접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에 따른 음주가 폭력성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으며, 큰 돈을 얻게 된 범죄를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기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사례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범죄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중단요인은 ‘결혼(과출산)’, 그리고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이다. 이들은 결혼을 통한 안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나마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과 노동 참여를 통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였는데,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범죄적 성공경험'이다. 이 요인은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범죄적 성공경험이란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범죄적 행위의 결과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범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 동료들의 유혹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 함께 범죄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공범을 찾은 동료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권유하는 경우 약하게 거절한 이후 결국에는 다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시작요인이기도 한 경제적 곤란이 재시작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업실패,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상황을 절도나 사기라는 범죄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중단요인이었다면, 이혼은 재시작요인이다.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다시금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범죄를 지속하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복된 범죄로 인해 쌓여진 범죄경력이었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다른 모든 요인들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어 범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수의 범죄경력 중 일부는 범죄적 성공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지속을 통해 다시금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범죄자가 범죄적 행위에 익숙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결국 범죄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경제적 문제상황을 범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주요어

범죄경력, 고령범죄자, 범죄 중단, 범죄 지속, 범죄 재시작

제 1 장

고령범죄자의 범의경력 연구

서 론

박 형 민

제1절 | 연구의 목적과 의의

범죄를 저지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범죄학 이론에서 중요한 영역이지만, 범죄자가 범죄를 지속하거나 발전하는 범죄 경력 연구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따라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또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범죄경력 자료 또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양적 연구는 범죄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선행연구와 주어진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범죄 경력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범죄 현상의 변화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작업은 범죄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범죄학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범죄 경력의 변화 양상을 살핌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범죄학 이론을 제안하고, 실제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노인 경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들의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특화된 범죄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 범죄자들의 과거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충실히 들어서, 그들의

생각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이들의 기억과 진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경력범죄자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때로는 더 아름답게, 때로는 더 비참하게 회상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경력 범죄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으며, 이들 진술의 한계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이들의 진술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진술이 때로는 일관적이지 않아 이들이 그리는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술을 통해 최대한 그들의 생애를 그려내고,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범죄의 시작과 지속, 중단과 재시작의 계기와 요인을 밝히려 노력하였다.

제2절 | 고령범죄자의 현황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인 고령 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기위해 고령범죄자의 범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공식 범죄통계인 「범죄분석」에 의하면 전체 범죄자 수에서의 노인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0년에는 61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총 115,170명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에는 총 215,139명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여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표 1] 노인범죄자 수 및 비율(2010-2017)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범죄자 수	1,954,331	1,907,641	2,147,250	2,117,737	1,879,548	1,948,966	2,020,196	1,861,796
61-70세	88,543	97,494	117,354	110,903	127,282	140,884	159,803	165,006
71세 이상	26,627	24,282	32,603	56,933	38,118	44,335	76,949	50,133
계	115,170	121,776	149,957	167,836	165,400	185,219	236,752	215,139
노인비율(%)	5.9	6.4	7.0	7.9	8.8	9.5	11.7	11.6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고령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수형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 <표 2>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령별 수형자 현황을 나타낸 표이며 2013년도 부터는 60세가 노인수형자에 포함되어 집계되어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표 2>에 의하면 14세-19세, 20세-30세, 31-40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 41세 이상의 중장년, 노인수형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 연령별 수형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4~19세	339	346	279	329	20세 미만	341	323	309	338	293
20~30세	6,726	6,353	5,574	5,798	20세 이상	4,693	4,761	4,853	5,092	5,046
31~40세	8,563	8,235	7,867	7,443	30세 이상	7,677	7,584	7,678	7,678	7,543
41~50세	9,098	9,266	9,001	9,120	40세 이상	9,714	9,986	10,310	10,275	9,712
51~60세	4,382	4,697	5,190	5,861	50세 이상	7,362	7,989	8,624	9,255	9,330
61~70세	1,018	1,131	1,245	1,391	60세 이상	2,350	2,801	3,324	3,841	4,243
계	30,281	30,223	29,390	29,634	계	32,136	33,444	35,098	36,479	36,167

※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corrections.go.kr/corrections/1193/subview.do>).

<표 3>는 61세 이상 노인 형법범의 죄명별 추이를 나타낸다. 전체 노인 형법범 역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형법범죄 비율 내에서 '강간(성폭력)', '절도', '횡령'의 비율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였고, 반면 '상해'의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14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 [표 3] 61세 이상 형법범의 죄명별 추이(2010-2017)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살인	85 (0.1)	94 (0.2)	96 (0.1)	121 (0.2)	127 (0.2)	122 (0.1)	129 (0.1)	137 (0.1)
강도	51 (0.1)	81 (0.1)	60 (0.1)	54 (0.1)	59 (0.1)	47 (0.1)	58 (0.1)	55 (0.1)
방화	63 (0.1)	81 (0.1)	71 (0.1)	103 (0.1)	123 (0.2)	142 (0.1)	146 (0.1)	136 (0.1)
강간 (성폭력)	821 (1.5)	991 (1.6)	1,045 (1.4)	1,421 (1.9)	1,684 (2.1)	2,010 (2.2)	2,346 (2.3)	2,841 (2.6)
폭행	8,425 (15.0)	10,228 (16.6)	10,894 (15.0)	11,635 (15.3)	14,829 (18.1)	17,594 (19.2)	20,983 (20.4)	21,923 (20.1)
상해	6,663 (11.8)	6,574 (10.7)	6,889 (9.5)	6,558 (8.6)	7,842 (9.6)	8,037 (8.8)	7,675 (7.5)	7,151 (6.6)
절도	5,540 (9.8)	6,486 (10.5)	6,303 (8.7)	6,992 (9.2)	8,357 (10.2)	10,641 (11.6)	14,024 (13.6)	16,532 (15.2)
사기	12,682 (22.5)	12,908 (20.9)	16,874 (23.2)	18,672 (24.5)	17,781 (21.7)	18,537 (20.2)	20,123 (19.6)	20,179 (18.5)
횡령	2,258 (4.0)	2,314 (3.8)	3,411 (4.7)	3,750 (4.9)	4,013 (4.9)	4,672 (5.1)	5,479 (5.3)	5,800 (5.3)
도박과 복표	2,392 (4.2)	3,430 (5.6)	3,351 (4.6)	3,054 (4.0)	3,161 (3.9)	3,826 (4.2)	3,478 (3.4)	3,689 (3.4)
전체 노인 형법범	56,354 (100)	61,614 (100)	72,775 (100)	76,105 (100)	81,865 (100)	91,542 (100)	102,882 (100)	108,909 (100)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고령범죄자의 재범유형을 살펴보면 동종재범에 비하여 이종재범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가 폭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 4>은 2014-2017년 동안의 고령범죄자의 형법범죄 재범 종류 수와 비율을 나타낸 표로, 동종재범을 살펴보면 상해, 사기, 도박과 복표는 점차 비율이 감소하고 절도의 경우 반대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종재범의 경우, 상해와 사기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성폭력, 폭행, 절도, 횡령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 [표 4] 고령범죄자 형법범죄 재범 종류(2014-2017)

구분	연도	동종재범				이종재범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살인		4 (0.1)	-	3 (0.0)	4 (0.1)	39 (0.3)	41 (0.2)	47 (0.3)	37 (0.2)
강도		9 (0.2)	8 (0.1)	10 (0.2)	4 (0.1)	11 (0.1)	8 (0.0)	15 (0.1)	12 (0.1)
방화		-	2 (0.0)	3 (0.0)	8 (0.1)	46 (0.3)	54 (0.3)	43 (0.2)	43 (0.2)
성폭력		46 (0.8)	40 (0.7)	50 (0.8)	51 (0.7)	564 (3.8)	676 (4.0)	752 (4.0)	943 (4.7)
폭행		1,071 (19.3)	1,173 (20.0)	1,380 (21.4)	1,401 (19.8)	2,473 (16.8)	3,078 (18.3)	3,517 (18.8)	3,749 (18.6)
상해		2,858 (51.5)	863 (14.7)	787 (12.2)	832 (11.7)	1,956 (13.3)	2,063 (12.3)	2,005 (10.7)	1,865 (9.2)
절도		987 (17.8)	1,224 (20.8)	1,678 (26.0)	2,250 (31.8)	2,004 (13.6)	2,560 (15.2)	3,397 (18.2)	3,947 (19.6)
사기		916 (16.5)	1,108 (18.9)	1,083 (16.8)	1,037 (14.6)	1,803 (12.3)	1,737 (10.3)	1,758 (9.4)	1,725 (8.6)
횡령		74 (1.3)	79 (1.3)	102 (1.5)	104 (1.5)	575 (3.9)	698 (4.1)	874 (4.7)	1,064 (5.3)
도박과 복표		522 (9.4)	559 (9.5)	498 (7.7)	526 (7.4)	665 (4.5)	824 (4.9)	720 (3.7)	856 (4.2)
재범 계		5,546 (100)	5,872 (100)	6,444 (100)	7,081 (100)	14,694 (100)	16,837 (100)	18,701 (100)	20,172 (100)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 65세이상 70세이하

고령범죄자(65세 이상 70세 이하)의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전과 없음’으로 나타나 초범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도’의 경우에는 ‘전과 없음’의 비율이 비교적 낮았고, ‘사기’의 경우 다른 범죄 유형과는 달리 ‘9범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 [표 5] 고령범죄자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2017)

구분 \ 전과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살인	17	9	10	4	6	2	1	2	1	6
강도	1	4	3	2	1	2	0	1	0	3
방화	17	11	6	4	5	3	4	2	4	12
강간 (성폭력)	400	248	171	115	87	74	51	43	33	182
폭행	1,773	974	783	592	477	352	292	274	175	1,239
상해	998	551	418	310	248	179	148	127	103	616
절도	4,214	1,660	1,009	171	501	363	267	209	209	1,232
사기	672	371	300	259	192	164	144	124	124	1,116
횡령	801	332	229	158	82	77	65	38	38	160
도박과 복표	309	247	223	171	148	131	90	57	50	258
전체 고령형법범	11,944	5,867	4,150	3,093	2,352	1,812	1,443	1,182	1,182	6,425
전체 고령범죄자	20,839	11,147	8,173	6,153	4,629	3,631	2,869	2,296	2,296	10,677

※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

* 65세 이상 70세 이하

제3절 | 조사 방법

1.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대상자에 대한 모집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우선 교정본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 교도소의 고령범죄자 수용현황을 확인하였다. 그 이후 고령 경력범죄자가 많은 교도소 9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범죄자 중 총전과 10범이상 혹은 동종전과 7범 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게 연구참여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부록〉 참조). 총 5개의 기관에서 13명이 면접참여의사를 밝혀주었으나, 이중 3명이 가석방이나 이송, 거부 등을 이유로 중도탈락하여 결과적으로 10명의 대상자가 개인의 범죄경력조회 및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 개인의 인터뷰가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2. 심층면접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10명을 심층면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 1인당 면접횟수는 3회,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연구참여자가 속해있는 교정기관의 상황에 따라 상담실, 접견실, 회의실 등을 협조 받아 진행되었으며,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접은 모두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심층면접 시작 전에 조사의 목적과 비밀보장 및 철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1차 면접내용은 국내외 범죄경력 연구를 통해 범죄의 착수 시점 및 계기, 중단, 지속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여 생애 과정별 사건들에 관한 질문을 연구대상자들에게 던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애경험과 관련한 질문으로는 ‘가정환경’, ‘어린시절 인상 깊은 기억’, ‘형제자매와의 관계’, ‘생활환경’, ‘교우관계’, ‘이사 및 가출경험’, ‘비행경험’, ‘학업성취’, ‘교사와의 관계’, ‘학업중단경험’, ‘직업경험’, ‘이성교제 경험’ ‘경제적 상황’, ‘결혼여부’와 범죄경험과 관련하여 ‘첫 범죄’, ‘첫 체포’, ‘첫 수감’, ‘각 경험 이후 삶의 변화’, ‘범죄중단 경험과 계기’, ‘재시작 과정’ 등에 대해 질문을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1차 면접을 마친 대상자들에 대해 범죄기록을 입수하여 대조하였으며 2차 면접시 이를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3차 면접은 1차와 2차면접을 바탕으로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생애 경험 및 범죄 경험에 대한 추가질문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해석에 대한 질문으로 면접을 구성하였다.

» [표 6] 고령 경력 범죄자 주요 면접 내용

• 1차 면접

〈생애경험〉

- ▶ 아동기 : 고향, 부모님 연령 및 직업, 형제자매, 가정환경, 어린시절의 인상깊은 기억, 놀이경험
- ▶ 청소년기 : 생활환경, 학교 친구, 동네 친구, 이사경험, 가출경험, 학업성취, 비행경험, 교사에 대한 인상, 학업중단 경험
- ▶ 청년기 : 직업경험, 이성교제 경험, 경제적 상황
- ▶ 중장년기 : 결혼여부, 동거여부, 직업 경력, 경제 상황

〈범죄 경험〉

- ▶ 최초 경험 : 첫 범죄, 첫 체포, 첫 수감 --> 각 경험의 이유, 느낌
- ▶ 반복 범죄 : 범죄 경력
- ▶ 각 경험 이후 삶의 변화.(특히 체포 및 수감) 낙인 경험
- ▶ 범죄 중단 경험, 범죄 재시작 --> 계기와 과정

• 2차 면접

- ▶ 범죄 경험에 대한 추가 질문
- ▶ 공식기록과 비교
- ▶ 다른 삶에 대한 기대

• 3차 면접

- ▶ 범죄 경험에 대한 추가 질문
- ▶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해석. 당시의 상황 (당시 직업, 수감여부, 기억과 느낌 등)

3. 공식기록조사

본 연구진은 대검찰청의 협조로 사전 범죄기록열람에 동의한 연구대상자들의 사건 기록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심층면접조사의 특성인 회고적 자기보고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접근하고, 연구대상자의 공식기록에 대한 기억을 보다 정확히 청취하기 위함이다. 연구진은 해당 사건형제번호를 통해 지방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항소·상고 이유서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확인하였다.

제4절 |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총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속에서 생애과정 연구의 역사와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생애과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료의 종류와 특징, 분석방법을 다루었다. 특히 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론적 성과와 향후 방향성 및 함의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심층면접에 응한 피면접자들의 생애주기별 생활경험과 범죄경험을 살펴보았다. 각 사례들이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경험한 주요한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으며, 그들의 주요 범죄 경험을 통해 그들이 범죄를 시작하고, 중단하거나, 지속하게 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피면접자들의 생애 경험 속에서 나타난 범죄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범죄의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이라는 틀을 통해 그들 범죄 경력을 이루는 범죄 요인을 살펴보았다.

제 2 장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김 연 수

제2장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발전 방향

제1절 | 생애과정 연구 패러다임

1. 생애과정 연구의 태동

생애과정연구(life course study)는 현대 사회과학에서 각 세부 학문을 막론하고 주요 연구패러다임으로 위치하고 있다(Mayer, 2009). 인간의 생애과정을 단순한 생물학적인 성장 및 노화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애와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힘(social force)과 인간 주체(human agency)의 상호작용과,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과거의 경험 및 환경이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는 것은 범죄학, 사회학, 공중보건학, 심리학, 발달경제학 등을 막론하고 모든 학문의 주요 관심사이다.

사회학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생애과정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 이 배경에는 생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인 개념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종단자료의 구축, 그리고 종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발달이 있다. 먼저,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을 단순히 생물학적 성장(development)과 노화(aging)의 과정으로 여기던 전통적인 관점은 1960년대부터 사회학적인 노화와 생애과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Dannefer, 2013). Havighurst(1972)는 연령별 발달과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발달과업이란 개인의 욕구(needs)와 사회의 요구(demands)와의 가교(假橋)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일생의 어떤 시기에 성취해야할 과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발달과업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요구와 개체의 의도적인 노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개인적 요소와 사회구조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미국사회의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Dannefer, 2013).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사회는 세계 1,2차 대전, 대공황,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사회 급변현상을 겪었다. 이와 같은 거시단위의 사회현상이 개인과 개인의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 대공황을 겪고, 20대 때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192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종단 추적한 Oakland Growth Study(OGS)와 유년기에 대공황을 겪고 10대 때 세계2차 대전을 겪은 192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Birth Cohort)를 종단 추적한 Berkeley Growth Study(BGS)를 비교분석한 Elder(1974, 1994, 1998)의 일련의 연구들은 사회학적 시각을 기본 바탕으로 사회 심리학적, 그리고 역사학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는 인간생애연구 패러다임의 주춧돌이 되었다.

범죄학에서도 1980년대에서부터 거시수준에서의 연령과 범죄율의 관계와 개인수준에서의 생애과정 내 범죄행위의 변화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¹⁾ 연령 대별 범죄율이 청소년기에 가장 높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분포를 보이는 연령 범죄곡선(age-crime curve)²⁾이 거시수준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개인수준에서도 연령범죄곡선과 같은 모양처럼 범죄발생을 변화가 관찰되는가와 같은 연구 질문들은 연령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켰다(예: Hirschi & Gottfredson, 1983; Greenberg, 1985; Farrington, 1986). 이 무렵 범죄자의 범죄경력연구 패러다임의 등장은 범죄자들이 언제, 무슨 이유로 범죄를 시작하고,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로 범죄를 일정기간동안 지속하거나 그만두는지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과 범죄행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범죄학 이론들을 이끌었다(Farrington, 2003a;

1) 물론, 연령-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훨씬 이전부터 거시수준(예: Quetelet(1831)의 『Research on the propensity for crime at different ages』)과 미시수준(예: Shaw(1966)의 The Jack-Roller: A Delinquent Boy's Own Story) 모두에서 이루어져 왔다.

2)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는 일반적으로 연령-범죄 곡선 모양은 10대 후반에 가장 높고 그 후 급속히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Greenberg(1977, 1985)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연령-범죄 곡선은 다른 모양을 보일 뿐만 아니라 범죄유형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Piquero et al, 2007). 특히, Glueck & Glueck(1950)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고, 연구대상자들이 70세가 되었을 때 생애사 인터뷰를 통하여 범죄자들의 생애과정을 방대하게 분석한 Sampson & Laub의 일련의 연구들(예: Sampson & Laub, 1995a; Laub & Sampson, 2003)은 범죄학의 생애과정이론인 비공식 사회통제의 연령단계별 이론을 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생애과정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본이 되었다(Dannefer, 2013; Mayer, 2009).

한편, 종단자료의 구축은 생애과정 연구 발전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는 1970년대부터 실증적 연구의 시금석(gold standard)이 횡단연구 설계(Cross-Sectional Design)로부터 종단연구 설계(Longitudinal Design)로 바뀌는 시기와도 일치한다. 종단연구 설계가 실증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하기 이전에는 인간의 일생에 대한 탐구가 횡단연구 설계로 이루어져 생애과정 중 단편적인 모습(snapshot)만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Elder & Giele(2009)는 사회연구의 고전 중 하나인 Thomas & Znaniecki(1918)의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를 그 예시로 들었다. 이 연구는 민족지학적 연구방법(ethnography research)을 통해 유럽 및 미국 각지에 이주한 폴란드인들의 생애사(life history)를 상세히 분석한 연구로서 사회학에서의 최초의 생애사 연구이자 사회학적 생애과정연구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종단자료와 연구분석 방법이 부재로 인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생애과정이 연구기간 이후에 어떻게 변하고 지속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다.³⁾

그러나 1970년대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패널자료들(예: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이 인간생애를 종단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생애과정연구 발전의 큰 역할을 하였다. 범죄학에서도 생애과정에 걸친 범죄 및 비행 행위의 지속과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패널자료들(예: 로체스터 청소년 발달연구(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RYDS), 오하이오 종단연구(Ohio Longitudinal Study; OLS), 저항경로 연구(Pathways to Desistance Study)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범죄행위의 인과관계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과 생애과정

3) Elder & Giele(2009)는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1918)을 사회학적인 인간 생애 연구의 선구적인 연구(pioneer work)로 평가하였다.

연구가 점차 사회과학 연구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패널 자료 구축과 함께 인간생애를 종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적용과 발전은 생애과정연구를 체계적 연구(systematic research)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다. 특히 범죄학의 생애과정연구는 양적·질적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통해, 각 연구방법이 수행할 수 없는 단점을 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접근은 포괄적으로 개인의 생애과정을 파악하고, 인생의 궤적(trajecory)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상충되는 이론들의 검증과 새로운 이론적 논의를 활발하게 촉진시켰다.

2. 인간의 발달에 관한 관점: 존재발생론 vs 사회발생론

생애과정연구가 사회과학 연구의 영역으로 자리함에 따라 지난 50년 동안 각 세부 학문들은 여러 생애과정이론을 발전시켰고, 학제간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Meyer, 2009). 하지만, 각 학문마다 인간의 발달과정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기인하는 논쟁 역시 함께 발생하였다. 각 학문마다, 또는 동일한 학문 내 서로 다른 학자들마다 “인간 발달의 토대는 무엇이며, 인간발달은 개인 수준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사회 환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개인과 사회 환경 중 개인발달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등의 일련의 질문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대답을 갖고 있었다(Featherman & Lerner, 1985).

인간의 발달과정을 바라보는 대조되는 시각 차이는 크게 존재 발생론적 관점(ontogenetic perspective)과 사회발생론적 관점(sociogenetic perspective)으로 나뉘 볼 수 있다.⁴⁾ 먼저, 존재발생론적 관점은 그 뿌리가 생물학과 발달심리학에 있다.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유전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들이 인간의 발달과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간 발달과정에는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발달과정(normal aging or normal development)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성장과정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발달과정과 다른 일부 생애발전과정은 이탈(deviation)로 보며, 이탈의 주요원인은 사회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에 있다고 본다(Baltes & Nesselroade, 1984).

4) 두 관점의 차이는 Dannefer(1984a, 1984b)와 Baltes & Nesselroade(1984)의 논쟁을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Dannefer(1984a)는 존재발생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성인발달단계이론(adult development theory), 생애발달 심리학(life 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그리고 변증법적인 생애발달 심리학(dialectical life span psychology)을 비판하였다. 비판의 핵심에는 사회적으로 발생된 현상들을 개인수준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존재발생론적 환원주의(ontogenetic reductionism)와 존재발생론이 갖고 있는 정상성(normality)에 대한 가정의 오류(Ontogenetic Fallacy)가 있었다. Baltes & Nesselroade(1984)는 생애발달 심리학이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발달과정에서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발달과정을 갖는다고 비판한 Dannefer(1984a)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inaccurate and incomplete)이라고 반박했다. 생애발달심리학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 등과 함께 연령과 관련된 규범적인 영향(normative age-graded influence), 연령과 관련된 규범적인 역사 영향(normative history-graded influence), 그리고 연령과 관련된 비규범적인 영향(nonnormative influence)을 모두 고려하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Baltes & Nesselroade(1984)의 주장처럼 생애과정 심리학은 사회 수준의 영향력을 고려하며, 경험에 대한 개인특성의 개방성(openness)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Dannefer(1984b)가 재반론 한 것처럼 생애발달 심리학은 거시수준의 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부차적인 요소로 생각하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발달과정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가정은 다른 코호트 간의 서로 다른 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발생론적 관점은 사회학을 기반으로 사회 환경과 관련된 인간 조직의 유연성(the malleability of the human organism in relation to environments), 사회 환경의 구조적 복잡성과 다양성(the structural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social environment),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상징성)(role of knowledge in the relation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발달과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사회 환경 분석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Dannefer, 1984a).

예를 들어,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자식은 부모부양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노인 또한 자식에 부양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기 보다는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부부 세대나 독거노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숙완, 2013). 이러한 사회 환경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 감소로 사회 내 고립감이 증가하여 심리적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들은 음주나 도박과 같은 일탈 행위 등 이와 관련된 범죄 행동 가능성이 높아진다(변윤정, 2018: 22).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환경변화가 특정 연령대와 결합할 때 특정 인구집단에서의 높은 범죄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즉,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죄현상은 사회발생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발생론적 관점 역시 사회적 환원오류(sociogenetic reductionism)를 범할 수 있다. 인간의 노화과정은 생물사회학적(bio-social factors) 요소와 사회학적 요소(social factors)를 모두 갖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은 미시(micro), 중시(meso), 거시(macro) 등 다수준에 모두 내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발생적 요소들과 사회발생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두 관점을 함께 통합하고자하는 학문적 시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예: Alwin,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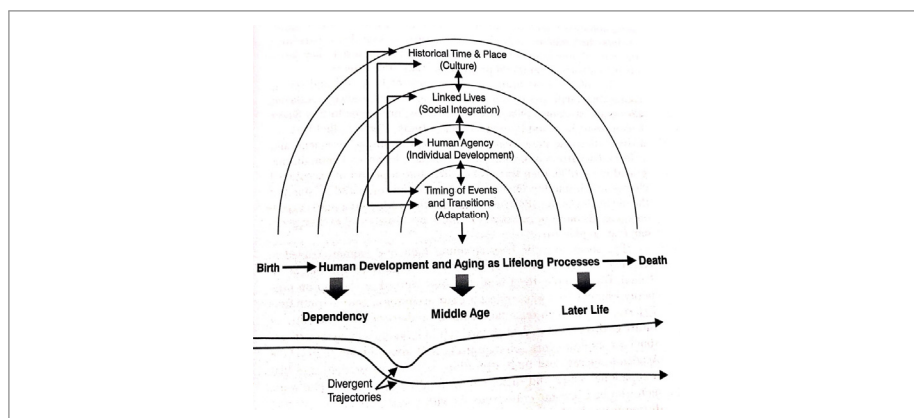
인간발달과정에 관한 두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범죄학의 발달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의 차이점과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먼저 범죄행위와 상관관계가 있는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 유년기에 결정되고, 상대적인 자기통제력의 수준은 성인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단연구 또는 생애과정연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Gottfredson & Hirschi(1990)의 주장이나, 개인의 범죄성향 발달과정을 유형화하는 발달이론들(Typological Theories)(예: Moffitt(1993)의 청소년기에 한정된 범죄자와 생애지속적 범죄자 이론)은 발전의 정상성과 유년기의 심리사회학적 요인에 무게를 두고 있는 존재발생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Thronberry et al., 2012). 또한, 발전이론에서 Agnew(1992)에 의해 제안된 발전긴장론에 의하면 범죄지속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어릴 때에 형성된 공격성향으로 보고 있다. 공격성향이 높은 사람은 성격장애,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인내력 부족 등으로 범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송주영·한영선, 2014). 이와 반대

로 Sampson & Laub(1995a)의 비공식 사회통제의 연령단계별이론은 인간생애과정 전반에 존재하는 전이들과 비공식적 통제의 기능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사회 발생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Thornberry et al., 2012). 이러한 범죄학의 주요 발달이론과 생애과정이론들의 기본가정은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을 설명하는데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다. 즉, 각 이론은 유년기의 범죄가 성인기의 범죄로 지속되는 이유와 성인기 이후에 범죄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범죄자(later onset offending)가 존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⁵⁾

3. 개인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

Elder(1994,1998)는 대공황시기에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각각 보낸 두 출생코호트를 비교분석하면서 생애과정과 인간의 발달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네 가지 요인을 정리하였고, 이를 2009년 연구에서 다시 한 번 [그림 1]과 같이 구체화하였다(Elder, 2009). 앞으로 소개되는 개인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들은 생애과정연구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행하고, 또 해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그림 1] 생애과정 패러다임의 구성요소



출처: Elder Jr, G. H., & Giele, J. Z.(2009). Life course studies: An evolving field in The craft of life course research. Guilford Press. p.11.

5) 이와 관련된 논의는 제2장 제3절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가. 역사적인 시·공간적 맥락(Historical Times and Place)

사회학적 생애과정연구의 출발점은 개인의 생애과정이 어떠한 역사적인 시공간적 맥락(historical and geographical)에 위치하고, 이에 따라 생애과정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Elder, 2009; Mayer, 2009). 역사적인 시공간적 맥락과 개인의 생애과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코호트(cohort)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코호트란 동일한 속성(commonality)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될 수 있다(Ryder, 1985). 동일한 속성의 예시로는 출생년도, 입학년도, 취업년도, 결혼년도, 또는 특정도시로 이주한 년도 등이 있다. 또한 코호트란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시기에 경험한 집단으로도 정의될 수 있다(Ryder, 1965). 여기서 동일한 사건은 전쟁이나 경제위기, 정치혁명, 자연재해와 다양한 사회급변현상을 의미한다. 또, 동일한 시간적 맥락이란 앞의 사회급변현상을 유년기에 겪었는지, 청소년기에 겪었는지, 청년기에 겪었는지, 혹은 장년기에 겪었는지를 의미한다.

사회학과 범죄학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동시대에 경험한 출생코호트이다. 출생코호트는 주로 단일년도에 태어난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대(generation)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Easterlin, 1987).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들의 경우, 각기 다른 성장과정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회화과정(socialization)을 겪는다(Ryder, 1965). 사회화과정은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유년기에는 가족,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또래그룹, 성인기 이후에는 소속 집단이 사회화과정을 담당한다.

사회학과 범죄학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받아왔던 출생코호트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출생코호트의 상대적인 인구 크기이다(relative cohort size). Easterlin(1987)은 출생코호트의 인구 숫자가 많은 코호트일수록(예: 베이비부머세대), 생애과정동안 다른 코호트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조건에 지속적으로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세대는 부모 1인당 부양해야하는 자식 숫자, 또는 교사 1인당 학생숫자가 높은 상황 속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사회화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다른 세대들과 같은 수준의 사회화과정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취업과 결혼 시에는 더 많은 숫자의 경쟁자들과 경쟁상황에 놓이게 된다. O'Brien과 그의 동료들

(1989, 1999, 2006)의 일련의 연구들은 이 연구가설(Easterlin Hypothesis)을 거시수준에서 연령별 범죄율(age-specific crime rates) 연구에 적용하였다. O'Brien 등(1989)은 베이비부머세대가 적절한 사회화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다른 세대에 비해 충분히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령별 범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을 것이고, 이 효과는 지속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즉, 인구크기가 큰 세대는 성인기 이후에도 높은 범죄참여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호트크기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뒤섞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예: Fabio et al, 2006; O'Brien & Stockard, 2006; Savolainen, 2010). Piquero와 그 동료들(1999)은 필라델피아 코호트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범죄 전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범죄 전문화는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국내에서도 코호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발견되는데, 이들 연구는 노인범죄를 베이비붐 세대(코호트)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신연희(2010)는 예비노인인 베이비붐 세대 기혼 남녀에게서 수집한 설문자료 1,013부 분석을 통해 고령사회의 노인범죄를 전망했다. 베이비부머들은 노년기에 경제적 불안정이 예측되며 노년기의 빈곤이 고령사회에서 노인범죄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국에서 범죄율이 높은 세대는 1991년 이후는 베이비붐 세대⁷⁾와 일치한다고 주장한 정은경(2012)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충분한 일자리가 없었고(최인섭·박순진, 1993),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성장, 증가하고 있는 빈부격차와 IMF 경제위기로 인한 혼란,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 등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이 요소들의 복합적인 효과가 범죄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노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활동수준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령계층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경험이 노년기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

6) 코호트크기 외에도 아직 논의가 구체화가 되지 않은 다른 코호트효과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코호트 특성들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Savolainen (2000)는 Easterlin 효과보다는 세대의 인종별 비율과 미혼모 출생자 비율 등이 더욱 중요한 코호트 특성이며, 이는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코호트 효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7)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분류한다(송양민, 2010, p.25).

한 주장도 있다(이종원, 2004). 고난과 역경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살아온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집단은 중년층으로부터 기득권의 배분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커다란 세대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인 빈곤과 심리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이종원, 2004: 30).

미국에도 다른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가 존재하나 미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그들의 범죄율이 높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두 나라간의 사회문화적 차이가 다른데서 설명할 수도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경제호황의 주역이었으나(O'Rourke, 201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보다 조금 앞선 경제개발 세대가 경제성장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고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개발 세대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그 혜택을 그들만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송양민, 2010). 한 예로, 이상우(2017)는 2013년 이후의 3년간 재범 증가율을 제시하면서 노인범죄자와 일반 성인범죄자의 재범 유형별 증가율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노인범죄자는 일반성인범죄자 보다 모든 범죄 유형에서 재범률이 높았다. 특히 절도(105.5%)와 강력범죄(48.7%)의 재범 증가율은 다른 범죄 유형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노인범죄자의 재범증가율 중 절도 범죄의 유형이 가장 높은 원인은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현실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변화와 개인과의 관계, 그리고 코호트효과가 범죄학적인 생애과정연구와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연구에 주는 함의는 연령별 범죄참여율의 차이를 단순히 연령효과(age effect)만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시대 효과(period effect) 또는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Farrington, 1986; Greenber & Larkin; 1985).⁸⁾ 물론, 현재까지도 통계적으로 세 가지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 간의 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⁹⁾ 하지만 방법론적 가능성을 차치하고, 연구대상자들이 생애과정 동안 겪어왔던 거시단위의 사건들이나, 혹은 현재 겪고 있는 거시단위의 사건들, 또는 연구자들이 속한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8) 시대효과란 범죄와의 전쟁, 형사정책변화, 낙태합헌 등의 시대적 사건이 특정 사회인구학적 집단 혹은 전 사회인구사회학적 집단에 걸쳐, 특정시기를 기점으로 종속변수(예: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들을 의미한다.

9) 연령, 시기, 코호트변수가 서로 선형적으로 종속(linearly dependent)되기 때문에 각 효과를 구분하기 힘든 문제를 APC 난제(APC Conundrum)이라고 한다(Glenn, 2005).

특성들은 생애과정연구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Abbott(1997)이 지적한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사회학과 범죄학 연구들이 소위 변수 패러다임(variable paradigm)에 사로잡혀, 시공간적 맥락을 연구에서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학적인 생애과정연구는 인간의 생애과정이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개인의 생애과정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는 변하지 않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Linked Lives)

인간의 삶은 전형적으로 일생동안 주변의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에 내재(embedded)되어 있다(Elder, 1994). 따라서,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 인물들(significant other), 예를 들면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과의 상호의존적인 삶(interdependent lives)을 연구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와 그 관계가 개인의 생애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생애과정연구에서 중요한 측면이다(Elder, 1994).

사회학과 범죄학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삶들 중 부모의 생애와 자식의 생애 사이의 관계, 즉 세대 간 생애 연구(intergenerational life course study)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어왔다.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유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애과정연구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부모의 특성(예: 신체 유전, 가치관, 양육 방식, 사회 경제적 지위)과 부모가 겪은 사건(예: 이혼, 실직, 사망)이 자녀의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다. 또한 부모-자식간의 상호관계를 단순히 유년기에만 한정하지 않고,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한다. 한 예로, Glass와 그 동료들(1986)은 부모의 종교, 정치적 이데올로기 등 가치관이 자식의 가치관에 생애과정 전반을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시에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자식이 성인기에 진입함에 따라 줄어드는 반면,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영향력은 성인기 이후에도 계속 강한 것을 보여줬다. Beller(2009)의 연구결과 또한 흥미로운데, Beller(2009)는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자원이 자식의 교육, 취업, 그리고 결혼에 축적된 영향(cumulative impact)을 미치며, 부모의 문화적 또는 교육적 요소 역시 자녀의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¹⁰⁾ 한편, Beller(2009)는 같은 연구에서 앞선 생애과정의 요소, 즉 거시단위의 사회적 변화와도 연결지어 부모-자식간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전이를 연구했다. 여기서 그는 연구대상 중 코호트별로 전이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¹¹⁾

부모의 가치관 및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도, 부모의 불화 및 이혼이 자녀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역시 많이 연구되었다. D'Onofrio 등(2007)의 연구는 이를 다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D'Onofrio와 그 동료들(2007)은 쌍둥이연구 디자인을 통하여, 부모의 가정적 불완전성이 자녀의 가정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유전적 요소도 일부 그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부모-자녀간의 영향력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와 부모의 생애과정은 다차원적으로 개인의 발달과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범죄와 관련된 생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부모의 범죄성(criminality)은 자녀의 비행(juvenile delinquency)의 주요한 위험 요소(risk factor)라는 사실과 이는 자녀의 성인기 이후의 범죄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역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예: Gleuck & Glueck, 1950; Farrington, 2003b).¹²⁾ 그러나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해 자녀에게 범죄성이 전파되고, 범죄성이 자녀의 생애과정 전반과 더 나아가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전이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적 견해와 발견은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Thornberry와 그 동료들(2003)은 부모의 반사회적 행위가 자녀의 반사회적 행위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의 중심에는 비행청소년 또는 범죄행위자였던 부모의 사회구조적 상황과 효과적이지 못한 훈육방식이 있다고 보았다. 이 논문의 저자 중 Thronberry, Lizotte, Krohn은 로체스터 청소년 발달연구(RYDS)의 책임연구자들이

10) 한편, Beller(2009)는 기존의 생애과정 사회이동연구들이 부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미치는 영향에만 몰두한 나머지, 모의 사회경제적 위치가 자식의 생애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11) 예를 들어, Beller(2009)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출생코호트(1965-1979년생)가 앞선 출생코호트들보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더 비슷한 점을 밝혀냈다.

12) 예를 들어, 범죄청소년이 비범죄 청소년보다 부모가 전과자인 경우가 더 많았다.

다. RYDS는 1987-88년 뉴욕주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7-8학년 비행청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하고, 세대 간 범죄전이 연구를 위해 비행청소년들이 성장 후 출생한 자녀들의 삶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이다. 이들은 본인들의 RYDS 자료를 활용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던 1세대의 사회자본과 자식들에게 하는 적절하지 못한 훈육방식(poor parenting)이 2세대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청소년기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또다시 2세대가 3세대에게 하는 효과적이지 못한 훈육방식으로 이어져, 3세대가 청소년기 비행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Thornberry et al, 2003).

이와는 다소 다르게, Giordano(2010)의 연구는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과정에서의 사회학습 메커니즘(social learning mechanism)에 중점을 두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주요 학습 자원이라는 Sutherland(1947)의 차별적 접촉이론과 비슷한 논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자녀의 양육방식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부모의 반사회적 행위 자체를 자녀가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학습하는지를 연구했다. 즉, 어떠한 부모든 자녀에게 범죄행위를 강요하거나,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독려하지 않는다는 차별적 접촉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동의하지만, 일상에서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과 불법적인 행위를 자녀가 인지하고 학습한다는 것이다(Giordano, 2010). Giordano(2010)는 1982년 주립시설에 있던 비행청소년들을 성장과정을 추적하고, 연구대상자들이 성인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연구대상자들의 자녀에 대한 인터뷰까지 함께 진행한 Ohio Life-Course Study(OL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다수의 자녀들은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 범죄, 약물사용 등 부모의 문제행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녀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부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 및 범죄행위를 부모가 직접 독려하거나 가르치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일부의 경우 반사회적 부모를 안 좋은 삶의 모델로 설정하며, 부모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었다. 이들 중 미래지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의 경우 부모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다(Giordano, 2010).

주변인물들과의 관계가 생애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고 다원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매커니즘으로 포괄하여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주변인물들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이 범죄학적인 생애과정연구와 고령범죄자 범죄

경력연구에 주는 함의는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고령범죄자의 생애과정을 연구할 때에는 그들이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와 맺어오고 있는 관계와 현재 자식과 맺고 있는 관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학에서는 부모의 영향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영향(peer influence) 역시 주요 관심사이다. 그런데 생애과정연구는 단순히 동료들이 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넘어서 동료집단의 생애과정이 개인의 생애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한다. 한 예로, 결혼은 결혼당사자에게 범죄를 중단하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범죄를 같이 저지르던 집단 중 한명의 결혼은 다른 그룹 멤버들에게도 범죄를 중단하게 해주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다(Laub & Sampson, 2003; Warr, 1988). 둘째,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는 첫 번째 요소인 역사적인 시공간의 맥락에서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교도소 수감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던 시대(Mass Incarceration Era)를 겪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출소 후의 삶과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출소자들의 재범에 미치는 영향(예: Western, 2018), 부모의 수감생활이 자녀의 성장과정과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예: Murray et al, 2012; Turanovic, Rodriguez, & Pratt, 2012; Wildeman & Turney, 2014) 등이 2010년대 이후 주요 연구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 인간 주체(Human Agency)

인간 주체(Human Agency)라는 개념은 계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은 본인과 사회를 위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주적 행위자(free agent)라는 인간관에서 출발한다. 인간주체라는 개념은 다소 모호하고 여러 정의가 존재할 수 있지만, Embirbayer & Mische(1998: 963)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주체는 과거로부터 현재를 이해하고(습관적인 측면으로서), 동시에 미래지향적이면서(다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현재를 향하는(과거의 습관과 미래 지향을 현재 순간에 문맥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회참여에 내재된 일시적 과정(temporally embedded process of social engagement)”으로 볼 수 있다. 즉, 인간주체란 단순히 행위의 동기나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학적 특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의 결과를 생각하는 동시에 현재에 주어진 사회 환경

속에서 이 두 가지를 문맥화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능력을 의미한다(Hilton & Johnson, 2015).

인간의 생애과정은 사회구조적인 환경과 주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받지만, 사람들은 주어진 기회와 제약들 속에서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삶을 계획해나간다. 개인은 앞서 언급한 시대적 상황을 선택할 수도, 부모와의 관계를 선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본인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다(Hilton & Johnson, 2015). 그렇다면, 과연 개인은 본인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까? Mirosky & Ross(2007)는 인간의 삶에 대한 통제감(sense of control over one's own life)은 존재하며, 통제감은 성인기 초창기에 증가하다가 포물선(parabolic trajectory)dmf 그리며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높은 통제감은 교육적 성취(educational attainment)를 증가시키며, 높은 교육수준은 다시 높은 통제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관관계는 출생코호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교육수준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지위가 역사적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Hilton & Johnson(2015)은 청소년기에 미래지향적인 사고(future oriented)를 하고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일수록 성인기에 사회 경제적 지표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사회 환경 내에서만 맞춰 생각하지 않으며, 주체적으로 삶의 조건들과 상황들을 살핌으로서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통해 생애과정 결정을 자극시키고, 주어진 상황을 발전시켜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과 여러 행동경제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범죄행위에서의 인간주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예: Becker, G. S., 1995; Grasmick & Bursik, 1990; Pogarsky, Roche, & Pickett, 2018). 비록, Laub & Sampson(2003)이 지적한 것처럼 개인의 생애과정 속에서 범죄의 시작, 지속 및 종단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간주체의 역할이 간과되어 왔지만, 인간주체는 생애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Sampson & Laub, 2005). 한 예로, Paternoster(2017)는 인간주체를 생애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의도한 목적을 향해 자신의 행위를 이끌어 나가는 범죄의 억제요인 또는 지속요인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취업이라는 사건이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그만두고자하는 목적을 개인이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임금을 받을지라도 마약판매 등 다른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 직장생활의 시작과 범죄의 단절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생애과정에서 범죄의 중단 또는 지속을 연구할 때 인간주체가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합리적인 선택은 범죄자가 범죄경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Guerette와 그 동료들(2005)은 합리적 선택이론(Clarke & Cornish, 1985; Cornish & Clarke, 1986)이 전문화와 일반화를 모두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라고 주장한다.¹³⁾ Maruna(2001) 역시 생애과정 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들 자체만으로 개인의 범죄가 중단되지 않으며, 범죄의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건 인간주체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범죄자의 생애과정과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개인이 본인의 선택으로 범죄를 하였다고 실제로 생각하는지,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선택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어진 환경을 능동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나갔는지 등 범죄행위의 시작과 지속 그리고 중단에 있어서의 인간주체의 역할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 삶의 시점(The Timing of Lives)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언제(when) 어떠한 사건(event)이 어떠한 순서(order)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생애과정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과정연구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 전이(transition)와 궤적(trajecory)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Elder, 1994).

전이(transition)는 생애과정 내 사건들(예: 입학, 취업, 결혼, 은퇴 등)의 연속선상에

13) Clarke & Cornish(1985)는 범죄경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의 시작, 지속, 그리고 중단 과정을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범죄경력 지속모델은 범죄경력의 전문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침입절도범의 경우, 자신의 기술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심리적 과정에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과 목표물의 선택 등 침입절도 기술의 전문화로 검거위험을 경감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증대 수단으로 전문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놓여있지만 구분되는 지위(status)의 변화를 의미한다(George, 1993). George(1993)는 생애과정에서의 전이에 관한 연구들의 선구적인 이론들 중 하나로 역할이론(role theory)을 언급하였다. 역할이론에서는 지위(status)를 사회구조 내 위치로 정의하며, 역할(role)을 지위에 따른 기대되는 행동들이라고 본다. 여기서 한 역할의 시작(entry)과 끝(exit)이 생애과정연구들에서 말하는 전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이들은 사회규범적인 지배를 받고, 발생하는 시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George, 1993). 따라서 각 전이에 대한 규범적인 시기(normative timing)와 개인의 전이 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on time or off time)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두 시기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생애과정 내 좋지 않은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Elder, 2009). Elder(1998)는 사회적 결혼 적령기보다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다양한 불이익이 생애를 걸쳐 작용할 수 있다고 그 예시를 들었다.

Sampson & Laub(1993)은 인생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 중 특히 결혼, 취직 또는 군입대에 방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생성되는 애착과 유대가 범죄를 중단시키게 만드는 직접적 기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비행청소년들이 인생과정 중에 겪게 되는 중요 사건인 결혼, 취업, 군입대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과정을 통해서 탈비행에 이르게 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인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행청소년의 환경, 즉 비행 유발 요소가 산재한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살던 도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단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Osborn(1980)은 영국 런던에 살던 비행청소년들 중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청소년들의 비행률이 통제집단에 비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사회 규범적인 시간(적령기)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문화와 사회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한 예로 학업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는 시기는 과거에 비해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늦춰지고 있다(Berlin, Furstenberg, and Waters, 2010). 즉, 과거에는 한 개인이 결혼을 30대 초반에 하면 사회적 적령기보다 늦은 시기 전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30대 초반에 결혼할 경우 사회적 적령기에 맞추어 결혼이라는 전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계속 증가하는

평균수명을 고려하면, 기존에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었던 전이들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전이들(예: 은퇴와 은퇴이후에 발생하는 전이들)이 노년기 이후에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한다(George, 1993).

궤적(trajecory)은 앞서 언급한 여러 전이들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연속성을 보여주는 삶의 패턴을 의미한다(Sampson & Laub, 1995a). 동일한 전이현상을 겪어도 그것이 인생에 미치는 역할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전이현상들의 적절한 순서, 사회적 규범적 시기와 일치여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인간생애 궤적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생애과정연구에서는 오랫동안 과거의 전이가 장기간에 걸쳐 미래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Elder & Giele, 2009). 다시 말해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이 성인기의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강한 가정이 존재했다(Mayer, 2009). 그러나 Sampson & Laub(1995a)과 Laub & Sampson(200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disadvantage) 조건과 유리한(advantage) 조건은 단순히 축적(cumulative)되지 않는다. 또, 유년기의 개인적 성향 역시 성인기까지 지속(continuity)되지만은 않으며, 성인기에서 다양한 사회 환경 요소들로 인하여 궤적이 변할 수 있다(redirect)는 관점이 최근에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기 이후에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궤적을 변환시키는 전환점(turning point)이 생애과정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Laub & Sampson, 2003).

범죄학적인 생애과정연구와 고령범죄자 연구에 있어서도 과거에 언제(when) 어떠한 사건(event)이 어떠한 순서(order)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980년대 등장한 범죄경력 패러다임은 범죄의 시작시기와 중단시기, 그리고 지속기간이 범죄자들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범죄자의 경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Blumstein, et al., 1986). 범죄경력 패러다임의 등장은 범죄의 시작, 지속, 일시중단, 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그리고 생애과정 사건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또, 범죄경력 패러다임은 범죄자의 발달과정과 생애과정에 관한 여러 이론도 이끌었다.¹⁴⁾ 고령범죄자 연구에 있어서도, 고령범죄자의 첫 범죄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생애과정 사건들과 연관되어 시작되었는지, 고령 범죄자가 첫범죄를 시작한 이후로 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범죄를 지속적으로

14) 해당 내용은 제2장 제3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행한 이유가 무엇이고 어떠한 생애과정사건들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첫 전과기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추후 실업, 저임금, 가정불화, 재범 등으로 생애과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다(Western, 2018). 따라서 처음 교도소에 수감이 되거나 전과기록을 갖게 된 것이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전과기록은 삶에 있어서 지속적인 불리한 조건(cumulative disadvantage)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범을 할 확률이 높다(Sampson & Laub, 1995a).

제2절 |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생애과정 연구 자료와 분석방법에 관한 주요 이슈

생애과정 연구를 수행할 때 수집하는 자료의 성질과 분석방법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생애과정 연구는 다양한 분석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분석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질적자료와 질적분석방법(예: 인터뷰 자료와 네러티브 분석), 양적자료와 양적분석방법(예: 패널설문자료와 성장곡선모형 분석(growth curve analysis)), 또는 질적·양적 혼합자료(예: 인터뷰자료+패널설문자료+공식통계자료)를 활용한 질적·양적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의 활용도 가능하다.¹⁵⁾ 질적연구방법과 양적연구방법의 차이를 명확한 선을 그어 구분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질적연구방법은 기술(description)에 초점을, 양적연구방법은 설명(explanation)에 그 초점을 둔다. 또, 질적연구방법은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정보의 제한 없이 수집하는 인물 기반(person-based)의 연구방식을 택하는 반면, 양적연구방법은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15) Small(2011)이 지적한 것처럼, 사실 연구방법론을 질적·양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지면의 한계상, 질적·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학자들의 간의 정의의 차이와 혼합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생애과정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각 연구방법에 대한 예시로서 질적·양적, 혼합 연구방법론 논의를 대체하도록 하겠다.

이론이 기반이 된 변수들의 틀 안에서 관찰하는 변수 기반(variable-based) 연구방식을 택한다(Becker, 1996). 따라서 일부학자들은 복잡한 생애사의 사건들과 각 사건들의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때 질적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건과 사건의 인과관계분석 또는 개인의 다양한 생애계적 분석을 위해선 양적연구방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학자들도 존재한다(Billari, 2005).

통상적으로 범죄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공식적인 범죄통계자료보다는 자기보고식 설문, 다음으로 피해자 조사에 의한 방법이 선호된다(Akers & Sellers, 2009).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범죄 자료는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거의 없고 피해자 조사 자료에는 범죄자의 연령별 정보가 없어 성인범죄 연구들은 공식적인 범죄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을 사용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Laub & Sampson(2004)이 지적한 것처럼 다수의 학자들이 질적 또는 양적 자료 및 분석이라는 양자택일의 연구방식은 인위적이며, 무의미한 구분법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최근 강조되어오고 있는 혼합연구방법의 활용은 생애사 연구에서도 주요 연구방법 트렌드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다. 범죄학의 생애과정연구에서는 주로 상호 검증적 차원(confirmation)보다는 상호 보완적 성격(complementarity)으로 질적자료와 양적자료가 혼합되어 사용되어 왔다. 즉, 설문연구의 결과가 인터뷰결과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설문지 응답을 통해 수집할 수 없는 내용들을 인터뷰를 통해 맥락화하고 보완하는 식의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예: Laub & Sampson, 2003; Maruna, 2001). 인간의 복잡한 발달과정과 범죄행위의 중단, 지속, 발생의 메커니즘의 복잡성과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혼합연구방법론의 장점을 고려하였을 때, 혼합연구방법론의 적절한 사용은 점점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애과정 연구는 회고적 횡단연구설계(cross-sectional retrospective design)를 활용하거나, 미래지향적 종단(패널)연구설계(prospective panel design)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회고적 횡단연구설계는 한 시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경험에 관한 내용들을 수집하여 생애사를 연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미래지향적 패널설계는 선별된 표본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중복적으로 관찰하여 생애사를 연구하는 설계를

의미한다(Deschenes, 1990). 제2장 제1절 생애과정연구의 태동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애과정 연구방법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세계 2차 대전 전후로 구축된 패널연구들이며, 생애과정 연구에서는 횡단연구설계를 활용하는 것 보다 패널설계를 활용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선호되어왔다. 하지만 패널설계는 비용적·시간적 문제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때로는 일부 연구주제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생애과정 연구에 있어서의 각 연구설계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고적 횡단연구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긴 시간의 생애를 비교적 효율적인 시간과 금전적 비용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Scott & Alwin, 1998). 하지만, 이 연구설계는 회고적 자료(retrospective data)에 대부분 의존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회고적 자료는 연구대상자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기억을 통해 제공한 자료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점에 연구대상자가 과거를 해석한 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Scott & Alwin, 1998). 즉,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까지 이어져온 경험과 상황을 토대로 개인이 재구성(reconstruct)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회고적 자료를 활용할 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응답자의 기억의 부정확성과 왜곡의 문제로 이어진다(Deschenes, 1990). 특히 응답의 신뢰성(reliability)과 관련된 문제는 과거 중요사건(event history), 예를 들어 입학, 취업, 결혼 등을 기억하는 것보다 과거의 경험에 대한 해석, 예를 들어 유년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유년기 시절 세웠던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회고할 때 더욱 크게 발생한다(Scott & Alwin, 1998).

물론 대부분의 패널연구설계 역시 회고적 자료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짧기 때문에(예: 지난 6개월 또는 지난 1년 동안의 비행경험횟수에 관한 회고) 앞선 회고적 연구설계를 활용할 때 발생하는 신뢰성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해준다. 또한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 유추에 있어서, 사건의 선·후 관계를 횡단적 연구 설계보다 명확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가설검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널 자료를 통한 인과관계분석 역시 여러 내적타당도(internal validity)와 관련된 한계가 존재한다.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소들(threats to internal validity) 중 특히 성숙(maturation)과 우발적 사건(history)에 패널 연구 설계는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시점 T1의 변수와 T2의 변수 사이 관계가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과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을 때때로 어렵게 만든다. 내적타당도 문제는 다양한 연구 설계를 통해 보완할 수 있으나, 연구 설계가 복잡해질수록 패널 설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비용의 문제가 더욱 크게 증가한다.

범죄학에서 이정표를 세운 Sampson & Laub(1995), Laub & Sampson(2003)의 연구들은 Glueck & Glueck(1950)의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성장과정에 관한 비교 패널연구에 활용된 질적·양적자료들을 활용 및 재조합하여, 이론검증에 활용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더욱 주목을 받은 것은 연구대상자들이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 추가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점이다. 이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패널 설계를 따르고 있지만, Glueck & Glueck(1950)이 구축한 자료와 Sampson & Laub(2003)이 추가로 자료를 수집한 시기 사이의 기간은 35년으로 다소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고적 자료에 대한 의존이 높았으며, 이를 다양한 생애기록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완하였다. 물론, 최근 스토리텔링기법의 활용과 같은 새로운 질적연구방법이 계속해서 등장하여 더욱 생생한 논의를 유도하기도 한다.¹⁶⁾

하지만 여기에서는 Sampson & Laub(1995a), Laub & Sampson(2003)의 연구와 이 연구들의 자료출처이자, 범죄학의 생애과정에 관한 논쟁들에 참여하였던 연구들의 실증적 자료로 많이 활용된 Glueck & Glueck(1950)의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주요 예시로 들고자 한다.

16) 이상인(2018)은 스토리텔링 기법의 일종인 스토리 맵을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며 비행으로 인한 처벌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수년에 걸친 인생사건 중에서 비행과 탈비행의 촉발요인이 된 생애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스토리 맵은 스토리텔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서 스토리텔링은 생각이나 콘셉트의 인과적 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내러티브와 생애과정에서의 주요 사건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ole & Wilson, 1999; 고경민, 2013; 한혜원, 2007). 따라서 복잡한 일련의 사건이나 사실의 변화 과정에 대해 스토리 맵을 활용한다면 독자의 빠른 이해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Jeff Patton, 2014; McLinden, D., 2013, Mary Kane & William M. K., 2007). 스토리 맵의 이러한 기능은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범죄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과정을 발전이론적 관점에서 어떤 요인들이 변곡점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유용하다. 즉, 발전이론 연구의 결과를 스토리 맵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범죄의 지속과 중단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촉발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생애과정 연구자료 수집방법¹⁷⁾

가. 설문 및 인터뷰 자료

생애과정연구는 기본적으로 연구주체에 알맞게 선택된 표본(또는 모집단)에게 설문 또는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생애사(life history)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다. 개인의 생애과정을 추적하는 모든 설문 및 인터뷰자료를 소개하는 것은 지면의 한계 상 불가능하지만, 사회학적 생애과정연구에 큰 기여를 한 위스콘신 종단연구(WLS)와 범죄학에서의 생애과정연구에 양·질의 자료를 제공한 로체스터 청소년 발달연구(RYDS)를 간략히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위스콘신 종단연구는 1957년에 위스콘신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10,317명의 학생들을 2011년까지 총 55년간 추적 조사한 종단연구 설문 자료이다.¹⁸⁾ 연구대상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는 1957년, 1964년, 1975년, 1992년, 2004년, 그리고 2011년 총 6회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녀들에게는 1977년, 1994년, 2005년 그리고 2011년에 설문을, 연구대상자들의 배우자들에겐 2004년에, 그리고 연구대상자 자녀들의 배우자들에겐 2006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위스콘신 종단연구는 사회 배경이 학교성적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의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지표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가정한 위스콘신 모델(Wisconsin Model)이라 불리는 모델을 기반으로 초기에 설문지가 설계가 되었다(Hauser, 2009). 웨이브(wave)들을 거치면서 연구대상의 주변인물들까지 확대되었다. 조사대상이 50대로 접어든 1990년 이후부터는 연구의 초점이 은퇴이후의 삶과, 노년기 웰빙 등으로 맞추어졌다. 또한 55년간을 이어온 자료 덕분에 청소년기 유년기 요인들 중 은퇴이후의 삶까지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들 역시 가능했다(Hauser, 2009). 위스콘신 종단연구의 또 다른 장점은 2007년 설문조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DNA를 포함한 다양한 생물지표(biomarker)들을 수집한 것인데, 2004년에 설문을 참가하였던 대상자들 중

17) 생애과정 연구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포괄적인 설명은 Elder & Giele(2009)의 2장-5장을 참고하길 바란다.

18) 해당 내용은 <https://www.ssc.wisc.edu/wlsresearch/> 에서 발췌하였으며, 긴 연구기간동안 설문 조사방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응답률을 유지하였는지, 연구예산과 실제 비용은 어떻게 수립되고 변화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 역시 위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가 자료수집에 동의하였고, 이는 생물사회학적(bio-social) 연구까지 자료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로체스터 청소년 발달연구(RYDS)는 비행과 마약 사용의 원인과 그 결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1986년 뉴욕주 로체스터에 소재하는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7-8학년 청소년들을 표본으로 설정했다. 특히, RYDS는 비행청소년들을 오버샘플링하여 패널을 구성하여 현재까지 종단추적을 진행 하고 있는 장기 연구프로젝트로 2019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¹⁹⁾ 이 프로젝트는 위스콘신 종단연구처럼 긴 연구기간 동안 연구대상자와 주변 인물들을 함께 추적조사를 하여왔고, 설문뿐만 아니라 심층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발달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을 모두 담고자 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는 세대 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기 표본의 2세 이상 자녀 일부를 세대 간 연구의 표본으로 설정하였다. 설문과 인터뷰 외에도 비디오촬영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세대 간 비행 전이를 관찰하였다. 로체스터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생애발달과정과 세대 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외에도 기존 범죄학에서 지목하였던 다양한 범죄행위와 관련된 요소들(가족, 학교, 동료, 범죄집단, 구조적 요인 등)과 실제 범죄행위와의 관계를 검증하게 하였다는 학문적 가치 역시 지니고 있다(Browning, Thornberry, & Porter, 1999).

위스콘신 종단연구나 로체스터 청소년 발달연구처럼 장기간에 걸쳐 세대 간 연구까지 진행하는 패널자료들은 학문적·정책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수행되기가 힘들다. 따라서 대부분의 패널 설문, 인터뷰 자료들은 청소년기 또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전이과정에 집중하여 10년 이내로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나 점차 성인기와 노년기의 삶에 대한 학문적 질문과 정책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연구 및 정책적 질문과 연결시켜 기존에 수집되었던 자료를 재구축 및 확장하는 연구프로젝트가 많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Glueck & Glueck(1950)의 자료를 재구성한 Laub & Sampson(2003)의 연구는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생애과정 전반에 관한 연구로 자료를 확장한 좋은 예시이다.

Robert Sampson & John Laub은 Glueck & Glueck의 『Unraveling Juvenile

19) 해당 내용은 <https://www.albany.edu/hindelang/ryds.php> 에서 발췌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Delinquency』(1950) 연구에 활용되었던 자료를 하버드 로스쿨 도서관에서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였다.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Glueck & Glueck(1950)이 수집한 자료가 1990년대 당시 범죄학에서의 여러 논쟁들(예: 종단연구의 필요성, 범죄 경력 연구의 필요성)과 다양한 범죄학 이론들이 주장한 인과관계들을 검증하고 연구하기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ampson & Laub, 1995a). Glueck & Glueck(1950)은 사회인구학적 요소를 매칭(matching)하여 매새추세스 교정시설에서 500명의 비행청소년을, 보스톤 공립학교들에서 500명의 일반청소년을 샘플링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자가 14세일 때 초기 자료를 수집한 후, 25세 그리고 32세 때 2번의 후속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연구기간 동안 92%라는 높은 수준의 표본 보유율을 유지하였다. Glueck & Glueck(1950)의 자료는 질적·양적자료가 모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도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단순히 연구대상자들을 설문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 학교 선생님, 이웃주민들, 고용주들, 경찰관 등 연구대상자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다양한 측면을 확인하였다.

Sampson & Laub(1993)은 먼저 Glueck & Glueck(1950)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재조합하고 재분석하여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개인의 일생에 거쳐 범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생애과정이론을 수립하였다. 이후 이들은 마지막 추적조사가 이루어진지 35년이 지난 1980년대 초반부터 Glueck & Glueck(1950)의 연구대상자들을 다시 추적조사를 하여 비행청소년 표본에 있었던 연구대상자들에게 70세까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찰하였다. 500명의 비행청소년 표본 중 최종적으로 52명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생애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생애과정연구의 범위를 노년기까지 확장하여, 본인들의 생애과정이론을 수정·보완하였다(Laub & Sampson, 2003).

이처럼 Sampson & Laub의 연구(1993, 2003)는 계량학적 조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들은 추가탐색적 질문(probing)을 활용한 심층 면접조사 기법을 통하여 통상의 질문지 조사로 얻기 어려운 세밀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Sampson & Laub(2003)의 이론은 거의 60년에 걸쳐 비행청소년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물로서 범죄중단 현상의 인과과정을 가장 명확

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권해수·윤일홍, 2015: 199). 또한 이들이 사용한 생애사 내러티브(life history narrative) 분석²⁰⁾은 연구대상이 사건발생의 유무가 아닌 탈비행과 같은 '과정'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국내에서도 종단연구를 시도한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 박철현(2007)은 국내의 10개의 성인 및 청소년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979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와 범죄경력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기존의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정점 연령이 매우 이른 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군입대기간 동안에 범죄경력이 중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양계민·김의철(2003)은 한국비행 청소년들의 유형을 생애지속형과 청소년기 한정형으로 판별하는 변인들을 추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은 청소년집단(일반 청소년 283명, 소년원 174명)과 성인집단(일반성인 134명, 교도소 성인 139명)으로서 판별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집단을 범죄집단과 일반집단으로 판별하는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와 같은 비공식 자료를 이용하여 재비행 여부를 조사한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이러한 자료의 획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된다.

나. 생애기록자료(Life Records)

설문과 인터뷰는 전적으로 설문대상자들의 응답에 의존을 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생애과정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설문지와 인터뷰 기록지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중요한 영향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생애기록자료들은 이러한 점에서 주로 설문 또는 인터뷰자료의 보충적인 성격으로 많이 활용된다. 생애기록자료는 단순히 정부기관의 자료(예: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의 신고 자료, 전입 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면허기록 등)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기관의 자료(예: 고용기록, 의료기록, 신용점수 등) 등도 포함된다(Hogan & Spearin, 2009). Glueck

20) 대상자들의 일생에 거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하나의 줄거리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 Glueck(1950)의 경우 연구대상자들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와 더불어 경찰, 보호관찰국, 가석방 관리 위원회, FBI,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자료출처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였다.

생애기록자료들을 보충적으로 활용하면, 회고적 자료를 활용하는 설문·인터뷰 연구의 가장 큰 단점인 응답자들의 기억의 부정확성과 왜곡을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Laub & Sampson(2003)은 Glueck & Glueck(1950)의 연구대상자들을 추적할 때,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연구대상자들의 공식 수사기록, 법정자료, 사망기록 등 표본대상자들의 범죄, 건강 등에 관한 생애기록자료들을 수집하여 두 연구 사이의 긴 시간차이를 극복하였다. 재범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경찰의 체포나 법원의 유죄판결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되었다(Clarke & Cornish, 1985; Glaser, 1964; Laub & Sampson, 2003). 연구결과, 많은 범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다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후 다시 범행을 중단하다가 다시 저지르는 일종의 표류(drift) 또는 지그재그(zigzag)식 행동패턴을 보였다.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범죄자들을 장기간 동안 관찰한 종단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부분 연구들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거나 인생경로에 있어 한 시점만을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권해수·이연상, 2013; 박한샘·오익수, 1998; 이희연, 2005).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순래(1995)는 1983년부터 1985년 사이에 소년원에서 출원한 범죄소년 800명을 대상으로 1994년 6월까지 10년간의 범죄기록을 조사하여 재범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산범죄자가 다시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52.5%, 폭력범죄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49.8%였다. 사기/횡령은 27.9%, 강도는 16.3%, 특별법 위반은 14.5%, 성범죄는 7.0%로 나타났다. 유사한 방식으로 박철현(2003)은 1987년 13개 교도소에서 출소한 988명의 범죄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자료를 통해서 이들의 범죄경력이 전문화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이들이 출생한 이후 1987년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의 모든 범죄경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영선(2012)은 1998년도에 전국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출원한 3,102명을 범죄중단자와 범죄지속자로 구분하여 범죄중단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98년도에 작성된 환경조사 자료, 구치소 입출소 기록을 활용하였다. 범죄경력 조사

는 3,102명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범죄경력 조사기간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전선영과 문성호(2015)는 총 6년동안 비행청소년들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심각한 비행을 저질러 형사사법 기관이 개입한 비행청소년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 외의 다른 국내 연구들 또한 탈비행 연구 대상을 청소년기 한정형 비행자로만 국한시킨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경숙·남현우, 2012; 2014; 이은주, 2012; 정익중, 2009).

한편, 생애기록자료의 활용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존재한다. 첫째,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주요 기관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 쉽지 않고,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 받았을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 둘째, 생애기록자료가 범죄에 관한 공식 자료의 경우,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범죄를 측정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들이 동일하게 나타남을 유의해야한다. 즉, 범죄의 신고의 여부는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체포의 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에 많이 의존되고, 수사기관에 인지가 되지 않은 암수범죄들이나 검사의 잘못된 기소에 의한 범죄기록들이 존재하는 등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 활용해야할 것이다. 한 예로, 동일한 소년사범들을 공식자료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LeBlanc & Frechette(1989)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먼저 공식 자료에 의하면 62%의 소년들이 탈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보고식 자료에 따를 경우에는 오로지 11%만 탈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동일한 비행을 저질렀을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소년범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Yun & Lee,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재비행 여부 판단 기준으로서 형사사법 기관의 공식 자료는 자기보고식의 비공식자료에 비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권해수·윤일홍, 2015: 191).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의 공식자료와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탈비행을 측정하는 것은 잘못된 부정오류(false negative)의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참여관찰 자료

설문과 인터뷰의 또 다른 단점은 응답자들이 민감한 내용 또는 경험(예: 범죄행위 또는 범죄 피해)을 공유하기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민족지향적 연구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자들이 직접 연구대상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직접관찰을 하면서 이러한 민감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것에 있다. Glueck & Glueck(1950)의 연구도 설문과 인터뷰와 더불어 가정을 직접관찰(home investigation)하는 현장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Glueck & Gleuck(1950)은 연구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과 가족의 삶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설문지나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없던, 혹은 보고된 내용과는 달랐던 가정환경과 가족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Burton et al(2009)는 저소득 층 여성들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연구하기 위해 6년 동안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진행한 “Welfare, Children, and Families : Three Children”을 민족지향적 생애과정연구의 예시로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크게 3가지 패턴으로 본인들의 민감한 학대경험을 연구자와 공유를 하였다. 여기에는 일상적인 주제를 대화하다가 학대경험이 이어서 나오는 경우(trigger topics disclosure), 관찰자가 학대경험현장 또는 증거를 목격하게 된 후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crisis disclosure), 관찰자가 직접적으로 학대경험을 질문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경우(ethnographer-prompted disclosure)가 있었다(Burton, Purvin, & Garrett-Peters, 2009). 즉, 참여관찰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발견이 쉽지 않았을 성적학대 사례들이 많이 존재하였다.

한편 참여관찰연구에서 연구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찰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의 신뢰이다. 관찰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연구대상자는 개인의 민감한 내용을 관찰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상호간의 신뢰는 특히 범죄행위 또는 범죄피해를 관찰하는 범죄학의 민족지향적 연구에서 중요하다. 신뢰를 쌓아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위의 학대경험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학대경험을 공유하기까지 소요된 시간, 즉 관찰자와 연구대상자가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데 소요된 시간은 7-9개월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빠른 경우는 연구 시작 3개월 안에, 늦은 경우는 연구시작 후 24개월까지 소요되었다(Burton, Purvin, & Garrett-Peters, 2009). 신뢰를 짧은 시간 안에 쌓는 방법은 존재하

지 않으며, 연구주제와 연구대상자들의 성격에 따라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과 신뢰를 쌓는데 걸리는 시간이 모두 상이할 것이다.

3. 생애과정 연구 자료 분석 방법²¹⁾

가. 양적분석 방법

패널자료들의 축적과 함께 이를 분석할 수 있는 고급통계기법들의 발전은 생애과정 연구를 단시간 안에 새로운 연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였다. 범죄학의 생애과정연구에서 사용되는 통계모델은 크게 생애과정 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변수중심의 모델링(variable-centered modeling)과 개인의 생애궤적을 연구하는 인물중심의 모델링(person-centered model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의 생애과정에서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예: 자아성취감과 비행횟수, 고용여부와 비행횟수 등)에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또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등이 주로 사용된다.²²⁾ OLS회귀분석으로는 모두 통제하기 불가능하지만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찰될 수 없는 다양한 개인수준의 변화(unobserved heterogeneity)들을 고정효과모형은 장애모수(nuisance parameter)로 임의효과모형은 확률변수(random variable)로 간주하면서, 각각의 모델들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범죄자들의 생애과정을 유형화하는 이론적 논의와 경력범죄자의 존재 유무와 경력범죄자들의 범죄와 관련된 생애궤적이 다른 범죄자들과 유의미하게 다른지 등 범죄학의 발달 및 생애과정 이론들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할 때에는 주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 Based Trajectory Model) 등이 사용된다.²³⁾ 잠재성장모형은 발달심리학에서

21) 앞으로 소개되는 연구방법들은 가장 대표적인 생애과정 연구방법들이며, 이 연구방법들 외에도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의하길 바란다.

22)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모형의 통계학적인 이론의 배경 및 모델의 적용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은 Allison, P. D.(2009)을 참고하길 바란다.

흔히 말하는 여러 위험요소(risk factors), 보호요소(protective factors)로 인하여 개인의 내적(within) 범죄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와 개인들 간(between)의 범죄성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잠재성장모형은 개인들의 발달궤적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궤적이 있다 가정하고, 즉 평균을 활용하여 대표적인 궤적을 설정하고, 개인이 얼마나 평균적인 궤적에 벗어나(deviation) 있는가를 분석한다. 하지만, Moffitt(1993)의 이론과 같은 발달이론들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범죄와 관련된 인생궤적이 존재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발달범죄학이론들은 잠재성장모형으로 검증할 수 없지만, 집단중심추세모형으로는 검증이 가능하다(Nagin, 1999).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비슷한 발달궤적을 갖는 집단끼리 묶어 집단 간의 발달궤적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모델에서 나누어진 그룹은 강한 이론의 배경이 없는 한 통계학적인 상상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님을 유의해야한다(Laub, Nagin, & Sampson, 1998). 하지만, 집단중심추세모형은 보이지 않는 발달의 다양성(under-observed heterogeneity in the patterns)을 밝혀냄으로서, 복잡한 생애과정을 요약하는데 효과적이며, 발달범죄학 같은 발달 과정을 유형화하는 이론이 뒷받침될 경우, 유의미한 연구모형이 될 수 있다(Laub, Nagin, & Sampson, 1998).

나. 질적분석 방법

범죄학자들은 양적자료를 활용한 양적분석이 개인의 생애과정 내 범죄활동을 모두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질적자료와 함께 질적 분석방법으로 보완하고자하는 시도를 해왔다. 한 예로, Sampson & Laub(1995a)은 Glueck & Glueck(1950)의 설문자료를 통계분석하여 나온 결과를 Glueck & Glueck (1950)의 인터뷰자료에 대한 질적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본인들의 생애과정이론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Sampson & Laub(1995a)은 성인기에 결혼과 취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유대가 개인의 범죄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는

23) 잠재성장모형은 Bryk & Raudenbush(1987), Meredith & Tisak(1990), Raudenbush(2001)을, 집단중심추세모형은 Jones & Nagin(2007), Nagin(1999)에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길 바란다.

데, 이들의 가설은 통계분석을 통하여 지지되었다. Sampson & Laub(1995a)은 통계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인터뷰자료 분석을 통하여 결혼과 취업이라는 사건과 범죄중단의 상관관계의 본질에 어떠한 사회유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Sampson & Laub(1995a)은 통계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인터뷰 자료 분석에 사용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사례들은 크게 가설을 지지하였던 통계분석의 결과를 한번 더 검증하는 사례들(예: 결혼유대와 고용안정성이 낮은 사람들 중 범죄를 지속하는 사람들과 결혼유대와 고용안정성이 높은 사람들 중 범죄를 중단한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과 가설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negative case analysis)(예: 결혼유대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중단한 사람들과 결혼유대가 높고 고용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지속한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로 나누어, 연구대상자들이 제공한 개인의 생애사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들의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한편, Becker(1996)는 Sampson & Laub(1995a)의 연구처럼 인터뷰를 통해 제공되는 생애사(life history) 자료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나 자서전 및 소설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생애사연구는 생애과정에 있어서 극적인 순간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어서 소설과 비슷하지만, 소설과 달리 사실(fact)에 집중하며, 삶을 서술(narrative)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자서전과 비슷하지만, 본인스스로가 서술하는 자서전과 달리 연구자에 의해서 타인의 인생사가 해석된다는 점에서 자전저과는 다르다. 또, 사실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과학자료들과 비슷하지만, 전통적인 사회과학자료들과는 달리 이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생애사 연구는 변수 중심(variable orientation)의 연구가 아닌, 인물 중심(person orientation)의 연구로, 개인의 생애사가 분석단위(unit of analysis)가 된다(Sampson & Laub, 1995a)

한 예로, Shaw(1966)의 『The jack-roller: A delinquent boy's own story』는 시카고 학파의 일련의 도시 연구들 중 하나였다.²⁴⁾ 이 연구는 범죄경력이 많은 비행청소년 Stanley를 16세부터 6년 간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Stanley의 관점에서 성장과정부터 어떻게 범죄를 시작하였고, 왜 오랜기간 범죄경력이 지속되었는지, 또 어떠한 계기

24) 시카고학파는 도시생태학적 분석과 사회해체이론으로 크게 각인 되어있어, 도시수준에서 양적인 연구만을 해온 학파로 때론 다소 잘못 이해되어오고 있지만, 사실 시카고학파는 도시의 생태계와 도시에서의 개인의 삶을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방법들로 연구했다(Becker, 1996).

로 범죄행위를 중지하였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주인공 Stanley가 보여준 인생사는 청소년기 형사사법기관에서 생긴 낙인으로 생긴 불이익들이 축적되어 경력 범죄자가 된다는 범죄경력 관점, 사회적 비공식적 통제가 범죄시작 및 중단에 미치는 효과 등 일련의 범죄학 이론적 논의 등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론에서 증시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Stanley에게 질문을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Stanley의 관점에서 서술된 본인의 인생사를 통해 범죄행위의 시작, 지속, 중단의 과정을 보여주고, 기존의 이론들에서 제시되었던 범죄행위의 원인들을 재검토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Shaw, 1966).

생애사 네러티브 분석은 범죄자의 관점에서 일련의 생애사건들을 해석함으로써 범죄행위의 시작, 지속 그리고 중단에서의 인간주체의 역할, 주변 인물 및 사회환경의 역할, 그리고 시대적 환경의 영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또, 생애사 네러티브는 몇몇의 변수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모든 전이점들과 범죄시작 및 중단을 촉발한 사건들을 분석가능하게 한다. 복잡한 범죄발달행위를 인위적으로 유형화하기 보다는 범죄자의 관점에서 보다 적은 왜곡으로 범죄자의 발달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Laub & Sampson, 2004). 한 예로, 실직이라는 변수가 전과자의 재범이라는 변수와 연관이 있다는 가설이 통계분석을 통하여 지지되었다고 가정해보자. 통계분석에 더하여 인터뷰와 네러티브 분석을 실시한다면, 실직의 원인에 알코올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전과기록이 회사에 알려지게 됨으로서 발생한 실직이였는지 등의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직의 원인에 후자의 원인이 있었다면, 전과자의 재범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실직이 아닌, 전과기록으로부터 생긴 축적된 불리함이 될 것이다.

생애사 분석이 갖고 있는 연구적 가치는 특히 Laub & Sampson(2003)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제공한 생애사 네러티브들은 Sampson & Laub(1995a)에서 제시한 이론을 수정할 만큼, 범죄자의 생애와 관련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²⁵⁾ Laub & Sampson(2003)은 Glueck & Glueck(1950)의 500명 비행청소년 집단 표본들 중 사망한 225명과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공식 범죄기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 패턴과 범죄의 종류를 기준으로

25) 연구결과는 제2장 제3절을 참고하길 바란다.

표본을 선정하였다. 52명의 생애과정 인터뷰 표본은 지속적인 범죄경력을 갖고 있는 강력범죄자 14명, 청소년기 비강력범죄를 하였지만 성인기 범죄를 중단한 15명, 청소년기 강력범죄를 하였지만 성인기에 범죄를 중단한 4명, 범죄를 하지 않는 휴지기를 가졌지만 성인기 후반에 다시 범죄를 시작한 5명, 성인기 초반에 범죄를 시작한 후 중년기 이후 휴지기를 갖거나 불규칙한 범죄 패턴을 보인 14명으로 구성되었다(Laub & Sampson, 2003). 한편, Laub & Sampson(2003)은 고령의 인터뷰대상자들이 본인들의 생애과정 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억을 돕기 위하여 생애사 달력(life history calender)을 인터뷰 진행 시 보조도구로서 활용하였다. Laub & Sampson(2003)는 인터뷰를 통해 교육, 가족 관계, 직장경험, 공식 그리고 비공식 범죄 경험 등 일반적인 생애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은 본인의 삶이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발전해왔다고 생각하는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전환점은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등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본인의 삶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보다 깊은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범죄의 중단 및 지속에 있어서 인간주체와 일상 활동 패턴의 역할, 그리고 전환점들의 사회 역사적 맥락의 중요성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보여준 연구결과는 범죄학의 생애과정연구에 있어서 생애사인터뷰가 통계적 분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과 그 학문적 가치를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제3절 | 범죄자의 생애과정 연구

1. 범죄자의 범죄경력 패러다임

가. 연령-범죄 곡선 논쟁

연령과 범죄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는 1980년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범죄학에서 매우 첨예한 쟁점으로 자리잡아 왔다.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 다시 말해서 연령에 따른 범죄율은 연령-범죄곡선(age-crime curve)으로 불리며, 범죄학 내에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연령-범죄곡선(age-crime curve)이란, 10대 중반부터 10대 후반까지 연령별 범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10대 후반에 정점을 찍은 후, 이후 연령대에서 연령별 범죄율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시수준의 연령별 범죄 분포도이다(Hirschi & Gottfredson, 1983).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종 모양의 연령별 범죄 분포도는 시·공간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하지만, 1980년대 범죄학과 사회학계에서 이 연령-범죄 분포도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거시수준에서의 연령-범죄 관계(Greenberg, 1977; 1985; Hirschi & Gottfredson, 1983; Hirschi & Gottfredson, 1983; 1985)와 개인수준에서의 연령-범죄 관계(Blumstein, A., Cohen, J., & Farrington; 1988a; 1988b; Farrington, 1986; Gottfredson, Hirschi, 1986; 1988; Hirschi & Gottfredson, 1983)에 대한 학자들 간의 대논쟁(Great Debate)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1990년대 범죄학의 생애과정이론의 발전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이 논쟁은 범죄유형에 따라 연령에 따른 범죄율의 분포가 다르며,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요인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Greenberg(1977, 1985)의 초기 논문에 대해 Hirschi & Gottfredson(1983, 1985, 1986)이 비판함으로써 촉발되었다.

논쟁의 시발점은 Hirschi & Gottfredson(1983)의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두 저자는 연령범죄곡선은 개인의 범죄성향(propensity to commit crime)의 10대 때의 증가와 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연령범죄곡선이 보여주는 연령에 따른 개인의 범죄성향 변화는 시·공간, 성, 인종, 범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불변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연령은 범죄성향에 직접적인 영향(direct effect)을 미치며, 연령과 범죄성향의 관계는 당시 현존하는 사회학적·범죄학적인 변수들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범죄학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불변하는 사실(brutal fact)이며, 범죄행위의 원인은 개인의 연령을 막론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범죄학 이론들은 이 연령-범죄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²⁶⁾

26) 논쟁 이후, Gottfredson & Hirschi(1990)는 개인의 자기통제력(self-control)을 모든 범죄(또는 비행)행위의 원인으로 보는 범죄학 이론을 제시한다. 범죄행위와 연관이 되어있는 자기통제력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유년기에 형성되고, 상대적인 자기통제력 수준(사람들 간의 자기통제력의 차이)은 연령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과 기타 생애사건들과 상관없이 개인의 범죄행위 참여여부는 유년기에 결정되며, 따라서 종단연구도 범죄의 시작 및 중단등에 관한 연구도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학자의 다소 과감한 주장은 먼저 사회학적 변수와 이론들(긴장이론, 통제이론)로 연령과 범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Greenberg(1985)와 거시수준의 범죄 연령곡선과 개인수준의 범죄-연령관계를 분리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Farrington(1986)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Farrington(1986)은 연령범죄곡선이 단순히 모든 인구의 범죄 성향이 10대-20대에 증가하고 이후 감소하여 형성된다는 Hirschi & Gottfredson (1983)의 주장이 범죄연령분포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 지나지 않으며, 범죄연령분포도가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10대-20대 사이에 참여하여 형성된 분포인지,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범죄를 10대-20대 사이에 많이 하여 형성된 분포인지를 알기 위해선 참여율(prevalence rate)과 발생률(incidence rate)을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⁷⁾ Farrington(1986)은 연령범죄곡선은 연령에 따른 인구의 범죄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고 보았다. 또, 범죄발생률은 연령범죄곡선 모양처럼 연령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수준의 범죄-연령의 관계는 거시수준의 연령 범죄곡선으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따로 분리되어 종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Farrington(1986)의 주장의 배경에는 범죄자의 경력 패러다임(criminal career paradigm)이 있으며, Travis Hirschi와 Michael Gottfredson 두 학자는 범죄자의 경력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학자들이었다. 즉, 이와 같은 연령범죄곡선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범죄자의 경력 패러다임의 타당성과 학문적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는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범죄경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1980년대에 시작된 논쟁은 범죄 경력의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었고, 블룸스타인과 같은 이 분야의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대논쟁(Great Debate)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앞서 논의를 종합하면, 서구를 중심으로 연구되는 범죄학은 10대 후반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Akers & Sellers, 2009; Sampson & Laub, 1992). 하지만 국내 또는 동양에서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연구들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 연령과 범죄에 대해 처음 연구된 논문은 최인섭·박순진(1993)이다.

27) 여기서 참여율은 인구 대비 범죄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발생률은 범죄자가 일정기간동안 참여한 범죄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Farrington, 1986).

최인섭·박순진(1993)은 1966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30대에서 형성되고 시대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코호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20대 보다 30대의 범죄율이 높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대학진학률과 평균 초혼 연령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의 유예기간이 길어진 점을 꼽았다. 또한 코호트 분석을 바탕으로 1940~45년생의 범죄율이 높은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겪은 호황으로 인해 오히려 범죄율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범죄분석”의 연령별 범죄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코호트 분석의 대상을 16-40세로 한정하였기에 분석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박철현(2001)과 정은경(2012)의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공식적인 검거통계를 바탕으로 연령별 범죄율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연령-범죄 곡선은 서구와는 다르게 30대나 40대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보여주었다. 정은경(2012)은 1967년에서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 범죄율을 연구하여 한국에서 연령별 범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성인 시기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대만의 연령별 범죄율도 비슷하다. Zhong(2005)은 대만의 범죄율을 연구하였는데, 대만의 경우도 미국의 연령-범죄곡선의 모양과는 달리 3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음을 보였다. 특히 재산범죄와 폭력범죄에 따라 대만의 연령-범죄 곡선의 모양이 다를 것을 제시하였다. 대만은 재산범죄가 10대에서 가장 높은 것은 산업화의 영향이고, 폭력범죄와 전체범죄가 30-40대에서 높은 것은 가부장적이고 가족 중심의 중국 문화 탓에 젊은이들의 폭력성이 통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범죄시작연령을 청소년전기, 청소년후기, 성인기로 구분한 강은영(2005)은 범죄시작연령, 혼인기간, 취업기간 등의 독립변수가 동종범죄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범죄를 늦게 시작할 수록 상승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전문화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광도(2009)는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연령-범죄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1965, 1975, 1985, 1995년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리 사회에서는 연령-범죄분포의 보편성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현(2001)은 1985-2000년 사이의 1세별 범죄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1993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범죄의 정점이 급격히 우측으로 이동함으로써 정점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98년 이후에는 정점연령과 정점연령보다 조금 높은 연령대에서 범죄율이 높아진 이유는 IMF의 경제적 난항으로 인해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은경(2012)은 1967년에서 2010년까지 시대별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을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그들이 겪은 직장이나 교육 등의 사회적 경쟁과 IMF 경제위기로부터 받은 타격, 그리고 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금전적인 어려움 등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율이 높은 세대가 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연구는 통계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 베이비붐 세대 자체의 특성과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그들의 범죄율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유근식, 2014:2).

나. 범죄자의 범죄경력 패러다임

야구선수의 선수경력이 선수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선수로서 은퇴한 시점 까지를 의미하듯이, 범죄자의 범죄경력이란 범죄자가 범죄를 시작한 순간부터 범죄를 완전히 그만둔 시점을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코호트 데이터를 재분석한 Piquero와 그의 동료들(1999)은 전문화의 정도가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따르면 전문화의 정도는 범죄경력의 진입연령(onset age)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청소년기에는 일반화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지만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전문화의 경향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도 성인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연구한 이병기·류철원(1995)의 연구는 절도와 폭력, 사기범죄에 있어서 전문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의 경력연구(접근)는 개인 범죄자의 종단적인 범죄의 연속성을 특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Blumstein et al, 1986).²⁸⁾ 즉, 범죄자의 경력연구는 언제 그리고 왜 개인이 범죄를 시작하였는지(onset), 언제 그리고 어떻게 범죄를 지속하여 나갔는지(persistence), 언제 그리고 왜 범주수준이 더욱 심각해지고(escalation) 전문화되었는지(specialized), 언제 그리고 왜 범죄를 그만두었는지

28) 범죄자의 범죄경력(Criminal Careers; 범죄자의 첫 범죄행위와 마지막 범죄행위 사이의 기간)과 경력범죄자(Career Criminals; 범죄경력이 많은 범죄자)는 다른 개념임을 미리 밝혀둔다.

(desistance), 따라서 범죄의 총 기간은 얼마였는지(duration), 범죄를 누구와 같이 하였는지(co-offending)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하는 연구 패러다임을 의미한다(Piquero, Farrington, & Blumste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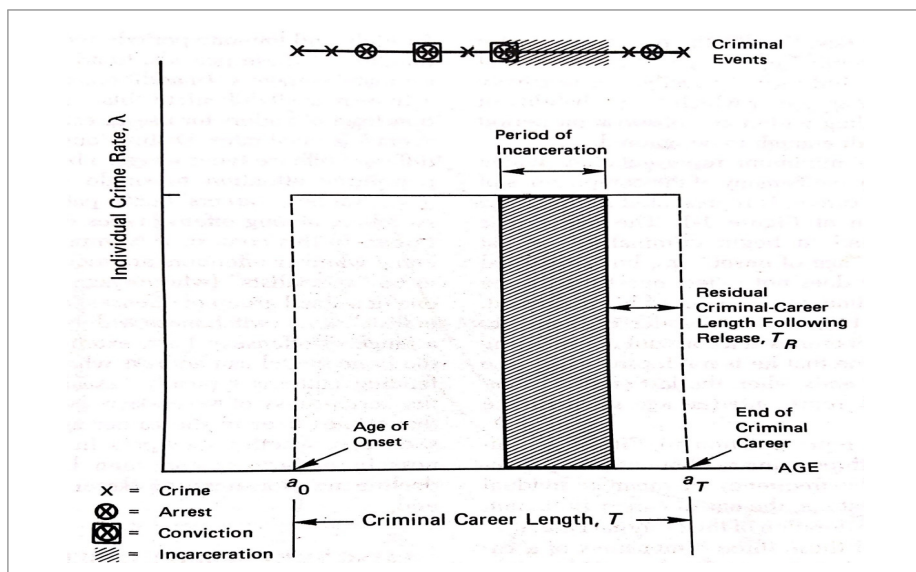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범죄자의 경력연구 패러다임은 거시수준에서의 범죄율 분석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이 연구접근은 거시수준의 범죄율이 참여율 및 발생률과 더불어 범죄자의 범죄 지속기간과 범죄의 심각성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Blumstein et al, 1986). 한 예로, 범죄율의 감소는 범죄에 참가하는 인구의 감소(참여율의 감소),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들의 범죄 횟수의 감소(발생률의 감소), 또는 범죄자들의 범죄 지속 기간의 감소, 혹은 이들의 복합적인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Blumstein et al, 1986). 또한 범죄경력접근은 범죄행동의 시작과 범죄를 지속하는 범죄자들의 범죄빈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Smith et al, 1991). Farrington (1986)의 주장처럼, 거시수준에서의 연령범죄곡선은 연령에 따른 인구 대비 범죄자의 비율의 변화에 가깝다. 이는 개인의 범죄참여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범죄자의 경력을 범죄율과는 구분지어 연구해야한다는 것이 범죄자의 경력 패러다임의 주요논지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다른 영향요인들과 참여율을 구분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개인의 범죄행위(within-individual changes)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개인들의 시간에 따른 범죄의 변화에 관한 정보들이 합쳐졌을 때 그룹단위에서 어떻게 수치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자료가 필수적이며, 개인수준의 자료는 미래지향적인 종단자료일수록, 짧은 기간을 포괄하는 자료일수록 연구에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Piquero, Farrington, & Blumstein, 2007).

범죄자의 경력 패러다임은 진행 중인 범죄자의 경력(active criminal careers)을 범죄 참여(offending frequency), 범행기간(duration), 범죄종류 심각성(crime type mix and seriousness), 그리고 공범 유형(co-offending patterns)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Piquero, Farrington, & Blumstein, 2007).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2]와 같다. 범죄 참여(offending frequency)는 개인의 범죄참여 횟수를 의미하며, 개인의 범죄 참여율(individual offending rate)은 그리스어 λ (람다)로 표기 된다. 이는 일정기간(또

는 생애과정 전체동안) 범죄자의 범죄행위 참여율을 의미한다(Blumstein, 1997). 범죄자는 모든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과 범죄에 많이 참여하는 기간이 존재한다. 이를 평균해보면 소수의 범죄자들이 대다수의 범죄자들보다 매우 높은 범죄참여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Piquero, Farrington, & Blumstein, 2007). 즉, 범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력범죄자(career criminal)들이 있는데, 이들의 범죄참여율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범죄 횟수의 대다수가 이들이 참여한 범죄이다.

범행기간은 처음 범죄와 마지막 범죄를 행하였을 때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또, 잔여 범죄기간(residual career length)란 범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지만, 범죄경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간(expected time)을 의미한다(Blumstein et al, 1986). 예를 들어, 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면, 범죄자의 범죄행위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이것이 범죄경력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출소 후 범죄자가 다시 범죄행위에 가담을 하여 범죄경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잔여 범죄기간이라고 한다. 지속기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범죄가 시작되는 시점과 종료되는 시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사실 쉽지가 않다. 한 예로, 범죄시작의 경우, 경찰에 의한 첫 번째 체포로 정의하는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행하였던 범죄로 정의하는가, 혹은 범죄와 비슷한 반사회적 행동 역시 이에 포함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일정 연구기간동안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하여 개인의 범죄경력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혹은 잔여범죄기간에 속하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 이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망까지를 포함하는 자료가 존재해야할 것이다.

» [그림 2] 개인의 범죄경력



출처: Blumstein, A., Cohen, J., Roth, J., & Visher, C.(Ed.). (1986).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Vol. 1). National Academies. p. 21.

범죄자의 경력기간 동안 범죄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범죄경력 패러다임의 주요 관심사이다. 예를 들어, 범죄경력연구들은 범죄자의 범죄의 심각성(seriousness)이 계속 증가(escalation)되는지, 일정기간까지 심각성이 증가하였다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심각성의 변화가 없는지를 분석한다. 범죄의 경력기간이 길어지면서 범행이 전문화(specialization)되는지, 아니면 다양한 범죄를 번갈아(switch)하는지도 살펴본다(Blumstein et al, 1986). 범죄의 패턴과 관련된 또 다른 주제는 바로 공범의 패턴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범죄경력기간 동안 범죄를 단독으로 행하였는지 또는 타인과 함께 하였는지를 연구한다(Piquero et al, 2007). 한 예로, Reiss & Farrington(1991)은 10대 기간에는 범죄자를 주변인물들과 같이 하는 패턴을 보이며, 20대 이후에는 범죄를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내에서는 한영선(2012)의 연구에서 범죄의 전이과정 및 경력을 살펴보고자 범죄소년 3,102명을 범죄중단과 범죄지속으로 구분하였다. 범죄중단 여부는 구속기간과 활동기간, 범죄수를 고려한 개인범죄율을 기준으로 하였고, 개인범죄율이 0.1미만인 자는 범죄중단자, 0.1이상인 자는 범죄계속자로 분류하였다.²⁹⁾ 먼저 12년 동안의 구속기록으로 살펴본

범죄 중단자는 3,102명 중에서 2,314 명인 74.6%이고, 범죄지속자는 788명인 25.4%로 나타났다. 영국에서 Farrington(1992: 521)은 런던종단연구(London longitudinal survey)를 통하여 직업적 범죄자로서의 범죄의 전문화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폭력범죄자를 예로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전체 153명 중에서 폭력범죄자(폭력행위, 강도, 협박)는 50명이었다. 연구기간 동안에 이들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평균 1.7건이었으나 비폭력범죄는 평균 5.3건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비폭력범죄유형에서 상습범죄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Farrington은 폭력범죄는 전문화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재산범죄(비폭력범죄)는 전문화되고, 폭력범죄는 전문화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이다.

범죄경력에 관한 여러 쟁점들 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범죄유형의 발전추세를 규명하려는 것이었다. 하나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범하는 동종범죄자(specialist)가 대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유형의 범죄를 가리지 않고 범하는 다종범죄자(generalist)가 대부분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형사정책적 개입을 위해서 매우 실용적인 문제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범죄유형의 발전이 전문화경향으로 나타난다면 강도특별단속기간이나 성폭력전담반 또는 절도전담반의 설치와 같은 방안이 효율적인 대책이 되겠지만, 일반화경향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대책보다는 범죄의 기회를 곳곳에서 차단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준호·이순래, 1995; 박철현, 2003).

기존의 범죄경력에 대한 연구들은 범죄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일반화(generalization)의 경향을 지지하고 있지만, 전문화(specialization)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박철현, 2003).³⁰⁾ 대체로 전문화의 개념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경력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들이 점점 동종의 범죄를 범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전문화의 개념에서 시간과 이에 따른 추이를 중요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9) 개인범죄율 0.1은 특정인이 10년 동안에 1회 범죄를 저지른다는 의미이다(한영선, 2011).

30) 일반적으로 어떤 동종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동종범죄자(specialists), 즉 전문가라고 한다면, 다양한 범죄유형을 옮겨가며 범죄를 범하는 사람을 다종범죄자(generalists)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범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범죄유형의 전환은 범죄자들을 그들이 저지른 범죄유형의 연쇄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경력범죄자는 이들이 고도로 하나의 범죄를 전문화한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전과를 가진 전과자들의 경우 다양한 범죄를 닦치는 대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범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능숙해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이 범한 범죄유형을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어떤 특정유형의 범죄의 경우 그 다음 범죄가 동종의 범죄가 될 확률이 높고 이것을 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철현, 2003). 예를 들어 하나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범하는 동종범죄자(specialist)가 대부분인지, 아니면 여러 유형의 범죄를 가리지 않고 범하는 다종범죄자(generalist)가 대부분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형사정책적 개입을 위해서 매우 실용적인 문제의 하나였다.³¹⁾

이러한 범죄경력 연구패러다임은 1980년대 범죄학 연구들과 형사정책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초기의 범죄경력연구가 매우 정책 지향적이어서 이러한 발전경향을 이론화하는 데는 매우 소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Gottfredson & Hirschi(1986, 1988)는 일련의 논문들로 범죄경력 패러다임을 비판하였고, 이들의 비판을 Bluemstein, Cohen, Farrington(1988a, 1988b)과 같은 범죄경력 패러다임학자들이 반박하였다. 양측 진영 간의 논쟁을 살펴보면 범죄경력연구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연구방향과 범죄학연구에서의 범죄연구경력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진다.

Gottfredson & Hirschi(1986, 1988)는 경력범죄자들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참여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경력범죄패러다임이 주장하는 참여율과 발생율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경력범죄자나 일반범죄자 모두 연령-범죄곡선의 모양을 따라 범죄성향이 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력범죄자와 일반범죄자들의 구분이 유의미하려면 두 그룹의 범죄 원인이 상이하여야 하는데, 범죄원인이 범죄 경력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구분 범죄학이론과 형사정책에 유의미한 구분법이지만, 범죄자의 경력에 따라 범죄자를 달리 보는 시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Gottfredson & Hirschi, 1986; 1988).

범죄경력연구의 중요성은 형사사법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범죄경력연구 패러다임에 있는 학자들은 높은 교도소 수감율의 대안으로, 범죄를 행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과 아닌 범죄자들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수감(selective incapacitation)해

31) 이에 대한 국내연구로서 장희숙(2008)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한 208명의 남성 재소들을 대상으로 범죄 유형에 따른 특성과 재범요인을 살펴보았다. 범죄 경력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절도·사기 유형에서 범죄경력자들이 가장 많았다. 박숙완(2013)은 절도범죄를 생계형 범죄로 구분하기 보다는 평생지속형 만성적 범죄유형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제와 법제도적인 시스템의 보완과 개발을 주장하였다.

야 한다고 주장한다. Gottfredson & Hirschi(1986, 1988)는 범죄자의 범행참여율은 범죄자가 범행을 그만두었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며, 범죄자의 미래 범행참여율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정책에 있어서 람다의 강조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Bluemstein과 그 동료들(1988a, 1988b)은 Gottfredson & Hirschi(1986, 1988)의 일련의 주장은 범죄경력 패러다임을 경력범죄자에 대한 연구로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오해라고 보았다. 범죄경력접근은 범죄자의 경력을 분석하고자하는 연구 패러다임이지, 경력범죄자만을 연구하고자하는 방향이나 경력범죄자들의 범죄원인을 제시하는 일종의 이론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Gottfredson & Hirschi(1986, 1988)가 제시한 경력범죄자들의 범죄참여율 감소 역시 두 저자가 범죄경력 패러다임에서 의미하는 개인범죄 참여율을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였음을 지적했다. 범죄참여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력범죄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Bluemstein et. al., 1988a). Bluemstein과 그 동료들(1988a, 1988b)은 범죄자와 비범죄자 인구의 비율을 보여주는 참여율(participation)도 중요하지만, 범죄자들 가운데 지속적인 범죄자(chronic criminals)와 일시적인 범죄자를 구분하는 것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참여율과 발생률은 단순히 범죄성향(propensity to crime)이라는 개념 아래 묶일 수 없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정책이슈와 관련하여서는 경력범죄자를 경력이 막 시작한 시기에 구분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어렵고,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사용 가능한 변수들(예: 인종,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 역시 도덕적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가 범죄경력연구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면 형사정책수립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Bluemstein, Cohen & Farrington, 1988a; 1988b). Gottfredson & Hirschi(1986, 1988)의 비판에 대한 Bluemstein과 그 동료들(1988a, 1988b)의 일련의 답변은 범죄경력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연구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이론적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의 영향

먼저 연령과 범죄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범죄경력의 연구들에서 개발된 전문용어들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진입연령(age at onset), 개인범죄율(individual frequency rate), 참여율(participation rate), 확산도(prevalence), 누적참여율(cumulative participation rate), 발생율(incidence rate), 비구금기간(street time), 전문화(specialization), 일반화(generalization), 심각화(escalation) 등이 그것이다. 기존의 범죄학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이러한 많은 전문용어들이 새롭게 사용된 것을 넘어,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의 모든 용어들이 쟁점의 영역에서 출현한 것이다. 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의 등장은 범죄학자들로 하여금 범죄자의 경력의 다양한 차원(시작, 지속, 중단, 지속기간, 참여율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관심을 갖게 이끌었다(Piquero et al, 2007). 범죄경력 패러다임은 기존에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에서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는 정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자의 생애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면서, 범죄자가 범죄를 왜(그리고 언제) 시작하고, 어떠한 이유로(그리고 언제) 범죄를 중단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원인 규명의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의 지속성과 변화를 설명하고자하는 범죄학의 발달이론들과 생애과정이론들의 등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후술될 범죄자의 발달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은 범죄자연구 패러다임이 갖고 있던 비이론적 접근(atheoretical approach)이라는 비판을 발달사회심리학 접근과 사회학적인 생애과정접근을 통해 범죄자의 범죄 시작, 지속, 중단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Farrington, 2003a).³²⁾

32) 한 예로, 국내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만성적 직업범죄자의 심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만성적 직업범죄의 유형 및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이도선(2006)은 성폭력, 마약범죄, 조직범죄, 절도 범죄 등 범죄를 유형화하여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상승적으로 범죄를 지속하는 범죄자들은 범죄행위 자체를 생활의 한 패턴으로 인식하여 범죄를 직업으로 여기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범죄경력 연구 패러다임의 등장은 범죄학적인 생애과정이론과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 범죄자의 발달과 생애과정 이론 33)

가. 발달이론: Moffitt(1993)의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 이론(Adolescent 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Offender)

범죄학의 발달이론들은 범죄경력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종류(different types)의 범죄자(예: 범죄경력이 일찍 시작되는 범죄자, 늦게 시작되는 범죄자, 경력이 긴 범죄자, 경력이 짧은 범죄자 등)들의 존재 이유를 사회심리학이론 등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발달이론의 가장 큰 이론적 목적은 범죄자들이 서로 다른 범죄궤적을 갖고 있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Moffitt(1993)의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와 생애지속형 범죄자 이론은 발달범죄학을 대표하는 이론이다. Moffitt(1993)은 범죄경력 패러다임의 시각과 동일하게 거시수준에서 관찰되는 연령-범죄 곡선은 연령에 따른 인구대비 범죄자의 숫자(참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Moffitt(1993)의 시각은 거시수준에서의 연령-범죄 곡선이 두 가지 유형의 범죄자로 구성된다는 가설을 이끌었다. Moffitt(1993)은 범죄와 관련된 인간의 발달궤적으로 (1)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어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유형, (2) 어린시절부터 노년기까지 지속적으로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유형, 그리고 (3)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동)를 평생 동안 하지 않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했다. Moffitt(1993)은 이 3가지 발달유형 중,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어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동)를 하는 발달유형을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보았다. 대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하고, 소수의 범죄자들만 생애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동)에 가담하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거시수준에서 연령-범죄 곡선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Moffitt(1993)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두 유형의 범죄자들이 범죄를 하는 매커니즘

33) 이곳에서 소개될 Moffitt(1993)의 이론과 Sampson & Laub(1993)의 이론 외에도 범죄자의 발달과 생애과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존재한다(예: Farrington(2003), LeBlanc(1997), Thronberry & Krohn(2001) 등). 지면의 한계 상 모든 이론을 소개할 수 없지만, 범죄경력 패러다임의 연장선에서 범죄자의 범행의 지속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를 주요 설명의 대상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상충된 가정을 기반으로 설명하는 Moffitt(1993)의 이론과 Sampson & Laub(1993)의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하여, 범죄경력 패러다임이 제시한 요소들이 어떻게 이론화되었는지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에 있다. 즉, 두 유형의 범죄자 간의 차이는 정도(degree)의 차이가 아닌, 범행의 인과관계가 다른 유형(kind)의 범죄자들이라는 것이다.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원인이 유년기시절 형성된 신경사회학적 요소(neruopsychological)들에 있으며, 신경사회학적 요소 형성에는 개인이 갖고 태어나는 고유의 유전적 성질과 더불어 부모 및 가정환경(예: 임신 중 마약남용, 태아 영양 부족,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Moffit, 1993). 즉, 개인이 갖고 있는 성질(trait)과 유년기의 환경(environment)으로 인해 어린 시절 나타나는 신경사회학적 결손(deficit)(예: 언어장애, 충동성, 과잉행동 등)이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되는 것이다. 신경사회학적 결손은 성장과정에서 친사회적(prosocial) 행위를 배울 기회와 사회적 성취(학업성적, 취업, 결혼)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약한다.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실패는 이들의 반사회적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며, 이는 지속적인(stable & persistent)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로 이어진다고 보았다(Moffit, 1993). 이들의 발달과정 속에서도 반사회적 행동을 그만둘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존재하나, 이들은 지속적으로 축적된 반사회적 성향과 그로 인한 불리한 환경들로 이를 전이(transition)로 활용하지 못하고 범죄 또는 반사회적 행위를 지속한다고 보았다(Moffit, 1993).

이와 반대로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어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동)를 보이는 범죄자의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은 신체적 성숙과 사회적 성숙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maturity gap)³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즉, 이들은 생애지속형 범죄자인 동료들의 영향을 받아 반사회적 행동을 모방함에 따라 범죄를 청소년기에 시작한다고 보았다(Moffit, 1993). 그러나 청소년 한정형 범죄자들은 성인이 되어 성숙의 차이가 극복될 때 범죄의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은 청소년기에만 일시적으로(temporary & situational) 나타난다고 한다(Moffit, 1993). 또한, 이들의 경우 반사회적 성향이 어린 시절부터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회가 존재한다면, 친사회적 행동(prosocial)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를 그만둘 기회들이 왔을 때, 이를 이용하여 전이(transition)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Moffit, 1993).

Moffitt(1993)은 청소년기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반사회적 행동을 비이성적이고

34) 신체적으로는 음주와 운전 등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사회적으로 음주와 운전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병리학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고, 보편적이고 규범적인(normative) 행동으로 봤다. 따라서 자연스레 세 번째 발달궤적 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Moffitt(1993)은 그 이유로 사춘기의 지연(delayed puberty), 어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의 보유, 비행에 학습할 수 없는 환경,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대다수의 또래와 어울리기 힘든 개인적 성격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비행의 지속성은 최초 비행을 저지른 연령이 어릴수록 또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비행경력이 길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지속적 범죄자들의 경우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행 횟수와 강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Blumstein & Cohen, 1987; Sampson & Laub, 1993).

한편, Moffitt(1993)의 이론이 한국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양계민과 김의철(2003)은 한국비행 청소년들의 유형을 생애지속형과 청소년기 한정형으로 판별하는 변인들을 추출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또래친구의 비행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인에서 Moffitt(1993)의 이론과 일치하였다. 이 연구는 각 집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횡단적인 방법으로 두 집단을 변별하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드는 종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범죄 유형의 변별과 선도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나. 생애과정이론: Sampson & Laub(1995a)의 비공식 사회통제의 연령 단계별 이론³⁵⁾

Sampson & Laub(1995a)은 범죄경력 패러다임에 관한 논쟁의 핵심은 유년기 반사회적 행동, 청소년기 비행 그리고 성인기의 범죄를 종단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았다. Sampson & Laub(1995a)은 이를 위해 Elder의 생애과정 시각(life-course perspective)을 기반으로 범죄경력 패러다임을 개인의 내적 주요차원들로 설명하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연령단계별이론을

35) 사실 범죄학계에서 라이프코스 이론이라고 하면 Sampson & Laub(1993)의 비공식사회통제의 연령단계이론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Sampson & Laub(1993)의 이론 외에도 범죄자의 생애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한다.

제시하였다.

Sampson & Laub(1990, 1995a)은 Gottfredson & Hirschi(1990)가 주장하는 범죄의 원인으로서 통제(control)의 역할에는 동의했지만, 개인의 범죄성향이 일정하게 유지(stability)된다는 이들의 주장에는 반대하였다. 즉, Sampson & Laub(1990, 1995a)은 유년기 시절 반사회적 행동이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지는 생애궤적의 일관성도 존재하지만, 범죄행동을 보이는 생애궤적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터닝포인트들로 인한 생애궤적의 변화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궤적의 일관성과 변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에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았다. 즉, 이들의 이론에 있어 비공식적 통제는 유년기에서부터 성인기까지의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을 촉진 또는 억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Sampson & Laub, 1995a).

Sampson & Laub(1990, 1995a)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경우, 구조적 요인(사회경제적 지표, 가족해체, 우범지역 거주 등)이 가정과 학교에 대한 유대감으로부터 기인되는 비공식적 통제 수준을 매개하여 개인의 비행활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즉, 구조적 요인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둘의 관계는 구조적 요인이 비공식적 통제수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불리함은 개인의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불리함이 부모의 훈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적절한 훈육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깊은 유대감을 갖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부모가 적절한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행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Sampson & Laub, 1995a). 이상인(2018)의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은 ‘탈비행 시작’ 시점과 ‘탈비행 강화’ 시점에 ‘선배, 교사, 친인척 등 기성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조언과 정보 습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탈비행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는 부모나 선배, 교사 등과 사회적 유대를 통한 조언과 정보습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된다. 청소년의 비행의 시작과 비행의 심화, 탈비행(중단)으로 이어지는 연결 선(line)에서 그 중간에 발생하는 입학, 퇴학, 포레만남, 부모와의 관계, 처벌과 시설수용, 석방 등이 그 때마다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동함을 발전이론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통제와 범죄의 연관성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인 노인범죄에 대한

하나의 설명 가능성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대 사회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특성 중 하나로서 자식은 부모부양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 또한 자식에 부양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식이 동거하기 보다는 분가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노인부부 세대나, 독거노인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숙완, 2013). 박숙완(2013)은 노인의 은퇴, 배우자의 죽음, 자녀의 독립, 건강 악화, 빈곤, 사회적 고립 등의 변화는 사회적 유대를 약화해 아노미 상태를 일으키며 이는 범죄를 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도 발견된다. 즉, 신연희(2010)는 결혼생활에 만족을 못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폭력 피해를 입거나, 여가생활을 공유하지 못하고, 경제적 갈등이 심한 경우, 그리고 자녀에 대한 만족이 낮은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범죄자가 되었을 때 가족의 유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ampson & Laub(1995a)은 청소년기의 비행이 성인기의 범죄로 연속(continuity)되는 경우와 중단(desistance)³⁶⁾되는 과정 역시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설명하였다. 청소년기 비행활동의 결과(예: 부진한 학업성적,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체포 경력 등)는 고용 불안정, 경제적 불안정, 가정불화 등 다양한 차원의 성인기 삶에 영향을 미쳐 사회유대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성인기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Sampson & Laub, 1995a). 그러나 모든 청소년기 범죄자가 성인기 범죄자가 되지 않는 원인의 핵심에는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한 성인기 사회적 유대의 강화가 있다고 보았다(Sampson & Laub, 1995a). 즉, 성인기 범죄의 지속 또는 중단여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성인기 비공식 통제를 제공하는 기관(예: 대학교,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사회적 유대의 여부이다. Sampson & Laub(1990)이 말하는 성인기 비공식적 통제의 강화는 입대, 결혼, 취업, 육아 등 일련의 전이(transition)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인생사건 자체만으로는 비공식적 통제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한 예로, 취업이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고용안정성이나 직업 몰입

36) Sampson & Laub(2001)은 범죄중단(탈비행)의 개념 속에는 시간의 지속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범죄경력에 있어서 마지막 범죄를 저지른 시점을 의미하는 범죄의 종결(termination)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범죄중단을 범죄경력의 종결 혹은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 내렸다.

도 등이 사회적 유대의 증가를 가져와, 직장의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 기능을 증가시켜 범죄의 중단을 이끄는 것이라고 보았다(Sampson & Laub, 1995a).

한편, Laub & Sampson(2003)은 생애사연구를 통해 비공식 사회통제의 연령단계별 이론을 수정 및 보완하는데, 범죄의 중단과 지속을 설명하는 중심 매커니즘에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함께 일상 활동(routine activity)과 인간주체를 추가하였다. Laub & Sampson(2003)은 범죄자들의 성인기 생애과정 변화의 특징과 위에서 언급한 결혼과 취업이 성인기 범죄의 중단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에 사회유대 및 비공식적 통제의 강화 외에도 다른 매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 예로, 결혼생활은 비공식적 통제를 강화시켜 범죄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결혼을 통해 바뀌게 되는 개인의 일상활동 패턴(가족과 자녀중심의 일상생활 증가 및 비행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감소 등) 역시 범죄를 중단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Laub & Sampson, 2003). 이와 마찬가지로, 안정된 직장생활 역시 개인이 직장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범죄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Laub & Sampson, 2003). 또한, 생애과정인터뷰는 범죄의 중단이 비공식적 통제와 일상활동의 변화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인이 능동적인 자세로 범죄를 중단을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중단되는 것을 발견했다(Laub & Sampson, 2003). 이를 요약하자면, 낮은 수준의 비공식적 통제와 구조화되지 않은 일상활동 그리고 개인의 목적의식 부족은 성인기 범죄의 지속을 야기하며, 가족, 직장생활 등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기인하는 높은 수준의 비공식적 통제와 구조화된 일상활동 그리고 개인의 목적의식은 성인기에 범죄를 중단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Laub & Sampson, 2003).

이처럼 Sampson & Laub은 발달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년기에 이르러 왜 범죄를 중단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의 반사회적인 행위나 비행은 성인기의 범죄성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행동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건 즉,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인생의 전환(turning points)을 통해 사회화의 유대가 회복되며 그 결과로 범죄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역으로 이전의 비행의 경험이 있는 성인이 결혼이나 직장을 통한 사회유대의 회복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Piquero와 그 동료

들(1999)은 필라델피아 코호트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범죄 전문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범죄 전문화는 연령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범죄 전문화의 정도가 범죄경력의 진입연령(onset age)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청소년기에는 일반화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지만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전문화의 경향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Blumstein(1988) 역시 범죄자가 나이를 먹고 그의 능숙함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전문화의 경향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Cohen(1986)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전문화의 경향이 매우 약하나, 성인범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화의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성인범죄자의 전문화가 두드러지는 이유를 그들이 조직적 범죄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특정한 범죄유형 보다는 어떤 범죄의 집락(cluster)에서의 전문화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도를 저지른 범죄자는 재산범죄 보다는 다른 강력범죄로 옮겨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다. 발달이론과 생애과정이론의 함의

Moffitt(1993)의 이론과 Sampson & Laub(1995a)의 이론 모두 범죄경력 패러다임의 연장선에서 모든 범죄자들이 청소년기 이후에 범죄성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 성인기 이후 범죄경력의 지속(continuity)과 변화(change)에 관해 주목하였다. 하지만 두 이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론적 가정과 구성요소들을 갖고 있다.

Moffitt(1993)의 이론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하면서, 각각의 그룹은 서로 다른 매커니즘으로 범죄행위를 시작 또는 지속 및 중단을 한다고 보는 반면에, Sampson & Laub(1995a)의 이론은 범죄자들을 범죄경력에 따라 그룹화하지 않고, 동일한 매커니즘(비공식적 사회통제)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시작 또는 지속, 중단한다고 보고 있다. 즉, Sampson & Laub(1995a)은 범죄를 지속하는 사람들(chronic offenders)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범죄경력 패러다임과 발달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을 범죄행위의 원인이 상이한 다른 종류의 범죄자들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다. Paternoster와 그 동료들(1997a)은 이러한 두 이론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는데, Sampson & Laub(1995a)의 이론을 궤적

의 변화를 가정하는 역동적(dynamic)인 이론인 동시에 범죄의 원인을 하나(비공식적 통제)로 보는 일반(general)이론으로 보았다. 반면에, Moffitt(1993)의 이론을 여러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발달적(developmental)이론으로 보지만,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설명의 경우 궤적의 일관성을 가정하는 정적(static)인 이론의 성격을 갖고 있고, 청소년 기한정 범죄자의 설명의 경우 궤적의 변화를 가정하는 역동적인 이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³⁷⁾

3.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가. 지속(Persistence)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논의들을 고려하여 고령의 나이에 범죄행위를 한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의 특징을 유추해보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부터 지속되어오는 범죄경력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범죄학자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범죄행위와 성인기의 범죄행위의 상관관계 또는 범죄행위의 지속성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청소년기의 범죄행위와 성인기 범죄행위의 지속성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Nagin & Paternoster, 2000).

먼저, Hirschi & Gottfredson(1995)은 유년기의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위)와 성인기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닌 허위관계(spurious relationship)라고 주장한다. Gottfredson & Hirschi(1990)의 자기통제이론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또는 비행)는 즉각적인 이익을 얻고자하는 행위이며, 행위의 대가로 인한 먼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인 동시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행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속성들을 갖는 범죄(또는 비행)를 하게 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 Gottfredson & Hirschi(1990)는 자기통제력의 부족을 지목하는데, 자기통제력의 수준은 8세를 전후로 부모의 훈육을 통하여 성립된다고 본다. 또한, Gottfredson & Hirschi(1990)는 유년기에 형성된 개인들 간의 자기통제력 수준 차이는 성인기 이후에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범죄성향이 어릴 때 성립되어 성인기까지

37) 참고로, Paternoster et al(1997a)의 이론 비교 연구 결과는 Moffitt(1993)의 이론보다는 Sampson & Laub(1995a)의 이론을 지지(support)하였다.

지속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의 부족이 청소년기의 비행(또는 반사회적 행위)의 원인이자 성인기의 범죄원인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비행과 성인기의 범죄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지, 청소년기의 범죄사건이 성인기 범죄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본다(Hirschi & Gottfredson, 1995).

이와 반대로 Sampson & Laub(1995b)은 유년기의 범죄(또는 반사회적 행위)와 성인기 범죄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이 인과관계는 성인기의 사회적 유대를 매개하여 존재한다고 본다. 한 예로, Sampson & Laub(1995a, 1995b, 1997)은 낙인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소년기의 비행의 결과로 생긴 형사사법기관의 낙인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삶의 차원에서 불이익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성인기 사회적 유대의 약화를 가져오며, 가족, 회사 등이 비공식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지속하게 된다고 본다. 즉, 노년기까지 범죄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성인기에 범죄행위를 중단한 범죄자들과 다른 범죄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에는 범죄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성인기의 사회적 유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를 중단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Sampson & Laub(1995a, 1995b)의 위와 같은 청소년기의 비행과 성인기 범죄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유년기에 비행(또는 범죄)을 하였어도 만약 성인기에 사회적 유대가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면, 범죄행위를 그만두고 범죄행위를 지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Moffitt(1993)의 생애지속형 범죄자에 관한 설명과도 차이가 있다. Moffitt(1993)은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성인기 범죄행위의 원인을 유년기에 형성된 신경심리학적 결핍으로 보기 때문에, Hirschi & Gottfredson(1990)의 설명처럼 유년기에 성인기의 범죄여부가 결정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인범죄자들 중에 생애 지속형 범죄자들은 어린시절부터 일탈행위를 시작하여 반사회적 성격장애로까지 발전되는 등 개인적 원인으로 인하여 상습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김은주, 2008: 89).

유근식(2014)은 연령-범죄분포의 정점이 이동하는 원인을 코호트 분석 통해 연령, 연도, 코호트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독립적으로 살펴보며, 연령-범죄분포 변화의 주된 원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수가 어떠한 원인과

경로를 통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근식(2014)은 중·장년층 범죄 증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박철현의 비공식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대검찰청 전산실의 도움을 받아 입수한 범죄분석의 원자료이며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교통범죄를 제외한 총 범죄에 대해 11세-69세까지의 1세별 범죄 발생건수를 담고 있다. 그는 코호트 분석 기법을 통해 코호트와 연령, 연도가 연령-범죄 분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중·장년층 범죄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특정 코호트들의 높은 범죄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 등이 청소년과 청년층 보다 중·장년층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범죄 연령이 고령화 되는 현상은 특정 범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유형에 고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유근식, 2014)이기 때문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고령의 나이에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조사하였을 때 유년기부터 지속된 범죄경력을 발견하는 것은 새로운 발견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범죄경력의 지속의 원인이 유년기에서부터 형성된 범죄의 성향과 관련된 개인적인 요소들로부터 출발하였는지, 또는 성인기 사회적 유대의 부족으로 인해 지속된 범죄경력인지, 또는 기존 이론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매커니즘이 존재하는지를 밝혀내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일시중단(intermittence)과 늦은 시작(later on-set)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의 또 다른 특징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범죄를 행하였지만 오랜 범죄경력 휴지기(intermittence) 이후 고령의 나이에 다시 범죄를 시작한 경우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비행 또는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성인기 이후 늦은 나이부터 시작된 범죄경력(later on set)을 생각해볼 수 있다.

휴지기 이후 다시 시작되는 범죄경력과 늦은 나이에 시작되는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이론은 Laub & Sampson(2003)의 이론이 가장 적합하다. 이는 Laub & Sampson(2003)의 이론이 성인기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일상활동의 변화를 중심 매커니즘에 두고, 언제든 범죄와 관련된 궤적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이론은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의 비행여부와 관계없이, 일련의

성인기에 발생한 전이들로 인한 비공식적 통제의 약화와 일상활동의 변화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언제든 늦은 시기에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Eggleston & Laub, 2002). 이는 다시 말해, 비공식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성인기에 범죄를 잠시 중단할 수도, 또는 중단했던 범죄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Horney, Osggod, & Marshall(1995)은 비공식적 통제 및 사회적 유대와 관련이 있는 개인의 삶의 상황들(local life circumstances)(예:취업 및 결혼)이 범죄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단기 간(short-term)에서 발견하였는데, 이는 장기간(long-term) 동안 개인의 범죄경력을 놓고 봤을 때에도 취업과 결혼 같은 사건에 의해서 궤적이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예로, 노화에 따른 사회학적 측면의 변화는 은퇴와 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됨으로써 수입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박탈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의 결혼이나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이탈과 축소로 인한 격리와 고독 등이 있다(강상경, 2011: 355). 특히 사회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 등의 차단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 보상심리 차원에서 반사회적 행동유형의 하나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김상수, 2015: 49-50). 김승용(2000) 역시 노인범죄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직업이 없는 빈곤한 노인들이 인간관계나 경제적인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상원(2016)도 노인범죄의 실태를 살펴보고며 원인을 분석한 결과, 노년기 직장에서의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사망 등 노인들이 겪는 사회적 유대약화는 노인의 일탈행동이나 범죄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김은주와 김상원(2009)이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노인범죄 증가현상을 Sampson & Laub의 발전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노인인구비와 가족관계에서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나 사회유대의 측면을 통해 노인범죄의 지속과 증지를 설명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유년기에 형성된 범죄성향의 지속성을 주장하는 Gottfredson & Hirschi(1990)의 이론이나, 범죄의 원인과 관련된 개인의 성향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결정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Moffitt(1993)의 이론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늦은 시작을 하는 범죄자(genuine late onset offender)나 진정한 의미의 성인기 범죄경력의 휴지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이론은 공식기록을 통해

나타난 휴지기 이후 범죄를 다시 시작한 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형태가 아니어도 범죄와 유사한 반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휴지기에 진행했을 것으로 보거나, 혹은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기록이 안 된 범죄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공식기록을 통해 나타난 범죄경력이 시작된 범죄자의 경우, 형사사법에 기록되지 않은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이 많았으나 단지 형사사법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범죄를 성인기 이후 뒤늦게 시작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간주한다(Beckley et al, 2016). 따라서 고령범죄자의 공식범죄기록이 일시중단 후 시작 또는 늦은 시작일 경우,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형사사법기관에 기록된 범죄행위 외에도 다른 범죄행위 또는 범죄와 유사한 반사회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 고령범죄자 생애과정 연구의 발전 방향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고령범죄자에 대한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시수준의 연령별 범죄분포도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청소년기 인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2018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46-50세, 그리고 51-54세의 연령별 범죄율이 다른 연령대의 범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령-범죄 곡선의 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고령범죄자의 범죄율이 높은 거시수준의 범죄연령분포도가 우리나라 국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의 성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시수준에서는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숫자가 많을 수도, 일부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개인범죄발생률이 높을 수도, 혹은 생애지속형 범죄자의 범죄지속기간이 길수도, 또 혹은 고령에 범죄를 시작한 범죄자가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수준에서의 종단적인 자료를 통한 범죄자들의 범죄경력 및 생애과정 분석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추적하는 패널자료가 극히 드물며, 이를 범죄와 관련된 개인의 생애과정에 초점에 맞춰 진행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한국의 범죄학적 생애연구의 퍼즐을 풀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그러나 Sampson & Laub(2003)의 생애사분석 연구는 이러한 국내의 상황에서 좋은 참고연구가 될 수 있다. 청소년기 범죄기록이 있었던, 혹은 고령에 범죄를 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생애사분석은 생애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패널자료가 구축되지 않은 현재로서 최선의 대안이라 판단된다.

다만, 국내에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범죄경력을 고령범죄자의 주요 특징으로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측면보다는 노인범죄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형사정책 제시가 주된 목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범죄 현상과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먼저, 박영숙(2010)은 노인범죄의 특성 중 하나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가족의 단절과 사회의 낙인으로 인하여 출소 후의 사회적응력을 약화시킬 뿐 만 아니라 특이한 경우지만 교도소의 생활로 회귀하려는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노인들은 출소 후에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인의 교정 복지 프로그램도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고령사회 노인범죄예방을 위해 복지전문가,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정공무원, 보호관찰공무원, 법무복지공단직원, 사법관련 자원봉사자 등 실무진을 대상으로 3개월간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한 박병선(2018)은 심층면담결과 상습범죄자들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며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범죄자 중 강력범죄의 상습누범에 대한 현행의 형벌가중방식 보다는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수용제도를 통한 통제방식이 성인상습누범의 노령화에 따른 유입을 차단하고 나아가 노인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였다.

형사사법 측면에 대한 논의로 김봉수(2012)의 연구에서는 노인범죄자 중 상당수가 범죄경력자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력범죄의 상습누범에 대한 현행의 형벌가중방식 보다는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를 통한 통제방식이 성인상습누범의 노령화에 따른 유입을 차단하고, 나아가 노인 강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절한 대응전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박형민과 서주연(2015)은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으로서 크게 단기적 형사정

책과 장기적 형사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노인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같은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인범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장기적 형사정책과 전략으로는 노인복지 강화,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구축, 형사절차상 노인보호방안 강구,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지원, 노인피해자 보호 및 노인범죄자 지원을 위한 법률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이미화·정병수(2016)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범죄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끝으로, 고령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들도 있는데, 박숙완(2013)에 의하면 만성적·상습적 범죄를 저지르는 고령범죄자들 대부분은 범죄 행동에 관한 죄의식의 결여 등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김상수(2015) 역시 고령범죄자는 젊은 수형자들과는 다르게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오랜 수형 생활로 인하여 사회 복귀 등이 오히려 이들에게 정신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령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의 파악은 차후 재범방지 등 정책적으로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

고령범죄자에 대한 연구는 현재 범죄학의 생애과정연구 중 가장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고령범죄자의 숫자가 유의미하게 많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령범죄자 범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고령범죄자의 생애과정에 관한 연구는 개인에 관한 공식기관의 자료와 생애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거시적 사회환경, 주변 중요 인물들과의 관계, 개인의 성장과정에 있었던 여러 전이들, 그리고 여러 삶의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내렸던 선택들과 그 이유 등을 모두 포괄하여 각각의 요인들이 범죄의 시작과 지속, 일시적인 범죄경력의 중단 및 재시작, 또는 성인기 이후 뒤늦은 범죄행위의 시작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경력 범죄자의 생애 경험

제3장

경력 범죄자의 생애 경험

제1절 | 생애 경험의 의의

범죄자의 생애 경험은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맥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인의 생애는 단순히 생물학적 성장과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사회화과정, 가치관의 형성 등을 통해 사회의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특성과 함께 사회의 모습이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한 고령 경력범죄자들의 아동기부터 장년기까지의 생애 경험을 정리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범죄 현상의 변화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며, 이 작업을 통해 범죄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접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개략적인 범죄경력은 <표 7>과 같다.

» [표 7] 면접대상자 개요

	연령	최초 전과	본건 범죄	전과	범죄 경력
〈사례 1〉	70세	절도 (19세)	향정	20	절도(소매치기), 폭행, 장물취득, 부정수표, 향정, 사기
〈사례 2〉	65세	절도 (35세)	절도	15	상해,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례 3〉	69세	절도 (25세)	절도	10	절도, 폭행, 특수절도, 사기
〈사례 4〉	67세	공갈 (17세)	특수강도강간	10	공갈, 특수절도, 장물알선, 강도상해, 특수강도
〈사례 5〉	66세	특수절도 (16세)	절도	17	야간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사례 6〉	71세	장물취득 (25세)	상습폭행 및 상습특수상해	24	장물취득, 상해, 중과실치상, 폭행, 재물손괴, 공연음란, 모욕
〈사례 7〉	67세	절도 (19세)	절도	24	절도, 강도상해, 폭행, 방화, 자동차손해,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사례 8〉	72세	병역법위반 (20세)	사기	21	병역법위반, 절도, 사기, 공무원자격사칭, 미성년자간음, 관명사칭, 횡령
〈사례 9〉	72세	절도 (20세)	절도	27	특수절도, 준강도, 폭행,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주거침입, 도박
〈사례 10〉	72세	특수절도, 사기 (22세)	무면허/자동차손해배상/음주운전	40	특수절도, 사기, 폭행, 공갈미수, 야간주거침입,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음주운전, 업무상실화, 도주차량, 상해

제2절 | 사례별 생애 경험

1. <사례 1>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공식기록
출생..... 1949		
고아원 입소.....		
중학교 입학..... 1965		
고아원 출소..... 1967		
친구들과 공동생활 -구두담이, 신문판매, 술담배 판매 등-	1968 소년원(절도) 소매치기 생활	
동거..... 1970		
-범죄중단 결심-		
세탁소 운영..... 1974	1975 범죄 재시작 -혼인비유-	
결혼..... 1981	1979 절도 징역2년	
과일 유통.....		
딸 출생..... 1983	 소매치기 우범자	
사업 사기피해.....		
소매치기 친구 만남.....	1984 특수절도 징역1년	
아들 출생.....	1985 절도 집행유예 절도 징역10월	
친구에게 사기피해..... 1987	1986 장물 벌금50만	
유통업소 운영.....	1988 절도미수 징역8월	
사업 부도(IMF).....	1991 폭행 벌금30만	
도망생활 중 마약범 사귀기.....	1992 장물취득/범인은닉 징역1년6월	
사업(식품유통업).....	1996 부정수표/향정 징역2년6월+물수	
-월드포 모은 돈으로 사업 인수-	1997 상해 벌금50만	
사업부도.....	1998 절도 징역2년2월	
	1999 향정 벌금200만+추정	
	2000 향정 징역1년+물수	
	2002 향정 징역1년6월+물수+추정	
	2004 향정 징역1년6월+물수+추정	
	2006 향정/사기미수 징역1년6월+물수+추정	
	2008 향정 징역1년2월+물수+추정 향정 징역10월+추정	
	2011 향정 징역1년+물수+추정	
	2012 향정 징역1년10월+물수+추정	
	2015 향정 징역2년+물수+추정	
	2017 향정 징역2년6월(본근)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1〉은 자신을 고아라고 설명했으며, 출생기와 유아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어린시절과 청소년기를 고아원에서 보냈고, 10대 후반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와 생활을 하였다.

저는 선생님 그 고향이 인저 그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 자란 것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 그거는 인제 그 저가 인제 그 인제 뭐 뭐라 그럴까 그 다른데 있다가 걸려 왔는데,
 다른 데 있다 걸려 왔는데 어렸을 때니까 그 나이를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는 자신의 정확한 나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생활 중에 자신보다 작은 아이들과 친해지지 못했고, 자신과 비슷하게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덩치가 튼 학생들과 제한적으로 친하게 지냈다.

그니까 그렇게 있어요. 학교를 가면은 이제 나이는 이제 똑같은 반인데 친구가 될 수 없는게 속에서 나이도 나보다 작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 사귀질 않았죠. 점심시간에는 우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학년은 다르지만 나이가 같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남들과 놀지 못하죠. 어리니까 그것이 전부죠 친구야 많지만 사회에 나와서 가끔 만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만나면 그때 나는 나쁜 길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친구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았죠. 다 나쁜 것은 아니니까

(2) 청소년기

고아원을 나와서 〈사례 1〉이 생활하게 된 곳은 일종의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이는데, 그는 그 시설을 우범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기억하였으며, 그곳에서 범죄를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도 절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거기서 인저 나와 가지고, 거기서 무작정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 나왔는데. 지금 같아서는 이제 뭐 인저 나가면은 만 18세, 20세인가

되면 뭐 정착비라도 좀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도는 아마 그런게 없었습니다 ... 학교는 뭐 중학교 다니다 말았죠. 왜냐면 나이가 이제 모자라다, 나이가 인자, 저는 인자 많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가 인제, 그 호적이 두 개로 되는 게 뭐 출생지가, 출생이 부모 형제가 없다보니까. 그 고아원에서 다시 인제 신청이 되가지고 나이가 인제 뭐 그 때 가호적을 만들어줘 가지고. 인제 그거로 나이를 다니다 보니까 중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돼서 뭐 나이가 찼으니까 나가라 이게 되는 거예요. ... 어린 나이래도..그 때 뭐 어린 나이도 아니거든요. 18세...이러니까. 고아원에서 있다가 학교에 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이송을 시켜버리니, 바로 학교가 정지가 돼버리니깐 뭐 아무 것도 할 거 없이 여기다 똑같아. 교도소 보다 뭐 조금 나았겠지만, 여기는 죄를 지어서 들어오지만 서도 뭐 그거는 아니지만 자유는 조금 있다 그러지만 보고 뭐 한계 없는데. 그러니까는 우범자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 고아원이라는 데가. 근데 형사처벌이 안 되고 우범자들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맨 뭐 착실하게 사는 거를 모르죠. 맨 뭐 지그들 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회에서도 만난다고 하면 그 놈이나 그 놈이나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잠시동안의 수용시설 생활 이후, 고아원에서 함께 알게되었던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시작한다. 그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해 줄 연고자도 없었기 때문에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예.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저가 인자 하고싶은 애기 이런 것도 해도되는? 그래서 인제 제가 인제 아무 뭐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막 나와 가지고 뭐 인제 사회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냥 나가라니까 나왔는데 뭐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걸 무슨 뭐 오아시스도 아니고 뭐 여기 무슨 뭐 사막 그 맨땅에서 나오니까. 그냥 고아원에서 같이 사는 애들 그때 당시 60년대인데. 60년대, 60년대, 70년대 되기 전인데 4-50년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나마 고아원에서 인제 그 같이 살았던 애들이 뭐 구두도 닦고 신문도 뭐 팔고 뭐 갖은 고생 다 해봤죠.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다가 인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것도 뭐 아는 사람들이 뭐 응? 도둑놈도 있고 하대. 뭐 도둑질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춤고 배고프니까 남들이 아 이거 이거 겨울 되면 따뜻하고 이거 뭐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그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따라서 그냥 범죄에 그냥 뭐, 뭐지 뭐지 뭐시기 시장에서 뭐 하나 훔쳐 먹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들어와 보니까는 교도소에서 뭐 에 68년도... 처음 들어온 게 68년도...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소년원에서 인제 그 일단 나왔고 하다보니까는 나와도 또 마찬가지로요. 뭐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방을 얻어야 하는데, 이 방값을 조달하기 위해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호객행위 등으로 돈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소매치기 등 범죄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각자 벌어들인 돈을 나누어 쓰기도 하고 공동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주로 이제 방을 얻어서 자는데, 그때 당시 지금 얘기하면 영등포역이나 종로쪽에 이런 쪽방에서 자는 그런 신세지

(쪽방을 얻을 돈은 어디서 났나요?)

돈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만원 돈인데 그때 당시 돈으로 생각하면 백원 돼요. 그 돈은 무엇을 해도 벌었었어. 친구들이 도둑질을 하던 소매치기를 하던 나는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벌어서 같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왕초 명동 이쪽이나 남대문 이쪽 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게 있었어요. 택시 손님 줄 서서 있으면 그러면 불광동 형님 불광동 어디 가세요. 불광동 기사한테 태워놓고 저녁만 나가는 거예요. 저녁만 나가서 기사한테 태워놓고 기사한테 돈 얼마 받아 예를 들면 4000원이면 4명 태웠으니까 16000원이면 2000원 받아와 또 그런 것도 해보고 또 담배는 양담배 장사도 했어요. 보면 우리 당시에는 양담배를 사와가지고 봐 보면 알아요. 담배 연기만 봐도 알아요. 저거 뭐다 그때 청자가 100원 씩 했을 때 옛날에 개나리도 나오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손님에게 가서 약점을 잡는 거는 아니지만 어디서 샀냐 그러면 직원인 줄 알고 겁을 낸단 말이야 그건 아니고 내걸 팔아다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역 그쪽 쪽방이 많아서 거기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애들은 돈은 있으면서도 그 의리가 있다는 그래서 그냥 구걸해온 밥 그건 더러운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못 먹을까 주고 그런게 아니고 아줌마들이 불쌍해서 다 서방님 오면 주려고 한 밥이 식었거나 한거 오면 주고 했어요 먹고는 했죠

(그럼 친구들과 공동생활 비슷하게 한 것인가요?)

그렇지

(그렇게 얻어 온 것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벌어들인 돈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 면접시 그는 어린시절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으나, 2차 면접에서는 실제로는 이 시절에 본격적으로 소매치기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머라할까 배짱이다 내가 하는데 여자랑 차에 타서 범죄가 3가지가 있어요 버스를 타서가 있고 타기 전에 하는게 있고 길바닥에서 여자들을 핸드백을 도로에서 하는게 있고 또 버스 타가지고 여자들 상대로만 하는 주머니를 하지만도 실질적 기술은 이제 안주머니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어디서 배우고 그 영화에 나오는 마네킹을 대상으로 해보고 그런 짓은 거짓말 하는 것이예요 영화고 그 기술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있으면서 배우게 되었죠 제일 처음에는 무보수로 같이 일하면서 보면서 익히고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야 이럴땐 이쪽이 비니까 바람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로 알아듣는 것이다 사람이 버스를 탔을 때 5,6명이 일ծ는 식구들이 짹 타는 거지 그러면 한 사람은 피해자를 어떻게 하고 한사람은 해주고 다 나누어져 있어요 자기 임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자가 타겟에게 들어가서 안주머니를 뒤지는 거죠 물건을 받아서 주면 물건을 가지고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피해자를 완전히 지켜보고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을 주로 주름이나 백을 찢거나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배짱이죠. 그런 짓을 자꾸 보면서 자기가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2명 3명 다니면서 그걸 가려줘야 돼요 옆에서 해주면 나는 그냥 내거 만지듯이 다만 거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기술이 있어야지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구나’ 월급 받아서 어디에 써야겠다. 자신만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찬스가 나고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에서 다니고 여자가 이제 가방을 메고 가면은 앞에 막아주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어” 하면 툭 하면서 뒤에서 여자를 따라오면서 움찔 할 거 아니야 그때 살짝 열어주고 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이제 기술이 나오고 어떤 그런 예민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고 하는게 아니라 배짱이 좋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자기가 전승을 하는 거지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백이 나왔으면 가서 ‘애는 어떻게 여는 걸까?’ 그런 것을 다 보고 생각하는 거죠

팀은 이제 주로 아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대 당시에 자기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버스를 탄다 그러면 근데 이제 얘기 해서는 몰라요 보면 딱 알아요 눈치를 딱 보면은 ‘아 저거는.....’ 이제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저야 '아 이 새끼는 이거 공무원이구나' 그걸 대충 내 직감으로 알아야해요 공무원이면 월급날이나 돈 있지 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 여자면 이제 가정주부고 신혼이다 신혼이니까 항상 무엇을 사고 멀 하고 아 여유가 있는 여자구나 파악할 때 따라가지 또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새끼 이거 이거는 별로 볼일이 없구나 노가다하는 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아예 건들지를 않아요 이게 기술이에요 그것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우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거기 될 수 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내다가도 이름이라 는게 있어요 서로가 아니까 '야 같이 다니자' 해서 만나가지고 일년이고 같이 다니고 헤어졌어 그럼 또 그 동안 다니면서 다른 사람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인사도 받고 같이 다니자고 하면 한 버스에 몇 명씩 타요 몇 식구가 타면은 눈으로 딱 내려라고 해 이제 그럼 먼저 내려요 한 2식구가 탔다 이러면 내려버려요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서 차 한잔 하는 거고 머 하나 사주던가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한사람이 두사람이 되고 2사람이 4사람이 되고 이렇게 알게 되요 그러다 보면 그 구역에서 딱 알게 되지요 눈만 마주쳐도 '애 어디구나' 하고 알게 돼요.

(3) 청년기

그는 이같은 생활을 통해 범죄자들과 친분을 쌓았고, 오랜 시간의 소매치기 생활을 통해 그 무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게 된 것처럼 설명하였다. 실제 그는 소매치기단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어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럼 밖에 나와서 만나지만 또 만나면 하나를 만나면 둘을 만나요 이렇게 되니까 자동 적으로 그놈이 갑자기 모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자기네 구역에 저기가 있어야지 돼요 아무데나 가는게 아니고 그니까 하는 것도 그것을 알게 되면은 한놈을 만나고 두놈을 만나고 4놈을 만나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만나잖아? 그게 없을 때는 자기가 본게 있으니까 해보는 거죠 배짱으로 그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배는 고프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하는 법이 있거든 혼자 할때는 낮설지만 또 이진 큰일 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선생님 거를 훔치는 걸 옆에서 봐도 '이런 시발,' 하면 그냥 고개 돌렸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지금은 도둑이야 하고 해도 뭐 때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때에는 무서워서 못 본 척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혼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과 곱게 사는 사람은 그걸 생각을 못하잖아요. 가정집에서 곱게 살고 가정집에서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그런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못먹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한거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눈과 귀가 마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발달이 된게 ‘아 내가 잘못하면 굶는구나’ 항상 있어야 되는게 자기가 돈이 있어도 비상금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되고 이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또 헤어지고 저놈 만나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또 그러다가 안 맞으면 다른 놈을 만나서 ‘이런 것들은 싫고 보기 싫다’ 이러면 또 직업도 좋은 것 따라 간다고 도둑놈도 그렇다 ‘저 놈은 다른 도둑 일을 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따라다녀 보는 거다 그러다 보면 그 놈 만나서 헤어지면 다른 놈이랑 같이하고 그렇게 돼서 도둑놈이 되는 것이죠

〈사례 1〉은 청소년기부터 지속되었던 공동생활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생활을 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는 소매치기 등으로 얻게 된 돈을 모아서 세탁소를 여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때 〈사례 1〉은 범죄를 중단할 생각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결혼을 하고싶은 여성을 만나서 깨끗하고 번듯한 직업으로서 세탁소를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73년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말서부터 74년도인가? 제가 나와가지고, 무죄로 한번 나왔어요 제가. 74년 8월에 무죄로 한 번 나와 가지고 아마 내 그때서부터 세탁소를 했나보다. 하긴 했죠. ... 세탁소 하면은 야 임마 그 내가 구두터에 앉아서 닦는거는 아니지만 그 때 당시 왕초가 아닌 그제 있어요. 집도 없고 하면 암마 너 와서 같이 자라 이려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래서 나도 같이 일을 하다가 나도 그때 당시 범죄 한번. 소년수도 갔다오고 했지만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딴어요. 싫어 했지만도 어쩔 수 없이 구두터를 하고서 세탁소에. 이거 또 여자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왜냐, 돈 버는건 좋은데 자본 안들어가고. 내 처음에 자본이 들어가죠. 터를 맡으려다 보면. 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 팔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 서울역, 여의도 63빌딩이다 이러면, 구두를 닦고 있으면은 중소기업 사장이예요.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그럴거예요. 왜냐하면 63빌딩 직원들 몇 천명이 있는데, 6천명이면 10분의 1만 되어도 600명인데 구두 2천원이면 2천원 얼마 입니까. 직원도 두고. 지금도 아마 그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관두고 내가 이걸 아이고, 여자가 너무 고달파요. 밥도 해줘야지 뭐 이러니까 세탁소를 하게 된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 때 범죄를 중단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결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절도를 저질러 수감되게 된다. 수감생활이 끝난 후 세탁소는 동업자에 의해 파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탁소를 한 과정에서 아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친구 여자이죠. 뭐 또 세탁 했던 우리 친구가 기술자 있고 하니까는 내가 배운건 범죄 뿐이고 이러니까는. 또 돈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또 큰 돈이 필요하니까 범죄를 시작한거죠.

(세탁소를 운영하신건가요?)

예. 직접 했죠. 기술자는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는 착실하게 살았어요. 범죄도 모르고 기술도 배워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놈은 돈이 없고, 내가 돈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300만원인가 했었어요. 그래서 가게를 열고, 운영을 하다가 이제 여자를 알게 돼서 나와서 따로 살면서, 범죄를 조금 하다가 얼마 안돼서 한 6개월인가? 징역에 제가 들어갔죠. 그 여자는 얼마 안 있다가 헤어지고, 들어오면서 헤어지게 된거죠. 나와서 이제 세탁소 이제 저기 했죠. 복잡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세탁소는 친구한테 팔아 먹고 나오니까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는 팔아먹고 지 멋대로 했어요.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건 무슨 의미인가요?)

하다못해 정식 결혼을 하게 된다던가.. 거기서부터 딸리잖아요. 하다못해, 여자한테 혼인 비용같은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여자들은 남달리 여자들한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금 한돈에 3만5천원 정도 했었나? 고 정도 해서 여자들 양장 해주고 하면. 그땐 해줄거 해주다 보니까 혼인 날짜를 잡든 안잡든, 그게 있잖아요. 내가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데 필요한게 많잖아요. 그걸 이제 장만 해주려다 보니까 불상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 여자가 재판 끝나기 전까지는 연락이 왔었는데 구형 7년을 받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7년을 다 산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떠난 건 아니에요. 떠난 건 아닌데, 하여튼 비장한 사연이 있어요. 있는데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여자를 위해서 난 저기를 한다는게 화근이 된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여자도 물론 바라지 않죠. 그렇지만 여자가 그걸 알아요? 제가 범죄를 한다는걸. 모르지만도, 알면은 여자가 바라겠어요? 그런걸 속이고 너한테 베풀어야겠다. 왜냐면 내가 약점이 많잖아요. 부모 형제도 없지. 장애도 그렇지만. 누가 막말로 사위로 누가 나같은 놈을 맞으려고 그래요. 지금 사회나 지금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놈 수두룩 한데 누가 나같은 놈을. 누가 그걸. 그런걸 우린 마음에 새기고

있단 말이에요. ... 그 정도 조금 되다보니까는 책임감 있고 하니까 서로 좋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지만은 내가 해줘야할 도리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악화돼서 계속 1년 이렇게 살다가 그러다 80년도 3월 8일을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소매치기 징역을 산거예요. 내가 그때 2년을 살고 나왔어.

이후 <사례 1>은 세탁소 운영 중 만난 여성과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하였다. 이 여성을 만난 후 약 5년간은 드러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딸이 출생하였고, 과일유통업, 의류유통업 등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였다.

결혼은 인제 이 여인을 만나긴 81년도에 정확하게 만났어요. 81년도 한 10월 1일날 정확하게. ... 이 사람이 어쩡다 소개 비스름하게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쪽 부모들은 인제 나에 대해서 조금 안다, 알고 나서부터는 뭐 무조건 반대겠죠. 에.. 뭐 생각하나 마나 뭐 몸도 시원찮고 뭐 부모형제도 없다 그런다니까 뭐 ...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인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용인에서 시작을 해다 80..에..2년도 3년도를 용인에서 인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첫 애를 83년도 5월 6일 첫 딸을 봤죠. 용인에서요. 그래가지고 용인에서 인제 저가 인제 그 인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저가 뭐 의류가게도 하고 동대문에서 뭐 했으니까 내가 뭐 했지. 뭐 아무것도 없이 거기야 했어요 뭐?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 이후로 범죄와 체포가 반복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사례 1>은 고아원때 만난 친구의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고아원에서 만난 친구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를 돕기 위해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또 한번 당한 거예요. 이게 이 여자 때문에 당했다기 보다 이게 내 운명인거 같아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뭐 친구가 뭐 말아먹고 뭐 그래도 같이 또 부도났어요 그 놈, 친구. 인자 나 ‘이케, 이케 댔는데 이 여자 부모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 집에서 좀 도망을 가야된다. 죄진 건 없는데 도둑놈이나 강도질은 아니다.’ 이런데 어떡하냐 하니까 아 우리집 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인제 그 친구가 고아원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데 또 부도나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가게끔 됐어요. 인제 빗쟁이들 무작 쳐들어 오니까 그걸 저가 인제 아니까 내가 간접적으로 보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해가지고 친구를 도망을 보내버리고 난 또 뭐, 뭐 남의 집에서 뭐 난 그 친구한테 돈을 다 줬죠. 많이. 많이는 아니고 그 때 당시로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오천만원 돈 계산이 되는 거죠. 그때는 뭐 오백만원 정도면은 큰 거예요.

그리고 <사례 1>은 예전에 저지르던 소매치기 동료들 만나 다시 범죄를 시작하였고, 이 일로 전과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인자 83년도예요. 83년에 애를 낳고서, 애를 낳고서, 그..저..그 전에, 전에 그 있던 후배부부, 소매치기를 만난 거예요. 이이 범죄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매치를 만났는데, 아 나도 형님, 형님만 나 뒤를 봐주면은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그니까 나는 내가 잘나거나 전달, 깡패는 아니지만도 그 때 당시만 해도 ... 그러니까는 범죄꾼들이 ○○이 형이라 그러면은 어 파워가 있어 그 형한테 가면 파워가 있어.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찾아가. 그러면 내가 뒤만 따라다니니까 범죄 할 때.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범죄라면은 조직이 되는 거예요 조직이. 세 명, 네 명 모여가지고 다섯, 여섯 명 되면은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하고 범죄를, 나는 따라만 다니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현장에. ... 우리 식구 애들이 지금 범죄를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앓아, 일루와, 하고 얼마씩 쥐여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름으로 해서 애들이 뭐 다 뻥하게 물론 속이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하루 버는 거 얼마나 벌었어 이삼백은 벌었어. 그러면 다섯 명에서 너는 얼마, 너는 얼마짜리다, 너는 얼마짜리다 그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를 하다가 잘못 돼가지고 나까지 도망을 다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월 아니 그니까 예... 우리 딸이 5월 6일 날, 83년 5월 6일 날 출생을 했으면 10월 달쯤에, 10월 달쯤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 사고가.

이후 약 5년에 걸쳐 5회의 절도 및 장물 전과가 있었는데, 수감기간을 고려하면 거의 출소하자마자 체포되는 생활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중장년기

상당수의 절도 전과 이후 장물취득과 경제범죄로 범죄 유형이 잠시 변화한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알고지내던 범죄자들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도움을 받은 범죄자들이 배신을 하여 체포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니까 그건 이제 계획적인 게 아니고 ... 그것이 내가 그놈이 700만원을 가져와서 '형님 이거 40만원만 계산해서 210만원만 주세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내거예요. 내가 이제 쓰던지 말던지 그래서 이제 내가 210만원을 주고 700만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를 아는 청량리 선배가 내가 하도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럼 내가 수표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도난수표인데 이제 또 도난이랑 위조랑 다르죠, 위조의 경우 징역을 많이 받고 도난수표인데 형님이 이거 쓰고 200만원 형님이 이거 갖다 쓰고 원금만 주십쇼' 쓰는 방법은 걸려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더라고. 700만원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쓰다가 걸렸는데 내가 줬다고 해서 걸리게 되었어요. ... 어렵게 살아온 동생놈들이 도둑질을 했더라고. 88뎡가 올림픽 금화 같은게 많이 나왔어요, 올림픽 금화같은거? 그래 가지고 내가 잡혀다가 주고서 개를 내가 재워 줬다 내가 머 그때 뭐 진짜 롤렉스 금화 같은 거 많이 가져왔는데 그거 멀 옛날같이 나는 그때 수원에서 유흥업소를 할 때인데, 내가 호텔을 경영했었는데 이놈들이 와서 내가 무지하게 믿고 아끼는 동생이었던 말이에요, 의형제 이상으로. 나는 지금도 그놈을 찾고 싶어. 근데 나중에 공주교도소에까지 알고서 내가 면회를 가고 했는데, 이 자식이 훔쳐와가지고 나한테 맡겨놓고 공범이 2,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놈이 이제 불었지. 이 사실을. 나한테 가져다줬다는 그래서 내가 그걸 껴해서 다른 것이라 병합해서 징역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례 1〉의 경우 다시 한번 범죄 유형의 변화를 보이는데, 50세 이후 본격적으로 마약 유통을 시작한 것이었다. 이때 이후 〈사례 1〉은 10회 이상의 마약유통 전과를 가지게 된다. 당시 〈사례 1〉은 절도 등으로 모은 돈으로 유통업을 시작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IMF 당시 부도를 당하였고, 이때 사귀게 된 사람을 통해서 마약 유통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챙피한 어떠한 애한테 그러다보니까 간단하게 되몬 사회에서 인제 이렇게 뭐 별 고생을 다 하다가 이렇게 좀 처자식을 낳고도 했던, 사업도 해다가.. 이렇게 좀 살아볼라 했는데 IMF 때 또 부도를 당해서.. 전부 그 뭐 징역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부도를 당해가지

고 징역을 뭐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때 인제 뭐 인제 뭐 젊었을 때 처음했죠 그때. 에휴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야... 내가 이게 무슨 부도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야... 이게 이 나무라는 게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무너져도 여기서 또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 집행유예로 나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인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때 그게 빠졌구나. 사업을 하다가 에.. 그전에는 이제 집행유예로 절도는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마약을 시작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범죄로. 그래서 인제 어.. 그 집행유예 나올 때 교도소에서든 알고 밖에서도 알고 하니까 마약범들을 내가 알았지만 마약을 하거나 팔거나 이거를, 판도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알아가지고, 형님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지 그러니까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뭔데, 형님 내가 마약을 갖다 줄 테니까 이게 얼마입니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팔면 얼마 남습니다, 그럼 오백만원인데 오백만원에 사면 천오백, 이천만원입니다, 어 그래?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근데 형님이 이걸 잘 팔아야, 무슨 시장에 물건을 막 팔면 팔수록 돈을 벌지만 이거는 여러 명 일수록 저기 많으니까 형님이 알아서 고르면 돼요. 그래서 마약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례 1>이 운영한 유통업이라는 사업 역시 합법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음을 잡고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제가 ○○통상하고 그때 당시가 87년도 6년도인가. 그때 ○○통상 법인을 인수를 했어. 나름대로 몇 천만원 있어가지고 인수를 해가지고 같이 박상모하고 유부장하고 나까지 셋이 범죄하지말고 유통을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게 또 잘못이야. 요놈의 새끼들은 유통업에서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되겠지만도 요놈들은 유행사무실을 차려놓고 물건을 받아서 텀핑치고 이렇게 전문이었어 그때. 나는 정상으로 용산역에서 ○○식품이라고 꿀, 조청, 간장같은거 정식으로 직통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놈들이 자꾸 장사를 하다 보면 파리도 끼고 고래도 끼고 그런 건데, 이게 고스톱치고 놀다보면 친해지고 하니까 그놈들은 그런데 도가뒸고 난 정식으로 하는거야. 범죄는 알았지만 이런 건 또 모르는 거야 사회생활은. 근데 그 범죄를 안하고 살라고 하면 또 그런 놈들이 껴요. 그래 나를 못살게 구는거야. ○○식품을 하다가 형님 이런저 하지말고 크게 확대를 해봅시다

하는데, 나도 우리나라에 뭐 초창기에 한게 많아요. 내가 저 돌 이런거 부터 정수기, 기름 뭐 이런거 깔고 자는거 뭐야 매트, 삼성에서 바이오부터 그거 초창기에 시도를 해봤지.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해봤어요. 많이 시도를 했는데 했는거 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유혹이 빠르게 왜 빠르냐 하면 남이 뭘 했는데 빠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나는 아이고 빨리 여기서 발 빼고 싶어, 지금 여기가 비정상이야 해서 누가 옆에서 혹 하면 혹 넘어와. 왜, 여기서 범죄란걸 싫어하니까 저 사람 저거 진심이 구나 하고. 한 다리를 거쳐야 하는데 확 하고 빠져버리면 거기서 내가 약간. 왜냐, 사기도 사기 칠라고 하면 당하는 것이지, 나는 사기 칠라고 하는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잡고자 아이고 살아보자 하면 솔깃한거예요. 저 장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는 박○○랑 유부장이랑 우리 와서 정식으로 댔어요. 그런데 장난꾼들이 끼게 되어있어 이상하게. 내가 성격이 화통하고 범죄꾼이 아니라 그런지 이상하게 쿨하게 얘기하다보면. 강사장, 이런 것도 안다면서? 이러면 알긴, 이 사람아. 내가 도난수표라던지 법쪽을 좀 알고 하니까는 이게 잘못 빠졌다가. 그 놈들은 이미 그쪽에 도가 튼 사람들이야. 내가 ○○식품 용산에서 국수 같은거 할 때 그제 장난꾼들이 벌써 시작이 되는거야. 형님, 이게 어음이라는데 가짜 어음은 아니예요. 디데이 날짜가 바뀐 어음이라는데요. 이 어음으로 몇 천만원 쓰고서 물건은 어떻게 하고 같이 쓰자 이거예요. 그럼 ○○식품에 전화를 해요. ‘아이 사장님 이게 3천만원인데, 내가 이거 받은거야. 날 믿고 물건 좀.’하면 줄 수 있죠. 발행인이 다 있고 돌아오는 거니까. 3천만원을 다 줄 수 없고 물건을. 담보도 지금 오바가 됐으니까 현금 결제를 20%합시다. 600만원만 섞어 넣어주면 되는거예요. 그럼 그래. 한 25% 현금 만들어볼게 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섞어서 2천 4백만원어치 준다 이거예요. 그럼 간장을 받든, 조청을 받든 얼마 안돼요. 받았어요. 받으면 천 오백 가져가고 그러면 난 팔아서 바꿀 수 있어. 그런데 그놈들은 그게 아니야. 현금이 딸리니까 텀핑 치는거야. 그럼 3천만원이면 천만원 받으면 좋은데,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제 천만 뭐 되지도 않아. 한 30% 60% 계산을 하면 딱 돼. 그럼 현금 받고 파는거야. 그것만 사는 놈들이 있어. 그런 유통업이 있는 거야. 난 그때 알았어.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례 1>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범죄 동료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며 소매치기 등의 절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에 대해서 <사례 1>은 고아원에서 나온 직후 연고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살기위해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제가 인제 아무 뭐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막 나와 가지고 뭐 인제 사회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냥 나가라니까 나왔는데 뭐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걸 무슨 뭐 오아시스도 아니고 뭐 여기 무슨 뭐 사막 그 맨땅에서 나오니까. 그냥 고아원에서 같이 사는 애들 그때 당시 60년대인데. 60년대, 60년대, 70년대 되기 전인데 4-50년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나마 고아원에서 인제 그 같이 살았던 애들이 뭐 구두도 닦고 신문도 뭐 팔고 뭐 갖은 고생 다 해봤죠.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다가 인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것도 뭐 아는 사람들이 뭐 응? 도둑놈도 있고 하대. 뭐 도둑질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프니까 남들이 아 이거 이거 겨울 되면 따뜻하고 이거 뭐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그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따라서 그냥 범죄에 그냥 뭐, 뭐지 뭐지 뭐시기 시장에서 뭐 하나 훔쳐 먹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 범죄 지속

<사례 1>은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관계를 맺은 범죄동료들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를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예를들면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동료들은 마치 출근하듯이 특정한 장소에 가서 매일 만나야 하는 관계로 설명하였는데, 가기 싫더라도 반드시 가서 얼굴을 보이고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각출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자를 만났을 때거나 간간히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무슨 일과, 선생님 일과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아프거나 병원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가야 한다구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와 같이 그 시간이 됐을 때 가기는 싫지만 모여와요. 장소가 딱 있어서 9시 무슨 다방이다. 이러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다방에서 차 한잔 하다가 야 가자 이러면 가야하는 것이고. 공금이라는 것이 차비는 자기끼 자기끼 내야하는 것인데 움직이는 것이죠. 나가면서부터 요거에 그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3) 범죄 중단

〈사례 1〉이 공식적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기간은 30세부터 약 5년간이다. 이 때는 결혼과 자녀 출산등이 있었던 기간으로,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잠시 뿐이었으며, 오히려 결혼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제일 행복했던 것은 비록, 비록 뭐 범죄 속에서 살았든 안 살았든 우리 마누라 만나가지고 첫 애기를 낳아가지고 85년도 어..... 아 83년도 5월 6일 날 뭐 그 전 서부터도 하여튼 딸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인자 빨래해주고 그 뭐 미역국 끓여줘가면서 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그러고 인제 또 더 나간다면은 그 시절 행복이 뭐 매일 온 게 아니라 살짝 스쳐갔지만도

(4) 범죄 재시작

〈사례 1〉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범죄 동료의 유혹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은 평화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으나, 예전부터 범죄를 함께 저지르던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사례 1〉은 다시 소매치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소매치기 우범자로 (걸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가 도망이 된 거예요. 도망이. 도주가. 수배는 아니고 지목 되가지고 이제 잡으러 오면은 잡혀가지는 않는데 가긴 가지만 내가 징역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에서 못 살게 된 거예요. 그 조용하고 좋았는데 그거 때문에 우리 그, 그 가족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그 뭐 슬픔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인에서 그냥 이, 이 좋게 소문 좋게 잘 살고 있는데, 평화롭게 고계, 고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엔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범죄로 조금 더 별라고 그러다가 내가 거기에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우리 처가, 우리 지금 처 집을 돌려 싸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사례 1〉은 자신의 경력 범죄자가 된 것에 어릴적부터 알아온 고아원 친구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음 범죄를 시작한 것도 그와 함께 엮고, 범죄를 중단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 친구가 유혹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여 범죄

를 그만 둘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근데 이제 이것만 이렇게 많았다면 내가 이렇게는 안됐을 건데, 내가 제일 원망하는 게 그 친구새끼예요. 이○○이라는 놈. 내가 그 새끼만 안 만나고 그 새끼 세 번을 만나고 세 번을 그렇게 된 거예요. 송탄에서 가게 얻어놓고 그렇게 됐지, 또 용인에서 그 놈 때문에 용인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연락 와서 도쿄호텔 거기 남산 올라가는데서 만났지, 만나가지고 또 인제 뭐 전자제품 장사를 하다가, 또 그놈의 새끼가 막바지에 가가지고는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중에 그게 나중에 내가 건축 쪽으로 할 때 나타나가지고는 그 인제 당자를 인제 빌려 주는 게 되가지고 그 지금도 재판 때 그걸. 그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저 그 뭐 병합이 되가지고. 내가 도망 다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때 인제 마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도피 시작이 안됐으면 내가 마약쟁이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나도 그랬어요. 에이 씨 할 짓이 없어서 마약하고 있냐.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길에 빠져보니까 이것이 뭐 뭐라그럴까 덩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 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 친구에 대해 원망을 하지만도 지금 나타나도 내 뭐 그냥 용서가 될까. 마음은 그냥 갈아먹고 싶은 정도인데 나타나면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울지도 몰라. 내가 왜. 너무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례 1〉의 사업 실패로 인한 문제상황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없다고 생각한 〈사례 1〉은 범죄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챙피한 어떠한 애긴데 그러다보니까 간단하게 되든 사회에서 인제 이렇게 뭐 별 고생을 다 하다가 이렇게 좀 처자식을 낳고도 했던, 사업도 해다가.. 이렇게 좀 살아볼라 했는데 IMF 때 또 부도를 당해서.. 전부 그 뭐 징역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부도를 당해가지고 징역을 뭐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때 인제 뭐 인제 뭐 젊었을 때 처음했죠 그때. 에휴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야.. 내가 이게 무슨 부도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야.. 이게 이 나무라는 게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무너져도 여기서 또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범죄적 성공경험이다. 즉,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지속하고, 재시작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는 범죄적 성공경험이라 할 수 있다.

〈사례 1〉은 범죄를 빨리 습득해서 꽤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렇게 돈을 쉽게 벌었던 경험은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거나 돈이 필요할 때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다.

몰랐던 내가 이 기회를 빠른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습득을 한 것이에요. 고아원에서 주는 밥만 먹다가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4, 5년 만에 터득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범죄도 빨리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돈은 잘 벌었죠. 지금 계산하면 내가 생각해도 여기서 먹고사는 생각하는 시간 뿐인데 생각 안하겠어요? 과거를. 지금돈 150만원이면 작은게 아니거든요. 한 200만원씩 벌었어요. 하루에 말로만 거짓말로 하는게 아니에요 85년 6년도 이때만 해도 내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깐, 3000만원이고, 이걸 다 어쨌나..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어떻게 썼나 생각을 해 봤는데 내 아내를 82년에 만났는데 내가 도망을 다녔을 때 집에 들어와서 보니 오히려 빚을 지고 있었어요.

사업등에 문제가 생겨도 자본을 절도를 통해 쉽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장사할 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서비스 방식이 틀리다 근데 나는 서비스 방식이 더 좋아, 왜냐하면 쉽게 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망하게 되는 거죠.

2. <사례 2>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서울) 1954			
초등학교 중퇴(5학년) 1966 -사유: 가정형편-			
고물판매(금촌/일산 등) 1969			
이사(경남) -서울로 옮겨-			
공장근무(유리공장) 1972			
군입대(포천) 1975			
부모님 사망 군전역 1978			
공장근무(유리공장) 1981			
공장 근무(우 공장) -불규칙적- 여관/기숙사생활		1989 상해 벌금70만	
		1990 상해 벌금20만	
종교활동 (기독교)		1995 상해 벌금100만	
		1996 철도 징역8월+집행유예1년	
		1997 -차량철도- 철도 징역8월	
		1999 철도 징역1년6월	
교도소(춘천)생활 중 한각 경험		2001 철도 징역2년	
		2003 폭행 벌금150만	
노숙생활(서울)		2005 철도 징역1년6월	
		2006 철도 징역3년	
		2009 점유이탈물류형 벌금70만	
		2009 철도 징역4년	
		2013 철도 징역4년	
		2016 징역 8월	
		2018 철도 징역 2년6월(본건)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2〉는 어린시절을 기성회비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였다고 기억하였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 학교를 다니기 어려워 초등학교를 도중에 그만두고 고물 등을 주워 팔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교는 ○○국민학교 중퇴했습니다 ... 기성회비를 못내가지고 ... 네 많이 어려웠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초가집같은데 그런데 살았어요. ... 5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 학교 안가고 고물 좇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시키신 건가요?) 자발적으로 한거죠 뭐 고물상에다 고물 좇어다 팔고..

7살 때까지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이전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 7살 때까지는 ○○ ○○에서 ○○초등학교 다녔던 거 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학교와는 한 30분 정도 거리를 걸어서 통학했던 거 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당시 〈사례 2〉는 친구들을 사귀 적이 없다고 하였고, 형제들과도 헤어져 살아서 어린시절 정서적 교감을 나눌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친구들은 못 사귀고 혼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셨을적이 고 그냥 뭐 이렇게 초가..그 집을 하나 지어가지구 산 밑에다, 거기서 같이 생활했어요. ... 그 거서 생활하다가 또 철거되가지구 ○○시에서 와가지구 ○○시에서 유리공장 다녔죠. ○○유리공장

(그때 또래친구들이랑 어디 놀러다니고 그런 기억은 없으시구요? 왜 친구를 안사귀셨어요?) 친구사귄 틈이 없었어요. ... 선생님 기억도 잘 안나요 그런분은 이름도 이름도 잊어먹고 다잊어먹었.. ... 아니..가난하다고 그런젠 아니라 나는 뭐 그렇게 그때는 내가 확실히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잘 대면을 잘 못 했어요. ...

(그럼 혹시 형제분 계세요?) 형제는 ... 다섯 오형제가 있었구요고 ○○시까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시에서 헤어지는 바람에.. 내가 유리공장에 다니고..혼자..지금 혼자됐죠. ○○시에서 나와가지고 ○○동으로 가서 ○○동에서..살았는데 혼자 생활 해서 여관생활하고 뭐 그런거..

김○○는 어린시절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굳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동네 부자집에 일을 해주고 떡을 얻어온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 어렸을때 계실 때 제일 기억나는게 뭐예요?) 기억나는 거 하나 없어요. ... 어렸을 때 뭐..기와집에서 살 때 떡해주고..열번 아홉번을 했어요. 뭐 이렇게 콩가루 묻혀서 돌때 하는거. 그걸 한 아홉번 해줘서 그 기억밖에 없어요.

(2)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김○○는 형제들과 헤어지고 혼자 공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설명하였고, 그 밖에 다른 기억을 진술하지 않았다.

형은 노동 일 다니고, 나는 유리공장 다녔기때문에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엇갈리는 바람에. 나는 또 유리공장 다니다가 거기서 가끔 형도 따라 땡겨봤는데 제 적성에 안 맞아요.

(유리공장은 스스로 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소개해주신 건가요?) 소개시켜준게 아니라 유리공장 찾아가서 내가 부탁한 거예요. 어떻게 되가지고 내가 일하자 그러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사례 2〉는 청소년기 별다른 비행 경험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어린시절 고물과 관련하여 다소간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공식기록에 남을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어린시절부터 독립적인 생활을 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안다니던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도 훔치고 그런거 하잖아요?) 자전거를 훔쳐요? 난 도둑질한적은 없어요.

(그럼 어렸을때 되게 순하게 사셨나봐요. 공장다니고 일하고) 아 고물줏으러 다닐때 그때 인제 뭐 가서 오다가 그만거 고물 뭐 그런거 좇으러. 다른건 없어요

(그럼 어렸을 때 기억할 때 제일 행복했던 때 기억이 뭐예요?) 없어요. 재밌는 때가 어땠어요.

(그럼 어렸을 때 말고 지금까지 기억중에 제일 선생님한테 좋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모르겠는데요. 좋았던 때가 뭐. 좋았던 때가 별로 없죠.

(아 재미없게 사셨네) 재미없게 살았어.

(3) 청년기

〈사례 2〉는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청소년기를 보내던 지역에서 공장을 다니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때에도 안정적으로 공장에 다닌 것은 아니었으며, 공단 근처에서 머물며 비정규적으로 일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는 내가 스물한살때가.. (혹시 군대보직은?) 보직은 병장제대했죠. 차량정비. 네 수송부. ... 나는 차는 안타고 그때 운전 면허증 딸래다가 불합격 받아가지고.. 기술도 뭐 엔진교환같은거 그런거 좀 해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없어. ... 제대하고 서울로 막바로 왔죠. 집으로. 네. 옷공장. 유리공장 몇번 다니다가 안돼갔고. 유리공장이 힘이 들고 그래서 안돼갔고, 유리공장을 나와갔고 옷공장에서는 뭐 탈수도 하고 건조도 하고 뭐 그러는대로 바꿨죠. ... 공장을 했다가 관렸다가 그랬고, 일 안 할 때 같이 형이랑 노동일 하고 그랬지. 노동일은 하루 일당 받고 그랬지.

〈사례 2〉는 청년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깊은 교류 없이 주로 홀로 지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때 직장동료나 같이 술마시는 분 없었어요? 어떤분이랑 친하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친하게 지낸적은 전 별로 없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 못했어요

(동거나 연애나 해보신 경우는?) 없습니다.

그는 여유시간과 돈이 있으면 혼자 비디오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으며, 다른 사회 활동이나 친분관계를 유지한 경험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그때 혹시 생활이 좀 어려웠나요?) 생활 어려운건 없어요. 그냥 월급타면 비디오보고 그래가지고 어려운건 없어요. ... 그 때는 딱히 없고 그 때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비디오 보고 영화보고 술도 먹고 시간낭비 했고

〈사례 2〉는 군 제대 즈음에 부모님이 사망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나 감정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군대 갔다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요. 어머니 막 앞도 안 보이시고 그랬었죠. 돌아가신 후에 그냥 같이 그 ○○ 그 산에 묻어주고 그랬죠. (어떤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고혈압 증세가 있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힘이 없다고 그랬고 뭐 그냥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후에 돌아가셔서 둘이 같은 그 산에 같이 장례를 치러 드렸어요. (그 때 심정이 어땠나요? 그리고 심정이 힘들었을텐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부모님이 잘해주기도 했고, 슬퍼서 장사 지낸 후에 몇 일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 울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냥 어떻게 잘 견디서 지냈던 거 같아요.

청년기의 〈사례 2〉는 상해 전과를 처음으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와 싸움이 있었던 것이라 설명하였다.

(유리공장 다닐 때, 그니까 차 문에 손 대기 전에 절도 외에 상해로 벌금 2번이나 받으셨던데, 70만원 한 번 20만원 한 번 혹시 기억나세요?) 그거 유리공장 다닐 때, 그 같이 다니던 친구랑 싸움이 일어나서 상해 그거로 70만원 냈어요. 성동 구치소에서 그 70만원 나왔어요. 그 때 입술을 맞아서 한 방 맞았어요.

(4) 중장년기

청년기에 두 번의 상해전과만 있었던 〈사례 2〉는 40세가 지나면서 10회 이상의 절도 전과를 기록하게 된다. 최초의 절도 경험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우연히 누군가 차량에 두고 내린 지갑이 보여 절취하게 되었고, 이 이후 쉽게 돈을 번 경험 때문에 반복적인 절도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떻게 범행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옷공장에서 일을 하고 나오는데, 그냥 ○○동 동네에서 마을 한 바퀴 돌다가, 봉고차가 활짝 문이 열려있는데, 거기에 가방이 있고 지갑이 있길래 그걸 열어보니까 돈뭉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비디오도 보고 막 그랬더니 그 맛에 계속 열고 그랬죠. 90만원 정도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비디오 보고 막 그렇게 쓰다보니까, 막 계속 손이 가고 그랬어요. 그 후에도 80만원, 73만원

등등 5만 6천원 적은 금액까지 계속 손이 갔어요. ... 주로 낮에 하죠. 밤에는 차에 돈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낮에 했죠 낮에.

(처음에는 그렇게 우연히, 그 다음에는 찾아 다니신거죠?) 지금은 찾아다니죠. ... 문 열어서 90만원 쓰고 나니까 계속 차가 보여요. 그래서 보니까는 차 안에 지갑이 떨어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문 열고. 쓰고.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2〉는 청년기 이전에는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주장한다. 〈사례 2〉는 욕심없이 주어진대로 순응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청년기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범죄를 안 저지르고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 때 당시에는 범죄 저지르자고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나 범죄의 유혹이 없었나요?) 그 시절에는 뭐 따로 범죄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같이 뭐 술이나 한 잔 먹고 그 ○○동 지나가다보면, 아는 사람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그러다보면 술도 한 잔 하고 그랬죠.

(전에 더 어릴 때, 고물 줌고 계실 때는 그 때는 남의 물건에 대한 욕심은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남의 물건에 막 손대고 그러려는 욕심은 없었어요. 그냥 장사 나가시는 어머니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범죄가 본격화된 것은 절도를 통해 일하지 않고 큰 돈을 얻게 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열린 차문을 통해 보인 가방 속에 큰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돈을 가져다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사례 2〉는 비정규적으로 나가던 공장을 다니던 것도 그만두고 절도, 체포, 수감, 출소를 반복하게 된다.

(처음 범죄 시작하신 계기가 우연히 열린 차문을 보고 시작했다고 하셨고, 그 뒤로는 판 일 별로 안하시고 직장도 안다니셨고요?) 예. 직장도 별로 안다녔어요.

(처음에 차 문 열려있고 현금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 깜짝 놀랐죠. 차문이 열려있고 가방 들춰봤는데 현금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90만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랐죠. ... 무조건 확 집었어요.

(보통 범죄 처음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 가져가야 하나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왜그랬을까요? 평소에는 직장 다니시면서 남의 것 손도 안대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않고 무조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는 현찰이예요 현찰. 만원짜리 90장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썼죠.

그때 내가 차 문을 처음 열어본거잖아요. 그래 돈이 그렇게 생긴건데, 별 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돈이니까 쓰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고나서 자꾸 자꾸 하다보니까는 이게 왜 자꾸 돈이 생기지? 이렇게 차문만 열면 지갑에서 돈이 나오네 해서 그게 왜그런가 하고 생각은 해봤죠.

(2) 범죄 지속

〈사례 2〉는 절도로 돈을 절취하여 체포된 이후 범죄를 중단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출감이후 취직이 어렵고 돈이 필요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절도를 하였다.

(감옥 갔다온 후에는 이제 감옥 그만오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때는 다시 나오면 돈이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또 털고 그랬죠. 요즘에는 이만저 자주하면 뭐하나, 그냥 안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 나오신 후에 다시 취직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 때 그런 생각 들었죠. 들었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죠. 그 때 유리공장에서 일하려고 갔는데 거절당하고 옷공장은 사라져있고 그 후에 빵공장도 찾아갔는데 빵공장에서는 사람 안 쓴다고 해서 뭐 그냥 다시 손댔죠. 그 당시에 취직했으면 뭐 돈도 모아서 저축도 하고 그랬고 다시 손도 안 대고 그랬겠죠.

3. <사례 3>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통영)..... 1950		
어머니 사망.....		
계도와 생활 (차별경험).....		
중학교 중퇴..... 1966		
가출경험(1개월)..... 1969		
객지생활(통영/부산) -식당, 향공정, 칠기, 그물공장, 연탄배달 단위-		
군입대(창원)..... 1971		
군전역(의가사)..... 1972		
불편판매(서울).....	1974	절도(청바지)..... 절도 집행유예2년+징역10월
국수식당 운영(서울).....		
국방부 구내식당 근무..... 1978		
결혼(서울)..... 1980		
삼청교육대 강제수용 딸 출생.....	1982	집행유예(복행)..... 복행 집행유예2년+징역8월
아들 출생.....	1985	 절도 징역10월
노래방운영(충주).....		
식당창업->부도(통영).....	1993	 특수절도 집행유예3년+징역1년
연탄가게 창업(부산) 카펜터 운영(충주) 이혼.....		
가구공장운영(시흥)->부도 중풍 발병.....	1999	 절도 징역 -예식장 축의금 절도-..... 절도 징역10월
신앙생활 -범죄응답결심-	2001	 특수절도 징역1년6월
	2007	 절도 징역 -예식장 축의금 절도-..... 절도 징역1년6월
	2009	 절도 징역2년6월
	2012	 상습절도 징역3년
아버지 사망.....	2015	 상습특수절도/사기 징역1년
자녀들과 연락 단절.....	2018	 상습절도 징역3년 (본건)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3〉은 지방 어촌 도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어서 어린시절의 가정형편은 어렵지 않았으나, 계모의 학대와 차별이 〈사례 3〉에게는 아동기의 문제상황이었다.

저는 고향이 ○○이에요 ○○인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로운 어머니가 와서 때리고 그래서 그런거예요. 아버지는 군인인데 상사로 제대해서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서 자식들한테 공부시킬 생각을 안하고 일이 시킨거라. 염소를 잘 못봤다고 책을 잡아서 찢고 구석에서 불지른뽀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등 상사로 제대해서 아버지가 군인정신이 박혀서 딱 때리고 난 뒤에 교육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을 감싸준거야. 아버지는 군인정신으로 옳게 말씀하시고, 엄마는 맞는게 안타까워서 거짓말해주고 그런거야. 근데 내가 군대 입대하기전에 새엄마가 온거야. 애 셋데리고. 아버지와 23살 차이내고 나랑은 12살 차이니깐 남들이 보면 내가 결혼한 줄 알겠지. 그 정도로 젊은 여자야.

(근데 아버님께서 직업군인이시고 땅도 좀 있으시고 그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들을 일만 시켰어요?) 예. 어려운 환경이 아니요. 그만치 군인정신이 박혀가지고 일만 하는 걸 좋아하고. 일을 하러 가면 남들보다 더 일을 해. 일을 해야 밥을 주는거야. 옛날에 보릿고개 때에는 등따시고 배부르게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큰 드럼통에 보릿쌀 거기다가 3, 4통은 있어야 하고 쌀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지. 넉넉한 생활, 분명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어렸을 때는 순전히 가정의 불화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엄마 압력으로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애를 3명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는 찬밥 되고. 이러니깐 객지로 나돌아다니게 되니깐 배움이 없고. 결국은 돈이 딸리고 취직이 잘 안되고 이러면 결국은 그 나중에 나쁜 짓을 하더라 이말이야.

(2) 청소년기

〈사례 3〉은 청소년기에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버지의 학대와 계모의 차별로 중학교를 미처 마치지 못하고 객지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사례 3〉은 학교생활을 원했지만, 집을 나가 부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후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 부산에서 직장을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1차 면접에서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다고 진술하였지만, 2차 면접에서는 다른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에 초등학교만 다녔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을 야간 중학교를 다녔어요 ○○에 ○○중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참 그것도 사연이 많은거야. 이게 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해서 급장을 했던 사람이야. 수학하면 앉아서 다른 사람은 못풀어서 주판가지고 몇 단이고 할 정도로 잘했어. 내가 공부를 그리 좋아했는데도 그게 참 여건이 안돼가지고... 그 한마디로 가정불화랑 월세금도 잘 안주고. ... 월세금을 잘 안 주는거야 아버지가 한마디로. 서모 때문에 안 준거야. ... 군대 가기 전까지는 부산에서 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식당 뒀. 부산 간 건 20살 다 되갈 그 나이니까, 19, 20, 21 이 사이니까 제가 22살에 군대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물 한 살까지는 부산에서 직장생활 한거요. 그물 째는거 있잖아요, 그물. 내가 그물짜는거 기술자요.

솔직히 해서 나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하잖아. 초등학교뿐이 안나왔어.

(3) 청년기

〈사례 3〉은 군대에서 사고로 인해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어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계모와의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 〈사례 3〉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섬에서 왔으니깐 무식해. 막 반찬 같은거 해도 나는 안주고 자기 자식들 준다고 그게 서러운거야. 그것 때문에 집을 뛰쳐 나온거야.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다가 군대 영장이 나오게 된거예요. ○○ ○○사단을 갔는데 머리에 총알을 맞았어요. 총알이 박혀가지고 그 때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예비군만 면제받고 의가사 제대를 한거예요. 일등병으로 있다가 의가사를 해서 완전히 마치지 못하고 육군통합병원에서 치료받았죠. 머리에 총 맞은거 쉬쉬해서 자기들 모가지 날라갈까봐 고마 쉬쉬해 가지고 언능 제대 시킨거예요. ... 군대생활을 하다 총에 맞아가지고 부산 의료병원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총알 빼내고, 총알 머리에 박힌거 빼내고 수술하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그라고 나서 내 집에 서모가 그때 왔지. 와가 있었어. 애 셋 데리고 왔는기야. 아들 하나 딸 둘 데리고 왔어. 딸이 ○○라고 ○○, ○○에서 결혼해가 사는거

요. 저가 그 당시는 결혼을 안하고 ○○에 있다가 직장생활하고 서모랑 사이가 안좋더라구요. 예를 들어 음식같은거 먹는거 갖다 놓으면은 한마디로 나는 찬밥 신세고, 맛있는 거는 선반 밑에다가 딱 숨겨놔다 지 아들한테 주고. 지 같은 경우에는 바보가 아닌 이상, 객지생활 오래하다 보면은 눈치가 딱 아니까 고마 집에 못있겠더라고. 그래 속상해가 그러면 아버지는 서모 편들어가지고 잘못된거 없어도 무조건 욕을 하고 한 대 때리 이라니까 얼마나 내가 꽤썸했으면은 내가 아버지네, 아버지 내가 성인되면 복수할꺼니까 두고보자고. 베개다 써붙여놓고 객지로 떠난거야. 객지로 떠나고 군대 갔다가 집에 왔는데 서모하고 사이도 안좋고 하니까 객지로 떠났는데, 객지에 떠난게 어디로 떠났냐면 서울로. 누가 서울로 가자 이래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사례 3>은 식당일을 시작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사례 3>은 이때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국수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주방장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이 된게 어디로 땀냐하면 ○○에 저 ○○○가 가면 지금 ○○극장이 없어졌지만은 ○○○가 가면 ○○이라고 있어. 큰 빌딩 있어요 ○○ 종합 양분식이라고 있어. 양식, 일식, 한식 이런거 양분식이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국수에 전문분야로, 국수에 들어간거여. 김밥말고 오뎅이랑 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자 사장 신임을 얻어서 일을 좀 하다보니까 좀 기술자가 되가지고 어느정도 몇 년 한..한 1년 이상 넘게 있었구나. 있다가 ○○로 가서 ○○이란데 가가 주방장을 한거요. ○○이란데 가가. 주방장 그 메밀국수가락, 튀김국수, 계란국수, 콩국수, 유부국수, 오뎅국수 국수 종류가 짝 나왔어. 이거 내가 기술자여. 큰 칼이 굉장이 소바가락, 소바칼이라고 해서 잘못 썰면 손가락이 짝 다쳐. 그래가지고 정신채리고 판대기를 착 차려가 찢라야 하거든. 그래 그당시에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해가지고, 분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밥을 묵고 이라기 때문에 분식 이게 요즘 사람들은 분식을 잘 안먹지만, 옛날에는 보리가 쌀 이게 작다보니까 분식종류를 많이 해 먹었어요.

<사례 3>은 식당 생활을 하다가 중동으로 취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다니던 식당도 그만두게 되된다. 이후 식당 등에 취직을 하지 못한 <사례 3>은 한때 장애를 사칭하여 노점과 구걸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래가지고 그랄 때 조금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기술자를 뽑아가는거야. 여자들은 독일로 간호사를 뽑아가고, 우리는 사우디로 가야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군대 제대한거 다 떼가지고 오라하는데, 의가사 제대 해가지고 안된다 그라는거야 또. 그래 안된다니까 속상해가지고 내가 그걸 사우디로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취직도 그만두고 직장 생활도. 근데 떨어진거야. ... 취직이 빨리 안되가고 오죽하면 볼펜을 사들고 볼펜팔러 ○○시장을. 볼펜을 문방구에서 받아가 그냥 팔아주라 이러면 안팔아주는거야. 그라면 반병어리 비슷한 솔직하게 말하는거야. 반병어리 비슷하게 한 개 천원이다 이러면, '아이고 자 또 왔다. 김양아 빨리 천원 줘서 보내라' 즈그 손님 받기 위해서 귀찮게 안하고 얼른 천원짜리 팔아줘야 손님이 즈그 장사하는데 지장 없고 이라니까 빨리 빨리 팔아주거든. 그라면 이기 ○○○ ○○시장까지 가면요, 말이 볼펜이지 그기 무시 못하는거야. 그개 몇통이고 큰 많이 한 통 문방구에 여러통 받아가지고 그거 다 팔면 엄청나게 남는거야. 몇 십만원 남는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마음속으로 '야 이거 주방생활하는거보다 훨씬 낫네, 취직도 안되는데'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몇 개월 동안 하는거야. 몇 개월동안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재미가 있어가고 그랬는데 그기 또 자주 쪽이 팔리고 이라니까, 경비가 쫓아내고 이러니까. 안되겠더라고. 뭐야 병어리는 귀가 먹는데 반병어리는 병어리가 아니니까 돈 5천원짜리 파탁파탁 놓을때거든. 그래서 '야야 오지마라.' 가면 귀때기 맞는거야. 그래서 그기 직성이 안맞더라고 나한테. 주방장 생활했던 사람이 그걸 그 그 뭐야 바보 비슷하니 하면서 얻어먹는것도 아니고 그기 쪽팔리더라고

〈사례 3〉의 첫 범죄는 이 시기에 있었던 절도였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실상 구걸에 가까운 볼펜장사를 하다가, 시장에서 청바지를 훔쳐서 되팔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를 얼마나 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사례 3〉의 공식적인 체포기록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범죄로 인해 〈사례 3〉은 집행유예 전과를 가지게 된다.

스물 다섯 살때 그때 ○○○이고마. 그때가 볼펜 팔러 다닐 때. 볼펜 팔러 다닐 때 옷이 청바지가 참 좋은게 나왔어. 옛날 청바지가 말이요, 피스톤이 있고 쌍마가 있었어. 미제가 쌍마라는기고 피스톤은 일본에서 배는 미국 배인데 일본에서 만들어 온거를 피스톤이거든. 근데 그기 청바지 그개 굉장히 나한테 딱 맞고 좋은 거야. 한 벌이. 그기 옛날에 쪼깐할 때 그 님보 님보 하는 트위스터 킴, 그 사람이 춤을 추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거야. 그때 청바지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한 벌 썬비는거야. 새버가지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인가 어디고 줄여입고 품을 잡고 이란데 그 뭐한다고 청바지 그 또 꼬트머리를 꿰서 헌옷을 파는데 굉장히 싼거야. 근데 나는 그거는 피스톤이고 쌍마 대놓으니까는 서로 살라고 하는거야,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걸 팔아가지고 헌옷도 청바지하고 바꿔 입어도 나한테는 되겠는 기야 충분히. 용돈도 충분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고걸로 팔라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뭐였냐면 형사 앞잡이야. ... 그래 겁이나서 '왜그러는데요' 했더니 당신이 말이야 아까 옷 이 사람한테 팔았지? 네, 어디서 훔쳐왔어? 그러는거여. 그러니까 어린 소견에 겁이나서 요즘 같으면 발라당 까질만큼 까져가지고 거짓말을 하던지 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돈 주고 사던지, 선물을 받았던지 거짓말을 하던지 할텐데. 겁이나다 보니까는 이거 뭐 어데서 떨어져서 주워왔다고 이러는데 어디냐고 장소 가보자 해서 그 장소까지 형사가 수갑채워가지고 가가지고 거 가게 확인까지 하는 거야. 이거 당신들 물건 맞냐고, 맞다고 주인이 그리 뻔했니까 그래서 꼼짝마라 한거지. 그거야.

(4) 중장년기

〈사례 3〉은 '불펜장사'를 하던 중 또다시 식당에 취직하였고, 이시기에 〈사례 3〉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가 제가 우찌 하다보니까 취직이 됐는데, 국방부에 취직이 된거야. 국방부. 국방부 안에 구내 식당에 국방부 안에 보면은 그 외식부, 일식부, 한식부 짝 있어요. 부스가. 청소부터 이래 하면 소방 호스로 짝 물 뿌리든, 쓰레기 나오는데다 물 짝 뿌리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국수부장 가는거야. 국수부장 가면 국방부는 다섯시 안에 다 마치는거야. 오후 네시든 시마이, 저거 마치는데. 한 가지 좋은게 그 당시에는 밤에 통행금지가 있는거예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자주 국방원 방문증이 있더라고요. 자기 사진 붙여가 방문증이라고 딱 해서 그걸가지고 인자 밤에 술 한잔 묵고, 종로 어데고 돌아다니다 보면 야통이 걸린다 아니예요. 파출소가 가가지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방문증 딱 뵈주고, 그쪽 가야하는데 큰일 났다고, 시간 늦어가지고 어찌고 좀 통행할 수 있게끔 해주라 하면 다 만들어줬어. 그럼 그 증을 가지고 국방부 안에가 먹고 자는데가 있어. 기숙사가 있어 ... 미진식당 할 때인가, 국방부식당 할 때 인가 그거 헛갈리네. 하여튼 헛갈려. 하여튼 아가씨를 만나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가 딸하나 아들하나 놓고 살다가 지금 이혼한지가 20년이 딱 됐어요. 연초가 21년째네. ...

내가 박정희 칼국수 만들어주는 사람이야 박정희. 박정희가 그 국방부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 국수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을 만난거야. 그 집사람이 ○○○라고 홀 음식 가져다 주는 걸 하꾸비라 하거든? 하꾸비하던 사람이야 나는 국수부장하고. 그러다 그게 인연이 돼서 나중에 결혼해서 ... 하꾸비가 뭐냐면은 홀에 음식같은 거 날라주는 사람 있는데 지금 말하면 종업원이요. 그래 종업원이 나랑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 그 아가씨가 제 처인데 이혼했어, 이름이 ○○○인데. 이혼하고 여자하고 만나고 아들하나 딸하나인데 큰딸은 ○○○이고 아들은 ○○○야.

결혼 직후 <사례 3>의 두 번째 전과가 발생하는데, 함께 일하던 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폭행 및 상해 사건이었다. 이때도 <사례 3>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데, 선고 전까지 지내던 구치소 생활을 통해 수용생활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1가로 내려오면 ○○이라고 식당이 있었어요. ... ○○○이라고는 전라도 사람인데 나하고 저하고 서로가 안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이 났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한 대 맞고 나한테 안되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도라이버로 등을 찍어버렸어. 이제 찔러 들어가서 내가 피를 칠칠 흘려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주방장이 말리고, 국수부장 참아라 그랬는데 내가 못참았거든 그 당시에 성질이 안 좋아서. 어느 순간에 내가 뭘로 찍었더라? 세숫대 그걸로 나도 그대로 내려 찍었는데 근데 그제 사고가 나서 그 때 유치장에 가고 그렇게 된거야. ... 합의를 안해줘서 2달 만에 집행유예를 받았지. 그때부터 이제 교도소를 알게 된거야. 그 다음에 그 돈 받고 받아준다 이런거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러고 나서 몇 년 몇 년 금방 받았버린거예요. 순간적이더라고. 나 거짓말 하나 아니고요. 징역을 1년 6월, 2년, 2년 6월, 3년 뭐 금방 오르더라고.

이후 <사례 3>은 고향으로 내려가 연탄배달업을 하며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고향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고,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도 마련할 수 있었다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때 고향에 있던 아버지와 주변 친척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에 가서 우리 큰 집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서모하고 자꾸 싸우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도저히 서모하고 안맞으니깐 아버지도 입장곤란하고 나도 입장곤란하니깐. 아버지도 며느리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집사람 챙기기도 그렇고 서모

챙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깐. 자립할 수 있게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랬어. 조금만 도와달라는게 방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 이거예요. 큰집이모도 듣다가 아야 ○○이 도와줘라 장남 아이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서 서러움 받고 자랐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보통 보증금이 2,000원, 3,000원 정도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제법 많이 올랐어. 한 5,000원 정도 해줬다 칩시다. 그래서 방을 해주는 바람에 연탄가게를 차리고 ○○상회라 이래서 간판을 부쳐서 과일하고 쌀하고 연탄하고 이 3가지를 해서 연탄배달은 내가 힘들어도 수익이 남는거야. 쌀 배달은 일반미 80kg가 한 가마니인데 쌀은 돈이 수급이 안떨때가 있어 그래서 연탄값 먼저 받고 돈 되는데로 쌀 값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몇 년 부지런하게 해서 돈을 제법 모았어요. 상당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파트도 사고 노래방도 차리고 이런 정도가 됐으니깐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겠어요 3년 이상을.

1차면접에서는 고향에서 모은 돈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노래방 사업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지만, 2차 면접에서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노래방에 취업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수정하였다.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은 안하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그것도 오빠 때문에 큰 오빠 때문에 무슨 사고가 생기고 사연이 있더라고. 그래가 거기서 저기 뭐 애들하고 결혼해가 사는데 내가 들어가도 자기가 생활력이 강해서 나와가지고 내가 인자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로 왔어. … 내려와가지고 내가 뭘 했냐 하면 ○○서 ○○노래방을 시작한거야. ○○노래방. 그 주인되는 사람이 ○○노래방 건물주인데, 그 여자도 삼청교육대도 갔다오고 여자가 돈놀이를 해가지고 … 크게 사채로 크게 해 여자가 큰손이야. … ○○아빠 운전 잘하냐, 운전잘한다고. ‘그럼 우리 집에 한 번씩 차 좀 몰아주세요.’이래가 알았다고. 그래서 2천만원 전세를 걸고 들어간거야. 근데 어느날 갑자기 주인집 아줌마가 부른다고 우리를. 올라갔는데 ○○아빠 요즘 특별히 하는 일 없느냐고. 하는게 없어가 취직을 해야하는데 취직이 안되고 내가 기술이 있는데. 뭘 기술 있냐해서 기술은 음식 만드느거하고, 나 운전 잘하는거다 이랬는데 … 그럼 우리 노래방 맡아서 할 수 있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노래방 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시아 노래방 책임자로. 손님들 들어오면은 책임자로 들어가서 시키는거야. (서울에서 ○○에는 왜 내려가신 거예요?) 그 사연이 장인, 장모가 있었는데 큰처남이 무슨 사고를 내가지고 죽었어. 큰 처남이.

결혼생활 중 1번의 절도와 1번의 특수절도 전과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절도로 실형을 받고 이후 특수절도로 집행유예형을 받기 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있어, 이 시기에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도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던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그 다음에 85년에 또 한건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모르겠습더. 오래 되가. 자꾸 이 이야기 더 물어보면 눈물 뿐이 안나니까.

(삼청교육대는 어쩌다가 끌려오신건가요?) 그 때는 도둑질 해가 들어온게 아니고, 여럿 이서 대 여섯명이서 앉아서 노름을 한거야. 노름을 했는데 그때 왜 포카. 카드 52장짜리 카드가 있어요. 카드놀이를 처음에 홀라로 하다가 포카판이 돌아가는데, 포카 첨에는 판이 조금 하자 한긴게, 나중 판이 크더라고. 판이 커져가 돈이 많고 이라는데, 일반인 들도 있었고, 문신들도 있었고 문신 온몸에 막 있고 하니까 이려다 보니까 고마 군인하 고 막 경찰하고 들이닥치는 거야. (하우스에서 하신거예요?) 예. 무슨 하우스 장에서. 고마 들이닥쳐가지고 이유를 막론하고 끌려온거여.

〈사례 3〉의 회상에 따르면 이혼 후에 본격적으로 범죄 경력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혼의 계기는 〈사례 3〉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었고, 교도소에 자주 수감된 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었다는 진술이 있어 이혼이 범죄경력의 원인이라는 것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시기와 본격적인 범죄경력이 시작한 시기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례 3〉은 이 때 어쩔 수 없이 이혼하면서 그동안 모은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다고 한다.

나한테 교도소 갔다고 이혼장을 날렸더라고. 교도소 드나들고 이러니깐 이혼장 날라와 서 이혼한다고. 그 때 이혼기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해 안되더라고 징역을 받고 살고 있으니깐. 내가 나와가지고 해줬어요 해줬어요. ... 그 사연 많고, 눈물 많지. 왜그러냐 면은 이혼하고 그 뭐꼬 재산 이리돼빠고 그 ○○ ○○아파트 노래방 장사하는데 다 주고 올라왔다 했잖아요. 올라와가지고 매제 가구공장 제가 같이 했어요. 저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여동생이 죽었어 암으로. 죽는 바람에 더 엉망이 되버린거야. 죽기 전에는 같이 잘 나가다가 ...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교도소 생활 자주 한거는 우리 집사람이 랑 이혼하고 부터요. ...

이혼도요, 이혼도 이런 식으로 드나드니까 이혼장 날라왔더라고. ... 그래가 이혼된거여. 그래가 ○○아파트 홀랑 다 주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재산 다 주고 왔는데 결국은 뭐야 집사람이 남자 잘못만나서 홀랑 당 뺏겨서 나중에 잘못되니까 나한테 찾아오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뭐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안찾아가서. 좀 돈 좀 벌고 잘 될 때는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면 그러더만, 나 별 볼일 없고 망해 뽏고 하니까. 돈 좀 만지고 이럴 때는 귀신 같이 알고 찾아와요.

이혼 후에도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딸이 결혼할 때 혼수장만을 해 준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시기와 범죄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가구점을 운영하며 부도를 당했다는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에서 매제하고 가구공장을 내가 했어. ○○가구라고 해서 크게했어. 그래가지고 ○○아파트 노래방 그 ○○에 있을 때 노래방 조그마하게 했는데 그거 전부 다 주고왔어요 이혼하고. 이혼할 때 조건이 뭐냐면 애들 교육을 다 못시켰으니깐 놓고 나왔거든? 농업대학을 보내든지 대학을 보내라. 서울가면 친척도 있고 어느정도 내가 배운 기술이 있으니깐 살지만 너는 먹고 살려면 아무래도 여자니깐 힘드니깐 이거라도 해서 공부시켜라 한거야. ... 우리 딸내미 결혼할때요, 내가 경기도 ○○에서 공장을 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시집을 보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깐 ○○이 엄마하고 지금 ○○이 사위하고 나 공장하는데 찾아왔단 말입니다. 이혼하고도 찾아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결혼하는데 돈 좀 해달라고. ... 내가 반지, 목걸이 홀랑 패물 우선해라 돈 우선 50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 5장해주면서 나는 해줄 것은 없고 가구공장하니깐 가구 들어가는거 살림차림은 해줄거구마 그러니깐 좋다고 내려가더만 좋다고. ... 12자 짜리 하고 하고 농하고 단상하고 찬장하고 영창 피아노 그것도 납품을 했거든 ○○피아노 화단대 이거 짝 차에 올려서 무겁긴 드럽게 무겁습니다. 이게 좋은거라서 일반가구랑 다른겁니다 매끈해서 상당히 좋아요. 그거를 차를 2차를 이빠이 싣고 작은차도 해서 3차 하고 내 5058 자가용 차하고 내가 운전잘하거든. 직원들 데리고 내려가지고 가구를 전부다 넣었어요 2층에. 그 사돈되는 사람도 입이 해해 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만

〈사례 3〉은 50세를 전후한 시기 이후 본격적으로 절도 전과가 늘어나게 된다. 〈사례

3)의 절도는 주로 음식점에서 하객을 위장하여 축의금을 훔치는 방법이었다. <사례 3>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짜 밥을 얻어 먹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음식점에 출입을 하였으나, 전문적인 범죄자 동료들 만나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절취하게 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범죄자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한 경험을 이야기 하는 등의 진술도 있었다.

저는 노가다도 안하고, 거기 어떻게 아냐면 그런 분야 알게 되면 식권 달라고 하고 식권 얻으면 음식점 가면 밥을 식권 가져가면 음식 먹잖아요. 음식 얻어먹고 그래 오고 어떨 때는 음식을 안먹어도 되고 숟가락, 만년필 선물도 놓는거 있어. 그걸 받아가 팔아가 담배값 할라고 팔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 전문분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고수는 한마디로 머리가 퍼득 돌아가는 사람들은 몇 명만. 예를 들어 하루 일당 얼마씩 줄테니까 이러해라. 한마디로 우리가 팔리는거야. ... (처음에는 음식점에 공짜 밥 먹으러 가고, 선물 받으러 갔는데) 예 그러다 빠꼼이들한테 걸려서 그 서울 시내 ○○쪽 가면 그 뭐시기하고, ○○ 밑에 내려가면 한복만 입고 예식 하는게 있더라고. 그런 분야 그 사람들은 빠꼼이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 봉투 거 이런거 있잖아요 탁 들고 들어오는거야. 딱 인사하면서 받더라고. 딱 뭉개놓고 이러면 그 사람이 딱 식권을 몇 개 주고, 그 사람 들어가면 봉투 딱 주고. 젊은 사람 오면 서너장 내놓고. 저는요 간이 떨려 하라 해도 못해요. 지금도 서울 시내 몇 명 그런 사람 많아요. (처음에 시작한게 몇 년도쯤이세요?) 부도났으니까 공장 닫히고 중풍나서 6개월동안 고생했어. 누나한테 신세지고 살아났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거야. 사이가 좋으면 계속 누나 집에 있고 그러는데 누나가 냄새난다 그러니까 아니꼽고 드러버가서 싸워가지고 나와버린거야. 나와서 고마 친구집에 있다가 친구 아는 선배님들 집에 예식 하고 뭐 하고. 한 마디로 말하면 전문 분야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서베이 하는 사람을 사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집에 신세를 지다 보니까 인연이 되고 음식점 하는 선배들 집에 신세를 지다 보니까 밥도 얻어먹고 잠을 자다보니 사업 망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망 봐주고 그래 된거야.

<사례 3>은 그 그음의 또다른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누나가 모두 받아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번에 징역 있을 때 아버지가 용산에 묻혔어 죽어가지고. 군대 6.25사변 때

해서 용산에 묻힌거야. 재향군인회에서 해가지고 군대에서 크게 해주는 뭐지 그 무슨 훈장도 옛날에 탄게 있어서 그래서 그 묘지에 묻혔는데 누나가 나 그 당시에 나는 교도소 생활한거야. 누나가 그 ○○이 얼마나 아버지한테 이빨을 갉으면 ○○이한테 해주면 재산 다 날린다고 무슨 가구공장을 하다가 빚을 채어가지고 지금 이래저래 피해다녀가지고 교도소 갇으니깐 재산 같은거 대주면 큰일난다고 이래놓으니깐 아버지가 이제 누나한테 양도를 해준거야 ... 그거를 내가 내 재산을 찾으려고 하니깐 안되더라고. 1년이 넘으면 안되더라고 변호사 알아보고 변호사 그 공짜로 해주는 그 전부터 알아봤는데 6개월 안에 해야하는데 1년이 넘어가 양도를 했기 때문에 1년이 안되고 6개월 안으로 하면 장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1년이 넘어가면 안되는거야. 그 재산 법률 그걸 찾아보니깐. 근데 아버지를 얼마나 꼬셨으면 ○○에 있는 농사 짓는 그 논, 밭, 산, 집 이거 홀랑 다 팔아가지고 8억 얼마를 받아가지고 우리 남동생 안산에 있는 623평짜리 밭이 있어 그것은 떼줘버리고 고래 만들어 빼고 이렇게 이전을 했어 아버지 살아생전에. 돈은 그 용산에 묻힐 때 몇푼씩 용돈씩 주고 8억 얼마를 받아서 내가 조사해보니깐 서울 ○○동에 집을 샀더라고. 집을 샀는데 집을 주소를 안 가르쳐주는거야. 안 가르쳐주고 ○○교회 권사야 권사 ○○○라고. 내가 ○○ 거기를 찾아가서 나한테 이럴수있나 이러니까 이 도둑아 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뭐 어찌고 아버지 안모시다가. 아버지가 술을 많이해서 간이 안좋아서 죽은거야 나이가 많아서. 결국 멸절한테 돌아가신거야. 자기는 한 것도 없이 아플 때만 내려가서 그래놓고

가.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3〉의 첫 전과는 시장에서 청바지를 훔쳐서 판매를 시도한 것이었고, 그 이후로 다소간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이때의 범죄는 상습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첫 체포 이후 8년이 지나 폭행 전과가 있으나 이 역시도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와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였다.

(2) 범죄 중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 체포와 집행유예선고 이후 8년간에는 식당에 취직하여 일을 하였고, 자신의 고향에서의 연탄가게 운영, 처의 고향에서의 노래방 운영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시기에 결혼과 자녀출산이 이루어 진다. 이 기간에 폭행 전과와 삼청교육대 수용 등의 경험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범죄 경력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공식기록이 없는 것이다.

(3) 범죄 재시작

본격적인 범죄 경력의 시작은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절취하는 절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이 겹쳐있었다.

우선 <사례 3>은 이혼 이후 본격적으로 전과가 늘어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혼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혼과 본격적인 범죄경력의 시작이 비슷하다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교도소 생활 자주 한거는 우리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부터요.

또다른 부정적인 경험은 사업의 실패였다고 진술한다. 가구점 운영을 통해 딸의 혼수를 마련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가구점을 오랫동안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가구점의 부도가 생활을 어렵게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가구공장은 근래에 했어. 가구공장은 몇 년 안됐어요. 한 오육년 전에 ○○에서 ○○가 구 산업이라고 내가 납품하고 그랬는데 그제 망해가꼬 퇴직금 몬취가지고 공장 기계까지 다 팔아가지고 ... 가구공장도 잘되다가 망해버리니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거지.

그리고 자신이 신세지던 누나가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는 것도 <사례 3>이 범죄를 저지르는 요인이 되었다고 진술한다.

내가 다신 범죄를 안하라고 다짐하고 맹세를 하고. 굶어죽지 않는 이상 더러운 짓 안해야지 했는데 이번에 순전히 그 누나 때문에 누나라고 원망할 수도 없고 재산이 박살나는 바람에 사고를 저지른거야. 내가 화가 나서. 오죽하면 내가 이번에 나가서

죽이빠까 별 생각이 다 나는거야.

게다가 이 시기에 중풍이 와서 건강이 나빠진 경험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구공장이 망한 시기와 건강이 악화된 시기가 바로 범죄경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이었던 것이다.

내가 가구공장 망할 때 문 닫히고 이럴 때 중풍이 났어요. 중풍이 나가지고 가구공장 문을 닫는 동시에 ... 제가 중풍이 나가지고 수급하러 가구 그 외상값 부천에 갈라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을라고 하는데 숟가락을 집을 수가 없는거예요. 주을 수가 없는 거야. 풍이 와가지고

라. 범죄지속

상습적인 절도 범죄자로서 범죄경력을 재시작한 <사례 3>은 누적된 전과가 범죄를 그만둘 수 없게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조금은 정신차리려고 하면 1, 2년 있다가 보통 3년이 넘어가야 그거 누범이 안되는데 답답하고 그러면 고마 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내가 담을 뛰넘어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강도짓도 아니고 소소한거. 전과있고 그래서 누범이다 보니까 곱을주고 곱을주고 이번에 특가법이 생겨서 출발이 1년 6월부터 출발 아납니까? 출발이 강하니깐 어쩔 수 없는거야. 판사도 그러더라고 참 안타깝다고. 내 의무과에서 진단서 떼가 올렸어.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도 자기가 참 안타깝다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랬다만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어쩔수 없다고 그러면서. ... 그래가지고 저가 3년을 받고, 그때 하여튼 ○○가 아니고 그 때 3년을 받았어. 3년인가 2년 6월. 그 때 받고 내가 주범이 돼가지고 ○○이 그놈 얼마 안받고. 그라고 나서 마 될대로 돼라. 고마 시간만 나면 그 지랄하고. 돈벌이 할거 있으면 안가고, 돈 벌이 할 거 없으면 가고. 분위기 안좋으면 밥이나 얻어먹고 오고. 그런거여. 그러다보니까 전과가 늘어 나버린거여. 취직 안되고

<사례 3>은 합법적인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범죄 동료들과 교류할 수 밖에 없었고, 용돈이라도 생기는 절도행위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거리 없고 돈 팔리고 하면 거기 가면 큰 돈은 못만지더라도 용돈정도는 만지고. 그래 나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로 발이 떨어지는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안갈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목사님한테 세례 그 받아가지고 그까지 받고 증까지 다 해가지고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자매님들 이래가지고 열심히 다닐라고 하고 내가 내가 조금 젊으면 만원 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안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이놈이 술 한잔 하자고 하는 바람에 ○○가서 술한잔 하고 헤어지고.

(4) 범죄 중화

〈사례 3〉은 멀쩡할 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술에 취하여 자신도 행위를 통제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전과 종류는 어떻게 되시나요?) 절도요 절도. 대부분 절도요. 폭력 같은거 그런 건 소소하이 합의보고 잘됐는데 순전히 그 생활위한 절도야 절도. 절도라고 해도 담을 넘어가서 돈을 수십억 한 것도 아니고 강도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소소하게.

(주로 뭐 훔치셨나요?) 아 휴. 예식장, 예식장하고 그 다음에 그 뭐꼬 오토바이 그거야 소소하게 오토바이에 있는 그 장물취득이다 뭐야 해서 남에 물건을 팔아먹는거 있잖아요. 밭에 있는거 뭐 전선주 같은거 이런거 봐가지고 고물 같은거 팔아먹고 그런거야 소소하게. ... 내가 술을 먹고 후회를 하고 후회를 하고 참 서글프죠. 지금도 목 가래 막 뚫고 그러는데 참.

(주로 술드시고 그러신거예요?) 네. 술만 먹었다하면 그 지랄 하는거예요.

4. <사례 4>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김현)	1952		
주산 선수로 활동	1961		
교도소에서 징벌 경험		1967 첫 징역	
고등학교 중퇴(2학년)		1969 공길 징역8월	
인쇄소 근무	1971	1970 특수징도 징역단8월장1년	
격지생활(포항) (조직생활: 소매치기, 불법오락실 관리)		1972 상습장물입선 징역단10월장1년	
첫 결혼	1978	1972 상습장물입선/징도 징역2년6월	
두 번째 결혼	1980	1975 절도미수/강도상해 징역5년	
딸 출생		 소매치기로 20년 선고	
동거		 무죄판결	
아들 출생	1985	1981 절도 징역3년	
여관/목욕탕 운영(전주)		1982 절도 징역1년6월	
		1989 현금수송차량탈취 징역 10년	특수징도 징역3년
			절도/강도상해 징역5년
		1992 특수강도 징역2년6월	
단감유통업 시작	2000		
고혈압 발병		2001 특수강도강간 징역25년6월(본건)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4〉은 가정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어린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례 4〉은 큰 형의 폭력이 심하였으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신을 폭행하는 것으로 기분을 풀었다고 회상한다.

가정사가 많이 안 좋았어요. 5남1녀 인데, 누님이 한 분 있었고, 4형제는 남자인데, 제 밑으로 남자는 둘이고 위에 큰형님 작은형님 있었고 누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총무장학금도 받고 비둘기 장학금도 받고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 집에만 가면 자꾸 때려쌍더라고 큰형이. 정신병마냥. ... 그 당시에는 어머니하고 싸움을 하면 화풀이가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그것도 생생한데, 어머니하고 뭐 일 있으면 어머니 성격도 대단하시지만 큰형님 성격도 둘이 똑같은 것 같아. ...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형제들은 다들 큰형님을 무서워했으니까. ... 어머니는 저만 감싸 돌았고 큰형을 미워했고. 근데 큰형은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추석날 설날 해서 들어가면,, 하여튼 뭐 이유가 없어요. 나 같았으면 이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여기 지금 면회도 언젠가 한 번도 전화 와서 큰형이 온다길래 오지 말라했어요. 나 얼굴보기 싫다. 지금도 그러는데, 나이먹고 오지말라고.

집안에서 편지 지내지 못한 〈사례 4〉은 어린시절부터 주산 특기생으로 생활하였고,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합숙생활을 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 합숙생활 해가지고 중학교도 총무 장학금 받고 비둘기 장학금 받고 설하고 추석만 집에 오고 계속 주산만 했어요, 고려대학교 강당에서 성균관대학교 강당에서 서울가서 계속 시합만 했죠. 돌아다니면서.

(2) 청소년기

〈사례 4〉은 초등학교시절부터 암산과 주산 선수로 활동하였고, 이를 위해 줄곧 합숙생활을 하여 세상을 모르고 자라났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 설날에 집에 오게되었고, 초등학교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례 4〉은 이때 처음 범죄로 이끈 친구와 처음부터 끝까지 공범이

되었다고 하며 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4>은 당시 초등학교 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일면식도 없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망을 보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었다고 처음 범죄 동료들과 어울린 날을 회상한다.

대만, 일본 같이 시험도 하고. 어릴 때는 동네에서 '한국은행장이다' 하고, 어머니 동네 분들이. 자식 잘되었다고 했는데, 개불. 잘되긴 뭘 잘 돼. 근데 지금도 암산을 하면 지금 백만 단위도 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걸 안보고 컸는데, 합숙생활만 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설날에 집에 와가지고 그러고는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근데 난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지. 진짜 몰랐어요 그때는. 그때는 진짜 몰랐다고 해도 안되지만 그때는. 그게 처음 시초예요. ... 그거는 초등학교 때 만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게 지금 현재까지 처음 공범에서 마지막 공범까지가 유○○라는 공범이에요. 유○○가 공범인데, 마지막까지 사형까지 받은 것까지 공범인데 ... 처음에는 이게 나쁜 짓인지도 몰랐어요. 그니까 개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 고2 중퇴를 했는데, 졸업장은 중학교 졸업장이 있죠. ○○ ○○중학교인데 그 때도 고등학생들하고 합숙을 하면서 주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어요. ... 그렇게 해서 그 형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같이 망을 본거지. 그 형들은 아예 일면식도 없어.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야.

<사례 4>은 이 때 우연히 망을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면서, 어린시절부터 해오던 주산이 하기 싫어지고 결국 가출하여 범죄 동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되고, 교도소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경험은 부정적 낙인이 되어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가자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모른 거예요. 진짜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망보는데 돈을 많이 주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받았죠. 그러고 주산을 보러 또 갔었는데, 그게 하기 싫더라고요 이제 또.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제 집을 나온 거예요. 누가 걸렸느냐? 개하고 ○○○라는 애하고 나하고 걸렸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나이 먹어서 그 현금 탈취 사건도 개하고 공범, ... 그렇게 해서 김천 교도소로 바로 가버리더만? 김천 교도소는 흉악한 범죄들만 받는 데더만. 바로 가니깐 그냥 푹푹 묶어가지고 추풍령 바람 부는데 그냥 그 바람 쐬 데 추운 데 이불도 하나 안 주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밑에 삼을 꼬은건데, 푹푹 말아가지고 발로 이렇게 해서 삼을 덮고 잤어요, 김천 교도소에서 어릴 때. 근데 그게 악이 생기더라고. 악이 생기니

까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는, 사천 몇 백명이 있을 때는 보안 규정을 안 지키고 난동을 지길라고 하니까 별건 대낮에 삼 사십명에서 날 잡으려고 막 유리창 다 깨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어릴 때 내가 김천교도소에서 받았던 게 설움이 되니까, 일년이면 십개월을 묶어서 개밥을 먹어라고 하니까. ... 그런데다가 어릴 때 들어왔는데 김천교도소 가니까 푹푹 말아가지고 추풍령 방에, 진짜 춥더라고요, 그리고 이불도 안 주고 자는데 지금도 못 잊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난동이나 부리고, 칼 들고 난동이나 부리고, 그게 이제 원한이 되어서 박히는 것 같아요. ... 내 자신이 좀 포악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런 걸로 소위 얘기하는 개밥이라고 해야 하죠. 밥을 못 먹으면 배고프니까. 이게 손가락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그대로 먹어야 하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그랬었고. 그 김천교도소에서의 생활을 참,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나이 먹어도 어렸을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지역 8개월의 수감 이후 <사례 4>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도소에서 만난 범죄 동료들과 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 어린시절부터 <사례 4>에게 폭력적으로 대했던 큰 형이 무서웠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1년 정도 살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집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아 집을 안 갔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셨나요?) 교도소에서 만났던 친구들과하고 어울렸죠. 집을 안가고. 집이 있었는데, 큰형이라는 분이 철도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는데, 큰형이라는 분이 많이 엄격하고 그분한테 많이 맞았어요. 어릴 때는 많이 무서웠지. 어린 날에는 많이 무서웠고, 교도소 나왔을 때는 안 무서웠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때리니까 (김천에서 나오실 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던 건가요?)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집 앞으로 가긴 갔었는데, 애들하고 갔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갔었는데 큰형 때문에 결국에는 안 들어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 요번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물론 잠시 집에 들어가있는 동안 큰형에게 이끌려 인쇄소에 취업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 4>은 그러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집을 나와 범죄 동료들과 어울리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집안에서는 <사례 4>을 범죄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몇 번의 시도를 하였으나, <사례 4>은 다시금 집을 나와 범죄적인 삶을

지속하게 된다.

주산도 이제 끝났고, 다 끝났죠, 안되죠. 이제 인쇄소에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인쇄소라는 데를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부모라 그러면 거기 안 넣었을 것 같애. 저한테 맞는 걸 업종을 해줬으면 적응을 혹시 모르는데, 30년도 못하고 나왔어요 거기. 30년도 못하고 도망나왔어요. ...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는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찹찹찹 찹하는데, 이게 막 불안하고 뭐가 안 맞아. 뛰쳐나왔어요. 큰 형님이라는 분이 철도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하셨는데, 촌으로 잡아서 절 데리고 왔어요. ○○에서 ○○으로 저를 촌구석으로 데리고 왔는데, 열차타고 그냥 바로 도망갔어요 또. 집 못 들어가니까 뭐하겠습니까. ...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거길 그렇게 잡아주듯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은 하는데, 자꾸 애들이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뭔가 잡아 땡기는 것 마냥 이렇게 안정이 안 되요 안정이. 안절부절을,, 그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 차분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이 안 되는거야. 적성에 안 맞아. ... 근데 ○○으로 저를 잡아다가 애들하고 띄어놓을라고 그렇게 했는데, 형수는 이제 잘해주시죠. 근데 그날 자면서 도망나왔던 거 같아요. 형님도 무서웠지만, 왜 거기다가 잡아놓고 나를 있었는지. 또 도망나왔죠. 또 도망나와서 엄한 짓거리 하다가 또 들어오고.

(3) 청년기

청소년기에 집을 나온 <사례 4>은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폭력 조직의 일원으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폭력조직에서 오락실을 관리하고 취로사업에 동원되는 등의 생활을 통해 범죄적 생활에 더욱 익숙해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스무살 초반쯤부터 스물다섯 그때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는, 소위 이야기하면, 그 지금 조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오락실 생기기 전에는 그게 조직인데. 그 옛날 그 속리산 카지노 사건 나기 전에 도끼사건이라는 게 있었었어요. 그 사건의 전에 대전에는, 그 ○○○씨라고 있어요. 족제비라고. ○○○씨라고 ○○에서 일하는 사람 있는데, 형님들 두 분 있는데, 그렇게 그 생활을 했어요. 조직에서. 그 생활을 하고 거기 잡혀가지고 그 생활을 하다가 ○○○○라는 곳에 가서 복싱권투를 했는데, 그것도 만나 가면 또 훌레다가 놓고 안 나가면 거기다가 놓고 또 의자로, 몽둥이로 운동하러 안 간다고 또 때리더라고. ... 그래서 맨날 운동 나가면 또 다른 거 뭐하냐면 ‘새마을취로사업’이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큰형들이 그 ○○이형이라는 분이 족제

비라는 분이 그 사람이 보스인데, 그 양반이 ○○○이라는 사람하고 그 양반하고 ○○에 있었는데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양반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거기 생활을 음지에서 그 생활을 했어요. ... 그러다가 그 생활을 좀 하다가 그때 그 당시에는 오락실이 생기기 전에는 그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많이. 오락실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소위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가 좋았고, 수입도 많이 생기고 뭐 힘들게 일을 안 해도 그냥 불법 오락실 해놓고 바깥에서만 있으면 돈 두둑이 벌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때로는 차린 형들도 돈 벌어서 많이 주고 좋았는데, 그런 생활도 좀 했고.

폭력조직원으로서의 생활과 소매치기조직원으로서의 생활을 병행하기도 하며 범죄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는 그 당시의 삶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았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하였다.

직업이 없었어요. 직업이 없이, 그냥 왔다갔다하고 형들이 그 바 같은 곳이나 이런 데서 심부름 시키면 이제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수입이라는 게 없고 그냥 생기면 두 형들이 주면하고, 뺏고 그러는 거였지. 제가 뭐 고정적으로 수입이라는 건 없었던 것 같아. ... 제가 하는 일이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금고 따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금고만 뺏았어요. 근데 그 ○○에 여기 오니까 이제 그때도 누가 같이 왔는데 ○○에 오니까 여기 ○○도 가고 어디고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는 버스 회사가 있더라구요. 그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큰 회사의 금고를 따서 돈을 갖고 오고 채권하고 금고를 따서 갖고 나오고 그러고 또 와서 들어오기 전에 한 건 더하자고 한 것이 그 배전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 ○○ 파출소 옆에. 사건 현장에서 싸움 해가지고 칼부림해서 잡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기억은 잘 안나요. 잡혀가지고 또 징역 살고, 뭐 여러 가지로 징역을 살았어요. 한 가지로만 산 것이 아니라. 이게 참 흘러가는대로 살았죠. ○○ 원정이 있었던 게 징역 5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석방을 먹고 나왔고, 가석방은 주더라구요.

대표적인 범죄는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탈취하고 연속적으로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린시절부터 함께 범죄를 저질러 왔던 공범의 적극적인 동참요청이었다고 설명한다.

그게 89년도였던가, 노태우 대통령 당시였던 것 같은데, 담화문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사건이 난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왜 이걸 못 잡냐 해가지고, 그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처음 사건이더라고 처음 이. 우리나라 생긴 이후로, 현금수송차량 탈취라는 게 처음 있었던 일이더라구. 그때는 그 겁도 없었어. 그때도 ○○○가 찾아왔어요. 내가 ○○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이라는 여자랑 살 때인데, 그때도 또 찾아와가지고 또 하자그래가지고, 우리 애기엄마가 그러더라. 저 인간하고 만나면 나랑은 이혼할 생각 하라고. 맘 잡고 잘 살고 있는데 …가서 백화점을 털고, 백화점 두 군데를 털은 거예요 금은방을. 백화점 안에 금은방이 두 개가 있어요. 내곽 경비를 잡아서 톨돌 묶어서 놓고, 들어가서 자고 막 그 둘이 내곽경비들 짐 훔치고 묶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마하고 다이야하고 시계하고는 전부 다 장물 넘겨버리고 있을 것이여 거기다 놓고, 그 이튿날 바로 잠도 안 자고 현금수송차량 그거를 범행을 한거예요.

〈사례 4〉은 청년기에 세 번의 결혼을 했다.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근데 사모관대를 세 번 썼어요 그 와중에도 5년동안 있으면서도 (제일 처음에 결혼은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스물다섯에 내가 했나? 스물다섯에 정식 혼인 신고를 한 게 ○○○ 대구 사람하고 같은 동갑내기하고 했고, 스물 다섯일거야 아마. 스물여덟인가 스물다섯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큰 애 애미. 지금 그 때는 자식이 없었고. ○○○ 어머니 ○○○. ○○서 지금 그 사람하고 스물여덟 살 때 한 것 같습니다. 그 여자는 스물 셋. 다섯 살 차이냐죠. 지금 육십 셋 이니까 닭 띠야. 닭 띠가 안 좋네 나한테는. 큰 애도 닭 띠, 작은 애미도 닭 띠, 다 닭 띠네 보니까. 그렇게고, 세 번째는 ○○○. ○○○ 엄마. ○○○는 ○○○하고 결혼할 때 딸이고, ○○○는 ○○○하고, ○○사람인데 ○○○하고 결혼 해가지고, 그것도 절에서 했어요. ○○ ○○사에서. ○○ 휴게소에서 제가 불교반장 때 인연이 되었던 스님인데, 좀 큰 스님이야, 그 ○○ 스님이. 결혼을 할라면 거기서 해라고 해서 일반 예식장에서 안하고 거기에서 했고 … 요번에 들어오자마자 죄명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을 믿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을 믿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사형을 받고 하니까, 사형을 딱 하나 받았는데 법정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면회를 그 이튿날 왔는데, “○○ 엄마, 그냥 가. 요번은 길어. 그리고 이걸 무죄가 안 나와. 당신은 나를 알지만 말렸고, 당신은 내가 어떻게 산지 알잖아. 탄원서는 필요없어. 내가 뽕쟁이랑.” 하니까 “당신이 못 본 척해도 안 돼.” 하니까 “가” 해가지고 세 번째 이혼을 한 거예요.

〈사례 4〉은 자신의 삶을 범죄로 인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가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엄한 짓거리 하느라고...범죄죠 범죄. 그리고 바깥에 있었으면요, 편한 생활을 못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잠깐 뒤편, 여기서 사십년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도 5-6년 7년? 나이 먹고 열 일곱살, 열 여섯살 이 때부터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바깥 생활을 몇 년 안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따져봤었는데 몇 년 안했는데 몇 년 안하는 와중에도 맨날 도망다녔어요. 수배자 돼서 쫓겨다니고 형사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처럼 못살았다고 봐야하죠.

(4) 중장년기

〈사례 4〉은 40세에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25년 6월을 선고받고 2001년 이후 계속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현재 수감생활을 하게된 범죄에 대해서 〈사례 4〉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재심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했습니다. 대법 상고심까지 이 사건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했고, 피검사는 DNA검사가 내가 강도강간 사건이 두 건 있는데, 한 건은 그 사람이 와서 모르겠다 하고, 한 건은. ○○에 그 강도 그 사건은 피해자가 와가지고 경찰서부터 피해자가 와가지고 고개를 흔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정에 나와서도 말을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그대로. “재판장님, 저 여자가 정신병자가 아닌데, 저 여자가 왜 말을 안 합니까. 말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근데 검사는 거기서 계속 뭐라고 하나면, “피고인 DNA가 나왔다니까?” 저는 비몽사몽해서 처음에 피를 뺐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봉대를 감고 있을 때 병원 치료를 마지막으로 간 날 또 피를 뽑자고 뽑았습니다. 이게 피를 DNA검사를 한 건지 국과수에 다가 내 피와 피로 DNA검사를 한 것인지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니까 밝혀줘라. 이게 재심을 하면서.

(그럼 지금 전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그렇죠.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했다고 했으면 아마 십 이년이나 십 오년 살다 나갔을 겁니다. 구형 십 오년 준다고 했거든요 검사가. 그 얘기도 썼습니다 제가. 같이 간 교도관이 들었지만, 시인하면 구형 십 오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4〉은 자신의 첫 범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의 권유로 가담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알고보니 범죄행위였고, 어느날 갑자기 공범으로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어요. ... 소매치기도 있고, 그러고 그 때는 야간주거침입, 바깥에서 그냥 형이 있으라고 해서 있었어요 바깥에서. 진짜 밖으로 나떨어졌어요.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형사가 잡으러 왔어요. 갔더니 그게 공범이래요, 그 사람은 이제 전과가 많아. ○○○, 나 이름도 안 잊어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러고 김천교도소 갔다 오니까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뭔가 할 줄도 모르는데 애들하고 어울린거죠. 그게 뭐냐 공갈·협박이라 그게. 노상강도라고. 직접적으로 칼을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돈 뺏는 게 그게 노상강도라 ...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고도 털고 또 한 번은 소매치기 두목으로 잘 사는데,

한편 〈사례 4〉은 자신의 범죄의 시작에 대해 부모의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큰 형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부모가 방치하지만 않았어도 다른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범죄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같아요. 범죄에 대해서 무섭다는 걸 맨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친구 만나가지고, 또 어릴 때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형들하고 또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이렇게 담 넘어서 그걸 하고 있었고 그 친구는 징역을 몇 번 살았더라 그 어린 나이에도.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몇 번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그 때는. 근데 부모님들의 관심이나 형들의 관심이나 어릴 때 그 관심이 저한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

(관심을 좀 못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바로 잡아줬으면 나이 먹고 나서 저 어릴 때를 생각해보니까, 애들을 길러보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많이 길러보지는 못했지만, 보면은 저때 내가 저부분이나 형들이 무섭게만 할 게 아니라 잘 달래가지고 했더라면 내가 또 지금쯤은 은행원이 되어있지 않았을까,

정년퇴직을 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갑자기 물정을 모르고 그 놈 만나 돈을 주니까,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 당시에. 또 따라가니까 돈 주고. 그것이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범죄 지속

〈사례 4〉은 첫 수감과 출감 이후 범죄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부모와 형제들은 범죄동료들과 다시 어울리지 못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범죄동료들과 생활하며 조직폭력가담, 소매치기범죄 등을 통해 범죄적 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이다.

(3) 범죄 재시작

〈사례 4〉에 의하면 자신의 삶에서 범죄를 그만 둘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20대 후반 첫 결혼 직후였는데,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자 했으나 예전에 소매치기 전과로 인해 억울하게 체포되어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되었고, 이때 무죄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나올 수 있었으나 이때 수감된 것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출감 이후에 아이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소매치기로 돈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한다.

제가 좋은 길로도 범죄를 끊은 적도 있어요. ... 장사를 ○○에서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뽐짝 마” 그러더라고요. 언뜻 보니까 갔는데 몇 명을 잡아서 경찰서에 갔는데, 대전 시내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검사가 딱 와 있고, 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감이라 그러더라고요. 다 모여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로. “여기가 무슨 계 날이냐고” 근데 서류를 이만큼씩 놓고, 책상에 전부 이만큼씩 놓고, “니들은 여기 다섯 명, 니들도 여기 다섯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 이름 따서 ○○파사건” 그래서 이십년 받았어요. ○○파 두목으로. 근데 그게 서울 그 살인사건이라고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가 되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건에. 이 소매치기 두목으로 왔는데, 1년 5개월 50일 만에, 1년 5개월 19일만에 정확하게, 무죄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 범죄를 안했었거든요? 근데 그 때 당시 큰 애 애미하고 20년 만남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내가 대법관한테 편지를 쓰기를, 대한민국 법이 가정파괴법,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는 범죄를 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데려다가 백 건 이백 건 소매치기 미제 사건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잡힌 순간부터, 판사하게 얘기한 순간부터 이혼하고 법이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는 것까지, 대법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어났던 일을 맘 잡고 그 날 저녁에 이렇게 다 썼어요. ... 그 때 당시 범죄를 끊었었는데, 제가 그랬죠 그 때 검찰청장 앞으로 수표가 나오더만. 무죄에 대한 보상금이. 무죄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때 육백만원인가 큰 돈이었습니다. 집 한 채 못 사도, 어쨌든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임원을 했어요. 큰 애 애미를 데리고 왔는데, 물을 잘못해가지고 데고, 그다음 또 뭐를 먹었나면은 청산가리 비스무리한 걸 봤는데 먹고 목 식도하고 요기하고 데였어요. 애 엄마보고 애를 어떻게 보길래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또. 할 수 없이 옛날에 하던 쉽게 얘기하면 안창 기계라고 하지, 그것을 제가 조금 해서 끊고, 그러고 천자 림살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범죄의 돈이라.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죄 지금 받는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할라고 했던 걸 했다고 했자네. 그랬던 건데 그 때는 원망스러웠죠. 잘 살고 있는 가정을 무죄 나왔는데 이혼 되었지, 애는 애대로 되었지, 나오니까 또 조금 생활 해가지고 그 땐 또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제가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출감하자마자 열심히 무죄 받고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재개할라고 빵집을 한 번 해볼까 하고 전부 하고, 내가 직접 해볼라고 하고. 애 엄마도 좋다고 하고, 처갓집에서 대주고, 집에서도 대주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애가 그 모양이 되니까 열이 받았지요. 또 누구한테 손을 못 벌리니까 다시 버스를 탄 거예요.

두 번째는 절도로 인한 징역이 끝나고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아들 출생 이후 여관과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자 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어린시절부터 알아온 공범이 <사례 4>을 찾아와 큰 건 한번만 더 하자고 권유하여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되고 그 결과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범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전에 저질렀으나 드러나지 않은 미제사건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다음에 현금 탈취 사건 그 여관하고 목욕탕하면서 잘 살았었는데, 전주에서 전주시외 버스터미널 앞에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여관이 두 개 밖에 없었어. 잘 살았는데, 유○○가 또 찾아왔어. 우리 얘기 엄마가 유○○를 알아요. 저

인간 만나면 오늘 이혼이라고 하더라고. 여관 목욕탕 그 오층에서 벌써 보고 있었으니까 만나는거를. 바깥에도 안 나가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펴고 했어요. 잘 살았는데, 내 의지가 부족했던 거지만, 살아볼라고 했던 건데 안 되더라고요. 유○○가 찾아와가지고 현금수용차랑 한 번 하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해주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틀을 잡고 내가 애기엄마한테 “마지막이다 내가 유○○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볼일 있으니까 나갔다 오마. 이틀만 나한테 시간만 주라. 내 평생에 당신한테 딱 이틀 휴가다, 이틀. 이제 안나간다.” 저는 그 뭘 일이 서울서 있어도 밤 차를 타고 들어와야 해요, ○○ 단감을 할 때도 가락동 시장 가고 농산물 시장 갔다 오더라도 단감을 경매에 들어가고 나서도 그 날로 집에 들어가야돼. 밤을 새서라도 집을 들어가야 해. 그 먼 길 고속도로를 타야하는데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안들어가지고 결국에는 또 뭐 저 ○○백화점하고 금은방 두 개 하고 그 전날, 그 이틀날 현금수용차랑 때문에 그렇게 장기형을 또 살은 거예요.

(거절하지 못하신 이유는 뭘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맘 잡기 전에 그놈하고 ‘건’이 있어요. 근데 미제사건이지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미제사건인데 그놈하고 저하고 해서 금고를 열어가지고 채권이 그 옛날에는 전화채권도 있었습니다. 전화채권도 있었고 그 주택채권이 백만 원짜리 까지 있었어요. 그 옛날에 백만 원 채권은 큰돈이었어요. 금고를 열으니까 금고 안에 잔뜩 있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근데 잘 살고 범죄를 끊었어요. 근데 그놈은 노름을 해가지고 다 털렸어. 그 전에 노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너는 끝이다 너하고 나하는. 그러나 나도 이제 신물난다. 애들도 이제 살아야 되겠고, 내 집사람하고 이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마라. 나 이제 싫다. 그렇게 하고 진짜 헤어졌어요. 나 찾지 마라. 나도 너 안 찾을게.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와가지고 한 건만 하자고 하더라고. 한 건만 하자.

(안하면 미제사건을 터트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거죠. 그걸 애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술좌석에서 야, 너 말 지켜갖고, 너만 잘 사냐. 너도 임마 노름 하지 말고 잘 살지 임마. 너무 집사람 있고 애들도 있고 한데, 애도 큰데 하지 말지 임마. 뭐하러 노름해가지고 다 그러냐. 그 우리는 전파사 있는 중국집 사장인가 백 원짜리 동전내리기나 고스톱이나 치고 상가에 여관 목욕탕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개가 전파자인지도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완전 숨기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고. 근데 찾아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현금수송차랑 탈수사건도 ○○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칠곡).....	1953		
부모 사망.....	1963		
초등학교(5학년)중퇴.....	1965		
식당 근무(대구).....	1966		
-월급미지급으로 나옴-			
아이스크림 판매.....	1967		
집창촌 거주(대구).....	1968		
음주사작.....		1969	특수절도(소년보호)
		1971	주거침입(소년보호)
		1972	절도(소년보호)
식당 근무(서울).....	1973	1974	야간주거침입 정역..... 야간주거침입 정역8월 -야간 절도-..... 절도/야간주거침입 정역1년6월+벌금4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대구).....		1975	절도/야간주거침입 정역1년6월+벌금4만
		1980	상습절도 정역2년
서울로 이동.....	1983		
공장 근무(봉제).....		1984	야간주거침입/절도 정역3년
	1987		
건설현장 일용직(여름) 봉어빵 판매(겨울).....		1988	절도 정역
		1998	절도 정역..... 절도 집행유예3년+정역1년 -식용유 절도-
		1999	절도 정역10월
		2002	절도 정역1년6월
		2003	절도 벌금200만
		2004	재물손괴 정역8월+몰수
		2006	절도 정역1년6월
		2008	절도 정역3년
		2011	절도 정역3년
		2014	절도 정역3년6월+몰수
		2018	절도 정역2년6월 (본건)
다리 마비증상(고혈압).....	2019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5〉은 부모님이 어린시절에 돌아가신 이후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시장에서 혼자 생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초등학교 5학년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것에 대한 충격으로 바로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것이다. 이후 이모집에서 잠시 살기도 하였으나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대구에서 혼자 식당, 시장, 성매매집결지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였다고 어린시절을 회상한다.

우리 엄마는, 내 초등학교.. 학교 못나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때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알아요 ○○○라고.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냐면은 엄마 돌아가시고 맛이 가버린거라. 맛이 가버린거라. 그 래 돌아가셨어. ... ○○에 이모집도 있었어요. 갔었는데 그 가니까 무슨 효과가 나는가. 엄마가 없으니까 효과가, 효과가 다르더라고요. 엄마가 있었을때는 안가봤는데 엄마돌 아가시고 딱 가니까 이 생각이 바뀌었더라고. 천대는 못하는데 말로써 뭐라 하는거 있잖아요. ... 제가 열심히 살았다 이기라. 식당일 안 해본게 없었어. 대구 있잖아요. 옛날에 ○○극장 아시죠. 우동! 우동 천원짜리. 요만한거 냄새 내놔가지고 천원짜리 팔고 있으면 없는사람들, 요만한거 그 ○○식당이라고 있어. 거기서 심부름 하다가 이걸 디가지고 그걸 또 야단맞을까 싫어가지고 진짜예요. 그거 그 옛날 ○○극장 앞에 보면 ○○촌 있었어요. 거기서 자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식당 가서 일해 볼래 래서 하게 하게 됐는데 너무 적으니까 내가, 저저 물통 들은거 뭐지? 양동이 거 그걸 들어도 힘들 때, 그걸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싯물 다싯물, 그 옥수 그거를 담가버렸네. 그걸 이만씩 디인거라. 그걸 또 주인이 뭐라할까 싫어서 봉대를 감았어. 그걸 인자 주인이 안거라. 내가 이야기 하면 끝도 없어. 창녀촌에 일도 하러 갔었어 창녀촌에. 이거 내가 이야기 해드릴게여. 책을 써야해. 그거 이가지고 주인이 팔 왜그러냐 해서 보여줬어 내가. 이걸 딱지가 저가지고 안떨어 지는거라. 이제는 그런 약 없을끼라. 백구약 있지 백구약. 그걸 발라줘버리는 기라. 그러니 이제 없어진거라... ○○마당(성매매 집결지) 거 가면은 밥도 주고 청소해주면 옷한번 사주니까 거 가봐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지금 ○○마당 없어졌어. 가니까 또 나쁜걸 배운기라. 내 얘기 들어보세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데를 가야하잖아. 부모가 없으니까. ... 근데 그 젊은 사람 몸을 파는 여자가 열명이나 돼. 그때 당시 나는 어렸어도 그런진 기억 나더라고. 검은 솔있잖아요

가마술. 거기다 밥을 하는거라. 열명을 다 먹이려고. 나는 심부름 하고 복도 이기 닦고 그래서 돈을 모이는거라. 왜냐, 여자 장사를 하는데 밤새도록 할거 아니예요. 나는 청소하면 잠만 자니까 아무것도 할게 없어.

〈사례 5〉은 첫 범죄를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던 어린시절에 저질렀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5〉은 이 때 돈맛을 알게되고 나쁜마음을 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인이 성매매 댓가로 받은 돈을 보관하던 서랍을 뜯어서 조금씩 돈을 빼돌리다가 들킨 일이 있다고 한다. 당시에는 매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처벌되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때부터 나쁜짓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왜 돈 맛을 아냐고 하면 그 방이 하나 있어. 거기서 나쁜 맘을 키우는거라. 손님들이 들어오잖아요. 손님들이 들어오면은 돈을 받잖아. 거기 돈 받는 서랍이 하나 있어. 서랍 있잖아요. 막 돈없는 사람들은 반지, 시계 다 접혀놓고 안와. 옛날엔 그런거 많아요. 시계도 접히고, 돈도 막 한번씩 자고 가고 일주일씩 있고. 그걸 내가 본거라. 보고 난 다음에 포크 있잖아 포크. 포크 보든 인자 그거를 이렇게 포크가 세 개 다리가 있잖아요. 두 개를 재끼고 요 하나 남잖아. 그거를 열쇠 탁 하니까 그제 열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돈인데. 손님들이 오면 돈을 주잖아요. 포크 저 안됐으면 모르는데 접히니까 되더라고. 그래 이러 했는데 열리더라고. 그래서 돈 맛을 봤어. 그기 이제 밤 장사 하면 50만원 벌면 표 안나라고 만원씩 여 했어. 비는걸 주인이 알고 있던거라. 그래서 돈이 없어진다 없어진다 하면서 눈이 돌아오는거라. 그래서 도망 가버렸어. 도망을 가버린거라. 그때 어렸지. ... 그래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래 이제 나쁜짓 시작 됐지. 갈데 어딴여 내가. 그래서 그그 그제 이제 파출소가 순경이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잡으러 온거라. 그래 잡혀갔어. 그래서 가만 있는거라. 잘못했냐 이러는거라. 그래서 잘못했어. 그랬더니,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 앉아 있다가 그래 인자 다음부터 이러지마 뭐라 하더라고. 가라고. 그래 이제 어때 나이 한 열 한두살 먹었는데 어떡할거야. 그래 이제 보내주더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나쁜짓 하는게 시작한거라. 바탕이 없어가.

(2) 청소년기

〈사례 5〉은 17세 특수절도로 체포된 기록이 있었으며, 이후 20대 중반까지 주거침입 및 절도 전과가 반복된다. 〈사례 5〉은 청소년기의 범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야채 등을 훔쳐다 판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범행 내용은 중장년기의 범죄와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면접과정에서 청소년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이 없었다.

(징역 처음 사신게 74년도 야간 주거침입인데 그게 어떤 얘기에요?) 그게 그거지..시장에서 시장에서 야채같은거 훔치고 그런거지.

(3) 청년기

〈사례 5〉은 자신의 20대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젊은 시절부터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살아왔으며, 이러한 생활은 중장년기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20대까지 대구에서 생활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서른살이 넘어서 서울로 올라왔다고 한다.

(20살에 대구에서 뭐하셨어요?) 거 저저 업자밑에. 노가다 할 때, 업자 밑에 있었어요. 그때는 징역에 안들어왔었어요. 노가다에 업자들이 안나가면은 안나온다고. 제가 부지런해요. 몸도 가볍고 부지런해요. 그래서 안나오고 이라면 데려오라고 해서 일시키고 그래가 있었어요.

(4) 중장년기

〈사례 5〉은 서른이 넘어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청년기를 대구에서 보냈으나 서울에 와야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근거지를 서울로 옮긴 것이다.

(서른 넘어 왜 하필 서울로 오셨어요?) 아니 서울로 오면서 야 여자라도 하나 이제 잡아야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리로 마 시골 있어봐바야 결혼도 못할거고 그래서 서울가자카이 그래서 예 저저 그래서 ○○동서부터 쪽 생활해 가꼬 노가다부터 인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뭐 착한여자 하나 구하까 싶어가지고 서울에 그 ○○동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보니까 맘대로 그게 안되더라구요. 나쁜길로 빠지고 뭐 숨어서 이렇게 방탕대고,

〈사례 5〉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 한 번의 절도가 있기는 하였지만, 꽤 오랫동안 공식적인 체포 없이 지내게 된다. 〈사례 5〉은 그 시기에는 일용직 노동에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때는 ○○동에 거기 가면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 그거는 5시 되면 일어나야해.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신분증이 있어야해. 주민등록 없으면 못 들어가. 가면 ○○인력 사무실이 이거 한 다섯배 돼요. ... 오래 다녔어요. 일을 잘하잖아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야. 진짜 부지런해요. ... 그래가 모여갖고 기분 좋은 날엔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 구로 시장 가서 거기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기분 좋으면 노래방도 한번씩. 그럼 돈이 없어. 하루 일당이 없어져버려. 가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일하면서 끝나고 막걸리 먹는 재미도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사셨고, 그 때 다른 생각 안하셨고요.)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가 이제 열흘동안 술을 안먹고 ○○동 누나 가게도 안가. 내가 피곤한데...아침 5시에 일어나서 현장가면 7시까지지는 가야하거든요. ... (열심히 일하느라 탄 생각을 안하신거네요?) 시간이 없어. 힘드니까.

그런데 <사례 5>은 ‘누나’라고 부르는 식당 주인을 만나면서 상습적으로 절도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누나’와 친분을 쌓으면서 ‘누나’의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팔아주고, ‘누나’가 소개해 주는 사람들과 ‘관광’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다. <사례 5>은 자신에게 친절한 ‘누나’의 부름과 기대를 저버리지 못해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누나가 엄청 잘해주니까. 그 누나는 내하고 굳이 허물없이 속이 있는 없는 말 다하니까. 그건 못느꼈어요. 그 누나를 도와주는 거려는 것보다는 그 누나를 아는 반면에 난 혼자잖아요. 그 누나를 아는 반면에서 그 누나는 ○○에서 발이 넓어 발이 넓고 하다 보니까 자주 가다 보니까 친누나는 아니지만 받아주고 해서 가다보니까 저 사람 이 사람 알다보니까 어울리게 되는기라.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뭐 먹게 떨어질게 개뿔도 없는데 거기서 노가다 일하는 친구는요. 일주일동안 안가. 일주일 안가면 15만원 벌거든 그러면 그거면 하루면 다나가. 뭐 술먹고 그런거보다도 내 그누나 한테 왜 정이 이끌라하고 관계 그런게 아니고 왜 정에 이끌렸냐면 그 누나가 춤을 좋아해. 춤을 잘추고 그 야외 관광 있잖아요. 거기 계속 잘가 발이 넓어요 거기서 거기서 그 누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 관광 춤추러 가는거 거기에 놀다보면 자동으로 가게 되는기라. 회비 2만원 거기에 가면 나는 막 나를 여자랑 붙여주는기라. 그제 그러면 내가 이제 돈 다내야 하는기라. 여자들은 남자들이 잘해야 하는거거든. 그러면 이게 2만원 그제 2만원 내는게 차 한차 다차면 65명이야.

거 다 차면은. 65명에 2만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거기서 거기에서 술 몇 병 재료 다 사고 기사양반 돈하고 저저저 거 거거 회비 거 사람 모으는거 회장 그거 다 합쳐서 합친기라. 그게 관광가면은 놀고 그러면 노래도 부르고 그래도 노는것도 그렇지만 돈없으면 노래를 못불러 못부르는 건 아닌데 가서도 안불러서 이걸 내야 하니까 놀라면 돈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이 어디를 가냐 기사한테 가는데. 기사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그 저저 뭐야 차 거 가는거는 회사꺼지만 그 노력은 기사가 해야 하는거니까 그것도 막 30만원씩 그거 해서 간다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그거 노다가 하루에 3만원 벌어가지고 그거를 가면 다가고 없잖아요.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서 일행을 찾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더라고. ... 내가 벌었으면은 집에 가마~안히 있으면은 이 누나가 손님없으면은 야 전화가 와 뭐하냐 카면서 그러면 또 누나가 나한테 밥도 주고 잘해주는데 내 그냥 있을수 없잖아요. ... 그 누나를 알고 지내고부터 이게 돈이 조달이 안되는그라. 돈이... 노가다 해갖고는 이 안대. 들어오면 씨야지 그 돈 몇만원갖고 되나. 그 누나 그래도 술장사하는데 팔아주기도 하고 해야 될거 이게 그 뒤로부터 어떠한게 하다보니 이게 나쁜길로 빠지더라고.

〈사례 5〉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나’와의 교류로 정 붙일 데가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남들이 혹시나 이성교제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였던 것이다.

그 남자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은 나는 뭐 사는것도 또 그런기라 또 혼자있으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제가 초등학교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뭐 이 나인데 낙이 없잖아요 내가 그 구속 거기도 안가도 안가도 돼. 안가도 열심히 살면 되는데 뭐 내가 뭐 왔다갔다 했잖아요 내가 갔다가 오면은 노가다 갔다가 잠자고 이게 무슨 낙이예요 사람이 일만 한다고 사는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여기 저저 뭐 인간 문제 뭐뭐 서울에서 바삭하게 놀면서 살잖아요 내 그거를 느낀게 하 그래도 여자 한 명 데리고 딸 하나 아들하나 낳고 그게 부럽더라구 그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서 살고 그게 부럽더라구요. 그게 정붙여 살아야 근데 내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났어요. 내가 뭐 정붙일 데가 있어야지.

‘누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사례 5〉이 저지른 범죄는 야채, 식용유, 구두 등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훔쳐다가 노상에서 판매하는 것이었다. 〈사례 5〉은 40대 중반

이후 절도 또는 손괴로 10회 이상의 전과경력을 가지게 된다.

○○○ 그 시장에 청과상 있잖아요 청과상에 가면 참외 새벽에 장사할라고 나온 그거 주인없으면 그거 박스채로 두세개 지고 가갖고 ○○○ 로타리 가갖고 잘라갖고 그 놔놓으면 싹다 가져가고 … ○○동 가는, 저 그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동 시장바닥 있잖아요. 그 새벽에 거 가면 차 막 막 하면 있잖아요 마늘 이빠이 싹고 오거든요 그거를 쌓아놔. 그러면 새벽에 주인들이 없어. 거서 리아까 리아까 주워 싹고 큰 도둑놈은 아니고 그것만 한거예요. 그것에다 해갖고 과일이랑 장사하면 다 눈에 보이니까 가위 하나 가갖고 그제 뿌리가 이렇게 되갖고 20개 30개만 해도 뿌리가 이빠이야. 그거 해갖고 시장 같은데 사람많은 신호등같은데 그런데가 가서 매일 시장에서 만원팔면 나는 오천원에 팔고, 그러면 반, 반 싸니까, 사람들이 막 사가는거라. 그래가 그 잘라다 주는거라. 열 개만 팔아도 한 오륙만원 되거든. … 뭐 하도 많으니까 자세한건, 식용유도 훔치고. 그기 내가 식용유 그거에 어떻게 빠져드는가 하면은. 이것도 몰랐었는데 … 내랑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식용유가 나온기라. 식용유가 나온기라. 식용유 이게 괜찮대. 훔치는데. … 구두도 훔쳐봤지. 옷도.

그러나 현재 느끼는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후회만 남았다고 평가한다.

내가 느낀게 이 나이에 면허증 하나 없고 결혼도 하나 못하고. 그래 이게 남자가 왜가지고 요즘은 이게 필수잖아요. 남자가 왜가지고 면허증 하나 못만져 보고. 핸드폰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스마트 폰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이 무슨 이게 내가 사는건가. 이런 생각 많이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후회해봤자. 뭐 젊어서 그렇잖아요. 이 나이 먹고 결혼도 못했지, 스마트폰 하나 못만져 봤지. 스마트폰 시대인데. 나는 뭐 등신인가.. 이게 내 속으로 그래요. 사는건지 죽은건지 알수도 없고. 스마트 폰이 필수잖아요.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5〉의 범죄 시작은 어린시절 성매매 집결지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절도였으며, 공식기록상으로는 17세에 저지른 특수절도이다. 그러나 17세의 특수절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으나, 다른 진술들을 미루어 볼 때 도매시장 등에서 생필품을 훔쳐다가 되파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짐작된다.

처음에는 거 저 ○○○○(성매매 집결지를 말함)부터인거라.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저녁에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줄때가 있잖아요. 켈 처음은 그게 아니고 돈이 눈에 보이니까. 문을 열었는데 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투에서 돈을 꺼내갖고 돈이 좀 있었어요. 꺼내고 그러니까 거기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포크로 그 안이 걸리더라 꼬. 그때 그 국산호크를 달아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리더라구요. 그리고 그거또 그거 또 나서 내가 열었다는걸 모르게 한다고 만 원 짜리 하나 집어놓고 자장면 사먹고 그래서 나쁜길 로 들은기라. ... 빼간 돈 때문에..나이가 어리니까 처벌은 안했는데 끌려가서 앉아있어. 꿰어앉아서 4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보내줬어요.

(2) 범죄 중단

〈사례 5〉은 20대 초반부터 오랫동안 공식적인 범죄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일용직 노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돈을 모으고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그때는 ○○동에 거기 가면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 그거는 5시 되면 일어나야해.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신분증이 있어야해. 주민등록 없음 못 들어가. 가면 ○○인력 사무실이 이거 한 다섯배 돼요. ... 오래 다녔어요. 일을 잘하잖아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야. 진짜 부지런해요. ... 그래가 모여갖고 기분 좋은 날엔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 구로 시장 가서 거기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기분 좋으면 노래방도 한번씩. 그럼 돈이 없어. 하루 일당이 없어져버려. 가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일하면서 끝나고 막걸리 먹는 재미도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사쳤고, 그 때 다른 생각 안하셨고요.)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열흘동안 술을 안먹고 ○○동 누나 가게도 안가. 내가 피곤한데...아침 5시에 일어나서 현장가면 7시까지 가는 가야하거든요. ... (열심히 일하느라 탄 생각을 안하신거네요?) 시간이 없어. 힘드니까.

(3) 범죄 재시작

〈사례 5〉은 범죄를 재시작한 요인으로 ‘누나’와의 교제를 들었다. 그는 ‘누나’가 부를 때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문제는 자신의 합법적인 행위만으로는 돈을 조달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벌었으면은 집에 가마~안히 있으면은 이 누나가 손님없으면은 야 전화가 와 뭐하나 카면서 그러면 또 누나가 나한테 밥도 주고 잘해주는데 내 그냥 있을수 없잖아요. ... 그 누나를 알고 지내고부터 이게 돈이 조달이 안되는그라. 돈이... 노가다해갖고는 이 안대. 들어오면 씨야지 그 돈 몇만원갖고 되나. 그 누나 그래도 술장사하는데 팔아주기도 하고 해야 될거 이게 그 뒤로부터 어떠한게 하다보니 이게 나쁜길로 빠지더라고.

(4) 범죄 지속

〈사례 5〉은 반복되고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도 범행을 지속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수감생활 중 다른 범죄자들에게 범행을 배우기도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나도 급한데.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알면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알면서도 요번에 나갔을적에 노가다 할라고 마음 먹었어요. 진짜 할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나한테 축이 딱 오더라고. 버스 노선을 모르겠는거라. 옛날에는 저저 뭐냐, 저저 구로동 120번이 여의도 쪽으로 도는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길을 다 알았어요. 저기 영등포 돌아서 가는 길은 많았는데. 요번에 딱 나가니까 번호 번호도 무슨 다 바뀌어버리고 노선도 다 바뀌어버리고 엄두가 안나는기라. 와...세상이 이렇게 바뀌 버리는구나. ...저는 CCTV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야기 해 드릴게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고 도둑질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들어오고 나서 다 알았어요. 여기 들어와서 조금 알았어. 알았는데 도둑놈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절도나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모든걸 다 통틀어서 한가지로 말하면은 여기서 다 배워서 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쁜짓은 여기서 다 배운다는 것만 명심 하세요. 딱 한가지 충고. 근데 내가 여기와서 CCTV를 어떻게 알았냐. 나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하고 도둑놈하고 분류가 돼요. 교도소 오면 흩어져버리는데, 구치소에는 다 분류가 돼. 절도면 절도, 폭력은 폭력 다 분류가 돼. 도둑놈이 10명이 있으면 방에 많아. 10명씩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 말 하지 무슨 말을 하냐요. 교도소는 배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 사기방은요 저저 뭐야 사기방에 가면 터해. 사기방 가면 전부. 나도 사기 방 들어가봤잖아요. 절도방 들어가면 하는 이야기가 CCTV얘기밖에 안해. 근데 내가 거기서 배운게 나는 몰랐는데 CCTV를 알았네.

6. <사례 6>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경주)..... 1948			
어머니 사망 1953			
아버지 사망 1960			
누나 집에서 생활(인천) 건축현장 일용직 근로			
아들 출생 1968			
결혼 1972		1973	장물취득 벌금2만
둘째 아들 출생		1973	상해 벌금5만
사우디에서 근무(목수) 1979		1978	중과실치상 벌금40만
부인 가출 1980			
음주 시작			
건축현장 일용직 근로 1988			
공공근로 1993			
천식 판정->공공근로 탈락		1995	폭행 벌금30만
기초수급대상선정		1997	폭행 벌금30만
		1999	폭행 벌금100만
		2000	상해 벌금50만
		2002	재물손괴 벌금150만
건축현장 일용직 근로(목수)..... 2002		2003	상해 벌금150만
		2005	폭행(야간·공동상해) 벌금70만
		2006 징역 1년(폭행).....	재물손괴 벌금20만
			상해 집행유예2년+징역6월
			상해 벌금50만
		2007 폭행 징역.....	상해 벌금50만
			상해 벌금70만
		2009	폭행(집단·휴가등 협박) 징역4월
			상해 벌금500만
		2012	상해 벌금200만
			폭행 벌금30만
		2014	폭행(집단·휴가등 협박) 징역6월
		2015	폭행·재물손괴·강제추행·공인유관·
			모욕 협박 징역2월 및 10월
교통사고		2017	폭행 징역10월+몰수
		2018	폭행 징역2년(본건)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6〉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향을 떠나 누나들이 있는 인천에서 성장하였다.

열 두살 먹어서 왔어요. 태어난거는 경주서 태어나고, 크기는 인천서 컸어요.

(인천에는 왜 올라오신 건가요?) 누나들이 살고 있어요.

(누나들 따라 오신 건가요?) 네. 아버지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셔서가지고..누나 밑에서 컸어요.

(선생님 몇 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나요?) 부모님요? 어머니는 제가 다섯 살 때, 아버지는 제가 열두살 때..

어린시절의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 학업보다는 농사를 돕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그럼 학교는 어디까지 나오셨어요?) 학교는 못 땡겼어요. 초등학교 조금 땡기다가 3학년 땡기다가. 못 땡겼어요.

(학교는 일하시다가 못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가정형편 때문인가요?) 그때, 인자... 형편이 어려웠어요.

(12살 이전 ○○에서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건 뭐가 있어요?) 큰 기억 남는게 뭐 농사짓고...농사짓는게...좌우지간 누나가 시키는대로 했으니까 그때.

〈사례 6〉의 어릴 때 기억은 많지 않았으며, 주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본 기억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어렸을 때 주로 뭐하고 노셨어요?) 뭐 조깅매가지고... 잘 몰라요 그건. 소 풀 뜯기 간간 기억이 나요. ○○때 쪼깅매가지고... 잘 기억이 안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2) 청소년기

아동기를 고향에서 보내고 누나가 있는 인천으로 온 〈사례 6〉는 누나와 함께 살면서

도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노동일 등을 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한다.

(그럼 인천에 12살에 가서서 학교는 안다니셨나요?) 아...못갔지.

(그럼 인천에 가서서도 누님이 시키시는 거 하면서 생활 하신거예요?) 인천...인천에...
뭐 워낙 어리니까.

(열두 살에 인천 가서서 낮 동안에 주로 하신일은 뭐예요?) 인천서 뭐, 노가다 조그마하게 뭐 노가다를 좀 하고 그랬어요. ...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건설현장에서 노가다를 12살 때부터 시작했죠.

〈사례 6〉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억한다.

(사실 열 다섯 살이면 놀기 좋을 때잖아요.) 생각 하니까... 내가 잘 살고 봐야하는데... 돈 모아 둔게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아버지 엄마가 잘 살면 유산을 받아서 잘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거죠.

(3) 청년기

〈사례 6〉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한 일용노동을 청년기에도 지속하였다.

(스무 살 때 뭐하셨어요?) 뭐 일한다고 정신이 없지요. 애들 학교 가르키야지 이런 맘도 있고. 좌우지간 일을 해야 지요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아침묵고 나가면 회사에서. 회사 끝나면 8시고 이럴 거 아니예요. 왔다 갔다 세월 다 가는 거지. 내가 안 별면 애들 학교 갈수가 없잖아요.

〈사례 6〉는 스스로 꽤 어린 시절에 결혼을 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결혼 이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진술한다.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일찍 했어요. 24살

(자녀분들은 몇 명이신가요?) 큰아들. 인자 50이요. 둘째 아들이 72년생이니까 마흔 몇이예요. 아들 둘

(결혼하고 애를 바로 낳으셨나요?) 예. 24살에. 애가 애를 낳았다 했어요. 그때

(그 때 결혼 하실 때 집안 형편이나 선생님 경제 상황은 어떠셨는지?) 그 때 뭐 기억이

잘 안 나.. 뭐 어려웠겠지...

(그럼 결혼 하실 때 경제 상황이 조금 괜찮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냥 결혼 후에 막 좀 더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거였는지.) 그냥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랬지. 결혼을 했으니까..

(그럼 그 당시에는 결혼 당시의 그니까 사우디 가기 전에는 사모님이랑 사이는 어땠어요?) 아 뭐 뭐 그거는 괜찮았지요. 그 때는 괜찮았지.

결혼 직후 <사례 6>는 장물취득과 상해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장물취득 범죄에 대해서는 지인이 공장에서 봉급을 받지 못해 사장 몰래 철사를 가져온 것을 팔아주었다고 설명하였으며, 상해 전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철사 공장에 내가 다닐 땐데, 내 아는 동생이 다른 공장에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봉급을 안주니까 철사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지 봉급을 가진다. 이걸 팔아달라 나한테 와가지고. 철사좀 팔아서 지 봉급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내 아는 사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 내 장물로 걸렸어요. 팔아준거. 그게 그거요. 그게 철사가 50kg. 그 돈만 몇 천원 같겨. 그걸 팔아달라니까 수갑 딱 채워가지고. 왜 공장 물건을 왜 팔아주냐, 수갑 채워서 형사하고 딱 오는거야. 맞다고 팔아줬다 그래가 내가 다니던 공장에 팔아줬어요.

(나쁜 짓인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 왜 그거는 그 전부터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 공장 사장도 알고, 다 아는 사이예요. 그 이놈이 사장한테 얘기 안하고 가져온거죠.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건 알고 팔아주신거예요?) 예. 그게 장물이요.

(또 벌금 5만원짜리 상해가 있네요?) 몰라요 그건. 서울이요? 그건 잘 기억이 안나요.

(4) 중장년기

30세 중과실치상 범죄를 저지른 이후 약 20년간 공식 범죄 기록이 없었다. <사례 6>는 이때의 중과실치상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도 기술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은 수당을 받는 것을 보고,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내 친구들이 그 동네 사는데, 목수도 있고 배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아파트 안에. 그래가지고 인자 난 잡부로 가고 내 친구는 인자 목수로 기술자로 가고.. 근데 기술자하

고 돈 차이, 수당차이가 절반도 안돼요. 지금 목수들이 20만원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 잡부는 7,8만원 받아요. 그래서 목수를 배워야 겠다 그래서 하나 했지요. 형틀목수면 어떻게 붙인다 정해놓고 인부들 물으면 가르쳐 준다고요

(그 기술은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뭐 그냥 공장에서 일하다가 옆에서 보고 배우고. 뭐 톱질하고 그런거 쉽잖아요.

(그럼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신건 아니신거네요.) 공장에서 그냥 일하다가 옆에서 하는 거 막 보면서 배우고 그러다가 기술 따려고 해서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고 그랬죠.

이후 <사례 6>는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목수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어찌다가 사우디를 가기로 결심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돈을 덜 줘. 자격증 따고 그래서 나가서 돈을 더 벌려고 했지. 시급이 한국보다 사우디가 더 비싸니까, 시급이 딱 더 비싸게 정해지면 거기로 가서 돈을 벌었지. 그 때 아마도 몇 달러 막 그랬으니까 그게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쳐주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돈을 더 벌러 나갔지. ... 내가 사우디에 가서 막 직접 기술직에 들어가서 숙련된 기술을 얻어온게 아니라, 막 기술직 뒷바라지 하면서 지냈던 거지. 그래서 기술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목수일 도 직접 막 한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여러 번 막 가끔씩 해보고 그래서 그냥 터득한거지. 그게 막 한국 와서 내가 직업으로 얻어서 할 정도의 그 정도의 목수 수준의 그런 건 아니었고 목수 뒷무대 정도 라고 했어.

그런데 <사례 6>의 가장 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절에 발생한다. 돈을 더 많이 벌기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였지만, 그곳에서 받은 봉급을 배우자가 모두 탕진한 것이었다. <사례 6>는 배우자와 배우자 친구들이 몰려다니며 춤바람이 난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배우자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게 된다.

행복한 걸 못 느껴요. 워낙 고생을 해서. 행복한 때가 시간이 없었죠.

(결혼할 때 행복하시지 않았어요?) 사우디 갔다와가지고 제가 눈물로 키웠어요. 애들 키운다고.

(아이들 낳았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숨) 뭐...내 자식이니까 자식이구나 하고

살았지.

너무나 기 빠져가지고 혼나가지고, 아들 그지 만들어놓고 전세 다 빼가지고 집도…없어져 버리고.

(사우디에서 번 돈까지요?) 애들 다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니까 돈 다 부쳐줬죠. 애들도 그지 만들어놓고, 전세 살던거 다 없어졌어요. … 사우디 갔다 와서 사람 변해 뿐거지. 눈이 확 뒤집어 진거라. 칼라 텔레비도 다 부셔버렸어요. 칼라 테레비도 그땐 많이 없었어요. 그 칼라 테레비도 내가 다 부셨어요.

(사모님 나가서서요?) 예. 그때부터 술 많이 먹었죠.

(그럼 사모님 원망이 많이 되겠네요?) 빨리 이혼해버려야 해요 그거. 영등포에 이발사 하며 살고 있다고. 영등포….

(사우디 가기 전에는 사이가 어떠셨어요?) 가기 전에 뭐 식당에 나간다고 댕겼다고요.

(그럼 선생님이 사우디 가셨을 때 춤바람이 나신거군요.) 예.. 뭐 식당 당긴다고 그 세 사람이 그랬어요. … 3명이 몰려땡기고 그랬어요. 사우디 가기 전에 친구 3명이랑 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사우디 가고 나니까 막 3명이 같이 바람나고 그랬지.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 <사례 6>는 폭음하기 시작하였고,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자주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에서 일할 당시에는 단순한 시비는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디 가기 전에는 술 안 먹고, 80년도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죠. 사우디 갔다 와서 술 먹기 시작했죠. 사우디 갔다 온 후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서 그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술 드시기 시작하신거예요?) 네네. 그 때부터 엿을 겁니다.

(그 딱 술 드시기 시작할 때는 따로 실수하신 거는 없었나요?) 네. 그 때 따로 뭐 싸우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실수한 것도 따로 없었고.

(그럼 술 드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고 치시기 전까지는 따로 실수하신 건 없었나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빼고는 딱히 없었어요. 그 때 그거 해서 여주 교도소 가서 그 때 빼고는 따로는 없어요. … 그 때 누님 집에 얹혀 살 때 그 때는 화가 막 나지는 않았어요. 아내 도망 갔을 때 아내한테 막 화가 난 후에 그 때부터 술을 막 먹고 막 망가지기 시작했죠.

(사우디 갔다 와서는요?) 철사공장에 다녔어요. 공공근로로.

(정식으로 취직하신게 아니라 잠깐 일 도와주시고 공공근로 하시고요? 그럼 그 이후에 취직하시긴 없으세요?) 좌우지간 80년도 왔어요. 사우디 갔다 와서.

(사우디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버셨어요?) 철사공장 다니고, 공공근로 다니고. 노가다 하고.

그러나 40대 후반에 천식이 생기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수급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20회 이상의 폭행 및 상해전과를 기록하게 된다. 배우자와 헤어진 이후 습관이 된 과도한 음주가 동네사람들과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동네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건화되어 반복적인 범죄경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좌우지간 지금 사는 아파트. 거기 와서 사고 많이 났어요.

(사실 비슷한 일들은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알아서 이해해줘서 넘어가고 그랬는데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비슷한 일 있어도 이해해주는 일도 없고 경찰에 신고해서 전과가 생기신거군요?) 그렇죠. 지금 다 전과야. 파출소, 경찰서 다. 호흡이 안돼서 미치겠어.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벤토린 빨고 불고. 용각산 그거 먹고 숨이 안되니 미치겠어요. 잠을 못 잤어요. 천식이 드러운 병이야.

〈사례 6〉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과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아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아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술 먹고 욕해가지고. 이명박씨 대통령할 때 왔어요. 여주교도소에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됐더라고. ... 그때가 여주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15년 안됐어요. 술 먹고 욕해가지고. 한 15년 됐지요. 그 전엔 안왔어요. 그러니까 금방 금방 또 가고. ... 그러니까. 근데 제가 술버릇이 나빠가지고 막 나쁜 소리를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해버리고. 나가면 인자 술을 안먹어야지. ... 우리 아들도 때리고, 동네 아줌마 욕하고 그랬어요. 뭐 도둑질하고 이런건 없고, 욕을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잘못된게 뭐 있다고 나 약올리고 그 사람 붙들고 그러니까 성추행이라 하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그때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한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셨어요?) 뭐 맨날...막 좌우지간 나쁜 말 하고 그러니까. 물론 나도 술 먹고 욕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화성 가가지고 교육받고 그랬어요. 두 달 가서.

(실제로 성추행을 하신건가요?) 아니...불들다가.

(그 아주머니가 나쁜 소리 뭐 하셨어요?) 아니 좌우지간 나쁜 소리를 하니까 그랬지. 가만있으면 내 안그래요. 술먹고 뭐 어찌고 어찌고 하는거지. 그래서 '야이 시발년아, 니가 술 한번 나한테 사줬냐 이 개 같은 년아' 그랬지. 그래서 파출소 신고하든 잡혀가 도장찍고, 경찰서 잡혀가고 그랬지.

(어디에서 그리신 건가요?) 동네서요. 공원 벤치. 아파트 안에 공원 있잖아요.

(시간은 몇 시쯤이요?) 낮에요. 그 공원에 가면 아줌마들 다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파트 공원에서 낮에 술 드신거고, 두 번째는요?) 다 그래요. 아파트 안에서 수퍼 있잖아요. 이번에 나가면 그 동네 안 살라 그래요. 다른데 가서 살라고.

(그때 왜 낮부터 술을 드셨어요?) 뭐 지나간거 생각하니까 가슴 아프고..뭐 다르게 뭐 있어, 술 밖에 더 있나.

...

(술은 왜 많이 드셨어요?) 이유도 없어요.

(혼자서 드셨어요?) 예. 저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혼자 살다가 둘째 아들이 형네 있다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들이랑 사는게 속상해서요?) 예. 속상하가지고, 다 가져가고 이래가.

(아드님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했나요?) 말도 안들어요. 말씀 드렸잖아요. 간질있고 말도 안듣고 지 마음대로 할라 그러고. 그거지요.

〈사례 6〉는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상실하고,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였다.

(싸우고 나시면 속 시원 하세요?) 완전 기억 안나요. 바지 내려가지고 공원에 관리 사무소 옆에 울타리가 높다고요. 그 앞에 의자가 쪽 있는데 관리사무실 있고, 노인정 있고. 근데 울타리 대놓고 오줌 싸고...하하. 챔피언이런 것도 모르지.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참 안나갔어요.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6〉의 최초 범죄는 20대 중반의 장물취득이지만, 이 사건은 일회적이고 우연

적인 사건으로 보인다.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인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지인이 절취한 철사를 구입해 준 것으로 본격적인 범죄경력의 시작으로 보기는 힘든 사건으로 판단된다. 이후 20대에 있었던 상해 및 과실치상 범죄 역시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한 범죄경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범죄경력의 시작은 40세 후반에 시작한 폭행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이 없지 않았을 것이나, 이때부터의 폭행은 지역 주민들과의 반복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때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번 돈을 탕진한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으며, 천식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일을 그만 둔 후 <사례 6>의 음주는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추정된다.

천식 걸려가지고. 천식 때문에 진단을 떼가 동사무소에 갔다 주니까 천식이..기초수급자가 되더라고요. ... 몸이 아파가 천식이 와가지고 진단을 떼가 갔다 주니까, 공공근로는 없어지고 수급이 뜬거요 ... 동네서 술 이지요. 다른건 없어요. 술 안먹으면 말도 안해요. ... 내가 나쁘게 안했는데 건들면 가만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섭하면 니가 뭔가 간섭을 하나 이런거지요.
(동네분들이 뭐라고 간섭을 하던가요?) 별 것도 아니에요. 술이죠. 술먹고...다른건 없어요.

(2) 범죄 지속

40대 후반에 시작한 <사례 6>의 폭력 범죄는 중단된 적이 없었으며, 거의 매년 벌금과 징역 등의 형을 받아 20여회의 폭력전과를 가지게 되었다. <사례 6>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주민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 갈등상황을 참지 않았고, 지역주민에게도 <사례 6>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웃이었을 것이다.

좌우지간 지금 사는 아파트. 거기 와서 사고 많이 났어요. ... 그 동네요. 요만한거 있어도 그거 별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동네에 대해서 ‘그 동네가 사람 속 버리는데 유명하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건가요?) 그 동네 안살려고 그래요. 영구임대아파트니까 장애자 뭐 인천 시내에서 각 구마다 다 온거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온 갖 짬뽕돼가지고. 영구임대아파트니까 다 오는거 아니요. 그러니 와가지고 아파트에 사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은.

7. <사례 7>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홍천).....	1952		
부모이혼.....	1955		
서울로 이사 -양아버지와 생활 중 차별 경험-	1961		
아버지집(홍천)으로 이사	1962		
국민학교 중퇴-고사 제벌	1963		
이발소 근무		1965	질도 경찰입건 -이발소기주-
머슴살이.....			
식당 근무.....	1968	1969	질도 징역
양조장 근무.....	1970	1971	질도 징역장1년단8월
첫 번째 결혼.....	1972		
변대기장사(서울)			
아들 출생.....	1976	1977	질도 징역8월
딸 출생.....	1978		
병퇴기 판매.....	1978	1979	질도 징역8월 -오토바이 질도-
이혼(법정구속 이후).....	1980		
염취수리(대전).....		1981	질도 징역10월
실치/수리상 운영(대구)		1982	질도 징역 -오토바이 질도-
두 번째 결혼.....	1984		
정관수술			
이혼(법정구속 이후).....	1985		
	1988	1986	강도상해(택시) 징역5년 강도상해 징역5년
카바레(취미생활).....			
동거 (여관생활).....	1993	1992	폭행 징역1년+벌금10만
실내포장마차 운영		1994	박하 징역1년6월+물수 도로교통 벌금10만
철물점 운영(서울)		1995	질도 징역 -오토바이 질도- 도로교통/폭행 벌금70만
아버지 사망.....		1997	폭행 징역1년
		1998	질도 징역1년
		1999	질도 징역2년
		2002	질도 징역1년6월+물수
		2003	질도 징역1년8월
동거.....	2005		
어머니 사망.....		2006	도로교통 벌금50만 질도 징역3년+물수
이별.....		2009	질도/전조물침입 징역1년6월
		2010	질도 징역 질도/집단총기폭행 -장비용구 질도- 징역3년6월+물수
		2014	상습질도/무면허운전 징역1년6월+벌금30만
		2016	무면허/도로교통 등 징역2년+벌금30만 무면허/자동차손해 벌금100만
		2018	질도 징역2년6월(본건)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7〉의 어머니는 가혹한 시집살이를 피하기 위해 어린 〈사례 7〉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다른 남편을 만나 살았다고 한다. 어린시절의 형편은 많이 어렵지는 않았으나, 양아버지가 용돈을 주는 문제로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사례 7〉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숙제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제가 어렸을적에 부모님들이 강원도 ○○에서 사셨는데, 내가 3살 때 어머니가 낱업고 ○○○ ○○동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제 나이가 세 살이니까 뭐 말을 잘 들겠습니까? 그때 그 이복사람 만나가지고 주선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 때 당시 내가 일곱 살이었고 그 아버지에서 온 동생은 4살인가 그랬는데, 갠 돈을 주고 난 안주고 차별대우를 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기서 학교를 땡겼어 서울에서 살았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무식하고 그러니까 위에 형도 없고 그러니까 2학년 때 까지는 선생이 때리지 않고 그랬는데 3학년 때 부턴 숙제를 안 해오니까 때리는거라. 그래서 학교를 안다니고 집에선 학교 다니는 것처럼 가고 그 생활을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전화도 없고 선생이 집도 모를때니까 우리 동네 ○○라는 그 애가 하도 1년 동안 안 오니까 물어봤나봐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때부터 알고 그랬는데.

(어릴 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어렵게 살진 않았어요. 그때 뭐 판사람들 밥 못 먹더라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 인제 양아버지가 이제 친자식은 이제 돈을 주고 난 안주고 어머니가 이제 돈 주고 쌀 사와라 연탄사와라 하면 잔돈은 안 갖다 줬으니까. 내가 다 썼으니까. 용돈을 그렇게 썼죠. 쓰다보니까 이발소에서 4개월 일을 했는데 돈 버는 욕심이라도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자꾸 나오는거지.

〈사례 7〉은 이때 여러 번의 가출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며칠씩 돌아다니다 들어간 것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가출은 뭐 수도 없이 했습니다..뭐....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가출을 했으니까....뭐 한 이삼십번은 안 했겠습니까?

(돈 있으면 나가서 객지 생활을 하고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돈을 가져가신 거예요?) 돈은 뭐 제 어머니가 이제 이불이나 쌀 속에 그런데다가. 하도 가져가니까.. 그 당시에는 어머니가 공동수도 물 길러 가시면 한 시간씩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퍼오고 그러잖아요. 서울에도요. 그 시간에 이제 찾는거죠.

(가출은 이유 혹은 계기는 뭔가요?) 그게 가출이라는게 뭐 판게 없습니다. 뭐 솔직히 뭐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또 내 위로 형도 없고. 그리고 국민 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교를 뭐 댕겼는데. 그게 가출한 동기가 국민 학교 3학년 되니까는 그 학교에서 숙제를 안해오니까 그 벌주고 막 패는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겁이 나서 안간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렇게 계속 가출을 한거죠.

(가출하면 몇일쯤 있다가 들어가시나요?) 가출하면 뭐 보통 일주일? 일주일정도 버텼다가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또 뭐 돈 있으면 가지고 나가고 그런식으로 계속 반복이 됐었죠.

학교를 그만둔 <사례 7>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이발소, 식당 등을 다니면서 돈을 벌고자 하였으나 어리다는 이유로 일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발소에 있는 이발기구를 훔쳐서 나온 것이 <사례 7>의 첫 번째 범죄 경험이었다.

제가 객지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발소를 댕겼어요. 이발소를 4학년때가, 3학년때 이발소에 있으면서 머리 감겨주고 하다가 동네 아는 분이 경기도 ○○에 친척이 이발을 하는데 거기가 있으려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인제 7살 때부터 돈을 쓰고 그러는데 한 4개월이 되어도 월급을 안주는거라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도망나와가 여러 가지... 식당에도 있었는데 월급을 안줘요. ... 거기에서 월급을 안줘가 이발 기구를 이제 가지고 인제 팔아야 어디 뭐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 뭐 걸어서 걸어서 그때 돈도 없었어요. 차비.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 그 차비가 없는데 태워주세요 해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강원도 갔죠. 어떻게 찾아왔는지 면사무소에서 오라하더라고요. 지서 가가 수갑 채워가 하룻저녁 자고 이틀저녁 경기도 경찰서에서 왔다 하고 그래가 ○○가 있었죠. 경찰서에 가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이장님하고 왔더라고요. 징역을 살래 우리 집 와서 머슴을 살래 이러더라고요 이장님. 아버지는 인제 돈이 없으니까 니가 이제 몸으로 때워라. 그거죠 인제 그래가 그때 한번 경찰서에서 풀려나왔죠. 그래가 이장 집에서 머슴을 삼년 살았어요. ...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팔아가 그 어린 마음에, 그 뭐 팔라는데 뭐 팔 데가 있습니까? 괜히 뭐 손버릇만 나빠진거지.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합의금을 이장님이 내주시고 그걸로 머슴을 산것이라는 거죠?) 그런 셈이죠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아버지는 <사례 7>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농사일만 시켰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때의 기억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분노의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며, 성인이 된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슬픈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세 살때 어머니가 오셔서 어머니가 양아버지랑 만나서 살았잖아요. 옛날에 시집살이가 저거 하니까, 시집살이 견디기 힘들어서 도망와가지고. 내를 이제 중학교까지는 보내 야 아버지한테 보내고. 강원도에서는 또 다른 엄마를 얻어가 살았는데 (어머니랑 나와 사셨다가 좀 크니까 아버지께서 데려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4학년 때. (학교는 서울에서만 다니셨어요?) 4학년은 이제 ○○의 ○○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1년에 한번씩 서울에서 보러왔어요. 그래서 엄마 오는 날에는 학교를 못갔죠. 그래서 엄마 쫓아가다가 잡혀서 두드려 맞고. ... 엄마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며칠 빠졌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오지말란다 하고 학교를 안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 니쓰고 나무해오고 나무 다섯 개 안해오면 넌 밥을 안주고 해가. 아무리 친 아버지라고 해도 야..참...그래가 한뼉잠을 많이 잤어요 객지생활을. 그래서 집락가에 가면 따뜻하 잤어요. 한뼉잠 많이 자고. 아버지가 97년도 서울에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정이 없으니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야,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날꼬...

(4학년이면 11살이잖아요. 그런데도 학교 안보내고 일 시키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학교도 안다니고 집에서 일하고 농사짓는데 일하고 그랬지.

(2) 청소년기

<사례 7>의 청소년기에는 고향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기도 하고, 동네의 양조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며 보냈다.

(식당이란 양조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머슴을 산 직후인가요?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그거는 이제 좀.. 오래된거죠. ... 시기가 그때는 인제 한...16살 그때고.

양조장에 덩겼을때는 그때가 열아홉인가? 열아홉인가 됐을 거예요. 70년도니까

〈사례 7〉은 청소년기에 첫 수감을 경험하였는데, 동네에 있던 자전거를 훔쳐서 팔다가 체포된 것이었다.

교도소 처음 온거는 ... 내가 17살때 이때 처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전거 절도.
(어떤 자전거요?) 술 집 옆에 있는 자전거. 그때 1년 받았어요.
(그게 김천교도소로 간건가요?) 예. 그때는 자전거 절도가요. 오토바이보다 더 비쌌어요. 판사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없는 사람 자전거 훔쳐다 팔았냐고요. 그래서 비싸게 주더라고요.

(3) 청년기

〈사례 7〉은 20대 초반에 배우자를 만나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 고향에서 양조장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놀러 온 배우자와 교제하게 되어 서울에서 결혼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례 7〉은 이른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불화를 겪게 된다.

그렇죠. 그래가 그때 나와가 양조장에서 일을 했어요 양조장에서 일을 하면서..좀 정신 차려가...정신차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져가 인제 적응도 하고 그래가 양조장에서 꾸준히 이제 있었죠. 있었는데 그 이제 우리 집 집사람 되는 사람이 서울에서 식모살다가 추석 때 놀러온거라요 그래가 이제 그때 눈이 맞아가 연애하면서 바람나가 그때 뭐 그 몇 개월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올라가 그때 당시 70년대니까 뭐...방세.. 뭐...보증금 만오천원에 뭐 이만원씩 아니 이천원씩 이래 됐을걸? ... 그러니깐 그때 당시는 뭐 제가 뭐 생활력이 무척 강하니까..뭐 서울가면 어머니도 있고 그래가 안되겠나 싶었는데 사실 무일푼으로 와가지고 그 생활을 할라니까 이 갖은게 없으니까 이 싸움이 잦아지더라고요. 싸움이. 그때 이제 가정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가정불화가 가정불화지만 그게 뭐 가정불화는 다른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정불화가 이렇게 아니고. 그 여자가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그때 뭐 17살이니까 나는 그때 스물셋이고. 그래가 인제 돈이고 뭐고 뭐 빨리 들어오라 이거죠. 그게 무서우니까. 일찍일찍 들어오라고 ... 여자를 만나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여자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일찍 결혼생활을 하게 됐죠.

서울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당시 <사례 7>은 번데기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번데기 장사를 방해한 동네 주민의 닭을 훔친 일로 또다른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결혼 이후 약 5년간 범죄 경력이 없었으나, 이 일로 두 번째 수감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래가 생활하면서 그 동네에 번데기 장사할 때에 그 스케이트장에서 논가 물에 이래가 스케이트 타고 그리잖아요. 겨울에. 그니까 인제 거기서 번데기 파는데 그 주인이 못팔 게 하나냐 열 받아가지고 이씨 두고보자 이려고 내가 이제 저녁에 가가 닭을 이제 몇 마리 훔쳐다가 팔라하다가 잡혀가 그래가 인제 징역 8월 받아가 살았죠.

닭을 훔친 일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약 3년간 범죄경력이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징역은 뽕튀기 장사를 원할히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친일로 체포된 범죄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혼하게 된다.

(뽕튀기 장사가 잘됐나봐요?) 그때 당시만 해도 78년도 그때는 한 망 튀기는데 한 망에 100원씩 받았는데 70망씩 튀겼어요.

(그때는 굳이 오토바이가 필요 없었을 텐데, 또 오토바이로 징역을 살았던 말이죠. 왜 그러신건가요?) 그때는 그 리어카로 끌고 다니면서 했는데 리어카가 멀리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에다가 리어카를 달고 하면은 리어카로 했으면 괜찮았죠. 가정도 안 깨지고.

(오토바이로 하시니까 장사가 잘 되시던가요?) 오토바이로 하면은 편하잖아요. 내가 지금 뽕튀기를 자전거에도 싣고 다니면서 했어요. 송도 김포 뭐 안가는데 없이 싣고 다니면서 했단니까요. 그래가 마 넘어지기도 몇 번 넘어지고 뽕튀기 기계가 엄청 무거워요.

(4) 중장년기

30대에 들어서 <사례 7>은 또다른 절도 이후 대전을 거쳐 대구로 내려가 생활하게 된다. 서울을 떠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하려는 심정을 가지고 대전으로 쫓아갔다가 마음을 바꾸어 대구로 이동하였다고 설명한다.

집 식구가 그 대전에 도망가가 살았어요. 대전에.. 그래가 내가 이제 솔직히 보복할라고 보복할라고 인제 대전에 갔었죠. 대전에 가가 조만한 좀방 하나 얻어가 그래가 수선도 하고 열쇠도 하고 집수리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 보복해봐야 좋은거 없잖아요. 단념하고 대구에 가서 살아봐야겠다 하고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연고가 없이 무작정 갔어요.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고물상에서 학교방처럼 만들어가 그 대전에서 쓰던 간판을 아래에 양쪽으로 붙여가 다 잘라가 거기서 고물상에 하나 사다가 하면은 좀방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열 몇가지 했어요. 칼도 갈고 우산도 고치고 전기밥솥도 고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열쇠 수리도 하고 하수도 막힌거 그런거 하고 잔잔한거 많이 했죠. 그래 그때는 거기서 돈 좀 벌다가.

〈사례 7〉은 대구에서 두 번째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난 배우자는 〈사례 7〉에게 첫째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례 7〉에게 정관수술을 권유하였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결혼에서 출생한 아이들 양육을 위해 두 번째 배우자가 정관수술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사례 7〉은 이때 정관수술을 한 것에 대해 무척 후회하고 있었으며, 정관수술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도 자녀가 출생하였다면 두 번째 결혼이 유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한번 중매해주세요. 아 그런거 이제 신경쓰지 말라고. 내가 그때 애가 둘이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죠. 애가 둘이 있는데 그래가 총 한 5번쯤은 봤어요. 이제 중매쟁이도 지치니까 거짓말로 애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선본지 한달만에 결혼했는데 그래가 이제 처갓집에 시누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 왔다갔다 하더라. 그 와이프가 자꾸 의심을 하더라고 우리 한번 점 좀 보러가자. 왜? 애기가 뭐 대구 어디에 뭐 있다고 그런 점괘가 나왔다고 점 보는게 가자고 하더라고 나는 예수 믿어가 안간다고 그랬더라 하여튼 간에 뭐 점 보러가자고 줄라쫘터라고. 어른들한테 그런 거는 물어보고 했어야 했는데 혼자 자라다보니까 누구한테 의논할 것도 내가 판단해가 시행을 해버렸으니까..그래서 뭐 갈 사람은 애 낳아도 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들더라고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사실 대구에 사는게 아니고 옛날에 대전에 산다. 네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시장에서 장사했다고..그런 소문 들어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전에 가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랬더라면은 그때 당시 임신 그게 되가 3개월인가 3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

지고 당신이 애들만 키울테니까 그 수술하라고 ...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와라 그래가 서울에 어머니가 키우는 애들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 처갓집에서 왔더라고요 시누들이 와가지고 총각이라고 하더라 애들 뛰 댕기지 개판 오분 전이라고. 그래서 처갓집에 갔더니만 난리가 난거예요.

대구에서의 두 번째 결혼에서도 불화가 있었던 <사례 7>은 화김에 술을 먹고 택시강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때 <사례 7>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며, 이로 두 번째 배우자와도 헤어지게 된다.

당시에 와이프하고 그래가 좀 애 문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가 나는 이 여자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자는 착하고, 자유를 달라이거지. 그리 얘기를 하니까 나는 뭐 속이 타는거죠. 그래 니 죽고 나죽고 해가 그정도까지 단계가 갔으니까 어쩔때는 목을 메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나가가 사고치고 동대구역에서 어린이 대공원가자고 그래가 거기서 택시 강도 해가지고 오만 원인가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나와가 그 ○○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분재하는 집인데 유리창을 그 단독 밑에 그 2층 집인데 그 밑에 층에 유리창 발로 깨고 들어가

(술 드시고 화김에 오만원 뺏으시고 집에 가서 가물파손하시고 그런거군요. 근데 그게 5년이나 나왔어요?) 그게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그때는 그게 심신미약이 되가지고 그래가 그게 좀 5년 정도 나옵니다. 칼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칼을 안 들었으면 한 2년이나 1년짜리지. 근데 그게 칼을 들었기 때문에 ... 그거 인자 병이지 병.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구요. 택시기사 돈 있어야 얼마 있어, 돈 10만원 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가방 끈이 짧으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거죠. 술 먹고 무슨 나쁜 짓을 합니까 맑은 정신으로 해도 잡히는데. 술 먹고.. 미친 강도예요.

<사례 7>은 5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친 후 취미생활로 춤을 배웠다고 하는데, 이 시기 이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이전의 범죄 경력들은 간헐적으로 발생하였다면, 40대가 된 <사례 7>은 거의 매년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었던 것이다. <사례 7>은 이때의 절도에 대해서도 일을 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40대 이후의 전과는 20회 가까이 누적되었다.

(철물점 하시면서 오토바이 그냥 하나 사시지 그러셨나요?) 그때 장사도 안 되지. 철물점 하는 거는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한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되더라고. 그래 그 때 당시 오토바이를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어요. 장물을 그 당시에 오토바이 가게에서 굴러만 가면 20만원 줄테니까 하루 저녁에 4대씩 3대씩 팔아가 (오토바이를 선생님이 탈려고도 훔치신 것도 있고 장물로 팔려고 오토바이를 훔친 거군요?) 어쨌든 베린 몸이니까 그 당시에 몇 번 했는데 이게 뭐 또 좀 오토바이 가져오지 말라고 좀 있다가 저 시골이나 가가 뭐 그래가 우연치 않게 보살들이 기도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 같이 따라가니까 오토바이 가져오면 사줄거나 하니 얼마든지 사주니까 그래가지고 열쇠기술자니까 오토바이 그거 하나쯤은 식은죽 먹기 아닙니까 그래가 그 ○○에서 훔친거는 서울 가져다 팔아버리고 서울에서 훔친 거는 ○○에서 팔다가 그런식으로 몇 번하다가 별미를 잡혀가 교도소 갔다가 2년 받았나? 그때부터 2년.

(뭔가 하려면 기동력이 있어야 하니까 오토바이가 꼭 필요하셨던거네요?) 그렇죠. 나쁜 길로만 가려고 한게 아니고 그제 시발점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걸 알면서도 이게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대가리 뚫만 차가지고 공부라도 했으면은 머리가 좀 돌아갔을 텐데 생각을 못하니까 그때 그때 판단 되는대로 하는거예요. 이걸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걸 좀 참고 인내하면서 헛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합니까

그제 절도미수해가지고 부산에서 3년 6월 살고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갔다 나오니까 공구가 없어가지고 장비가 없어가 공구를 어떻게 좀 훔쳐가지고 일하려고 (그건 왜 3년 6개월이나 나왔어요?) 특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들락날락하면은 추가 그런게 있어요. 누범 6개월 더 주는 거요. 특가법이라는 것은 5조 6항이라 그래가지고요 감옥법 있잖아요 그 죄를 주는거라요. 그래가지고 특가법 이게 뭐야 5조 6항이 빠지고 지금 2년을 받은거예요. 5조 6항이었으면 4년 살아야돼요.

〈사례 7〉의 현재까지의 마지막 범죄는 가정집에 침입하여 마당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팔았던 것이었다. 그는 이번 건에 대해서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많은 불만을 표현하였다.

그 보니까 답이 얕아요. 사람 못 들어오게 벽돌하고 다 둘러놔더라고. 담 넘어가 양은술하고 돈 되는거 몇 개 주워서 팔아야 돈 뭐 그거 5만원 받고 팔았는데, 다는

안 팔고 두 개 팔아 5만원 받았는데, 5만원 받아가지고 2년씩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다른 건에 대해서는 내가 계획적으로 했으니까. 계획적이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 한것이지 내가 저거 이걸 남을 피해주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훔친 게 아니고 일단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로 터전을 잡아가 하나 훔쳐다가 쓴 게
 그것도 뭐 전과가 많다고 해가지고 누범을 가산해가 1년 줄 거 2년씩 3년씩 중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6개월만 살고 내보내 주면요. 금방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말이 2년이지 2년이면요.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7〉의 진술에 따르면 아동기때 이발소 물건을 훔친 것이 범죄의 시작이었고,
 이때부터 나쁜 버릇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경기도 ○○에 친척이 이발을 하는데 거기가 있으려냐고 ... 한 4개월이 되어도 월급을
 안주는거라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도망나와가 여러 가지... 식당에도 있었는데 월급을
 안줘요. ... 거기에서 월급을 안줘가 이발 기구를 이제 가지고 인제 팔아야 어디 뭐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가 뭐 걸어서 걸어서 그때 돈도 없었어요. 차비.
 차비가 없어가지고 ... 그러니까 그걸 이제 팔아가 그 어린 마음에, 그 뭐 팔라는데
 뭐 팔 데가 있습니까? 괜히 뭐 손버릇만 나빠진거지. 팔아먹지도 못하고.

〈사례 7〉의 첫 번째 수감은 청소년기에 저지른 자전거 절도로 인한 것이었다. 청소년기의 절도에 대해서도 일하던 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나름의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두부공장 있을 때 월급을 또 안주대. 그래서 두부 이빠이
 때려 싣고 잔치 집에 가져갈 두부 다 팔아가 ○○○ 와가 자전거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뭐 끝이었죠 빠이빠이. 이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2) 범죄 중단

〈사례 7〉은 첫 번째 수감생활 이후 했던 첫 번째 결혼 이후 약 5년간 범죄경력이

없이 생활하였다. 이 시기에 대해서 번데기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된 책임감과 결혼생활을 유지할만큼의 충분한 수입이 범죄를 고려하지 않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번데기 장사 했어요. 자 피가 되고 뼈가되고 살이 되는 번데기. 일반사람들 한 말 팔 때 서 말씩 팔았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죠. 생물이잖아요. 그때 밤 열시까지 팔다보면 공장 주변에 ○○○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번데기 100원씩 주고 사면 1000원씩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내가 20살이었고 여자가 17살이었는데 그때 애기끼리 살았으니까 서로 철이 없으니까 돈도 뭐고 뭐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면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먹고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여자는 그래 하니까 한 달을 생활을 했어요. 내가 싸울 때마다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고 했다니깐요. 근데 백화점에서 옷을 사줬는데. 장모 장인들이 하는 말이 놀러가면은 너희 옷을 맨날 저기 하고 하니까 40대 기반 잡아야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례 7〉은 두 번째 결혼 직후에도 약 2년간 범죄를 중단하였는데, 이때에도 새롭게 시작한 결혼생활과 충분한 수입이 범죄경력을 중단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상황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그냥 뭐 동네 사장님하고... 일거리가 많았죠..

(굳이 절도를 안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었던 거고 그 계기는 결혼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던 것이라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게 정역은 그렇게 살지만은 원래 범죄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1년을 살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뭐 생활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게 오토바이란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살라 그러면은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언제 돈을 벌어가 오토바이를 사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솔직히 노가다 현장에 가가 지금 뭐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일을 하든가 그러는데 원동기 저 순발력이 없으니까 뭐 이리로 와라해도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되겠다. 오토바이가 있다고 쳐요. 오토바이 있으면 물건 살돈이 없잖아요. 돈백만원이라도 있어야 장비를 사든가 하겠죠.

(3) 범죄 재시작

〈사례 7〉은 강도상해 범죄로 5년의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범죄경력이 반복된다. 5년의 징역형 동안 두 번째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고, 이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어 장기간의 징역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뭐 나이 먹어서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 그래가지고 특가법이라 해가지고 나온지 3년도 안 돼가, 특가해가 배보다 배꼽이 큰거죠. 죄는 뭐 6개월만 살고 나갈 건데. 3년씩 계속 그래가지고 최하 들어오면 요새는 저게 없어져가지고 저건데 뭐 5조 6항을 내가 3번인가 살았는데 3년부터 시작이잖아요. 죄는 쪼만한데. 5조 6항 징역을 제가 많이 살았어요.

(4) 범죄 지속

범죄를 지속하고 반복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사례 7〉은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한다. 절도의 내용이 기존에 하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라거나, 당시 절도가 아니면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차려가 살라고 하는데 이게 받쳐주는게 없으니까 뭐 장사라도 해봐야 뭐 끌고 다니는 장사 이게 뭐 있겠습니까 허허..삼사백만원 정도 있어야 끌고 뭐..오토바이라도 사가 그렇다고 끌고 또 리어가 끌고 멩길순 없잖아... 내가 조금 양식 가책되는 일을 해야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양심 지켜봐야 들어오는 돈 없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자주 경력이 생겼는데, 어떤 게 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 이...그래 이제 일단은 징역을 살고 나오면은 누범이라 해가지고 징역을 따파볼 주니까 따파볼을 받고 이 나가가 생계유지가 되어야하는데 돈 여기서 공장에 있어봐야 30만원 가지고 나와요. 30만원 가지고 나오면은 열흘쓰면 없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인력사무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면 일거리가 있다는 거를 몰랐고 그냥 일단 오토바이가 필요하니까.

8. <사례 8>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공식기록
출생(인천) 1949		
아버지 복막염으로 병원입원 (생활의 어려움 경험)		
아버지 사망 1959		
인천에서 원주로 이사 1960		
초등학교 졸업 1961		
어머니 사망 1962		
과자공장 근무(원주) 1963		
과자공장근무(인천) 1965		
불량친구들과 사귀(원주) 1966		
석공으로 근무 (벽돌공장) 1970	1969 병역법위반 벌금3천원 자전거절도 징역1년 징도 징역1년	
원호처(급사)로 근무(2년) 1971	1972 뇌물 징역 6월 -스고비로 받은 돈-	사기 징역1년
사무실 개업 1973	1974 관명사칭 징역1년6월	
광산에서 근로(안산) 1975	1975 공무원자격사칭 공무원자격사칭 징역1년6월	
첫 결혼 1976	1976 절도 징역	
건축현장 일용직 근무 1980	1980 건축 분양 사기	
딸 출생 1981	1981 공무원자격사칭/사기 징역2년6월	
아내 납치/ 딸 행방불명 1985	사기 징역8월	
경주로 이동 1986	1985 미성년자간음 징역1년	
일용직 근로(염전/어업) 1990		
두 번째 결혼(충주) 1990		사기 징역8월
건축현장 일용직 근무 1992	사기 징역8월 -이불대금 사기-	
아들 출생 1993	1994 사기 징역1년6월	
건축현장 근무(대전) 1995	1996 사기 징역8월	
아내 사망(사고사) 1998	1998 사기 징역1년	
	2001 사기 징역2년	
	2003 사기 벌금200만	
	2004 사기 징역4월	
	2003 절도미수 징역6월	
	2004 사기 징역6월	
식당운영/동거(인천) 2007	사기 징역8월 사기 징역8월	
원주로 이동 2008	-노래방 공사대금 사기-	형량 징역10월
	2009 사기 벌금70만	
	2010 사기 벌금50만	
이별 2013	사기 징역1년2월 사기 징역1년2월	
대전으로 이동 2014	-주식사기-	
동거 시작 2016	2016 징역 2년6월(사기)본건	
	2017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8〉은 어린시절 부모의 지병과 이로인한 사망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에 두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10여년 터울이 있는 누나들에 의지하여 성장하였던 것이다.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인천에서 다니고 그 다음에는 강원도 ○○. 큰 누님이 사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인제.

(중학교는 다시셨나요?) 중학교는 안다녔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거면 선생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막 마칠 무렵.

(아버님이 초등학교 2학년때 돌아가셨으면 생활이 어려웠겠네요?) 물론이죠. 누님들 밑에서 컸죠.

(아버님 계실 때는 생활이 괜찮으셨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가지고요. 복막염이라고 그때 병원에 계셔서 그때도 뭐 많이 어려웠죠.

(2) 청소년기

〈사례 8〉의 청소년기 역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지내게 된다. 여전히 누나에게 의지할 수 있었으나, 누나의 집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때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중학교 못가서 공장에 뭐 과자만드는 공장에서 심부름해주고 일했죠. 거기서 의식주 떼우면서 뭐 심부름해주고 그랬죠.

(누님한테 좀 학교 보내달라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또 거기도 식구가 많으니깐 제 차례가 안오죠. 애들이 3, 4명인데. 저는 남의 집 생활을 했죠.

(근데 사실상 그러면 누님이 키워줬다기보단 혼자 크신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

(3) 청년기

〈사례 8〉은 20세 초반에 비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전거 절도를 저지르게

된다. 입영영장을 받아놓았던 <사례 8>은 이 일로 구속이 되어 징역 1년형을 받게 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게 된다.

최초로 제가 이제 나쁜 짓이랄까 범죄를 한게 이제 21살 때인데. 아 군대 가기전이죠 그니깐 21살이에요. 그때 이제 친구들과하고 놀다가 돈이 떨어지니깐 자전거를 이제 친구들과하고 손냈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출발점. ... 징병검사를 받고 ○○를 와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군대가기전에 구속이 됐죠. ... 뭐 그때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 때 그냥 저기 있다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한명이 가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팔고 심지어는 판사것도 있었고 변호사 것도 있었고. 그때는 자전거가 귀한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6개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상습범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마 1년 받았죠 처음에.

자전거 절도로 1년 6개월간의 징역생활을 마친 후, 매형의 밑에서 석공일을 하는 것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징역 나오시면 21살에서 갔으니 22살 되겠네요?) 그 때 막 소년범 넘어서 성인재판을 받았으니깐.

(나오셔서 뭐하셨어요?) 나와서는 이제 매형이 석공이어서 돌 훑대 쌓는거. 셋째 매형이. 그래서 그분 밑에서 석공일을 했죠.

이후 또다른 매형의 소개로 원호처 급사로 일하게 된다. 원호처 급사로 일하는 중에 누군가의 부정한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수고비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범죄에 대한 인식은 없었으나 수고비를 받은 것 때문에 공범으로 여겨져서 징역 1년6월 선고를 받게 되었다

내가 잘못되게 뭐냐면 그러고 나서 나를 급사로 큰 매형이 원호처에 시켰어요. 급사로 한 2년 근무를 했는데 아 거기서 누가 어디 가서 돈 봉투 좀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 봉투를 받아다왔더니 거기서 그 당시에 2만원을 수고했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뒀는데 형사들이 잡으러 왔더라고. 그 사람이 그걸 뇌물로 받은 건데 내가 심부름 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징역 이후 범죄적 자아상이 생겼다고 진술한다. <사례 8>은 자전거 절도로 수감되었을 때는 별생각이 들지 않았다가, 사기로 체포되어 징역생활을 하게 된 이후 인생이 망가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교정기관의 처우와 동료 수감자들의 태도에 의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쨌든 범죄 자체는 아무생각 안하고 저질렀다고 해도 실제로 징역을 산 것은 똑같은데 왜 첫 번째 때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게 안생기고) 그때는 뭐 일생 뭐 망가졌다고 생각한거지. 누구던지 다 그럴거예요.

(첫 번째가요?) 첫 번째 살고와서 이제 두 번째 범행할때는 내가 뭐 이제 예를 들면 호적에 빨간 줄 치지면 인생 망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들었고 여기서도 이제 너도 이제 문 열었어.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 그때 들어오니깐 너 이제 문열었어. 너도 이제 앞날이 짹짹해. 이게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도 첫발을 여기 들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전과 때문에라도 여기 들어오게 되는 구나. 그래서 전과있는 사람이랑 전과없는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짓게 되면 전과있는 사람은 구속시키고 이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한다 이거죠. 우리는 구속 아널때가 없어. 무슨 일이든 조금 걸려들면 그냥.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영장 떨어져요.

(저도 처음에 징역을 살 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 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징역을 살다 왔을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두 번째 징역 살다오니깐 그런 자격지심이 두 번째 이후 생기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때만 해도 철이 없었죠. 그때만 해도 교도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첫 번째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도 대우를 잘해줘요. 뭐 일도 시켜주고 이렇게 험한 일 안시키고. 직원들 심부름하고 그러는 거 그 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깐 두 번째 들어오니깐 그 때는 좀 여기 행정처우도 틀리고 많이 망가지더라고.

(오히려 두 번째 이후에 좀 더 가혹하게 처우를 받다 보니까 그때부터 자격지심이 생겼다고 말씀하신건가요?) 그렇죠.

또한 전과기록은 다른 합법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렵게 하여 범죄적 자아상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그게 저기 원호처 예를 들어 그걸로 6개월 살고 와서 그때부터 자격지심이 자꾸 생겨요. 누가 자꾸 나를 주시하는 것 같고. 그랬죠. 이왕 망가진거 이려고 공장 같은 곳에서

서류를 넣으면 신원조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기회되면 또 한번 오시라고 바꾸 시키고 그게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옛날에는 그게 컸죠.

범죄적 자아상이 생겼다는 것은 조금의 유혹에도 바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거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호처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대부업체를 하나 차리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이래가지고 조건에 맞게 사무실 하나 빌려놓고 대행업체를 하나 해놓고.

두 번째 사기범죄 이후 약 4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 이때가 <사례 8>이 첫 번째 결혼을 한 시기였는데, 결혼을 계기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였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예전에 저지를 범죄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알수 없는 사건으로 아내와 딸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 찻간에서 만났어요. 버스에서 만났어요. 충북 ○○여자인데 그때 이제 ○○에 있을때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혼식을 ○○에서 큰누나가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그때 이미 또 사고의 반이 쳐져있을 때니까 결혼하고도 그래서 이제 손 씻으려고 했는데 뭐 기소증지가 되어있었을 때니까 뭐 붙들려가지고 임신은 8개월 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 인제 임신했고, 처도 있고. 나도 이제 가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손이라도 씻어야지 한거죠. (그럼 그전에 기소증지 건이 없었다면 그 일 하면서 결혼생활 유지하고 사셨을까요?) 그렇죠. 그때 바뀌었겠죠. 애도 있겠다. 바뀌었겠죠. ... 그래서 인천에서 둘이 산거죠. 결혼 끝나고 인천으로 가서 ○○에서 또 물이 들까봐 인천으로 간거죠.

(4) 중장년기

<사례 8>은 30대 이후 공무원사칭 사기에서 건축분양 사기로 범죄 유형을 바꾼다. 약 4년의 범죄중단 기간에 교도소에서 만났던 다른 사기범죄자가 범행을 유혹하자 별다른 고민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단지 돈을 벌기 쉽다는 것을 이유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에는 20대에 형성된 범죄적 자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년 반은 정말 결혼생활하시고 잘 사시다가 어쩌다 유혹에 넘어가셨을까 그 상황이 궁금한 거예요.) 아 그거요. 그게 같이 여기 교도소 내에서 알던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인데.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커피한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지금 무슨일 하나 그래서. 나 지금 벽돌 기술자는 아니고 대모도 일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가 좀 좋은일이 있으니깐 한번 협조해서 같이하자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갈등 안하셨어요?) 갈등.. 그러니깐 돈 벌기가 쉽다니깐 갈등 안했어요.

(그러니깐 적극적으로 하신 건 아니지만 누가 꼬시니까 바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뭐 몇 년 전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온상이예요. 여기서 있다보면 서로들 얘기들하고 지금 우리들끼리 교도소마다 서신 주고 받아요. ... 그래서 그때 이제 까놓고 말해서 범죄가 이런데 드나드니깐 그때는 다 가르쳐줘요 안에서 야 절도는 이렇게 해야한다, 사기는 이렇게 해야 안잡히고 뭐 밥만 먹으면 그 얘기뿐이야 열댓명이 앉아서. 그래서 어 그래? 나중에 또 그대로 행하다보니깐 자꾸 잡히는거지

그런데 30대 초반 공무원자격사칭과 사기 전과 이후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제외하고 또 약 6년간 범죄경력 없이 지낸 시절이 있었다. <사례 8>은 이 시기에는 범죄 이외에 다른 일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거는 징역 그러니깐 (미성년자 간음으로) 1년 살고 나오셔서 4년 정도는 이때는 뭐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때는 나와가지고 배웠어요. 인천이니깐 그 고기 잡는 배. 조기라던가

(배를 타셨어요?) 그 강화도 들어가서 그 염전에도 있었고, 염전 소금 만드는 곳 있죠?

(이때는 유혹하시는 분들이 없었나봐요?) 그 때는 막노동일 하니깐 내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됐죠

사기 전과가 없었던 시기에 있었던 미성년자간음사건은 성매매를 시도한 상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서 가가지고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그 전화 받는데 인제 여자예요. 근데 갓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애엄마보다 더 성숙하죠. 미성년자인지 뭐 알았어요? 서로 뭐. 그래서 좋아가지고 만나고 탄 데 가지고 앉았어요. 그냥

그 여관에서 시간있으면 거기서 뭐 먹고 그랬는데. 이 때는요 제가 구형을 5년 받았었어요. 5년 받았다가 실형을 3년을 받았어요

약 6년간의 중단기가 끝난 이후 40대 이후부터는 거의 매년 사기 전과를 기록하여 15회 가량의 범죄가 반복된다. <사례 8>은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끼리 범죄 정보를 공유하여 범죄를 서로 배우게 되고, 출소 후에도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내가 ○○서 이제 8월을 받았어요 ○○에서 나쁜 짓을 해서요 ... 노래방인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확장공사 해준다고 보증금은 받은거 그전데. 그것 때문에 (보증금을 떼어 먹은건가요?) 그렇죠. 한 마디로 하면. 일은 안 해주고. 그래서 8월받고 이것도 횡령이죠. 횡령. 그 다음에 벌금 70만원, 벌금 사기 50만원. 이게 이게 다 왜 연도 수가 틀리나는 말이죠? 이게 한번에 징역을 받았던 거예요. 이 벌금형이 한번 징역을 받아서 나중에 추가 건이 올라왔는데 다 벌금으로 때린 거예요. ... 근데 여기서 있던 사람들은 꼭 만나면. 그 꼭 만나게 돼 이상하게. 그러면 뭐 괜찮은 건이 있어 같이할까? 그럼 분양하고 그런거니깐 뭐 영원히 안잡힐 줄 알지.

(그 주로 사기는 어떤 사기를 치셨어요?) 얘기했잖아요. 건축, 분양.

(그 건이 제일 많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어디서 배운신거예요?) 그건 살다보니깐. 뭐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보니깐 나도 건축일을 하다보니깐 야 저거 맨 처음에 그런 의도는 없었죠. 그때 이제 하나가 잘못되다 보니깐 에이 하나가 망가진거 여러 건으로 1억, 2억 몇 천만원 하다보니깐 뭐 1년 살다 나오고 뭐 이런 식이야. ... 그제 제가 그 사람들이랑 살다왔잖아요. 안에서 배운거죠 이렇게 해야해 하면서. 나와서 보니 옆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주식, 분양 투자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됐죠. 내 기록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범죄의 반복에 대해서 <사례 8>은 범죄 DNA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범죄를 중단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으나, 쉽게 뿌리치지 못하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인다.

범죄 DNA는 안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봤지만 엄청많아요. 뭐 나야 고령자니깐 이렇게 됐는데 젊은 사람도 10번 15번 뭐 이래요. 그래서 이 범죄 DNA가 안바뀌

나봐요. ... 여기서 먹고 밥먹고 4, 5명이 한방에 있어요. 그러면 경제방 강도방 이렇게 구분돼서 있어요 있는데. 그럼 경제방은 뭐예요? 다 사기꾼아니예요? 그냥 부르기 좋게 경제방이지. 절도방은 도둑놈들이고, 강도는 강도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바지하나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경제방에서 그런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이죠. 절도는 뭐 임마 너는 아파트 타고 올라갈 때 배관을 그렇게 탔어 하고 기술을 말해주죠. 그다음에 또 강도들은 강도 나름이고. 그러니깐 내가 최하위의 징역을 죄를 지고 들어왔는데 하다못해 빵을 하나 훔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얘기하는거 보면 일확천금이거든. 한 건만 해도 평생을 먹고살 수 있거든.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8〉의 범죄 시작은 청소년기의 자전거 절도이지만, 실제적으로 사기 범죄의 시작은 범죄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한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인해 수감된 경험이 었다.

(처음에는 어쨌든 범죄 자체는 아무생각 안하고 저질렀다고 해도 실제로 징역을 산 것은 똑같은데 왜 첫 번째 때는 그런 자격지심 같은게 안생기고) 그때는 뭐 일생 뭐 망가졌다고 생각한거지. 누구던지 다 그럴거예요.

(첫 번째가요?) 첫 번째 살고와서 이제 두 번째 범행할때는 내가 뭐 이제 예를 들면 호적에 빨간 줄 처지면 인생 망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어른들한테도 들었고 여기서도 이제 너도 이제 문 열었어.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 그때 들어오니깐 너 이제 문열었어. 너도 이제 앞날이 짹짹해.

(2) 범죄 반복

전과가 있던 〈사례 8〉을 다른 사기 범죄자들이 유혹하여 본격적인 사기 범죄자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내가 거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사람들이 원호처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대부업체를 하나 차리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이래가지고 조건에 맞게

사무실 하나 빌려놓고 대행업체를 하나 해놓고. ... 중국집에 밥먹으러 갔는데 자기들이 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기들어보니깐 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대출해주고서 커미션을 뭐 수수료를 받는게 아니라 받은 뺏어가는거지 그니깐 그게 걸린거지.

(3) 범죄 중단

〈사례 8〉은 결혼을 계기로 범죄를 잠시 중단했던 경험을 가진다. 첫 번째 결혼 당시에도 약 4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두 번째 결혼 시에도 범죄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던 것이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 찻간에서 만났어요. 버스에서 만났어요. 충북 ○○여자인데 그때 이제 ○○에 있을때니깐. 그랬다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혼식을 ○○에서 큰누나가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그때 이미 또 사고의 반이 쳐져있을때니깐 결혼하고도 그래서 이제 손씻으려고 했는데 뭐 기소중지가 되어있었을 때니깐 뭐 붙들려가지고 임신은 8개월 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 인제 임신했고, 처도 있고. 나도 이제 가정이라는게 있으니깐 손이라도 씻어야지 한거죠.

(그럼 그전에 기소중지 건이 없었다면 그 일 하면서 결혼생활 유지하고 사셨을까요?) 그렇죠. 그때 바뀌었겠죠. 애도 있겠다. 바뀌었겠죠. ... 그래서 인천에서 둘이 산거죠. 결혼 끝나고 인천으로 가서 ○○에서 또 물이 들까봐 인천으로 간거죠.

...

(그래서 이 사이에 또 한 3년 비는 기간이 있고, 또 4년 비는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범죄를 안 하신 건가요? 안 잡히신 건가요?) 그때는 안했죠. 그때 여자분들을 만나서 생활을 하면서 하다못해 같이 무슨 장사라도 하고, 식당일이라도 하고 이려고서 있다가 또

〈사례 8〉의 또다른 중단의 계기는 새로운 일거리였다. 그런데 30대 초반 공무원자 격사청과 사기 전과 이후 약 6년간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시기에는 배를 타거나 일용직 노동에 열중하는 등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징역 1년 살고 나오셔서 4년 정도는 이때는 뭐하셨어요?) 그때는 나와가지고 배탔어

요. 인천이니깐 그 고기 잡는 배. 조기라던가
 (아 배를 타셨어요?) 그 강화도 들어가서 그 염전에도 있었고, 염전 소금 만드는 곳
 있죠?
 (이때는 유혹하시는 분들이 없었나봐요?) 그 때는 막노동일 하나만 내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됐죠

(4) 범죄 재시작

첫 번째 범죄 중단기간이 끝나게 된 것은 예전에 저지른 범죄때문이었다. 결혼을
 계기로 새로운 시작을 의도하였으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면서 의도가 무산
 된다.

이제 손씻으려고 했는데 뭐 기소중지가 되어있었을 때니깐 뭐 붙들려가지고

두 번째 범죄 중단기간은 교도소 수감 중 알던 다른 사기 범죄자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면서 끝난다.

네 마음잡고 살다가 이 때 또 잘못이 있잖아요? 이거 사무실하던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야 뭐 그러고 사냐 이거와서 같이하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들어갔어요... 여기
 교도소 내에서 알던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인데.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
 고는 거기서 커피한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지금 무슨일 하나 그래서. 나
 지금 벽돌 기술자는 아니고 대모도 일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가 좀 좋은일이
 있으니깐 한번 협조해서 같이하자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거예요.

(5) 범죄 지속

범죄를 지속하게되는 힘은 범죄에 익숙해진 습관이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범죄적 자아상이었다고 보인다. 반복되는 범죄와 체포의 경험은 범죄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만들었다.

(근데 게 이때부터 사기기록이 짝 있더라고요) 혼자됐어. 혼자. 그러니깐 이제 막말로
 될대로 되라 이거죠. 이런 거는 전과는 있어 괜히 징역받은 것도 있는거야. 이거는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 일으켰는데. 이거 진짜 그런거예요. 이제 벌금 200만원도 있고,

4월도 있고, 징역 1년 있고. 이거 다 조금 조금이잖아요? 조금 조금이에요. 그러다가 14년도에 공주서 1년 2개월을 살고 나왔죠. 그리고 요번에.

(징역나와서 또 징역가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나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요? 그때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징역은 적게 받았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돈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살다가 또 떨어지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쁜 짓이 능숙해졌다는 일이지 쉽게 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범죄를 지속하게 하는 또다른 요인은 범죄를 통해 돈을 쉽게 벌었던 범죄적 성공의 경험이었다. <사례 8>은 사기범죄를 통해 단번에 큰 돈을 편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상황이 생기면 사기 범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말해 뭐해요. 땀 흘려서 번 만원은 쪼개서 쓰게 되는데 범죄에서 번 돈은 만원 뭐 그냥 쓰죠.

(그럼 사기로 돈 벌면 어디에 쓰시나요?) 그게 쓰는데 어디 규칙적이지 않죠. 범죄로 번 돈은 어디 썼다 안썼다 그게 안돼요. 어떤 범죄자던디. 왜? 쉽게 얻은거니까 쉽게 써버리는거죠.

(선생님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셨어요?) 저야 뭐 그때 세 들어서 살다가 돈이 생겨서 이제 일을 안해. 그냥 1년이고 쓰다가 돈 떨어지면 또 하는거지. 그게 범죄좌들의 수법이야.

9. <사례 9>

생활경험		범죄경력	
진술		진술	공식기록
출생(경산).....1949			
아버지 사망(6·25).....1950			
어머니 가출 후 큰집 생활(경산).....			
머슴살이			
독립 후 객지생활.....1957			
어묵 제조공장 근무 (부산).....1961			
결혼.....1968			
빵·과일 배달(부산).....		1969	절도(자전거) 벌금 절도(소년보호)
딸 출생.....1971			
이혼.....		1972	절도 징역 특수절도 집행유예2년+징역8월 -의류 절도-
어묵공장 근무 (부산).....		1975	 특수절도 징역1년
야채 판매 (부산 시장).....		1977	절도 집행유예3년 준강도 -다들 절도- 집행유예3년+징역1년6월
소기름 납품.....		1979	업무상과실치상 폭행 벌금15만 -배달 중 오토바이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징역8월
오토바이 사고.....		1981	 중과실치상/도로교통법 벌금20만
아이스크림 판매.....		1982	 절도 징역10월
여관운영.....		1983	 절도 보호감호7년+징역2년
		1989	 폭행 벌금30만
		1990	 절도 징역4년
		1997	 폭행 벌금20만 절도 징역3년6월+몰수
대구로 이동.....		2002	 징역 3년 절도/무면허운전 -물감,자판기 절도- 징역3년+몰수+벌금20만
고도초에서 첫 호적등록.....2003			
동거.....		2005	 징역 3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벌금150만
대나무 죽순 판매(대구).....		2006	 상해/협박 벌금700만
교통사고로 부상(다리, 치아).....			
공원에서 야채판매.....		2008	 상해 벌금100만 도박 벌금30만+몰수
식당개업.....2007			
음료판매 (도박판).....		2009	 절도/절도미수/무면허운전 집행유예2년+징역1년+사회 봉사+보호관찰+벌금30만
			 무면허운전 벌금30만
		2011	 절도/무면허운전 징역1년+벌금30만
		2012	 절도/무면허운전 징역8월+벌금30만
			 주거침입 벌금150만
		2013	 사기 벌금30만 절도 벌금50만
		2015	 절도 징역2년
		2017	 상습절도 징역1년8월 징역 2년(절도) 본건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9〉는 어린시절 아버지가 한국전쟁중에 사망하였고,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는 〈사례 9〉를 큰집에 맡기고 가출하여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625에 다가 죽어뿌꼬 엄마 아버지 혼인 신고 안 하고 내가 태어나다보니까 혜택도 하나 몬 보고요. 또 뭐 부모들은 큰아버지가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언제나 못살텐데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가가지고 뭐 나라 한 스무 말석 열 말석 받으면 큰엄마 큰아버지가 다 가가면 기래 하나 주뿌면 따다 무뿌고 그래가 매년 남의 집 머슴살이 소 맥여주고 고생하다가 그래버리면 또 큰 아버지 잘 만났으면 이랬으면 될킨데 그것마저 다 띠이뿌고

(아버님 얼굴을 모르시는 거네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인제 뭐 세 살때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어머니 혼자 키우신거예요?) 아닙니다. 엄마도 이자 나를 큰 집에 땡겨놓고 가빠려가 지고. 떠나빠리고.

큰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사례 9〉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머슴일의 대가로 받은 돈을 큰아버지가 가져가 버려서 자신의 몫은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어렸을 때가 한 일곱 여덟살 까지 같이 컸지요. 큰아버지하고 사촌하고 같이 컸지요. 그리고 큰집에 얹혀가 못 사니까. 남의 집도 살고, 큰집에는 우에 누나가 있었는데 국민학교 당기고 나는 학교를 몬 땡기고 남의 집에 가 소 맥여주고 망태 씨가 소죽 끼리주고 이래가 그 집에서 밥 얻어묵고 자고. 그래도 일을 잘한다꼬 주인이 가을 되면 농사지가 나를 한 열 말석 열 달 말석 이래 주더라고요. 그것도 뭐 큰아버지 잘 큰어머니 잘 만났으면 좀 될킨데 맨 그래가 그것까지 다 타다묵고.

(2) 청소년기

청소년기에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어묵공장을 다녔다고 하는데, 큰어머니는 이때 번 돈까지 뺏어가서 이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였다.

○○에는 한 열 두 서너살 까지 고향에 뭐 부산 오텐공장 있으면서 추석 명절에 한 번씩 왔다갔다. 그 뒤로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려고 나니까 큰집에서 뭐 다 타다가 큰엄마하고 아들하고 대구로 다 떠나려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고향에도 안가고. ... 내가 아마 72년도인가 3년도 고 사이에 내가 부산을 일하다가 그 부산 ○○시장 텐뿌라 공장에 들어가 오텐일을 막 하면서 새벽에 일나가 텐뿌라 그거를 만드는 텐뿌라 기술도 있고 아부래기도 만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일을 해서도 우리 큰어머니가 와가 어차피 집에 촌 하고 농사도 있는 거 마 아들하나 있는게 병이 하나 있어가 내한테 다 들어오고 거기까지 가가 그 오텐 공장 밤잠 못자고 일한 그 돈까지 다 큰어머니한테 다 뺏겼다가이.

〈사례 9〉는 이후 다양한 공장을 옮겨다니며 실제로는 독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어렸을 때 12살 무렵에 어묵공장에 가서서 어묵공장에서 23살까지 7, 8년 일하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는 안 하시고 쪽 어묵공장에서만 계신건가요?) 예. 어묵공장 ○○ 시장에 있다가 부산 ○○구에 와서 ○○동 시장에도 있다가. 또 뭐 ○○도에 있다가 공장 직장은 한 서 너 여덟 군데로 옮겼어요. 원래는 처음에 생활했던 데는 부산 ○○시장에서 한 3년 정도 한 집에서 일하다가 딴 데서 월급을 더 준다고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월급을 더 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 월급을 좀 더 받으려고 옮겼던 것이 아마 이쪽저쪽 서 너 여덟 군데로 옮긴 것 같습니다.

(3) 청년기

〈사례 9〉의 첫 번째 전과는 20세가 되던 해에 자전거를 절취한 것이다. 〈사례 9〉의 주장에 따르면 자전거를 배우려는 욕심으로 동네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타고 돌려주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공식기록상에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무슨 일로 들어가셨나요?) 첫 번째는 자전거 한 대 세워놓거 하나 타고 와가 됐는데. ... 그것도 부산 내려 와가 자전찬데 타고 가가 그래 됐으니까. ... 자전거, 그 때는 또 한참 자전거 배운다고. 자전거를 좀 배워가 자동차는 없고 이러니까예. 길로 우에 가다가 보니 자전거 삼천리 옛날엔 삼천리 아닙니까. 그거를 한 대를 시워놔드라고. 그래 그거를 타가 팔아묵지도 않고 타고 멍기다가. 주인한테 내 좀 한 달

아니 두 달 가까이 댔는데 주인이 그거 타고 땡기는 걸 봤는 모양인가. 그리고 오드만 자전차 와있는데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다 신고를 해가. 그래가꼬. ... 그때는 벌금 받았는가. 그래 이제 성인이 되가 나쁜짓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친구의 부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묵공장에 다니던 시기였으나, 친구의 아버지와 누나가 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어 그를 돕느라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 3년 후에 특수절도가 있는데 그거는 뭘 훔치신 거예요?) 그 뒤에는 아마 부산 ○○에서 옛날에는 쌍방울 있었다 아닙니까. 아마 그 가게에 물건을 재 뵈는 거를 아마 공범 그 때 둘이 해가 아마 그거를 차에 싣고 갔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묵공장에 계시던 그 때인가요?) 예. 아마. 거 있으면서 아마 그 가게도 어묵공장 하고 얼마 안 되는 자재 있었으니까.

(그때는 직업도 있으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업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내 인자 친구 되는 애가 자기 아버지하고 누나가 이 거둬 폐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참 말로 다 못 할 정도로 됐는데. 그 친구가 사실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는 일찍 죽어버리고 누나하고 이래 거둬 병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그 형님 함 같이 한 번 해 주소. 그러면서 누나 뭐 할라 하니까는. 해주소. 그래가 가게라도 조금 얻을라 하면 그래가 내 오텍 공장 앞에 일하는 데 그 앞에 동네 시장이 있는 거 상가가 짝 있는데 유단히 그 가게가 요쪽에는 약국이고, 요쪽에는 그 쌍방울, 그 티 좋은 거 이런 거 요새 좋은 거 그때는 메이커 정도 되는 그런 다 갖다 재 뵈더라고 요. 그래가 뭐 털어버렸지. ... 근데 그거는 친구가 마 하는 바람에, 친구가 또 내 가면 머리가 내는 시골에서 자라고 개는 아마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모든 이래 머리 쓰는 거는 방도가 내보다 앞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 안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은, 친구가 누나가 병에 걸리고, 아버지가 막 그리 되가 가보니까는 그 수박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동네인데 가보니 임마 이런 골방 같은 데 가보니까는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마 하나 해가 목돈을 좀 만들어가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이래 살라 하는데 내 혼자 하나 하기 힘들고. 좀 거들어뒀. 개네가 아마 등떠밀어서 한 번 해준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20대에만 2건의 절도 또는 준강도 범죄를 일으킨다. 준강도로 기록되어 있는 범죄는 과일 공판장에서 과일을 훔쳐내다가 사설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이들과 몸싸움을 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부산 ○○청과 조합에 과일 공판 경매할라고 내놓은 거 그거를 두강진인가 들고 가다가 붙들리 가지고. 그래가 인자 방법이 파출소 가자하는데 거기 그냥 가야되는데 방법이 막 췌기 막 하면서 이라니까네 거기서 좀 대응을 해서 내가 좀 두드려 맞다가 막 약간 했는데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그 사람 방법하고 나를 갖다가 준강도, 이래가 그랬는데. 재판부에 가가 재판부에선 이제 검찰에서도 준강도로 붙여가 보내고 경찰에서도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재판부 판사들이 그걸 조금 이제 내가 하여튼 사실 난 이 사람들 때리고 그런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몽둥이로 나를 때리니까 내가 반항을 하다가 땅에 이래 밀었는 것이 그사람 손이 조금 그래 굽힌 것이지 내가 때려서 그랬는 것은 아니다.

〈사례 9〉의 20대시절에는 다른 사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였고,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범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 그때는 뭐 그래도 한 공백 동안에는 6, 7년씩 일하면 교도소 안 들어가고 아마 그 직장생활 해가지고 꾸준히 잘 살았는데, ... 요새는 뭐 계라고 하는데, 그때는 다르무시 뭐 하면서 계를 모아주더라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목돈을 그때 당시에 아마 한 7, 800만원 2, 3년 해가지고 목돈을 좀 모아서. 그렇게 ○○ ○○동 시장에다가 조그마한 점포 한 쪽 이런 창고 같은 것을 하나 얻어서 그 고구마, 야채 같은 이런 장사를 좀 했어요.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면 돈을 좀 잘 받는다고 해서 그쪽을 발을 디터서, 경험 없이 발을 디터서.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것도 사놔야 가을에 사놓아야 하니까. 인제 두 달, 석 달 지나서 창고에 재놔 놓으니까 고구마 물이 빠지니까 kg가 자꾸 줄어들더라. 그리고 또 가을에 캐는 사람들이 고구마에 흙을, 흙도 좀 묻어버리고 거기에 마르면서 이러니까 kg가 더 줄어들고.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한 1년 6개월 정도인가 하다가 싹 다 까먹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러다가 범죄 쪽으로 이쪽으로 했는가 하지만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 하니까 하고. 그래 뭐 장사 밀천이라도 좀 만들어보자 하나 아마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아마 그쪽으로 발을 디딘 것 같습니다.

(고구마, 야채 장사한 게 선생님 몇 살 정도부터 인가요?) 그때가 아마 20세는 아마 넘었고 거의 뭐 서른 가까이 돼 갈 때 시작했지.

〈사례 9〉는 동거생활 경험이 있었는데, 장사 등의 활동으로는 동거생활의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 일로 수감되어 헤어지게 되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아마 내가 그 둘이 같이 동거생활을 하다 장사를 하다가 뭐 설탕 그거 녹여서 월남빵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점방에 자전거도 타고 배달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 배달도 하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하다가 아마 집세 주고 이러니까 둘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집세 주고나면 남는 것도 없고, 입에 풀칠하기도 참 그러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이놈처럼 기름 값안 늘리고 10원짜리 장사할 때는 만날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좀 뭐 우에 목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에 좀 점포를 하나 얻어가지고 장사를 좀 크게 어디 한 번 해보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좀 나쁜 데를 디더가지고. 징역 내가 그때 당시에 1년인가, 1년 6개월인가, 1년인가 살고 나오니까 여자가 딴 데로 결혼을 해서 갔더라고요. ... 내가 지하고 어렵게 살면서 인제 우에 좀 돈을 조금 만들어보자 하다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로 가버리고 나니까, 거기서 징역을 살고 나오니까 그 바람에 아마 둘이서 헤어진거.

(4) 중장년기

〈사례 9〉는 30세 즈음에 기름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던 성공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소기름 장사를 시작한 이후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신이나서 장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기름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내게 되고,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5년 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와가 있는데 집행유예로 살고 있는데 부산에 내 친구들이 소기름 장사 내보고 해보라고 밀어주더라고요. 그래가 오토바이를 타고 땡기면서 소기름 이거를 해다가 독하다고 참 돈 잘 벌었습니다. 막 ○○시장이고 막 ○○, 뭐 ○○시장 하면 소고기 식육점에 한 40군데 됩니다. 소기름 담아다가 이 소기름을 ○○비누 공장에 갔다주니까 돈도 더 주고 그래 하는데 한 일년 정도 해가 돈 잘 벌고 이정도 하면 내가 부산에 집이라도 하나 사겠다 싶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 사람을 쟁반을 18층 머리 내 이거를 받아봤는데 나는 하이바 씨고 소기름 한 200키로 싣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줌마가 짹 티나오다 보니까 이래 꺾었는데 아줌마가 뒷발로 딱 차부는 바람에 그냥 앞으로 가부씨면 관찮을 뻔했는데 아줌마가 사람을 탁 튀어 놓으니까

헨들을 탁 꺾어봤는데 이 아줌마가 뒤로 탁 물리나더라. 머리 정면을 내하고 탁 들이 받으면서 꺾여가지고 다리 다 치고 머리 내 이겨. 그래가지고 참 그 때도 그래서.. 우리 공장 주인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카는데 나는 볼 때 뭐 운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9〉는 20대 후반 이후 거의 매년 절도, 준강도, 과실치상, 음주운전, 상해 등 다양한 전과로 총 30회 가량의 범죄 경력을 가지게 된다.

(자전거도 절도고 과일도 절도고, 절도 전과가 몇 개 쯤 되세요?) 11개 됩니다.
(과일이란 자전거 말고 뭐 훔쳐보셨어요?) 땡기면서 옷을 좀 많이 훔쳤습니다. 옷은 뭐 매장 앞에 가면 인도 위에 길거리에 옷걸이에 죽 걸어놓고 주인들은 가게 안에 저 안에 있으니까 그 뭐 옷걸이에 몇 개 쯤 걸어보니까. 세보니까. 그럼 뭐. ... 특수절도라고 하는 거는 공범이 있어도 특수절도고, 나무 창고에 물건 여놓은데 자물쇠도 꿇고 문을 하나 파괴해서 들어가면 그게 특수절도고. 가만히 있는 길가에 이래 있는 거 이래 들고 가면 그거는 단순절도고. 죄가 상당히 특수하고 단순절도하고는 죄가 상당히 무겁지요.

(절도 전과 말고 다른 전과도 있으세요?) 탄 전과는 과실 전과가 한 2개 있고 또 장사하다가 거 대구 ○○공원에 장사 좀 한다고 또 모나고 하니까 밀고 땡기고 이러다가 상해로 해가, 한 서너번 들어온게 있고. (장사 어디서 하는지 다른 상인 분이란 싸워가지고) 공원에 복판에 고스톱을 치더라고. 구루마 차는 돈 가이까네 사식구루마 싼고 한 봉지에 막 이천원 삼천원씩 파는데, 길을 안 비껴주는거요. 길쭉 빼껴주이소 요 구루마 좀 지나가야 하니까네. 씨발 그러드라고. 아이씨 그래가 내가 번개 피아가 구루마 끌고 가는데 뛰어오더니만 새끼가 대가리 받아버리더라고. 그래가 치고 받고 싸워가 성질이 나가 막 몇 대 쥐박아뿌니까 그게 또 상해로 되가 그런 전과가 한 세개나 네 개 정도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탄 건 뭐 절도하고 싸움하고 과실 사고하고 오도바이 사고 하고 서너개. ... 뭐 우리같은 이런 힘없는 사람은 검사 유도신문에 넘어가가지고 그래 마 좋다 니 그거 도둑질을 안했어도 텔레비 그거 가가와 팔았지? 그래서 나는 아는 생각에, 나는 근태라는 사람이 내보고 좀 팔아달라 해서 팔아주니까 내가 ○○공원에 또 받은 사실 굉장히 넓입니다.

(장물 그런 것도 있으신 거예요?) 예

〈사례 9〉는 상당기간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고백하는데, 운전은 잘하지만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무면허라고 하셨는데 시험 보시면 되잖아요?) 글을 모리자네요. 운전은 잘 하는데. 요번에 나가가 앞에 대추밭에 일할 적에 사장님이 일을 잘하고 이러니까 ... 그래서 내가 거기 가가 내가 운전을 다 해줬지. 촌이니까 대추밭 씻거가 털어가 차에 막 콘테이너 박스 70박스서 이래 싣고 대추 공장에 싣고 떼봐야되니까네 전부 운전해주고 이러니까네 고 사장님이 면허증 없나 이러니까네.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조금만 고생해라 그러면은 운전면허증 그 학원하고 차가 일곱 여덟 썩 움직이고 하니까 잘 하고 이라니까네 가가 운전만 잘하면 면허증을 따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맨들어가 찾아주꾸마.

(젊을 때는 글씨 모르고 사신 거예요?) 완전 미개인으로 살았지예. 학교를 망쳤습니까. 남은 학교 망졌지 나는 풀이나 들러 땡기고 소나 맥이고 다니고 호적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돌아땡기고.

나. 범죄경험

(1) 범죄 시작

〈사례 9〉의 범죄 시작은 청년기에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사례 9〉는 이 사건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 진 일이라 주장한다. 두 번째 범죄는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었는데 이때에도 큰 고민 없이 범죄에 동참하게 되었고, 사실상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자전차, 그 때는 또 한참 자전차 배운다고 자전차를 쫘 배워가 자동차는 없고 이러니까 예. 길로 우에 가다가 보니 자전차 삼천리 옛날엔 삼천리 아님니까. 그거를 한 대를 시워 냈드라고. 그래 그거를 타가 팔아묵지도 않고 타고 땡기다가. 주인한테 내 줌 한 달 아니 두 달 가까이 땡는데 주인이 그거 타고 땡기는 걸 봤는 모양인가.

두 번째 범죄는 친구의 부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묵공장에 다니던 시기였으나, 친구의 아버지와 누나가 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게 되어 그를 돕느라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그 3년 후에 특수절도가 있는데 그거는 뭘 훔치신 거예요?) 그 뒤에는 아마 부산 ○○에서 옛날에는 쌍방울 있었다 아녜니까. 아마 그 가게에 물건을 재 났는 거를 아마 공범 그 때 둘이 해가 아마 그거를 차에 싣고 갔는 것 같습니다.

(그때 어묵공장에 계시던 그 때인가요?) 예. 아마. 거 있으면서 아마 그 가게도 어묵공장 하고 얼마 안 되는 자재 있었으니까.

(그때는 직업도 있으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업도 있고 이랬는데 아마 내 인자 친구 되는 애가 자기 아버지하고 누나가 이 거들 폐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참 말로 다 못 할 정도로 됐는데. 그 친구가 사실 엄마, 아버지하고 엄마는 일찍 죽어버리고 누나하고 이래 거들 병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되었는데. 그 형님 함 같이 한 번 해 주소. 그러면서 누나 뭐 할라 하니까는. 해주소. 그래가 가게라도 조금 얻을라 하면 그래가 내 오텍 공장 앞에 일하는 데 그 앞에 동네 시장이 있는 거 상가가 짝 있는데 유달리 그 가게가 요쪽에는 약국이고, 요쪽에는 그 쌍방울, 그 티 좋은 거 이런 거 요새 좋은 거 그때는 메이커 정도 되는 그런 다 갖다 재 났더라고 요. 그래가 뭐 털어버렸지. ... 근데 그거는 친구가 마 하는 바람에, 친구가 또 내 가면 머리가 내는 시골에서 자라고 개는 아마 부산에서 자랐으니까. 모든 이래 머리 쓰는 거는 방도가 내보다 앞서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 안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은, 친구가 누나가 병에 걸리고, 아버지가 막 그리 되가 가보니까는 그 수박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동네인데 가보니 임마 이런 골방 같은 데 가보니까는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마 하나 해가 목돈을 좀 만들어가 누나하고 아버지하고 이래 살라 하는데 내 혼자 하나 하기 힘들고. 좀 거들어줘. 걔네가 아마 등떠밀어서 한 번 해준 것 같습니다.

(2) 범죄 중단

진술로는 중단하고 사업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20대 후반 이후 거의 매년 절도 등의 전과가 있어 총 30회 가량의 범죄 경력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절도해가 돈 모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오도바이 타가 옷 몇 개 과일 몇 광주리 가 와가 임시 내가 살 한 대 팔아와가지고 방세 쪼매 주고 나도 어디 왔는데 셋방이라도 하숙집이라도 돈 쪼매 줘야지. 그리 만날 버려가지고 길거리 나아가가지고 국민학교 앞에 뽑기 장사도 많이 했는데 국민학자 앞에 거기서 학생들 상대로 다가 아스크림이라도 돌리다가 맨들어가 팔고 뽑기가 설탕 녹카가 이거 찍아가 내가 안 해본게 없습니다. 그것도 오래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이제 십년 이십년

하고나니 십원짜리 장사를 하다보니 만날 십원짜리 밖에 안되는구나. 그런걸 내가 뼈저리게 많이 느꼈습니다.

〈사례 9〉가 범죄의 중단을 결심하였던 때는 의도하던 사업이 잘 운영되었을 때였다. 30대 초반에 소기름장사를 할 때와 50세 후반에 대나무 죽순 사업을 할 때, 큰 성공을 거두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사업의 중요한 도구인 차량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고 그리고 내가 거제도에서 인자 대나무 이거를 2500키로 정도를 그 생태를 싣고 ○○도를 출발해가 면허증도 없이 대구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고뱅이를 치고 올라오는데 내리막을 내려가는데 브레이키가 터져부렀다. 그 차가 중고를 사다가 정비공장 고쳤는데 정비를 하면서 잘못해 뿐 모양이지. 한 번 갔다와가 대구가 잘 팔고 두 번째 ○○도에서 끌고 내려오는데 딱 마산 거기 가 와가 구마고속을 거기서 한 십분 정도를 대구 내려오면 구마 고속이. 그래가 고뱅이를 치고 올라 와가 내리막에 내려갔는데. 브레이키를 밟았는데 브레이키가 안됩니다. 내가 그 때 운전이 미숙했어. 엔진 기어 1단을 들어가 넣어야 하는데 어이 브레이키를 밟으니까 터져가 으으 으으 카는데 앞에 보니까네 삼중으로 신호를 받고 내리막에 신호를 받고 있는데, 내가 내려가면 밀아부면 그거 사람 다 죽이뽐니다. 그거 카면서도 옆에 보니까 통영 저쪽에서 회를 싣고 오는 트럭이 하나 한 쪽에 내리막에 신호를 받고 있더라고. 그래가 그거를 감아가지고 그 차 뒤에다가 때려뽐다 아닙니까. 차가 푹푹푹 말리면서 이빨도 아래로 틀니도 다 깨져부찌. 배 수술 이거 만개로 평소 같았으면 장 파열로 죽는 거라. 그리 내리막에서 차 이래되다 때리부니까 내 앞에 트럭이 푹푹 말리면서 때려뽐데 이빨 이거 다 깨졌지요. 여여 안쪽이 겨울 되면 다리를 걸음을 잘 못 걷습니다. 범죄하는 원인도 그래 이 양쪽 복사 이 다 깨져뽐거라. 이게 겨울 되면 서리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걷는 것. 그래가 운동을 해서 몸을 풀어야 인자 제대로 걸음이 조금 걸어진다고. 이런 후유증이 통증이 생활해도 상당히 그거는 통증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다 빠아졌다 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장사하려고 모아둔 돈을 동업을 약속한 여성이 도박으로 잃어버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이후, 벌금으로 700만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를 아끼

기 위해서 벌금납부 대신 노역으로 대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사례 9>의 표현에 따르면 700만원을 아끼려다가 모아놓은 5000만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벌금 700만원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는 대나무 죽순 장사하고 보험료 좀 있었는데. 대나무 죽순을 아마 내가 한 3000만원하고 저 1500만원 빌려주고, 한 5000만원 정도를 내가 돈을 모았어. 모았는데, 그 돈을 다 모래알로 해놨는가 건강 기계를 살라고요 ... 그래서 돈 700만원 벌금을 받았는데 이게 가을이나 이럴 때 그랬으면 내가 안 들어갔어. 겨울인가. 그래가 뭐 난중에 장사하다가 자리 때문에 시비가 났는데 그거 도 마 이야기 하려면 겁니다. 여자가 뭐 옆에 가게라도 하나 있으니까는 돈이나 있는 줄 알고 그 얻어먹으려고 달려들어 가지고. 그래가 고발이 들어가 갔는데 벌금이 700만원이 툭 튀어나오니가 경찰이 이 사건은 보니 뭐 둘이 뭐 합의 좀 보고 서로 상담해가 이러면 끝났는데, "벌금을 안내면, 700만원을 안내면 ○○○씨(<사례 9> 본인) 이 건 못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보니 지금 700만원을 내려 하면은 건강원 기계사고 이거 저거 하려고 다 돈을 저래 한 4, 5000만원을 맞춰놔는데 저거 사버리면 안 되겠고, 아예 겨울에 가가 고생 좀 하자.

(몸으로 때우셨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몸으로 때우고 나오니까 돈 5000만원이 다 날라가 버렸더라고요.

(왜 어찌다가요?) 그 여자가 노름을 했는데, 그래가 아이고 돈 700만원 아꼈라 하다가. 그래가 그 내 그 후회 땀에 지금까지 이래 징역 산다 아닙니까. 참 그 여자가 내가 그리 돈을 모아가지고 5000만원을 모아 놓은 것을 아니까 그 노름꾼들 그 놈들이 ... 내가 벌금 살고 나가보니 여자 데려가 버리고 뭐 다 작살나 버렸더라고요.

(3) 범죄 지속

결국 <사례 9>는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계속하지만 어린시절부터 이어온 가난이 범죄를 계속하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범죄를 계속 저지르다가 강하게 그만 뒤야겠다고 결심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있었지. 그기야 뭐. 누가 여기 오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 자신을 한탄도 좀 하든. 나도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재산이 조금 있었으면은

10. <사례 10>

생활경력	범죄경력	
	진술	공식기록
출생(영덕).....1949		
6.25당시 형제 사망.....		
국민학교(2학년) 중퇴.....1958		
-동대서당에서 공부-		
가출경험.....1962		
음주시작.....1965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청송).....1970		
식당 근무(진보).....1972		
아버지 공장에서 근무(술, 가마제조).....		
동거 경험.....	1971 징역1년6월(소집도).....	특수징도/사기 징역1년6월
화물차 운전.....	1973 장물 징역.....	징도 징역10월
결혼(영덕).....	1974 징도 징역.....	특수징도 징역2년
식당주방장(삼척).....	-배 부류징도-	폭행/공갈미수 징역8월
교도수 공사작업(청송).....1980	1979 야간주거침입 징역1년	
삼척교육대 강제수용(1개월).....1981		향토예비군실치법위반 벌금10만
제철회사 근무(포항).....1983		형경 벌금30만
-전과경력으로 해고-	1984 도로교통법 벌금10만	
	1986 징도 집행유예2년+징역1년	
	1987 도로교통법 등 징역1년	
	1989 교통사고처리 금고1년	
벽돌공장/상하차/건축(부산).....		교통사고처리/도로교통법 벌금200+몰수
	1991 도로교통법 벌금100만	
이혼.....1992	1993 도로교통법 벌금20만	
기초수급대상 선정.....	1994 도로교통법 벌금50만	
동거시작.....	1996 도로교통법 벌금250만+몰수	
	도로교통법 벌금50만	
건축현장 일용직 근무.....	1997 도로교통법 징역8월	
	1998 도로교통법 징역10월	
	199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징도/교통사고처리 징역10월	
	2001 징도 징역1년6월	
자살시도.....	음주운전/무면허 징역6월	
-형제와 갈등-	2003 음주운전/무면허 징역6월	
	입무상실하 벌금150만	
	2004 도주차량 벌금 100만	
	2005 특수징도/음주운전/무면허 징역1년	
	무면허 벌금	
어머니 사망.....2008	2007 무면허/교통사고처리 벌금200만	
	음주운전/무면허 징역10월	
	2009 무면허 징역10월	
	2010 자동차손해배상/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 징역10월	
	상해 벌금50만	
	2012 교통사고처리/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 징역6월	
	2013 음주운전/무면허 징역4월	
	2014 폭행 벌금30만	
폭행피해로 눈 실명.....2015	2016 음주운전 벌금50만	
	자동차손해배상/음주운전 징역1년	
장애판정.....	2018 무면허/자동차손해배상/음주운전 징역1년(본건)	
-과거 손 신경 부상-		

가. 생애경험

(1) 아동기

〈사례 10〉은 어린시절에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가정이 어려운데다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어렵게 다녀야 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학교는 초등학교 다니다가 치워버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왜 치웠나요?) 그 때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은 신발도 없었고, 또 한 50리를 걸어가야 해요. 그것도 분교인데. 하여간은 한 20km 이상을 걸어가야 학교를 갑니다. 깜깜할 때 새벽 4시에 밥 먹고, 한 5시 되면 학교를 가면은 그래도 지각은 안 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겨울 갈을 때는 발에 동상이 걸려서 갈 형편이 없었고, 뭐 그렇게 가정이 어려워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례 10〉은 어린시절의 가난한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가출한 경험을 말하기도 하였다.

네. 학교도 또 분교라가지고 너무 멀고. 이래가지고 그 때 집을 나가버렸지요 제가. 집에 어머니가 송아지 팔은 돈으로 친구하고 대구로 그 때 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때 가져가신 돈이 얼마 쯤 되세요?) 그 때 돈이 화폐교환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때 돈이 많았습니다. 송아지하고 콩하고 농사지은 거 팔아놓은 거, 그 때 10만원 넘었을 겁니다. 요새 돈 같으면 한 천 만원 돈 정도. 그래 집에 부모님이 가을에 소 팔고 콩 팔고 춘에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잡곡도 팔고 봄에 이제 집이라도 한 채 사겠다고 모아놓은 돈을 콩 씨앗 자리 속에다가 그 안에 넣어놨더라고. 그걸 가지고 친구랑 둘이 대구로 가서, 그 돈 한 푼도 못 썼습니다.

(2) 청소년기

〈사례 10〉은 청소년기에 가정형편이 다소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동네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럼 나중이라도 학교 다니시지 그러셨어요?) 학교를 다니고 그럴 여유도 없고, 저도

나이가 이십 몇 살, 열 몇 살 그렇게 되니까. 어릴 때 중국집에 기술을 배워놓고 그러니 조그만한 식당에 주방장으로 중화요리를, 이렇게 다니다가 친구들 만나서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례 10〉은 청소년기에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었다. 〈사례 10〉은 동네 친구가 다른 동네 사람의 소를 몰고 가 파는 범죄에 가담하여 징역형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제가 열 일곱 살 때인가, 그 때 고향에 청송에 있었습니다. ○○ ○○면 거기 식당에 주방에 주방장으로 있었어요, 주방장으로 있을 때 나하고 형 동생 하고 지내는 사람의 여동생이 ○○ ○○○ 가는데 담배농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두 살 많지요. ○○○라고. … 근데 하루는 저녁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저를 불러요, 내일 오후에 어디 좀 갈 데가 있는데 밤에 가야하는데, 그 때 당시에 10만원인가 하는 돈을 준대요. 저녁에 가니까. 그래서 가니까 소를 몰고 가는데 …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장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왔어요. 소 팔러 갔는데 잡혀 버린 거예요. 자기 소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식당에 있는 식당 주인 소인 거예요. …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거래요. 저는 전혀 모르고, 돈 받고 가니까. 우리 세 사람이 붙들렸어요, … 우리는 나이가 어리고 이 사람한테 바래다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맞춰서 그 사람은 이제 나가고, 우리 둘이 징역을 받았어요 1년 6월씩.

(3) 청년기

소절도로 수감생활을 한 이후 바로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른다. 이 범죄 역시도 공범이 절취한 물건을 운반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시작된다. 이때에도 〈사례 10〉은 첫 번째 범죄와 마찬가지로 운반해준 물건이 절취한 물건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벌기위해 일을 해 준 것이라 주장하였다.

(소 팔다가 잡히신 게 나쁜 짓한 거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지요. 그 때는 정말 모르고 갔고. 그 다음에 절도 행각한 것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 실어다 주고 오후에 점심 먹고, 짐을 실어다 줬어요. 짐을 실어다 줬는데, 잡히고 보니 그것도 장물이고, 또 그 사람이 나랑 같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금 내가 안했지만은 다시 들어가요. 그게 인정이 안 되었어요 그 때에는, 그 사람 말만 듣고. 이 사람 차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가서 했다. 어디 차 가지고 오라하면 가서 싣고 오는 거는, 나는 자기 꺼인지 알았지, 남의 것인지 실제 모르고 갔거든요. 그럼 그래버려라 검사한테도 안 되고, 판사한테 그래도 안 되고, 인정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뒀지요. ... 실어나 른건 여러 번 되었으니까. 실제 그건 돈 벌려고 다닌 거지 뭐 그런 장물 같은거면 안 싣고 다녔죠. 아침에 가서 남의 개인 집의 집 아니고 하우스나 창고 같은 데는 안 갑니다. ...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은 남의 것 훔치는거 안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도 절도라는 누명이 없을진데 다른 사람 꼬임에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안 만나니까요. 그런게 없습니다. 찾아와도 안만나주고, 찾아와서 같이 어울려볼면 술 한잔 먹다보면 휩쓸리거든요. 그런거는 하기 싫더라고요. 차라리 술 한번 먹고 쥐어박아볼고, 이런 걸로 교도소 들어오는 거면 몰라도 도둑질 뺑파해가지고 우리 못하겠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모르고 했는가. 뭐 두세번 되는데 이거 전부 다 내 차로가 실어다 주고 절도로 묶여가 그랬지. 저가 했는게 아닙니다. 처음에도 돈 받고 소 이거 물어다 주는거

(4) 중장년기

30대 초반에 야간주거침입범죄와 삼청교육대경험 이후 <사례 10>은 교통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된다.

(그 이후 도로교통인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왜 그때 다 도로교통이냐면은, 운전을 못해가 그러는게 아니라, 뭐 할 것도 없고 이러니까 당장 뭐 먹고 살아야하고 이러니까 장사를 시작 하니까는 차가지고 새벽 두시되면 포항으로 가고 저녁 딱 되면 전라도 여수도 가고 물건을 해서 받아보니. 점심 먹으면 술 한병씩 먹어볼고, 저녁에 한병씩 먹어볼고 하면 음주 단속에 걸려볼고. 뭐 이래 2년, 2년 계속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 그냥 땡겨버렸죠.

(운전하다가 사고만 안치면 참 잘 사실 분 같은데요.) 그런데 술을 그래 먹어도 인사사고가 없고 이러니까는. 내가 생각해도 가만 생각하면 너무 했어요.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례 10>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업의 실패와 이혼을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한때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정도로 사업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처갓집 식구들이 일수를 하다가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가정이 어려워 졌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이혼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아 글때는 제가 돈을 뭐 그런대로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벌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벽돌공장 이래가지고 임대도 얻어가 했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처형이 두분 있어요. 애 엄마 위로 언니가 두 분있는데, 언니 두분이 다방 출신들이예요. 일하면서 뭐 또 한사람 사귀고 아파트 얻어서 한 두달 생활 하다가 아파트 전세금 싹 다 빼버리고, 자취 감춰가 또 판데가서 일 하고, 순 뭐 이런 저기여가지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걸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일하는데 와가지고 처형들이 하나 와가 있었어요. 그래 일수놀이를 했어요. 내가 한달에 월급을 두 번 가져오라 하는데 돈이 천만 원 돈이 넘는데 천 한 이삼백 만원씩 이래 하는데 없어요. 그래 하니까 언니까 쪼매 쓴다고 맞춰줬니. 그래 내 일년 번 돈을 처형이 몽땅 가져가버렸는 거예요. 일수돈은 싹 받아가 다 챙겼어요. 세 집인가 이래 한게 돈 백만 원도 안돼요. 남았는게. 그래 우리 집사람이 니가 가서 일수 이건 받아라 해서 그래가지고 날아부니, 성질이 얼마나 나는 거야. 그래 싹마 일도 하기 싫제. 술로 이라다 보니 자연적으로 집사람하고 가정불화가 생기잖아요. ... 그래가지고 ○○ 올라 오고 92년도 올라와가지고 쪼매 있다보니 그래 인자 전화가 왔는데 이혼하자카대. 그래 뭐 그래라. 마 이혼하자 그래 갈라졌어요. 나는 이혼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안하고 막 술먹고 놀아불고, 자기하고 처형들하고 뭐 가가지고 그래 해볼었대요.

(그래도 월급만 가져갔지 기반은 남아있지 않았나요?) 기계는 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계는 공장 주인 거고. 세놓은 겁니다.

(월급 계속 받으면 되지 않나요?) 그건 내가 이제 많이 하면 많이 벌이고 안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하루에 벽돌을 예를 들어 만장을 찍으면 한 장에 1원 같으면은 천원 벌이고. 아니면 하나도 없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 못하죠. 그리고 내가 기술자다 보니까 찍고 이러면 모래섞고 하는 사람들 품값을 다 줘야해요. 그래서 내가 일 안하면 그 사람들 돈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치아부니까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은 그래 났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기 싫어지신건가요?) 가정이 그래되면 일이고 뭐고 하기 다 귀찮아졌습니다. 눈에 띄는게 술 밖에 안 띄이니 께는. 노가다라는 게 그게 하나 나빠요. 그라다 보니 차 끌고 나오면 털럭 걸려불고.

이후 <사례 10>은 자포자기하는 생활을 하며 비정기적인 일만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다.

(이혼 하시기 전까지는 잘 사시다가 이혼 후부터는 일을 잘 안하셨겠네요.) 예. 그때부터는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셨나요?) 고거는 이제 정부에서 기초 수급자로 되어가지고, 고 인제 삼십 몇만 원 이래 나오고, 내가 또 건축현장에 노가다요. 노가다면 하루 하면 하루에 10만원씩 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인제 이래가지고 살고. 또 농촌에 여 영양 여 가면 우리 이종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추농사를 많이 해요. (정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아 그런 생각이야 많지요. 동해 남부 철도공사 많이 안합니까? 기차가 영덕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땡기는게. 거기서 이제 삼척까지. 일 많습시다. 많은데 우리는 안돼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65세 이상은 써주지를 않아요.

(이혼할 때 마흔 다섯이면 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랄 수 있었어도, 가정이 이래부니 뭐 짜증나고. 집이고 뭐 낙이 없어요.

이후 <사례 10>은 30회 가량의 교통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번갈아 받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 교통범죄 이외에도 절도와 횡령,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끼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총 40여회의 전과는 교통범죄 또는 자동차와 관련있는 범죄들이었다.

뭐 나가가지고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모여가지고 집에 오다가 그러고, 들에다 일하고 마치고 한잔 먹고 오다가 그러고.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일은 오후 5시면 마칩니다. 또 집에 올 때 운전하고 오니까 중간에 걸려 불고. 그럼 이제 술은 안 먹던지 차를 안 가져가야 하는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 계속 그래 돼볼대요.

제 4 장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범죄 경력을 구성하는 범죄 요인

박 형 민

범죄 경력을 구성하는 범죄 요인

제1절 | 경험된 범죄 요인

면접 사례들을 종합하여 이들이 경험한 범죄와 관련한 요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면접대상자에 따라 드러나는 범죄의 시작과 중단, 재시작과 지속의 요인 또는 계기를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의 각 국면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 [표 8] 범죄 요인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
〈사례 1〉	• 고아라는 상황 • 범죄동료들과 공동 생활	• 결혼과 출산	• 범죄동료들의 유혹 • 사업실패 • 범죄적 성공경험	• 범죄동료들과의 관계
〈사례 2〉	• 우연한 행운			• 취직이 어려움 • 범죄적 성공경험
〈사례 3〉	• 경제 곤란	• 결혼과 출산 • 사업 운영	• 이혼 • 사업 실패 • 유산 상속 실패 • 건강 악화	• 누적된 전과 • 취직이 어려움
〈사례 4〉	• 친구의 권유 • 부모의 방치	• 결혼과 출산 • 사업 운영	• 경제 곤란	• 범죄 동료들과 공동생활 • 가정 불화
〈사례 5〉	• 가난	• 노동 참여	• 지인과의 교제 • 유흥비 마련	• 교도소에서 범죄 학습 • 사회 부적응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
〈사례 6〉	• 친구 부탁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건강 악화 • 실업			• 지역사회 부적응 • 음주
〈사례 7〉	• 가난	• 노점 운영 • 결혼 • 충분한 수입	• 이혼	• 장기간 구금 • 취직이 어려움
〈사례 8〉	• 지인 부탁 • 범죄 동료의 권유	• 결혼 • 노동 참여	• 기소중지 사건 재개 • 노동 참여 • 범죄적 성공경험	• 범죄적 자아상 • 누적된 전과 • 범죄에 익숙해짐 • 범죄적 성공경험
〈사례 9〉	• 친구의 부탁			• 가난
〈사례 10〉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 배우자에 대한 원망 • 음주

제2절 | 시작 요인

1. 가난

범죄의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곤란이었다. 본 연구에 동의한 피면접자들의 대부분이 절도범죄자이고, 일부 사기범죄자와 교통범죄자가 동의한 사례들이기에 어쩌면 사례들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사례들 중에는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거나, 성장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범죄를 시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틀림 없다.

〈사례 1〉의 경우 고아원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범죄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사회에 나오게 되니 같은 처지에 있었던 동료들과 범죄를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제가 인제 아무 뭐 연고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제 막 나와 가지고 뭐 인제 사회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학교 조금 다니다가 그냥 나가라니까 나왔는데 뭐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이걸 무슨 뭐 오아시스도 아니고 뭐 여기 무슨 뭐 사막 그 맨땅에서 나오니까. 그냥 고아원에서 같이 사는 애들 그때 당시 60년대인데. 60년대, 60년대, 70년대 되기 전인데 4-50년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나마 고아원에서 인제 그 같이 살았던 애들이 뭐 구두도 닦고 신문도 뭐 팔고 뭐 갖은 고생 다 해봤죠. 어렸을 때니까요. 그러다가 인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뭐 것도 뭐 아는 사람들이 뭐 응? 도둑놈도 있고 하대. 뭐 도둑질을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고 배고프니까 남들이 아 이거 이거 겨울 되면 따뜻하고 이거 뭐 어떻게 좀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는 사람이 그 고아원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따라서 그냥 범죄에 그냥 뭐, 뭐지 뭐지 뭐시기 시장에서 뭐 하나 훔쳐 먹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례 1》

〈사례 5〉은 어린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성매매 집결지에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 배고픈 상황에서 주인의 돈을 훔친 것이 범죄경력의 시작이라 말한다.

처음에는 거 저 ○○○○부터인거라.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저녁에 손님이 들어오면 돈을 줄때가 있잖아요. 쯤 처음은 그게 아니고 돈이 눈에 보이니까. 문을 열었는데 돈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봉투에서 돈을 꺼내 갖고 돈이 좀 있었어요. 꺼내고 그러니까 거기가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포크로 그 안이 걸리더라고. 그때 그 국산호크를 달아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열리더라구요. 그리고 그거 또 그거 또 나서 내가 열었다는걸 모르게 한다고 만 원 짜리 하나 집어놓고 자장면 사먹고 그래서 나쁜길로 들은기라. ... 빼간 돈 때문에..나이가 어리니까 처벌은 안했는데 끌려가서 앉아있어. 꿰어앉아서 4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다음부터 하지 말라고 보내줬어요.

《사례 5》

〈사례 7〉은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 양아버지가 용돈을 주지 않아 눈에 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판 것이 범죄 경력의 시작이라 이야기한다.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두부공장 있을 때 월급을 또 안주대. 그래서 두부 이빠이

때려 싼고 잔치 집에 가져갈 두부 다 팔아가 ○○○ 와가 자전거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뭐 끝이었죠 빠이빠이. 이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사례 7》

2.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식 없이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행위가 초기 범죄 경력을 형성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다른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범죄적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접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례 4〉은 첫 범죄를 저지를 때 죄의식이나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단지 친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망을 봐주었던 것이 사실상 범죄였다고 말한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범죄에 동조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범죄 경력이 쌓이게 되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어요. ... 소매치기도 있고, 그리고 그 때는 야간주거침입, 바깥에서 그냥 형이 있으라고 해서 있었어요 바깥에서. 진짜 밖으로 나떨어졌어요. 있으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형사가 잡으러 왔어요. 갔더니 그게 공범이래요, 그 사람은 이제 전과가 많아. ○○○, 나 이름도 안 잊어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 그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김천교도소 갔다 오니까 다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뭔가 할 줄도 모르는데 애들하고 어울린거죠. 그게 뭐냐 공갈·협박이라 그게. 노상강도라고. 직접적으로 칼을 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들 돈 뺏는 게 그게 노상강도라 ...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금고도 털고. 또 한 번은 소매치기 두목으로 잘 사는데,

《사례 4》

〈사례 6〉은 ‘아는 동생’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그가 훔쳐온 물건을 팔게 해 준 것이 범죄경력의 시작이라 말한다. 그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잘 알고 있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철사 공장에 내가 다닐 땐데, 내 아는 동생이 다른 공장에 있었어요. 그 공장에서 봉급을 안주니까 철사를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지 봉급을 가진다. 이걸 팔아달라 나한

테 와가지고. 철사줄 팔아서 지 봉급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내 아는 사람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가 내 장물로 걸렸어요. 팔아준거. 그게 그거요. 그게 철사가 50kg. 그 돈만 몇 천원 같거여. 그걸 팔아달라니까 수갑 딱 채워가지고. 왜 공장 물건을 왜 팔아주냐, 수갑 채워서 형사하고 딱 오는거야. 맞다고 팔아줬다 그래가 내가 다니던 공장에 팔아줬어요.

(나쁜 짓인거는 알고 있었죠?) 그래 왜 그거는 그 전부터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 공장 사장도 알고, 다 아는 사이예요. 그 이놈이 사장한테 얘기 안하고 가져온거죠.

(몰래 가지고 나왔다는 건 알고 팔아주신거예요?) 예. 그게 장물이요.

《사례 6》

3. 배우자에 대한 원망

그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에 따른 음주가 폭력성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사례 6〉의 경우 젊은 시절 중동에 가서 건설을 통해 돈을 버는 등 열심히 살았으나, 어렵게 번 돈을 배우자가 유흥에 탕진하고 아들도 돌보지 않자, 배우자에 대한 원망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고 말한다.

사우디 가기 전에는 술 안 먹고, 80년도부터 술 마시기 시작했죠. 사우디 갔다 와서 술 먹기 시작했죠. 사우디 갔다 온 후에 가족이 풍비박산 나서 그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때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술 드시기 시작하신거예요?) 네네. 그 때부터 었을 겁니다.

(그 딱 술 드시기 시작할 때는 따로 실수하신 거는 없었나요?) 네. 그 때 따로 뭐 싸우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실수한 것도 따로 없었고.

(그럼 술 드시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고 치시기 전까지는 따로 실수하신 건 없었나요?) 뭐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 빼고는 딱히 없었어요. 그 때 그거 해서 여주 교도소 가서 그 때 빼고는 따로는 없어요. ... 그 때 누님 집에 얹혀 살 때 그 때는 화가 막 나지는 않았어요. 아내 도망 갔을 때 아내한테 막 화가 난 후에 그 때부터 술을 막 먹고 막 망가지기 시작했죠.

《사례 6》

〈사례 10〉은 한때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기도 하였으나, 처갓집 식구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치고, 이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와 처갓집 식구들을 원망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혼은 어떻게 하신건가요?) 아 글때는 제가 돈을 뭐 그런대로 한 달에 몇 천만원씩 벌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는 벽돌공장 이래가지고 임대도 얻어가 했고,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처형이 두분 있어요. 애 엄마 위로 언니가 두 분있는데, 언니 두분이 다방 출신들이예요. 일하면서 뭐 또 한사람 사귀고 아파트 얻어서 한 두달 생활 하다가 아파트 전세금 싹 다 빼버리고, 자취 감춰가 또 판데가서 일 하고. 순 뭐 이런 저기여가지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런 걸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일하는데 와가지고 처형들이 하나 와가 있었어요. 그래 일수놀이를 했어요. 내가 한달에 월급을 두 번 가져오라 하는데 돈이 천만원 돈이 넘는데 천 한 이삼백 만원씩 이래 하는데 없어요. 그래 하니까 언니가 쪼매 쓴다고 맞춰줬니. 그래 내 일년 번 돈을 처형이 몽땅 가져가버렸는 거예요. 일수돈은 싹 받아가 다 챙겼어요. 세 집인가 이래 한계 돈 백만원도 안돼요. 남았는게. 그래 우리 집사람이 니가 가서 일수 이긴 받아라 해서 그래가지고 날아뿌니, 성질이 얼마나 나는거야. 그래 싹마 일도 하기 싫제. 술로 이라다 보니 자연적으로 집사람하고 가정불화가 생기잖아요. ... 그래가지고 ○○ 올라오고 92년도 올라와가지고 쪼매 있다보니 그래 인자 전화가 왔는데 이혼하자카대. 그래 뭐 그래라. 마 이혼하자 그래 갈라졌어요. 나는 이혼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안하고 막 술먹고 놀아뽏고. 자기하고 처형들하고 뭐 가가지고 그래 해뽏았대요. ... (이혼 하시기 전까지는 잘 사시다가 이혼 후부터는 일을 잘 안하셨겠네요.) 예. 그때부터는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거든요. ...

(정기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아 그런 생각이야 많지요. 동해 남부 철도공사 많이 안합니까? 기차가 영덕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땡기는게. 거기서 이제 삼척까지. 일 많습시다. 많은데 우리는 안돼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65세 이상은 써주지를 않아요.

(이혼할 때 마흔 다섯이면 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 그랄 수 있었어도, 가정이 이래부니 뭐 짜증나고. 집이고 뭐 낙이 없어요.

《사례 10》

4. 우연한 행운(성공적 범죄경험)

범죄의 우연한 성공을 행운으로 여겨기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사례 2>는 문이 열린 차에 지갑이 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것을 몰래 훔친 이후, 문이 열린 차를 찾아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을 훔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처음 범죄 시작하신 계기가 우연히 열린 차문을 보고 시작했다고 하셨고, 그 뒤로는 판 일 별로 안하시고 직장도 안다니셨고요?) 예. 직장도 별로 안다녔어요.

(처음에 차 문 열려있고 현금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 깜짝 놀랐죠. 차문이 열려있고 가방 들춰봤는데 현금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90만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랐죠. ... 무조건 확 집었어요.

(보통 범죄 처음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 가져가야 하나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왜그랬을까요? 평소에는 직장 다니시면서 남의 것 손도 안대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않고 무조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는 현찰이예요 현찰. 만원짜리 90장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썼죠.

그때 내가 차 문을 처음 열어본거잖아요. 그래 돈이 그렇게 생긴건데, 별 다른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니까 쓰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고나서 자꾸 자꾸 하다보니까는 이게 왜 자꾸 돈이 생기지? 이렇게 차문만 열면 지갑에서 돈이 나오네 해서 그게 왜그런가 하고 생각은 해봤죠.

《사례 2》

제3절 | 중단 요인

범죄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중단요인은 ‘결혼(과출산)’, 그리고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이다. 다만 <사례 5>의 경우 범죄를 잠시 중단한 경험이 있으나 결혼 경험이 없는 사례였기에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한 안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나마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과 노동 참여를 통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결혼(출산)

〈사례 8〉의 경우 결혼을 계기로 범죄를 그만두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결심은 예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사례 8〉은 기소중지 사건만 없었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 저 찻간에서 만났어요. 버스에서 만났어요. 충북 ○○여자인데 그때 이제 ○○에 있을때니깐. 그랬다가 어떻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결혼식을 ○○에서 큰누나가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뭐 그때 이미 또 사고의 반이 쳐져있을때니깐 결혼하고도 그래서 이제 손씻으려고 했는데 뭐 기소중지가 되어있었을 때니깐 뭐 붙들려가지고 임신은 8개월 됐을 때. 그렇게 됐어요. ... 인제 임신했고, 처도 있고. 나도 이제 가정이라는게 있으니깐 손이라도 씻어야지 한거죠.

《사례 8》

〈사례 1〉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합법적인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라고 회상하였다.

제일 행복했던 것은 비록, 비록 뭐 범죄 속에서 살았든 안 살았든 우리 마누라 만나가지고 첫 애기를 낳아가지고 85년도 어..... 아 83년도 5월 6일 날 뭐 그 전 서부터도 하여튼 딸 낳아가지고 이렇게 내가 인자 빨래해주고 그 뭐 미역국 끓여줘가면서 살 때가 제일 행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인제 또 더 나간다면은 그 시절 행복이 뭐 매일 온 게 아니라 살짝 스쳐갔지만도

《사례 1》

〈사례 3〉의 경우 배우자와 열심히 일하며 살았던 때를 좋은 시절이라 기억하였다. 〈사례 3〉과 그의 배우자는 고향에서 쌀과 연탄을 팔며 꽤 많은 돈을 모으기도 했다고 한다.

○○에 가서 우리 큰 집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그 서모하고 자꾸 싸우고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도저히 서모하고 안맞으니깐 아버지도 입장곤란하고 나도 입장곤란하니깐. 아버지도 며느리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집사람 챙기기도 그렇고 서모 챙기기도 그렇고 그러니깐. 자립할 수 있게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랬어. 조금만 도와달라는게 방을 얻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 이거예요. 큰집이모도 듣다가 아야 ○○이 도와줘라 장남 아이가?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서 서러움 받고 자랐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보통 보증금이 2,000원, 3,000원 정도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제법 많이 올랐어. 한 5,000원 정도 해줬다 칩시다. 그래서 방을 해주는 바람에 연탄가게를 차리고 ○○상회라 이래서 간판을 부쳐서 과일하고 쌀하고 연탄하고 이 3가지를 해서 연탄배달은 내가 힘들어도 수익이 남는거야. 쌀 배달은 일반미 80kg가 한 가마니인데 쌀은 돈이 수급이 안될때가 있어 그래서 연탄값 먼저 받고 돈 되는데로 쌀 값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몇 년 부지런하게 해서 돈을 제법 모았어요. 상당히 모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아파트도 사고 노래방도 차리고 이런 정도가 됐으니깐 얼마나 부지런하게 했겠어요 3년 이상을.

《사례 3》

〈사례 7〉도 청년시절 결혼을 하게 되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 짧은 기간동안 〈사례 7〉은 범죄가 아닌 장사를 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때 내가 20살이었고 여자가 17살이었는데 그때 애기끼리 살았으니까 서로 철이 없으니까 돈도 뭐고 뭐 무서우니까 빨리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가면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먹고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여자는 그래 하니까 한 달을 생활을 했어요. 내가 싸울 때마다 백화점 가서 옷을 사주고 했더니깐요. 근데 백화점에서 옷을 사줬는데. 장모 장인들이 하는 말이 놀러 가며는 너희 옷을 맨날 저기 하고 하니까 40대 기반 잡아야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례 7》

2.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

〈사례 8〉은 열심히 일하던 시기에는 범죄에 대한 유혹도 없었고, 범죄를 저지를

필요도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

(징역 1년 살고 나오셔서 4년 정도는 이때는 뭐하셨어요?) 그때는 나와가지고 배웠어요. 인천이니깐 그 고기 잡는 배. 조기라던가
(아 배를 타셨어요?) 그 강화도 들어가서 그 염전에도 있었고, 염전 소금 만드는 곳 있죠?
(이때는 유혹하시는 분들이 없었나봐요?) 그 때는 막노동일 하나만 내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됐죠

《사례 8》

〈사례 5〉도 일용직 노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시기에는 범죄에 대한 욕구도 없었으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이야기 한다.

그때는 ○○동에 거기 가면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 그거는 5시 되면 일어나야해.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하나 하면 신분증이 있어야해. 주민등록 없으면 못 들어가. 가면 ○○인력 사무실이 이거 한 다섯배 돼요. ... 오래 다녔어요. 일을 잘하잖아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야. 진짜 부지런해요. ... 그래가 모여갖고 기분 좋은 날엔 막걸리 한잔 하러 가자. 구로 시장 가서 거기 이제 막걸리 한잔 먹고. 기분 좋으면 노래방도 한번씩. 그럼 돈이 없어. 하루 일당이 없어져버려. 가면 벌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일하면서 끝나고 막걸리 먹는 재미도 있고,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사셨고, 그 때 다른 생각 안하셨고요.) 다른 생각 할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열흘동안 술을 안먹고 ○○동 누나 가게도 안가. 내가 피곤한데...아침 5시에 일어나서 현장가면 7시까지 가는 가야하거든요. ...
(열심히 일하느라 판 생각을 안하신거네요?) 시간이 없어. 힘드니까.

《사례 5》

〈사례 7〉은 절도를 하지 않아도 적절한 수입이 있다면, 굳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 상황에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있었고, 기술도 있었고, 그냥 뭐 동네 사장님하고.... 일거리가 많았죠..
(굳이 절도를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수입이 있었던 거고 그 계기는 결혼하면서

마음이 안정되었던 것이라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데 그게 징역은 그렇게 살지만은 원래 범죄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1년을 살고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뭐 생활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게 오토바이란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살라 그러면은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는데 언제 돈을 벌어가 오토바이를 사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솔직히 노가다 현장에 가가 지금 뭐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오토바이라도 있어야 일을 하든가 그러는데 원동기 저 순발력이 없으니까 뭐 이리로 와라해도 못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오토바이를 하나 사야되겠다. 오토바이가 있다고 쳐요. 오토바이 있으면 물건 살돈이 없잖아요. 돈백만원이라도 있어야 장비를 사든가 하겠죠.

《사례 7》

〈사례 3〉 역시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했던 시기를 매우 보람있었던 시기로 기억하며, 당시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회상하였다.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이 된게 어디로 됐나하면 ○○에 저 ○○○가 가면 지금 ○○극장이 없어졌지만은 ○○○가 가면 ○○이라고 있어. 큰 빌딩 있어요 ○○ 종합 양분식이라고 있어. 양식, 일식, 한식 이런거 양분식이라고 있어. 그래서 내가 국수에 전문분야로, 국수에 들어간거여. 김밥말고 오뎅이랑 팔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자 사장 신임을 얻어서 일을 좀 하다보니까 좀 기술자가 되가지고 어느정도 몇 년 한..한 1년 이상 넘게 있었구나. 있다가 ○○로 가서 ○○이란데 가가 주방장을 한거요. ○○이란데 가가. 주방장 그 메밀국수가락, 튀김국수, 계란국수, 콩국수, 유부국수, 오뎅국수 국수 종류가 짝 나왔어. 이거 내가 기술자여. 큰 칼이 핑장이 소바가락, 소바칼이라고 해서 잘못 썰면 손가락이 짝 다쳐. 그래가지고 정신채리고 판대기를 착 차려가 찔라야 하거든. 그래 그당시에 우리나라가 쌀이 부족해가지고, 분식을 위주로 해가지고 밥을 묵고 이라기 때문에 분식 이게 요즘 사람들은 분식을 잘 안먹지만, 옛날에는 보리가 쌀이게 작다보니까 분식종류를 많이 해 먹었어요.

《사례 3》

제4절 | 재시작 요인

1. 경제적 곤란

범죄의 시작요인이기도한 경제적 곤란 상황은 범죄를 잠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불법 행위를 하게하는 요인이 된다. 범죄의 중단요인 중 하나였던 정규직 노동 또는 합법적 사업 등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어렵지 않게 다시 범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범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요인인 범죄적 성공경험과도 연관된다.

〈사례 1〉은 잠시 범죄를 중단하였다고 사업이 실패하게 되자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챙피한 어떠한 애긴데 그러다보니까 간단하게 되몬 사회에서 인제 이렇게 뭐 별 고생을 다 하다가 이렇게 좀 처자식을 낳고도 했던, 사업도 해다가.. 이렇게 좀 살아볼라 했는데 IMF 때 또 부도를 당해서.. 전부 그 뭐 징역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부도를 당해가지고 징역을 뭐 들어와서 보니까는 그때 인제 뭐 인제 뭐 젊었을 때 처음했죠 그때. 에휴 그때 들어와서 보니까 야.. 내가 이게 무슨 부도나고 나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야.. 이게 이 나무라는 게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무너져도 여기서 또 도움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사례 1》

〈사례 3〉 역시 잘 되던 사업이 망하여 ‘빈털터리’가 되고, 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된 것이 다시 범죄를 시작한 계기라 말한다.

가구공장은 근래에 했어. 가구공장은 몇 년 안됐어요. 한 오륙년 전에 ○○에서 ○○가 구 산업이라고 내가 납품하고 그랬는데 그제 망해가고 퇴직금 문뜩가지고 공장 기계까지 다 팔아가지고 ... 가구공장도 잘되다가 망해버리니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거지.

《사례 3》

〈사례 7〉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는 결심을 하였으나 생계를 이을 만한 상황이 안되어 ‘가책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네네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차려가 살라고 하는데 이게 받쳐주는게 없으니까 뭐 장사라도 해봐야 뭐 끌고 다니는 장사 이게 뭐 있겠습니까 허허..삼사백만원 정도 있어야 끌고 뭐..오토바이라도 사가 그렇다고 끌고 또 리어가 끌고 땡길순 없잖아... 내가 조금 양식 가책되는 일을 해야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 양심 지켜봐야 들어오는 돈 없습니다.

《사례 7》

〈사례 5〉의 경우 아는 ‘누나’를 위해 술을 팔아주거나, 함께 여행 등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으나, 일용직 노동만으로는 그것을 충당할 수 없어 절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내가 벌었으면은 집에 가마~안히 있으면은 이 누나가 손님없으면은 야 전화가 와 뭐하냐 카면서 그러면 또 누나가 나한테 밥도 주고 잘해주는데 내 그냥 있을수 없잖아요. ... 그 누나를 알고 지내고부터 이게 돈이 조달이 안되는그라. 돈이... 노가다해갖고는 이 안대. 들어오면 씨아지 그 돈 몇만원갖고 되나. 그 누나 그래도 술장사하는데 팔아주기도 하고 해야 된거 이게 그 뒤로부터 어떡어떻게 하다보니 이게 나쁜 길로 빠지더라고.

《사례 5》

2. 범죄적 성공경험

범죄적 성공경험이란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범죄적 행위의 결과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범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깐 적극적으로 하신건 아니지만 누가 꼬시니깐 바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뭐 몇 년 전부터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가 온상이예요. 여기서 있다보면 서로들 얘기들하고 지금 우리들끼리 교도소마다 서신 주고 받아요. ... 그래서 그때 이제 끼놓고 말해서 범죄가 이런데 드나드니깐 그때는 다 가르쳐줘요 안에서 야 절도는 이렇게 해야한다, 사기는 이렇게 해야 안잡히고 뭐 밥만 먹으면 그 얘기뿐이야 열댓명이 앉아서. 그래서 어 그래? 나중에 또 그대로 행하다보니깐 자꾸 잡히는거지

《사례 8》

3. 범죄 동료들의 유혹

과거에 함께 범죄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공범을 찾은 동료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권유하는 경우 약하게 거절한 이후 결국에는 다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있었다.

〈사례 1〉의 경우 자신이 범죄자가 된 이유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고향친구 때문이라 원망하였다. 그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방해하였으며, 범죄를 함께 저지르자고 유혹하거나 협박하여 그 자신도 범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것만 이렇게 안았으면 내가 이렇게는 안됐을 건데, 내가 제일 원망하는 게 그 친구새끼예요. 이○○이라는 놈. 내가 그 새끼만 안 만나고 그 새끼 세 번을 만나고 세 번을 그렇게 된 거예요. 송탄에서 가게 얻어놓고 그렇게 됐지, 또 용인에서 그 놈 때문에 용인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또 어떻게 연락 와서 도쿄호텔 거기 남산 올라가는데서 만났지, 만나가지고 또 인제 뭐 전자제품 장사를 하다가, 또 그놈의 새끼가 막바지에 가가지고는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나중에 그게 나중에 내가 건축 쪽으로 할 때 나타나가지고는 그 인제 당자를 인제 빌려 주는 게 되가지고 그 지금도 재판 때 그걸. 그 때문에 내가 이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저 그 뭐 병합이 되가지고. 내가 도망 다니다, 도피 생활을 하면서 그 때 인제 마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도피 시작이 안됐으면 내가 마약쟁이들을 이렇게 보면서도 나도 그랬어요. 에이 씨 할 짓이 없어서 마약하고 있냐.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길에 빠져보니까 이것이 뭐 뭐라그럴까 덩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지. 이익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 친구에 대해 원망을 하지만도 지금 나타나도 내 뭐 그냥 용서가 될까. 마음은 그냥 갈아먹고 싶은 정도인데 나타나면 야 이 개새끼야 하고 울지도 몰라. 내가 왜. 너무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온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례 1》

〈사례 8〉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이 어려워진 순간에 과거에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하자고 하자, 이 유혹에 넘어갔다고 말한다.

네 마음잡고 살다가 이 때 또 잘못이 있잖아요? 이거 사무실하던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야 뭐 그러고 사냐 이거와서 같이하자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또 들어갔어요. … 여기 교도소 내에서 알던 사람이에요. 강원도 사람인데.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나가지고는 거기서 커피한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지금 무슨일 하나 그래서. 나 지금 벽돌 기술자는 아니고 대모도 일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가 좀 좋은일이 있으니까 한번 협조해서 같이하자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거예요.

《사례 8》

4. 이혼

결혼과 출산이 중단요인이었다면, 이혼은 재시작요인이다.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다시금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교도소 생활 자주 한거는 우리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부터요.

《사례 3》

제가 좋은 길로도 범죄를 끊은 적도 있어요. … 장사를 ○○에서 하고 있는데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데 뒤에서 “꼼짝 마” 그러더라고요. … 1년 5개월 50일 만에, 1년 5개월 19일만에 정확하게, 무죄를 받았는데, 그 때 당시 범죄를 안했었거든요? 근데 그 때 당시 큰 애 애미하고 20년 만남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내가 대법관한테 편지를 쓰기를, 대한민국 법이 가정파괴범,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는 범죄를 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데려다가 백 건 이백 건 소매치기 미제 사건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 그 때 당시 범죄를 끊었었는데, … 잘 살고 있는

가정을 무죄 나왔는데 이혼 되었지, 애는 애대로 되었지, 나오니까 또 조금 생활 해가지고 그 땐 또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일 한 게 아니라, 제가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는데, 출감하자마자 열심히 무죄 받고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재개할라고 빵집을 한 번 해볼까 하고 전부 하고, 내가 직접 해볼라고 하고. 애 엄마도 좋다고 하고, 처갓집에서 대주고, 집에서도 대주고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애가 그 모양이 되니까 열이 받았지요. 또 누구한테 손을 못 벌리니까 다시 버스를 탄 거예요.

《사례 4》

제5절 | 지속 요인

1. 범죄경력

범죄를 지속하게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복된 범죄로 인해 쌓여진 범죄경력이었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다른 모든 요인들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어 범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수의 범죄경력 중 일부는 범죄적 성공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지속을 통해 다시금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범죄자가 범죄적 행위에 익숙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다수의 범죄경력은 결국 범죄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경제적 문제상황을 범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사례 7〉은 일단 징역을 살기 시작하면 형량이 누적되어 오랜 수감을 하게 되고, 수감 후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말하였다.

(40대 이후부터는 자주 경력이 생겼는데, 어떤 게 변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 이...그래 이제 일단은 징역을 살고 나오면은 누범이라 해가지고 징역을 따파볼 주니까 따파볼을 받고 이 나가가 생계유지가 되어야하는데 돈 여기서 공장에 있어봐야 30만원 가지고 나와요. 30만원 가지고 나오면은 열흘쓰면 없는데 그때당시만 해도 인력사무실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가면 일거리가 있다는 거를 몰랐고 그냥 일단 오토바이가

필요하니까.

《사례 7》

〈사례 2〉는 수감생활 후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말하며, 다시 범죄를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감옥 갔다온 후에는 이제 감옥 그만오고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죠.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 때는 다시 나오면 돈이 다시 필요하니까, 다시 또 털고 그랬죠. 요즘에는 이딴거 자주하면 뭐하나, 그냥 안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옥 나오신 후에 다시 취직할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그 때 그런 생각 들었죠. 들었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죠. 그 때 유리공장에서 일하려고 갔는데 거절당하고 옷공장은 사라져있고 그 후에 빵공장도 찾아갔는데 빵공장에서는 사람 안 쓴다고 해서 뭐 그냥 다시 손댔죠. 그 당시에 취직했으면 뭐 돈도 모아서 저축도 하고 그랬고 다시 손도 안 대고 그랬겠죠.

《사례 2》

〈사례 8〉은 두 번째 전과 이후 될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지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다.

(근데 게 이때부터 사기기록이 짝 있더라고요) 혼자됐어. 혼자. 그러니까 이제 막말로 될대로 되라 이거죠. 이런 거는 전과는 있어 괜히 징역받은 것도 있는거야. 이거는 지나가다 쓰러진 사람 일으켰는데. 이거 진짜 그런거예요. 이제 벌금 200만원도 있고, 4월도 있고, 징역 1년 있고. 이거 다 조금 조금이잖아요? 조금 조금이에요. 그러다가 14년도에 공주서 1년 2개월을 살고 나왔죠. 그리고 요번에.

《사례 8》

〈사례 3〉도 전과로 인해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될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말한다. 일거리가 없고 돈이 없으면 예전의 수법의 절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내가 또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조금은 정신차리려고 하면 1, 2년 있다가 보통 3년이 넘어가야 그거 누범이 안되는데 답답하고 그러면 고마 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내가 담을 뛰넘어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강도짓도 아니고 소소한거. 전과있고 그래서 누범이다 보니까 곱을주고 곱을주고 이번에 특가법이 생겨서 출발이 1년 6월부터 출발 아납니까? 출발이 강하니깐 어쩔 수 없는거야. 판사도 그러더라고 참 안타깝다고. 내 의무과에서 진단서 떼가 올렸어. 변호사가 국선변호사도 자기가 참 안타깝다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랬다만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어쩔수 없다고 그러면서. ... 그래가지고 저가 3년을 받고, 그때 하여튼 ○○가 아니고 그 때 3년을 받았어. 3년인가 2년 6월. 그 때 받고 내가 주범이 돼가지고 ○○이 그놈 얼마 안받고. 그라고 나서 마 될대로 돼라. 고마 시간만 나면 그 지랄하고. 돈벌이 할거 있으면 안가고, 돈 벌이 할 거 없으면 가고. 분위기 안좋으면 밥이나 얻어먹고 오고. 그런거여. 그러다보니까 전과가 늘어 나버린거여. 취직 안되고 ... 일거리 없고 돈 딸리고 하면 거기 가면 큰 돈은 못만지더라도 용돈정도는 만지고. 그래나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로 발이 떨어지는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안갈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목사님한테 세례 그 받아가지고 그까지 받고 중까지 다 해가지고 주고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자매님들 이래가지고 열심히 다닐라고 하고 내가 내가 조금 젊으면 만원 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안짓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이놈이 술 한잔 하자고 하는 바람에 ○○가서 술한잔 하고 헤어지고.

《사례 3》

〈사례 4〉의 경우 범죄를 함께 하자는 예전 공범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한 것이,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검거되지 않은 과거의 범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또다른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거절하지 못하신 이유는 뭘까요?) 거절하지 못하는 거는, 제가 맘 잡기 전에 그놈하고 ‘건’이 있어요. 근데 미제사건이지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는데, 그 당시에는 미제사건인데 그놈하고 저하고 해서 금고를 열어가지고 채권이 그 옛날에는 전화채권도 있었습니다. 전화채권도 있었고 그 주택채권이 백만 원짜리 까지 있었어요. 그 옛날에 백만 원 채권은 큰돈이었어요. 금고를 열으니까 금고 안에 잔뜩 있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근데 잘 살고 범죄를 끊었어요. 근데 그놈은 노름을 해가지고 다 털렸어. 그 전에 노름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너는 끝이다 너하고

나하는. 그러나 나도 이제 신물난다. 애들도 이제 살아야 되겠고, 내 집사람하고 이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마라. 나 이제 싫다. 그렇게 하고 진짜 헤어졌어요. 나 찾지 마라. 나도 너 안 찾을게. 근데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와가지고 한 건만 하자고 하더라고. 한 건만 하자.

(안하면 미제사건을 터트리겠다고 그러는 거죠?) 그거죠. 그걸 애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술좌석에서 야, 너 말 지켜갖고, 너만 잘 사냐. 너도 임마 노름 하지 말고 잘 살지 임마. 너무 집사람 있고 애들도 있고 한데, 애도 큰데 하지 말지 임마. 뭐하러 노름해가지고 다 그러냐. 그 우리는 전파사 있는 중국집 사장인가 백 원짜리 동전내리기나 고스톱이나 치고 상가에 여관 목욕탕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개가 전파자인지도 몰라요. 진짜 몰랐어요. 완전 숨기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고. 근데 찾아와가지고는 그렇게 하니까. 이게 현금수송차량 탈수사건도 인수가 그렇게 해서 갔는데,

《사례 4》

〈사례 5〉은 범죄 경력으로 인한 수감생활이 또 다른 범죄를 학습하는 경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나도 급한데. 언제 잡힐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알면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알면서도 요번에 나갔을적에 노가다 할라고 마음 먹었어요. 진짜 할라고. 마음 먹었는데 나한테 축이 딱 오더라고. 버스 노선을 모르겠는거라. 옛날에는 저저 뽀나, 저저 구로동 120번이 여의도 쪽으로 도는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길을 다 알았어요. 저기 영등포 돌아서 가는 길은 많았는데. 요번에 딱 나가니까 번호 번호도 무슨 다 바뀌어버리고 노선도 다 바뀌어버리고 엄두가 안나는기라. 와...세상이 이렇게 바뀌 버리는구나. ...저는 CCTV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이야기 해 드릴게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고 도둑질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들어오고 나서 다 알았어요. 여기 들어와서 조금 알았어. 알았는데 도둑놈이나 사기나 폭력이나 절도나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나 모든걸 다 통틀어서 한가지로 말하면은 여기서 다 배워서 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쁜짓은 여기서 다 배운다는 것만 명심 하세요. 딱 한가지 충고. 근데 내가 여기와서 CCTV를 어떻게 알았냐. 나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력하고 도둑놈하고 분류가 돼요. 교도소 오면 흩어져버리는데, 구치소에는 다 분리가 돼. 절도면 절도, 폭력은 폭력 다 분리가 돼. 도둑놈이 10명이 있으면 방에

많아. 10명씩 있어요. 도둑놈이 도둑질 말 하지 무슨 말을 하나요. 교도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게 하나도 없어요. ... 사기방은요 저저 뭐야 사기방에 가면 더해. 사기방 가면 전부. 나도 사기 방 들어가봤잖아요. 절도방 들어가면 하는 이야기가 CCTV얘기밖에 안해. 근데 내가 거기서 배운게 나는 몰랐는데 CCTV를 알았네.

《사례 5》

2. 범죄적 성공 경험

범죄의 재시작 요인이었던 ‘범죄적 성공경험’은 범죄를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범죄를 통해 나름 큰 성공을 거두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범죄를 다시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사례 1〉은 범죄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걱정이 되지 않았고, 한두건만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다고 말한다.

몰랐던 내가 이 기회를 빠른 시간에 다른 사람보다 습득을 한 것이예요. 고아원에서 주는 밥만 먹다가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서 4, 5년 만에 터득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범죄도 빨리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 돈은 잘 벌었죠. 지금 계산하면 내가 생각해도 여기서 먹고사는 생각하는 시간 뿐인데 생각 안하겠어요? 과거를. 지금돈 150만원이면 작은게 아니거든요. 한 200만원씩 벌었어요. 하루에 말로만 거짓말로 하는게 아니예요 85년 6년도 이때만 해도 내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3000만원이고, 이걸 다 어쨌나..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어떻게 썼나 생각을 해 봤는데 내 아내를 82년에 만났는데 내가 도망을 다녔을 때 집에 들어와서 보니 오히려 빚을 지고 있었어요.

《사례 1》

〈사례 8〉도 범죄를 통해 돈을 쉽게 번 적이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에는 돈을 마음대로 쓰고 돈이 떨어지면 또 다른 범죄로 충당하는 것을 반복하며 살았다고 한다.

말해 뭐해요. 땀 흘려서 번 만원은 쪼개서 쓰게 되는데 범죄에서 번 돈은 만원 뭐 그냥 쓰죠.

(그럼 사기로 돈 벌면 어디에 쓰시나요?) 그제 쓰는데 어디 규칙적이지 않죠. 범죄로

번 돈은 어디 썼다 안썼다 그게 안돼요. 어떤 범죄자던디. 왜? 쉽게 얻은거니깐 쉽게 써버리는거죠.

(선생님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셨어요?) 저야 뭐 그때 세 들어서 살다가 돈이 생겨서 이제 일을 안해. 그냥 1년이고 쓰다가 돈 떨어지면 또 하는거지. 그게 범죄자들의 수법이야.

《사례 8》

〈사례 3〉은 일거리가 없어 돈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쳤던 기억을 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발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일거리 없고 돈 팔리고 하면 거기 가면 큰 돈은 못만지더라도 용돈정도는 만지고. 그래 나도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거기로 발이 떨어지는거야.

《사례 3》

〈사례 2〉는 범죄의 시작이 우연히 문이 열려 있는 자동차에서 현금을 발견한 것이었는데, 이때 별 어려움 없이 상대적으로 큰 돈을 획득하여 자유롭게 썼던 기억이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다고 말한다.

(처음에 차 문 열려있고 현금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그때 깜짝 놀랐죠. 차문이 열려있고 가방 들춰봤는데 현금이 있길래. 그래가지고 세보니까 90만원 정도 나와서 깜짝 놀랐죠. ... 무조건 확 집었어요.

(보통 범죄 처음하는 사람들은 남의 것 가져가야 하나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건 없었어요.

(왜그랬을까요? 평소에는 직장 다니시면서 남의 것 손도 안대셨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않고 무조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는 현찰이예요 현찰. 만원짜리 90장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썼죠.

그때 내가 차 문을 처음 열어본거잖아요. 그래 돈이 그렇게 생긴건데, 별 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돈이니까 쓰고 싶은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쓰고나서 자꾸 자꾸 하다보니까는 이게 왜 자꾸 돈이 생기지? 이렇게 차문만 열면 지갑에서 돈이 나오네 해서 그게 왜그런가 하고 생각은 해봤죠.

《사례 2》

제 5 장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결 론

박 형 민

본 연구는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생애과정을 질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그들의 범죄경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성과를 정리하여 범죄경력 연구의 동향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속에서 생애과정 연구의 역사와 의의를 살펴보았으며, 생애과정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료의 종류와 특징, 분석방법을 다루었다. 특히 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론적 성과와 향후 방향성 및 함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연구에 동의한 피면접자들을 각각 3회씩 만나 면접조사함으로써 단 1회의 면접조사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초기 면접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2회의 추가 면접을 통해 질문을 보충할 수 있었고, 1회 만남으로는 형성할 수 없는 라포를 형성하여 보다 자세하고 진실된 경험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고령 경력 범죄자들의 생애주기별 생활경험을 살펴보고, 각 사례들이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에 경험한 주요한 사건들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면접자들의 생애 경험 속에서 나타난 범죄 요인들을 정리하였다. 범죄의 시작, 중단, 재시작, 지속이라는 틀을 통해 개별적인 사례들을 고찰하여, 각 국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들 간에 이루어진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범죄의 시작요인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가난 또는 경제곤란이었다. 본 연구에 동의한 피면접자들의 대부분이 절도범죄자이고, 일부 사기범죄자와 교통범죄자가 동의한 사례들이기에 어쩌면 사례들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사례들 중에는 어린시절부터 가난했거나, 성장과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범죄를 시작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은 틀림없다. 다음으로는 친구의 부탁 또는 권유로 범죄를 시작한 범죄자가

다수 있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의식 없이 지인이나 친구의 말에 동의하여 별다른 생각 없이 했던 행위가 초기 범죄 경력을 형성하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계기가 되었던 사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범죄적 동료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범죄적 하위문화를 접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이에 따른 음주가 폭력성 범죄를 야기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으며, 큰 돈을 얻게 된 범죄를 우연한 행운으로 여겨지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한 사례를 반복하여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범죄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거의 공통된 중단요인은 ‘결혼(과출산)’, 그리고 ‘정규적인 노동에의 참여’이다. 이들은 결혼을 통한 안정 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잠시나마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범죄가 아닌 경제활동과 노동 참여를 통해 범죄를 중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죄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였는데, 가장 주의 깊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범죄적 성공경험’이다. 이 요인은 범죄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서도 작용한다. 범죄적 성공경험이란 범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거나, 범죄적 행위의 결과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는 경험을 말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과거의 성공 경험에 비추어 범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를 다시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 동료들의 유혹을 지적할 수 있다. 과거에 함께 범죄를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거나, 공범을 찾은 동료 범죄자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죄를 권유하는 경우 약하게 거절한 이후 결국에는 다시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시작요인이기도 한 경제적 곤란이 재시작요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업실패, 실업 등의 경제적 문제상황을 절도나 사기라는 범죄적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혼과 출산이 중단요인이었다면, 이혼은 재시작요인이다. 범죄적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힘이 사라지는 순간 이들은 다시금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범죄를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반복된 범죄로 인해 쌓여진 범죄경력이었다. 다수의 범죄경력에는 다른 모든 요인들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다수의 범죄경

력은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기 힘들게 만들어 범죄가 아닌 다른 행위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수의 범죄경력 중 일부는 범죄적 성공을 경험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죄의 지속을 통해 다시금 성공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다수의 범죄경력에 범죄자가 범죄적 행위에 익숙하게 하여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다수의 범죄경력에 결국 범죄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경제적 문제상황을 범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한다.

이들 범죄 각 국면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향후 취약한 국민들이 범죄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반복된 범죄 경력을 가진 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하거나 재시작하지 않도록 하고, 지속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정책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미있는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범죄 경력을 탐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시도되어 우리 현실에 맞는 범죄학 이론을 형성하고, 우리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범죄자들이 범죄 경력을 지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기관 출소자들이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경력범죄자들이 범죄를 시작하거나, 재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인 곤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들에게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범죄 경력자들이 사회적 유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경력범죄자들이 범죄를 중단할 수 있는 요인은 가족을 형성하여 사회적인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도소 수감 전후로 가족 관계가 깨어져 범죄를 중단할 사회적 유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범죄를 중단할 기회가 감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 교도소 프로그램에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수감중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1. 국내문헌

- 강상경. (2011).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나남.
- 강수진. (2009).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6(2), 3-26.
- 강은영. (2005). 경력범죄자의 성인초기 범죄지속과 중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중돈. (2012). 노인복지론. 학지사.
- 권해수·윤일홍. (2015). 청소년 탈비행 과정에 관한 고찰: Sampson 과 Laub 의 생애과정 이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6(4), 185-212.
- 권해수·이연상(2013), 탈비행에 성공된 소년원 출원생의 생활 실태 분석, 청소년시설환경, 11(3), 125-136.
- 기광도. (2009). 연령과 범죄간의 관계분석. 한국경찰연구, 8(4), 3-34.
- 김경숙·남현우(2012), 중기 청소년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예측요인의 탐색, 한국 청소년연구, 23(4), 131-157.
- 김봉수. (2012). 노인범죄의 급증현상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법학논총, 32(1), 7-32.
- 김상수. (2015). 노인범죄 발생의 영향요인과 대책에 관한 질적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원. (2016). 노인범죄의 실태와 원인. 공공정책연구, 33(1), 47-69.
- 김승용. (2000). 노인범죄의 실태분석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일 연구. 노인복지연구, 가을호.
- 김은주·김상원. (2009). 일본과 한국의 노인범죄 추세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6(1), 45-71.
- 김은주. (2008).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전략. 경찰연구논집, 3, 85-112.
- 김준호·이순래. (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숙완. (2013). 노인범죄의 원인 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영숙. (2010).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19, 59-78.
- 박철현. (2001). 한국의 연령-범죄곡선. 한국인구학, 24(2), 149-177.
- 박철현. (2003). 범죄경력의 전문화: 마코프-체인 분석. 형사정책연구, 14(1): 243-273.
- 박철현. (2007). 활동적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범죄유형: 자기보고식 조사. 한국범죄학, 1(1), 3-40.
- 박한샘·오익수(1998), 탈비행화 과정 탐색에 대한 현장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6(1), 60-92.
- 박형민·서주연. (2015).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I):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78.
- 변윤정. (2018). 노인범죄 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추세예측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선영화·강동욱. (2018). 노인범죄 특성 및 노인범죄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위한 시론. 법과 정책연구, 18(4), 1-27.
- 선영화·강동욱. (2018). 노인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18(1), 57-81.
- 송양민. (2010). 밥·돈·자유: 대한민국을 재창조한 베이비 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 세기북스.
- 송주영·한영선. (2014).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분석: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 적용. 형사정책연구, 25(1), 239-260.
- 신연희. (2010). 베이비붐 세대를 통해 본 노인범죄 전망: 가족의 지지자원을 중심으로. 교정담론, 4(2), 115-148.
- 양계민·김의철. (2003).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63-88.
- 유근식. (2014). 우리나라의 연령-범죄 분포의 변화와 코호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도선. (2006). 만성적 직업범죄의 유형 및 심리적 특성 분석-노인층 범죄자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 227-254.

- 이미화·정병수. (2016).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 55-80.
- 이병기·류철원. (1995). 범죄경력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상우. (2017). 고령자 범죄 현황과 특징. 고령화리뷰 Monthly 18, 20-22.
- 이상인. (2018). 스토리맵 (Story Map) 을 통한 청소년 탈비행 유형 분석 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4(2), 67-80.
- 이순래. (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3(1995), 107-138.
- 이영남. (1998). 한국의 노인범죄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 (26).
- 이은주. (2012).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5.
- 이종원. (2004).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 (2005). 청소년기 탈비행화 과정, 한국청소년연구, 16(1), 383-419.
- 전선영·문성호(2013). 청소년 탈비행의 유형 및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5(2), 395-415.
- 정옥분·김동배·정순화·손화희. (2016). 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정은경. (2012). 한국의 연령에 따른 범죄율에 대하여. 형사정책연구, 23(3): 267-291.
- 정은경. (2014). 한국의 연령 - 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형사정책연구: 25(1), 101-122.
- 정익중(2009). 청소년비행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한국청소년연구, 20(3), 253-280.
- 최성재·장인협. (2006). 노인 복지학. 서울 대학교 출판부.
- 최인섭·박순진. (1993). 사회구조와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이순래. (2009). 청소년의 재범예방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영선. (2012). 마코프체인 분석을 이용한 범죄전이 연구. 형사정책연구, 257-275.

2. 외국어문헌

- Abbott, A. (1997). Of time and space: The contemporary relevance of the Chicago School. *Social forces*, 75(4), 1149-1182.
- Akers, R. L., & Sellers, C. S. (2009). Criminology theories.

- Allison, P. D. (2009). *Fixed effects regression models* (Vol. 160). SAGE publications.
- Alwin, D. F. (2012). Integrating varieties of life course concept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67(2), 206-220.
- Baltes, P. B., & Nesselroade, J. R. (1984). Paradigm lost and paradigm regained: Critique of Dannefer's portrayal of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6), 841-847.
- Becker, G. S. (1995). *The economics of crime*. Cross Sections, (Fall), 8-15.
- Becker, H. S. (1996). The epistemology of qualitative research. *Ethnography and human development: Context and meaning in social inquiry*, 27, 53-71.
- Beckley, A. L., Caspi, A., Harrington, H., Houts, R. M., Mcgee, T. R., Morgan, N., ... & Moffitt, T. E. (2016). Adult-onset offenders: Is a tailored theory warrante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6, 64-81.
- Beller, E. (2009). Bringing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research into the twenty-first century: Why mothers matt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4), 507-528.
- Berlin, G., Furstenberg, F., & Waters, M. C. (2010).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 Billari, F. C. (2005). Life course analysis: two (complementary) cultures? Some reflections with examples from the analysis of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0), 261-281.
- Blumstein, A., Cohen, J., & Farrington, D. P. (1988a). Criminal career research: Its value for criminology. *Criminology*, 26(1), 1-35.
- Blumstein, A., Cohen, J., & Farrington, D. P. (1988b). Longitudinal and criminal career research: Further clarifications. *Criminology*, 26(1), 57-74.
- Blumstein, A., Cohen, J., Roth, J., & Visher, C. (Ed.). (1986). *Criminal Careers and" Career Criminals,"* (Vol. 1). National Academies.
- Browning, K., Thornberry, T. P., & Porter, P. K. (1999). Highlights of findings from the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Bryk, A. S., & Raudenbush, S. W. (1987). Application of hierarchical linear models to assessing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101(1), 147.
- Burton, L. M., Purvin, D., & Garrett-Peters, R. (2015). Longitudinal ethnography: Uncovering domestic abuse in low-income women's lives. In *Female Students and Cultures of Violence in Cities* (pp. 37-88). Routledge.
- Burton, L. M., Purvin, D., Garrett-Peters, R., Elder, G. H., & Giele, J. Z. (2009). The craft of life course research.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 Clarke, R. V., & Cornish, D. B. (1985). Modeling offenders' decisions: A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Crime and justice*, 6, 147-185.
- D'Onofrio, B. M., Turkheimer, E., Emery, R. E., Harden, K. P., Slutske, W. S., Heath, A. C., ... & Martin, N. G. (2007). A genetically informed study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3), 793-809.
- Dannefer, D. (1984a). Adult development and social theory: A paradigmatic reapprais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0-116.
- Dannefer, D. (1984b). The role of the social in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past and future: Rejoinder to Baltes and Nesselroad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6), 847-850.
- Dannefer, D. (2013). Age and sociological explanation: Expanding horizons in the study of aging and the life course. *Contemporary Sociology*, 42(6), 793-800.
- Deschenes, E. P. (1990). Longitudinal research designs. In *Measurement issues in criminology* (pp. 152-166). Springer, New York, NY.
- Easterlin, R. A. (1987). *Birth and fortune: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ggleston, E. P., & Laub, J. H. (2002). The onset of adult offending: A neglected dimension of the criminal caree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0(6), 603-622.

- Elder Jr, G. H. (1994). Time, human agency, and social change: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15.
- Elder Jr, G. H. (1998). The life course as developmental theory. *Child development*, 69(1), 1-12.
- Elder Jr, G. H., & Giele, J. Z. (2009). *Life course studies: An evolving field in The craft of life course research*. Guilford Press.
- Elder, G. 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 Emirbayer, M., & Mische, A. (1998). What is ag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4), 962-1023.
- Fabio, A., Loeber, R., Balasubramani, G. K., Roth, J., Fu, W., & Farrington, D. P. (2006). Why some generations are more violent than others: assessment of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4(2), 151-160.
- Farrington, D. P. (1986). Age and crime. *Crime and justice*, 7, 189-250.
- Farrington, D. P. (1992). Criminal career research in the United Kingdom. *Brit. J. Criminology*, 32, 521.
- Farrington, D. P. (2003a).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Key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the 2002 Sutherland Award address. *Criminology*, 41(2), 221-225.
- Farrington, D. P. (2003b). Key results from the first forty years of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In *Taking stock of delinquency* (pp. 137-183). Springer, Boston, MA.
- Featherman, D. L., & Lerner, R. M. (1985). Ontogenesis and sociogenesis: Problematics for theory and research about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across the lifespa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9-676.
- George, L. K. (1993).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life transi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 353-373.
- Giordano, P. C. (2010). *Legacies of crime: A follow-up of the children of highly delinquent girls and bo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laser, D. (1964). The effectiveness of a prison and parole system. Indianapolis:

Bobbs-Merrill.

- Glass, J., Bengtson, V. L., & Dunham, C. C. (1986). Attitude similarity in three-generation families: Socialization, status inheritance, or reciprocal influ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85-698.
- Glenn, N. D. (2005). *Cohort analysis* (Vol. 5). Sage.
- Glueck, S., & Glueck, E.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ttfredson, M., & Hirschi, T. (1986). The true value of lambda would appear to be zero: An essay on career criminals, criminal careers, selective incapacitation, cohort studies, and related topics. *Criminology*, 24(2), 213-234.
- Gottfredson, M., & Hirschi, T. (1988). Science, public policy, and the career paradigm. *Criminology*, 26(1), 37-55.
- Grasmick, H. G., & Bursik Jr, R. J. (1990). Conscience, significant others, and rational choice: Extending the deterrence model. *Law and society review*, 837-861.
- Greenberg, D. F. (1977). Delinquency and the age structure of society. *Crime, law and social change*, 1(2), 189-223.
- Greenberg, D. F. (1985). Age, crime, and social explan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 1-21.
- Greenberg, D. F., & Larkin, N. J. (1985). Age-cohort analysis of arrest rate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 227-240.
- Hauser, R. M. (2009).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In *The craft of life course research*, 29.
- Hirschi, T., & Gottfredson, M. (1983). Age and the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3), 552-584.
- Hirschi, T., & Gottfredson, M. (1985). Age and crime, logic and scholarship: Comment on Greenber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1), 22-27.
- Hirschi, T., & Gottfredson, M. R. (1995). Control theory and the life-course

- perspective. *Studies on Crime & Crime Prevention*.
- Hitlin, S., & Kirkpatrick Johnson, M. (2015). Reconceptualizing agency within the life course: The power of looking ahea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0(5), 1429-1472.
- Hogan, D., & Spearing, C. (2009) Collecting and Interpreting Life Records. In The craft of life course research. Guilford Press.
- Horney, J., Osgood, D. W., & Marshall, I. H. (1995). Criminal careers in the short-term: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crime and its relation to local life circumsta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5-673.
- Horney, J., Osgood, D. W., & Marshall, I. H. (1995). Criminal careers in the short-term: Intra-individual variability in crime and its relation to local life circumstanc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5-673.
- Jones, B. L., & Nagin, D. S. (2007). Advances in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an SAS procedure for estimating them.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5(4), 542-571.
- Kane, M., & Trochim, W. M.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Vol. 5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Laub, J. H., & Sampson, R. J. (2003).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 Laub, J. H., & Sampson, R. J. (2004). Strategies for bridg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ivide: Studying crime over the life course.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1(1), 81-99.
- Laub, J. H., Nagin, D. S., & Sampson, R. J. (1998). Trajectories of change in criminal offending: Good marriages and the desistance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5-238.
- LeBlanc, M., & Frechette, M. (1989). Male criminal activity from childhood through youth. New York(Etats-Unis d'Amérique).
- Maruna, S. (2001). *Making goo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Mayer, K. U. (2009). New directions in life course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 413-433.

- McLinden, D. (2013). Concept maps as network data: analysis of a concept map using the methods of social network analysi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6(1), 40-48.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Mirowsky, J., & Ross, C. E. (2007). Life course trajectories of perceived control and their relationship to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2(5), 1339-1382.
- Moffitt, T.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4), 674-701.
- Murray, J., Loeber, R., & Pardini, D. (201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youth theft, marijuana use, depression, and poor academic performance. *Criminology*, 50(1), 255-302.
- Nagin, D. S. (1999). Analyz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a semiparametric, group-based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4(2), 139.
- Nagin, D., & Paternoster, R. (2000).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State of the evidenc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6(2), 117-144.
- O'brien, R. M.(1989). Relative cohort size and age-specific crime rates: An age-period-relative-cohort-size model. *Criminology*, 27(1), 57-78.
- O'brien, R. M., & Stockard, J. (2006). A common explanation for the changing age distributions of suicide and homicide in the United States, 1930 to 2000. *Social Forces*, 84(3), 1539-1557.
- O'Brien, R. M., Stockard, J., & Isaacson, L. (1999). The enduring effects of cohort characteristics on age-specific homicide rates, 1960-1995.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4(4), 1061-95.
- O'Rourke, P. J. (2014). *The Baby Boom: How It Got That Way(And It Wasn't My Fault)(And I'll Never Do It Again)*. Grove/Atlantic, Inc..
- Osborn, S. G. (1980). Moving home, leaving London and delinquent trends. *Brit.*

J. Criminology, 20, 54.

- Paternoster, R. (2017). Happenings, acts, and actions: articulating the meaning and implications of human agency for criminology.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3(4), 350-372.
- Paternoster, R., Dean, C. W., Piquero, A., Mazerolle, P., & Brame, R. (1997). Generality, continuity, and change in offending.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3(3), 231-266.
- Patton, J., & Economy, P. (2014). User story mapping: discover the whole story, build the right product. "O'Reilly Media, Inc."
- Piquero, A. R., Farrington, D. P., & Blumstein, A. (2007). *Key issues in criminal career research: New analyses of the Cambridge Study in Delinquent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ogarsky, G., Roche, S. P., & Pickett, J. T. (2018). Offender decision-making in criminology: Contributions from behavioral economic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1, 379-400.
- Quetelet, A. (1831). *Research on the Propensity for Crime at Different Ages*. Chincinnati Anderson, USA.
- Raudenbush, S. W. (2001). Toward a coherent framework for comparing trajectories of individual change.
- Reiss Jr, A. J., & Farrington, D. P. (1991). Advancing knowledge about co-offending: Results from a prospective longitudinal survey of London males. *J. Crim. L. & Criminology*, 82, 360.
- Rengert, G. F., Piquero, A. R., & Jones, P. R. (1999). Distance decay reexamined. *Criminology*, 37(2), 427-446.
- Riley, M. W., & Foner, A. (Eds.). (1968). *Aging and society: An inventory of research findings*. Russell Sage Foundation.
- Ryder, N. B. (198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In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pp. 9-44). Springer, New York, NY.
- Sampson, R. J., & Laub, J. H. (1990). *Crime and deviance over the life course:*

- The salience of adult social bo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9-627.
- Sampson, R. J., & Laub, J. H. (1995a).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Harvard University Press.
- Sampson, R. J., & Laub, J. H. (1995b). Understanding variability in lives through time: Contributions of life-course criminology. *Studies on Crime & Crime Prevention*.
- Sampson, R. J., & Laub, J. H. (1997). A life-course theory of cumulative disadvantage and the stability of delinquency.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7, 133-161.
- Sampson, R. J., & Laub, J. H. (2003). Life-course desisters?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0. *Criminology*, 41(3), 555-592.
- Sampson, R. J., & Laub, J. H. (2003). Life-course desisters?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0. *Criminology*, 41(3), 555-592.
- Sampson, R. J., & Laub, J. H. (2005). A general age-graded theory of crime: Lessons learned and the future of life-course criminology. In *Integrated developmental & life-course theories of offending: Advances in criminological theory* (pp. 165-181). Routledge.
- Savolainen, J. (2000). Relative Cohort Size and Age-Specific Arrest Rates: A Con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Easterlin effect. *Criminology*, 38(1), 117-136.
- Scott, J., & Alwin, D. (1998). Retrospective versus prospective measurement of life histories in longitudinal research. In *Methods of life course researc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98-127.
- Shaw, C. R. (1966). *The jack-roller: A delinquent boy's own st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all, M. L. (2011). How to conduct a mixed methods study: Recent trends in a rapidly growing literatur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57-86.
- Sole, D., & Wilson, D. G. (2002). Storytelling in organizations: The power and traps of using stories to share knowledge in organizations. LILA, Harvard,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1-12.
- Sutherland, E. 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4th ed. Chicago: J. B Lippincott
- Thomas, W. I., & Znaniecki, F. (1918).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Monograph of an immigrant grou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hornberry, T. P., Freeman-Gallant, A., Lizotte, A. J., Krohn, M. D., & Smith, C. A. (2003). Linked live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ntisoci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1(2), 171-184.
- Thornberry, T. P., Giordano, P. C., Uggen, C., Matsuda, M., Masten, A. S., Bulten, E., & Donker, A. G. (2012). Explanations for offending. From Juvenile delinquency to adult crime: Criminal careers, justice policy and prevention, 47-85.
- Turanovic, J. J., Rodriguez, N., & Pratt, T. C. (2012). The collateral consequences of incarceration revisited: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n caregivers of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riminology*, 50(4), 913-959.
- Warr, M. (1998). Life-course transitions and desistance from crime. *Criminology*, 36(2), 183-216.
- Western, B. (2018). Homeward: *Life in the year after prison*. Russell Sage Foundation.
- Wildeman, C., & Turney, K. (2014). Positive, negative, or null? The effects of maternal incarceration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Demography*, 51(3), 1041-1068.
- Yun, Ilhong, & Lee, Julak. (2013). IQ and Delinquency: The Differential Detection Hypothesis Revisited.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1(3), 196-211.
- Zhong, H. (2005). The age-crime relationship across time and offense types: A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Abstract



The Crime History of Elderly Criminals

Bark, Hyung Min • Kim, Yeon Soo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literature study on the trends of criminal career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riminals in prison.

The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trends of criminal history research.

Through the literature study, prior studies on each issue, such as changes in the paradigm of life-course study, methods of collecting and analyzing life-course research data, and criminal records of criminals, were compiled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riminal-history research and life-course study was present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life-cycle experiences of older experienced criminals, and to find out the main events and their meaning that each case experienced in adolescence, youth, and middle-aged years, beginning with childhood. Factors prominent in each phase of crime such as beginning, stopping, restarting, and continuing were extracted and analyzed if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start	intermittence	restart	Persistence
〈case 1〉	• an orphan situation • shared life with crime colleagues	• marriage and childbirth	• temptation of criminal colleagues • business failure • experiences of criminal success	• relationship with crime colleagues
〈case 2〉	• coincidental luck			• difficulty to get a job • experiences of criminal success
〈case 3〉	• economic difficulties	• marriage and childbirth • operation of a business	• divorce • business failure • failure to inherit heritage • poor health	• accumulated criminal record • difficulty to get a job
〈case 4〉	• encourage from a friend • neglect of parents	• marriage and childbirth • operation of a business	• economic difficulties	• shared life with criminal colleagues • family discord
〈case 5〉	• poverty	• labor participation	• preparing entertainment expenses	• learning crime in prison • social maladjustment
〈case 6〉	• friend request • Complaints about spouses • drinking • poor health • unemployment			• Inappropriate for local society • drinking
〈case 7〉	• poverty	• operation of stalls • marriage • sufficient income	• divorce	• long-term detention • difficulty to get a job
〈case 8〉	• encourage from crime colleagues	• marriage • labor participation	• threatening by an accomplice • experiences of criminal success	• criminal self-image • accumulated criminal record • getting used to crime • experiences of criminal success
〈case 9〉	• friend's request			• poverty
〈case 10〉	• complaints about spouses • drinking			• complaints about spouses • drinking

It was poverty or economic hardship that most notably emerged as a starting factor for crime. Next there were a number of criminals who started crimes at the request of their friends. There were other cases in which resentment against spouses and drinking resulted in violent crimes, and there were repeated cases in which crimes that resulted in large sums of money were considered accidental luck and repeated acts of the same type.

Almost common causes of discontinuation in cases with experience of stopping crimes are 'marriage (and childbirth)' and 'participation in regular labor'. They were able to stop crimes for a short time due to stability through marriage or responsibility for their families, and in this regard, they were able to stop crimes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nd labor participation, not through crime.

There are a variety of factors that stop and restart crime. Economic difficulties are important as a restart factor. And 'criminal success experience' was an important factor. This factor also works as a factor that keeps crime going without stopping it. A criminal success experience refers to an experience in the past in which a person has experience in solving a problem through a crime or may think that a relatively large success has occurred as a result of a criminal act. If marriage and childbirth were the stop factors, divorce was the restart factor. The moment the power to stop criminal activity is gone, they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crime again.

The biggest factor keeping the crime was the criminal record, built up by repeated crimes. Many criminal careers are directly and indirectly linked to all other factors. Many criminal careers make it difficult to obtain legitimate jobs, making it difficult to choose other activities than crimes. Some of the many criminal careers have led to the experience of criminal success, thus attempting to achieve success again through the continuation of the crime. A number of criminal careers make criminals familiar with criminal behavior, so that they don't feel the problem of crime. Many criminal careers eventually lead to attempts

to solve economic problems by making criminals poor.

Key words: crime history, elderly criminals, intermittence of crimes,
persistence of crimes, restarting crimes

연구지원자 안내문 및 신청서

〈연구지원자 모집 안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면접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아 래 -

- ☐ 모집대상 : 65세 이상 수용자 중
 - ① 강도 또는 절도 전과 7범 이상
 - ② 사기 또는 횡령(배임) 전과 7범 이상
 - ③ 폭력 또는 상해 전과 7범 이상
 - ④ 총 전과 10범 이상
- ☐ 모집인원 : ①~④ 각 유형별 4명 (모집인원 초과 시 선착순으로 결정)
- ☐ 모집기간 : 2019. 5. 31.까지 (우편물 발송일 기준)
- ☐ 응모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우편 발송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면접방법 : 대상자별 총 3회의 면접 예정. 회당 약 2시간 소요
- ☐ 면접사례 : 면접 종료 후 사례비(회당 100,000원) 영치금 입금
(총 3회 면접시 총액 300,000원)

2019. 5. 13.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장

〈신 청 서〉

본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고령범죄자의 범죄 경력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동의하고 범죄 및 생활경험 진술 등 연구활동에 지원할 것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 ☐ 위 연구를 위해 본인의 범죄기록 등 개인정보를 학술연구 목적으로 열람·수집·이용(발간 등)하는 것에 동의한다.
- ☐ 활동경험 진술을 학술연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이용(발간 등)하는 것에 동의한다.
- ☐ 면접 시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수용기관		성 명	
수용번호		생년월일	
출 소 일		영치금 계좌번호	
전과 내용	총 전과	회	
	강도 또는 절도 전과	회	
	사기 또는 횡령(배임) 전과	회	
	폭력 또는 상해 전과	회	

2019. 5.

신청인

(무인)

보내는 곳 :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우면동 1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AA-06

고령범죄자의 범죄경력 연구

발 행 | 2019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한 인 섭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02) 2272-0307

I S B N | 979-11-89908-57-7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